

사회서비스분야 자격의 활성화 방안

조정윤 박종성 정향진
주인중 나승일 원종욱

기본연구	2010-40
보안등급	일반과제

사회서비스분야 자격의 활성화 방안

조정윤 박종성 정향진
주인중 나승일 원종욱

머리말

공공행정, 교육, 복지, 의료 등으로 구성된 사회서비스 분야는 개인이나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선진국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은 아직 외국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으로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정부는 2014년까지 보건복지 분야 5대 유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산업에 1조 원을 투입해 28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 분야 인프라 확충차원에서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및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 언어치료사 등의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도입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국가자격 도입의 목적은 첫째, 국가자격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해당 서비스의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문직업인으로서 대외적 이미지를 갖추고 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며 셋째,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효과적으로 향상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분야 국내외 자격제도와 종목 현황을 분석하여 민간자격 중 국가자격화가 필요한 자격 종목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 신규 국가 및 민간 자격종목 개발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정윤 박사가 연구책임자로서 박종성 박사, 정향진 박사, 주인중 박사와 서울대학교 나승일 교수, 보건사회연구원의 원종욱 박사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위촉연구원으로 구혜원 선생이 참여하였다.

수시과제로 생성되어 다소 짧은 연구기간 동안 충실히 이 연구를 수행한 원내외 연구진과 귀중한 의견을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0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권 대 봉

목 차

요약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6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6

1. 연구 방법 · 6
2. 연구 범위 · 8

제3절 연구 수행 절차 및 내용 · 9

제4절 연구의 한계 · 10

제2장 사회서비스 노동시장과 고용 동향 및 자격 현황 · 13

제1절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구조분석 · 13

1. 사회서비스분야의 종사자 규모 · 15
2. 사회서비스분야의 인적자본 특성 · 16
3. 사회서비스분야의 고용의 질 · 19

ii 목차

제2절 사회서비스 산업체 고용동향 분석 · 21

제3절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종목 현황 · 25

1. 검정실시기관별 자격종목 · 25
2. 자격종목별 검정방법 · 29
3. 자격종목별 검정결과 · 33
4.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의 문제점 · 38

제4절 시사점 · 39

제3장 해외 주요국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지원정책 및 추진 동향 · 41

제1절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고용지원 정책 · 41

1. 미국 · 41
2. 영국 · 54

제2절 주요국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정책 사례 · 68

1. 미국 · 68
2. 영국 · 71
3. 프랑스 · 75
4. 일본 · 79

제3절 시사점 · 86

제4장 사회서비스 분야 산업 및 직업 동향: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 89

제1절 미국 · 89

1. 미국의 사회서비스업 동향 · 89
2. 미국의 사회서비스업 직업 동향 · 93

제2절 일본 · 102

1. 일본의 사회서비스 분야 산업동향 · 102
2. 일본의 사회서비스 분야 직업동향 · 104

제3절 우리나라 동향과 시사점 · 109

1. 한국의 사회서비스업 동향 · 109
2. 한국의 사회서비스업 직업동향 · 114
3. 시사점 · 123

제5장 사회서비스분야 미국, 일본 자격운영 현황 · 125

제1절 미국 · 125

1. 미국의 자격제도 개요 · 125
2.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자격 현황 · 127
3. 자격 신설 가능 종목 · 132

제2절 일본 · 133

1. 일본의 자격제도 개요 · 133
2.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자격 현황 · 134
3. 자격신설 가능 종목 · 140

제3절 시사점 · 142

제6장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45

제1절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분야 · 145

1. 보건 및 사회복지 자격 현황 · 145
2.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의 문제점 · 153
3. 보건 및 사회복지 자격의 개선 방향 · 165
4. 개별 자격종목별 개선 방향 · 171
5.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신규자격 발굴 · 175
6.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신규발굴 자격종목 · 180

제2절 교육 서비스 분야 · 185

1. 교육서비스 자격 현황 · 185
2. 교육서비스 자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89
3. 교육서비스 신규자격 발굴 · 202
4. 교육서비스 분야 신규 발굴 자격종목 · 205

제3절 공공 행정서비스분야 · 207

1. 공공 행정서비스 분야 자격 현황 · 207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9

제7장 정책제언 · 217

1. 자격의 신설, 국가자격화, 개선정책 추진시 주요 고려사항 · 217
2.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 220
3.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개선방안 시행 전략 · 222
4.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활성화를 출발점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개발·활용 필요 · 224

Summary · 227

부 록

- [부록 1-1] 교육서비스분야 자격 종목 분류 · 231
- [부록 1-2] 교육서비스분야 민간자격종목 분류(100823) · 232
- [부록 1-3] 교육서비스분야 국가자격종목 분류(100823) · 243
- [부록 2] 교육서비스분야 주요 연구대상 자격종목 추출 기준 · 244
- [부록 3] 교육·기타서비스업 설문조사지 · 247
- [부록 4] 교육서비스분야 민간자격의 개요 · 254
- [부록 5]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학습컨설턴트 자격 개선 세부 방안 · 292

참고문헌 · 313

<표 목차>

- <표 1-1> 서비스업 세부분야별 자격종목 수 현황 · 3
- <표 1-2> 사회서비스업 세부분야별 자격종목 수 · 4
- <표 1-3> 설문조사 내용 · 7

- <표 2-1> 사회서비스분야 관련 직업목록 · 14
- <표 2-2> 사회서비스의 종사자 규모 · 15
- <표 2-3> 사회서비스의 연령 분포 · 17
- <표 2-4> 사회서비스의 학력 분포 · 18
- <표 2-5> 사회서비스의 자격증 보유 현황 · 18
- <표 2-6> 사회서비스의 근로형태 분포 · 20
- <표 2-7> 사회서비스의 근로조건 현황 · 21
- <표 2-8> 사회서비스의 부족인원 · 22
- <표 2-9> 직종별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내국인 기준) · 25
- <표 2-10>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종목 현황 · 25
- <표 2-11>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검정실시기관별 자격종목 · 27
- <표 2-12> 교육 분야 자격종목의 검정실시기관별 자격종목 · 28
- <표 2-13> 공공행정서비스 분야 검정실시기관별 자격종목 · 29
- <표 2-14> 보건·의료 분야 자격종목의 검정방법 · 29
- <표 2-15> 사회복지 분야 자격종목의 검정방법 · 31
- <표 2-16> 교육 분야 자격종목의 검정방법 · 32
- <표 2-17> 공공행정서비스 분야 자격종목의 검정방법 · 33
- <표 2-18> 보건·의료 분야 국가기술자격종목의 합격자 현황 · 34
- <표 2-19> 보건·의료분야 국가자격 및 공인민간자격종목의 합격자 현황 · 35
- <표 2-20> 사회복지 분야 국가기술자격종목의 합격자 현황 · 36

<표 2-21> 사회복지분야 국가자격 및 공인민간자격 종목의 합격자 현황 · 36

<표 2-22> 교육 분야 자격종목의 합격자 현황 · 37

<표 2-23> 공공행정서비스 분야 자격종목의 합격자 현황 · 37

<표 3-1> 미국 표준직업분류(SOC)기준 직업별 임금근로자 규모 추계결과 · 42

<표 3-2> 미국 사회적 지원(social assistance) 관련 직종 고용규모 예측 · 44

<표 3-3> 미국 BAA 아동복지 핵심과정(Core course)의 교육내용 예시 · 46

<표 3-4> 미국 BAA 아동복지 관리 과정(Supervisor course) 교육내용 예시 · 47

<표 3-5> 프랑스의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 일자리 근속기간(2001) · 66

<표 3-6> 프랑스의 사회서비스 최소 일자리의 근로 지위 비교(2001) · 66

<표 3-7> 일본의 개호노동자고용관리개선 관련시책 · 80

<표 3-8>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사회서비스 관련 동향 및 관련법 · 81

<표 3-9>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특성 · 83

<표 3-10>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아동 돌봄서비스 부문 고용특성 · 84

<표 3-11>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가사·간병서비스 부문 고용특성 · 85

<표 4-1> 사회서비스업 생산액(비중) 추이 · 90

<표 4-2> 사회서비스업 부가가치액(부가가치율) 추이 · 91

<표 4-3> 사회서비스업 GDP 비중(성장기여도) · 92

<표 4-4> 사회서비스업 생산유발계수 추이 · 93

<표 4-5> 미국표준직업분류(SOC)의 사회서비스업 관련 직업 · 94

<표 4-6> 사회서비스업 직업중분류 인력 수요 전망 · 99

<표 4-7> 직업성장률로 본 유망 직종(2008-2018) · 100

<표 4-8> 일본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 · 102

<표 4-9> 사회과제 해결 서비스 분야 · 103

<표 4-10> 일본표준직업분류(JSOC)의 사회서비스업 관련 직업 · 104

<표 4-11> 사회서비스 분야 직업중분류 인력 수요 전망 · 106

- <표 4-12> 사회서비스업 생산액(비중) 추이 · 110
 - <표 4-13> 사회서비스업 부가가치액(부가가치율) 추이 · 111
 - <표 4-14> 사회서비스업 GDP 비중(성장기여도) · 112
 - <표 4-15> 사회서비스업 생산유발계수 추이 · 113
 - <표 4-16> 사회서비스업 부가가치유발계수 추이 · 113
 - <표 4-17>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의 사회서비스업 관련 직업 · 115
 - <표 4-18> 사회서비스업 직업소분류 인력 수요 전망 · 117
 - <표 4-19> 사회서비스업 직업중분류 노동수요 전망 · 119
 - <표 4-20> 사회서비스업 유망 직업의 지표영역별 순위 · 121
 - <표 4-21> 연평균 성장률 상위 직업 중 사회서비스업 직업군 · 121
 - <표 4-22> 연평균 성장률 상위 직업 중 사회서비스업 직업 · 122
-
- <표 5-1> 미국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자격종목 · 127
 - <표 5-2> 미국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자격의 개요(일부) · 130
 - <표 5-3> 미국 사례에 근거한 신설가능 자격종목의 예 · 132
 - <표 5-4> 일본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자격종목 및 구분 · 135
 - <표 5-5> 일본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자격의 개요(일부) · 137
 - <표 5-6> 일본 사례에 근거한 신설가능 자격종목의 예 · 141
-
- <표 6-1> 국내 사회서비스업 자격종목의 구분 및 규모 · 146
 - <표 6-2> 보건·의료 분야 자격의 활용성에 대한 종합적 비교 · 147
 - <표 6-3> 사회복지 분야 자격의 활용성에 대한 종합적 비교 · 148
 - <표 6-4> 부처별 공인률 및 금지종목 비율 · 149
 - <표 6-5>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민간자격 참여제한 유형 및 사례 · 150
 - <표 6-6> 언어치료 관련 외국의 자격제도 사례 · 151
 - <표 6-7> 주요 분야별 예산(2010년 기준) · 176
 - <표 6-8> 신규자격 신설기준 및 내용 · 178

<표 6-9>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신설자격의 적합성 조사 결과 · 179

<표 6-10> 신규자격의 그룹화 · 181

<표 6-11>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신규자격의 직무내용 · 182

<표 6-12> 국내 교육·기타 서비스업 자격종목의 구분 및 규모 · 185

<표 6-13> 분야별 민간자격 등록 현황('08~'10. 6) · 186

<표 6-14> 국내 교육서비스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분야 · 187

<표 6-15> 교육서비스 분야 자격의 활용성에 대한 종합적 비교 · 189

<표 6-16> 전문상담 관련 국가자격의 응시자격 · 191

<표 6-17> 전문상담 관련 민간자격의 영역 분류 및 응시자격 · 193

<표 6-18> 영재교육 관련 민간자격의 응시자격 · 195

<표 6-19> 학습 지도 관련 민간자격의 응시자격 · 198

<표 6-20> 영재교육 관련 민간자격의 응시자격 · 199

<표 6-21> 강사 유형별 프로그램 현황 · 200

<표 6-22> 자격 신설 기준 · 204

<표 6-23> 교육서비스 분야 신설자격의 적합성 조사 결과 · 205

<표 6-24> 신규 자격화 대상 · 206

<표 6-25> 신규 자격종목명 및 직무 내용 · 206

<표 6-26> 공공행정서비스 분야 자격 · 208

<표 6-27> 공공행정서비스 분야 자격의 활용성 종합적 비교 · 209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추진 절차 및 내용 · 10

[그림 4-1] 미국 최고의 유망 직업 · 101

[그림 4-2] '08~'18 취업자 수 증가가 큰 사회서비스업 직업 · 120

[그림 4-3] '08~'18 취업자 수 증가율이 큰 사회서비스업 직업 · 120

[그림 6-1] 치료 관련 자격의 개선 방향 · 166

[그림 6-2] 민간자격 규제 개선 방향 · 168

[그림 6-3] 신설자격 발굴 절차 · 177

[그림 6-4] 신설자격 발굴 절차 · 203

【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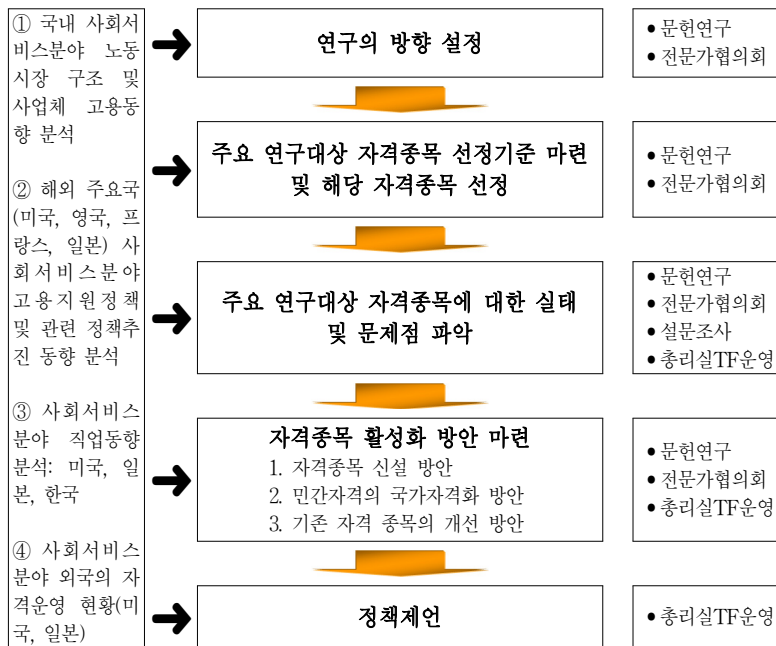
1. 연구의 개요

- 공공행정, 교육, 복지, 의료 등으로 구성된 사회서비스 분야는 개인이나 사회전체의 복지 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선진국에서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은 아직 외국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정부는 2014년까지 보건복지분야 5대 유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산업에 1조원을 투입해 28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과 함께 동 분야 인프라 확충차원에서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및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위해 언어치료사 등의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도입하려는 계획을 발표
-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선진국을 중심으로 의료, 복지, 보육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자격종목이 출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 외국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업 분야에서 신규로 필요한 자격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시점이며, 신설이 필요한 자격종목은 이 분야 자격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자격종목 활성화를 통해

첫째, 국민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제도를 구축하고 둘째, 신규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 1)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신규 자격종목 개발 방안 마련하고, 2) 민간자격 중 국가자격화가 필요한 자격종목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 제안하고, 3) 사회서비스 분야 국가 및 민간 자격의 개선방안을 제시

□ 본 연구는 문헌 및 관련 자료분석, 사회서비스 분야 관련 자격 및 학계 전문가 협의회, 설문조사, 총리실 주관 “사회서비스분야 자격 활성화 TF” 구성 운영을 통해 진행되었음



□ 이 연구는 직능원 외부 요청에 의해서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종목의 선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추진된 단기 수시과제(2010. 8. ~ 12.)임

- 이 연구에서 사회서비스분야 자격제도 및 종목 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폭넓게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서비스 등의 중요자격을 중심으로 자격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2. 사회서비스 노동시장과 고용 동향 및 자격 현황

□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종목 현황

(단위: 개, %)

분야 \ 구분	국가	국가기술	공인민간	민간	합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2	9	3	109	153
교육서비스업	18	-	2	447	467
공공행정서비스업	5	1	1	3	10
총 계	55(8.7)	10(1.6)	6(1.0)	559(88.7)	630(100.0)

- 향후 사회서비스분야는 안전, 건강, 복지 등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개인의 요구 증대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 고령화 등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직업들이, 개인의 복지수혜에 대한 요구 증대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직업들이, 더 나은 교육의 질에 대한 요구 증대로 교육서비스 관련 직업들이 유망한 직업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징적인 것은 개인의 질 높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는 강화될 것이며, 이는 사회서비스 관련 직업들의 더 높은 전문성을 요구될 것이란 점임
 - 그러나 앞에서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구조를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

서비스 등에서는 전문직보다는 저숙련 단순직에서 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고, 이로 인해 고용의 질 역시 낮은 수준을 보였음

- 민간자격 금지분야 설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그동안 우리나라도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시장에서 언어치료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놀이치료사 등의 자격종목 등이 요구되고 있었으나 부처의 치료 명칭 사용규제로 인하여 그동안 이 분야 민간자격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음
-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사회적 혹은 개인의 요구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관련 직업들을 전문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노력 중 하나가 사회서비스분야의 자격체계와 훈련체계를 재정비하고, 전문화가 요구되는 사회서비스 관련 직업의 자격과 훈련을 신설·개편하여 직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임

3. 해외 주요국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지원정책 및 추진 동향

-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 사회서비스 고용조사에서 실시된 이 분야 인력구복의 원인에 대한 공급기관 운영자 의견조사 결과 높은 이직율의 원인으로 낮은 임금수준, 인력의 소진, 이용자의 높은 서비스 기대수준, 경력관리의 한계, 장시간 근로문제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사추세츠 주에서는 6대 고용촉진 및 유지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음
- 미국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은 연방정부의 인력투자법(WIA)이나 빈곤가정에 대한 한시적 지원프로그램(TANF)과 같이 장기요양

서비스 등 돌봄서비스의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들이 주된 것임

- 영국 보건부는 사회적 돌봄인력전략위원회 및 실행그룹을 창설하여 이 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개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
 - 효과적으로 사회돌봄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서 보건부는 2008년의 경우 3월 한달간 TV, 라디오, 신문 등을 이용하여 돌봄서비스를 홍보하고 인력을 모집하였음
- 영국은 돌봄 서비스 고용 현대화 전략에 기반하여 돌봄서비스 인력의 자질 향상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국가 직업교육훈련 및 고용전략을 추진하였음
 -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해서 서비스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마련하였으며 이것은 국가직업자격제도와 연계하여 관리·운영되도록 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1992년에 기존 보육사 자격을 공인보육사로 국가자격화하고 공인보육사를 고용할 경우 보육비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음
 - 국가 지원 제도의 시행으로 보육혜택을 받지 못했던 많은 유자녀가정이 공인보육사를 고용하게 되었고, 보육사 역시 비공식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던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음
 - 공인보육사 고용가족 지원제도가 도입되기 전 보육사 숫자는 15만여명이었는데 이 제도 도입이후 3년여만에 2배로 증가된 것은 이 제도의 효과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임

- 프랑스에서는 사회서비스 직업의 양성화 정책을 통해 사회적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비공식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직업들에 대한 양성화를 통해 사회적 직업으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 이들 직업에 대한 교육 및 훈련체계의 강화를 통해서 사회적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미국 등 선진국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대 국민 서비스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고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4. 사회서비스 분야 산업 및 직업 동향 :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 미국, 일본을 살펴본 결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을 증대하고 대 국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결과 이 부문에서 고용가능성이 높은 유망직종이 많이 출현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음
 -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분야의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을 확장하고 고용의 질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과 이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
-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사례를 종합화하면 3개국 공히 사회서비스 분야의 유망직업을 중심으로 고용증가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전문가가 전망하는 것처럼 이 분야가 향후 고용의 블루오션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미국과 일본의 사회서비스 분야 유망 직업으로 전자는 운동치료사, 물리치료조력원, 치과위생사 등 보건의료 관련 분야가 주를 이루

고 있으며, 후자는 보건의료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이학요법사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일본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세부 직종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유망직종의 수도 적음

□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이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부문의 면허성 자격과 관련된 직종이 대부분이므로 자격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을 증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와 민간자격의 개선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의 면허성 국가자격 신설 혹은 국가공인 민간자격화 하는 방안, 새로운 국가자격의 신설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5. 사회서비스 미국, 일본 자격운영 현황

□ 미국과 일본의 자격을 비교하면,

- 첫째, 두 나라 모두 대체의학을 인정하고 있음
- 둘째, 안마사, 지압사 등의 자격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셋째, 기존 자격의 영역이 세분화되어 자격종목의 독점영역이 줄어든 대신 자격을 통한 일자리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예를 들어 약사와 약사보조사, 의사와 의사보조사 등이 일자리 나눔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 더불어 미국과 일본 모두 언어 청각사 자격이 있어 이 분야 자격 신설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미국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자격은 한국에는 없는 다양한 자격들이 존재함
 - 예컨대, 검안사, 약사보조사, 지압사, 의사보조, 의학기구 준비자, 발병전문의, 언어 및 청각치료사, 호흡기치료 기능공, 침술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등의 자격이 한국에는 없는 자격들임

- 일본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자격 중 한국에 없는 자격종목으로는 대중약 등록판매자, 뜸사, 세포검사사, 시력훈련사, 안마·마사지 지압사언어청각사, 의료비서기능검정, 의료사무관리사, 의료사무원, 의사사무작업보조기능검정, 의사컴퓨터기능검정, 임상공학기사, 조제사무관리사기능검정, 진료보수청구사무관리능력검정, 진료정보관리사, 침술사, 보행지도원, 복지사무관리기능검정, 복지사환경코디네이터기능검정, 차일드마인더, 케어사무관리사, 케어시설관리사, 케어지원 전문원, 케어사무원 기능인정시험, 홈헬퍼 등이 있음

6.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각 분야별 자격의 개선방향 제시와 함께 개별 종목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각 자격종목에 대한 개선방향도 제시
 -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 위생사, 보건교육사, 건강가정사, 요양보호사, 발달장애관련 및 재활관련 자격, 심리상담관련 자격, 복지보험 관련 자격, 사회복지사 2급·3급
 - 교육서비스 분야 : 상담관련자격, 영재교육관련자격, 영유아돌봄 관련 자격, 학습지도관련자격
 - 공공행정서비스분야 : 행정사, 행정관리사, 행정정보사, 정책분석평가사,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신규자격을 제안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신설자격 발굴절차를 통해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함



□ 신규자격 신설의 적합성은 서비스요구도, 직무전문성, 능력인정가능성, 일자리가능성의 네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 전문가 협의회, 면담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자격신설 가능종목은 A, B, C, D의 형태로 구분하여 제시함

- 자격화 검토의 우선순위는 A, B, C의 형태로 접근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그룹 : 전체 평균 4.0 이상 • B그룹 : 전체 평균 3.5-3.9 • C그룹 : 전체 평균 3.0-3.4 • D그룹 : 전체 평균 2.5-2.9

※ 5점을 만점으로 평가함

가.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자격의 개선 방향

□ 민간자격 금지분야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치료분야 자격을 일부는 국가자격으로 일부는 민간자격으로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관련분야 국가자격이 없음에도 보건·의료 분야의 민간자격은 치료, 요법, 테라피 등의 직무를 유사의료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정하여 자격신설이 금지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자격종목 간 직무영역 마찰

- 포괄적 직무범위 조정 및 자격종목 간 이해관계에 의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자격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정부 부처차원에서의 조율이 필요함

□ 시장에서 민간자격의 질관리 문제

-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민간자격의 경우 자격의 검정기관에 따라 동일 자격일지라도 다른 등급기준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분야별 자격종목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자격의 등급수준을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신규자격 발굴

- 보건, 의료, 사회복지 서비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치 산업으로, 전문인력양성시스템, 특히 자격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신규 자격을 서비스요구도, 직무전문성, 능력인정필요성, 일자리가 생성 4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그룹화하면 다음과 같음

그룹구분	자격종목	종목 수
A 그룹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사회복지사, 미술치료사	4
B 그룹	언어치료사, 놀이치료사, 음악치료사, 교정사회복지사, 가족사회복지사, 장애사회복지사, 영양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사, 레크레이션치료사, 군사회복지사, 재활용구전문상담사	11
C 그룹	해부병리사, 운동처방사, 인공심폐사, 침술사, 알콜및약물중독상담사, 카이로프랙틱스, 검안사, 뜸치료사 외과수술보조사, 호흡기치료사,	10
D 그룹	정신과보조사, 마사지사, 약물관련인허가전문가(RA), 금연관리사, 발치료전문가, 수술기구준비사, 일반약품판매사, 약무사무관리사, 약사보조사	9

나. 교육서비스 분야 자격의 개선 방향

□ 시장 및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자격의 설치·운영 미비

- 교육서비스 분야의 경우 새로운 자격 수요에 따른 직무영역의 분화, 신설 및 그룹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분야가 소비자 수요를 포괄하지 못하고 직무 내용의 최신성이 부족하며, 민간자격의 경우는 교육대상,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 일정 자격 설치·운영 기준과 직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수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질 관리가 어려움
- 민간자격시장의 유사 분야 난립과 더불어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차별적 역할 분담이 부재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국가 및 민간자격 간의 공통직무범위와 위계(자격 간 등급 수준 맵핑)를 고려한 자격의 정비 및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자격검정 방법 및 관리체계 문제

- 인간발달단계와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교육서비스 자격인증 방법 구안이 필요함

□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질 관리체계 마련 필요

- 연수, 재교육-재인증을 통한 자격 추수 관리와 자격취득자 통계 누적 관리·분석이 필요하며, 민간자격의 경우 등록과 공인을 통해 구축

□ 교육 서비스 신규자격 발굴

- 교육 서비스 분야는 새로운 영역의 직업 분야가 창출되고 있으며, 기존의 민간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포함되고 있는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 이용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의 질 제고에 대한 요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 및 자격체도의 검토가 필요
- 신규로 개발가능한 자격종목을 서비스요구도, 직무전문성, 능력인정필요성, 일자리가능성 4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그룹화하면 다음과 같음

그룹구분	자격종목	종목 수
A 그룹	-	-
B 그룹	장애인평생교육지도사, 입학사정컨설턴트, 학습컨설턴트, 진로전문상담교사, 영아돌보미, HRD컨설턴트, 영재교사, 학습전문상담교사	8
C 그룹	방과후지도전문가, 영재지도사, 문화교육사	3
D 그룹	-	-

다. 공공행정 서비스 분야 자격의 개선방향

-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업무중복, 검정 시행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있는 행정사, 행정관리사, 행정정보사, 정책분석평가사,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를 중점으로 검토함
- 행정사, 행정관리사, 행정정보사, 정책분석평가사의 자격제도를 살펴본 결과, 행정사 및 행정관리사와 정책분석평가사는 정부의 행정업무 및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 행정관리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격종목은 활용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행정관리업무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격종목으로 통합하여 전문분야별 수준을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산업위생지도사와 산업위생관리기술사의 자격종목을 살펴본 결과, 두 자격종목의 직무내용이 유사함
 - 산업위생지도사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산업위생관리기술사와의 업무 중복으로 인하여 1998년 이후 자격검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현재 자격검정이 시행되고 있고, 활용성조사에서 비교적 높게 평가되고 있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자격을 실용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정책제언

- 자격의 신설, 국가자격화, 개선 정책추진시 주요 고려사항
 - 첫째, 자격의 신설시 시장에서 서비스 요구도, 직무 전문성, 직무수

행능력인정 필요성,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 신설근거를 충분히 고려하여 국가자격으로 신설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

- 둘째, 기존 민간자격의 국가자격화를 통해 1) 관련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2) 서비스 질 향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3) 자격취득자의 직업적 위세강화를 통해 임금, 근로여건 등 처우개선이 가능해지는 긍정적인 점이 있음
- 셋째, 기존 국가 및 민간자격의 개선시 국가자격의 경우 업역조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시 주요 착안점

- 아직 시장에 나타나지 않거나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자격종목을 신설하지 못하였던 자격종목을 국가자격 혹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신설함
-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국가자격화하여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함으로써 동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자격화 또는 공인자격화 과정은 업역조정 등의 민감한 사안과 연관되어 관련 법의 개정이나 혹은 관련 단체의 동의 등을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 업역조정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나 이 과정이 국가자격 혹은 공인 민간자격의 신설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므로 관련 단체를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이 치밀하게 마련되는 것이 필요

□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개선방안 시행 전략

- 보복부가 관장하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제도 개선 전략 마련시 전체 153개 자격종목 모두를 한꺼번에 개선할 수 없

으므로 자격종목별로 개선의 1) 시급성, 2) 타당성, 3) 가능성, 4) 효과성, 5) 파급효과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할 자격종목을 선정하여 단계별 개선 전략추진이 필요

- 신규로 국가자격화 자격종목의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과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범사례화(best example)를 위해 신설된 자격에 대한 후속조치와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행·재정적인 준비가 필요함
- 사회서비스에 속한 자격종목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자격체제를 수립하고 한 부처가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주관부처와 지원하기 위한 실무수행기관의 선정이 필요

□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활성화의 출발점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개발·활용이 필요

- 수요자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의 자격종목을 개선하여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NCS 개발에 착수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 사회서비스분야 자격을 관장하는 주관부처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관부처 주도로 NCS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법령 마련이 필요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공공행정, 교육, 복지, 의료 등으로 구성된 사회서비스 분야는 개인이나 사회전체의 복지 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선진국에서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은 아직 외국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

※ ILO(2008) 통계에 의하면 사회서비스업 고용규모를 볼 때 OECD 평균고용율이 21.5%이고 이 중 보건 및 사회복지업은 9.6%임. 한국은 각각 14.7%, 3.6%이나 미국은 26.3%, 12.5%를 나타냄(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 2010. 5.27)

2 사회서비스분야 자격의 활성화 방안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정부는 2014년까지 보건복지분야 5대 유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산업에 1조원을 투입해 28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 이와 함께 동 분야 인프라 확충차원에서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및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위해 언어치료사 등의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도입하려는 계획을 발표
 - ※ 보건복지부에서는 언어치료사뿐만 아니라 청능사, 장례지도사, 간병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대통령님께 보고함(2010. 상반기)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국가자격 도입계획은 첫째, 국가자격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해당 서비스의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서비스 제공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직업인으로서 대외적 이미지를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며 셋째,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효과적으로 향상하기 위함
 - ※ 아이 돌보미 종사자의 경우 참여자의 88%가 국가자격증으로 전환으로 요구하고 있음(오은진 외, 2009)

-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 분야에는 약 1,504개의 자격종목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사회서비스 분야의 자격종목이 58.1%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서비스 분야 자격종목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분야임(<표 1-1> 참조)
 - 그러나 서비스 분야 자격의 80.2%와 사회서비스업 자격의 91%가 민간자격이기에 대 국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도 어렵고 자격제도를 통한 고용창출에도 한계

<표 1-1> 서비스업 세부분야별 자격종목 수 현황

구분	국가기술자격	개별법의 국가자격	민간자격	합계(%)
사업서비스업	23	30	188	241(16)
개인서비스업	50	12	174	236(15.7)
배분서비스업	49	27	77	153(10.2)
사회서비스업(보건· 의료, 사회복지, 교육서비스,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	9	54	811	874(58.1)
총계	131(8.7)	123(8.2)	1,250(83.1)	1,504

출처: 박종성의(2010). 서비스산업의 자격연구(I):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 민간자격위주로 구성된 사회서비스업 자격시장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정부는 사회서비스업 분야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한 개입 명분이 미약함

□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자격종목은 교육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81.6%)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보건복지 분야의 자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임(17.5%)

4 사회서비스분야 자격의 활성화 방안

<표 1-2> 사회서비스업 세부분야별 자격종목 수

구분	국가 기술자격	개별법의 국가자격	민간자격	합계(%)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4	4	8(0.9)
P. 교육서비스업	-	18	695	713(81.6)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9	32	112	153(17.5)
U. 국제 및 외국기관	0	-	0	0(0.0)
총계	9	54	811	874(100.0)

출처: 박종성외(2010). 서비스산업의 자격연구(I):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보건복지 분야의 자격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첫째, 의료법 등에 저촉되는 자격종목을 신설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둘째, 이러한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민간자격으로 등록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동 분야의 활성화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
 - 예컨대 음악치료사, 심리치료사, 장애인재활치료사 등과 같은 민간 자격의 경우 자격종목명에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현행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보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민간자격등록제에 의한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
- ※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의 자격 관리·운영 범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자격관련 법에 의한 국가의 자격 관리·운영 범위>

□ 민간자격과 국가 공인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자격기본법은 민간 자격으로 등록하는 분야를 정하여 이 내용과 관련된 민간자격은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자격기본법 제17조1항(등록 금지범위): ① 개별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② 건강, 안전, 국방과 관련된 분야 ③ 선량한 사회풍속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분야 ④ 자격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야

□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가 관여하는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으나, 아래 4개 조항 중 1, 2번은 기술자격분야에서 민간이 자격을 신설하고자 할 때 이를 억제하는 근거로서 역할 수행 가능

※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항: ①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해서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②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③ 국가기간산업의 유지, 발전, 신산업의 육성 및 국가적 인력양성과 직업능력 수준 인정이 필요한 분야 ④ 전산업에 공통되는 기초직무로서 국가적인 직업능력수준 인정이 필요한 분야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서비스업 분야 자격종목의 관리 운영이 국가와 민간간 제대로 역할분담이 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임
- 동 분야 활성화를 위해서 적정 수준의 정부개입뿐만 아니라 현행 정부개입 방식을 개선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

□ 한편,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선진국을 중심으로 의료, 복지, 보육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자격종목이 출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 외국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업 분야에서 신규로 필요한 자격종목이 무엇이 있는

지 살펴볼 시점임

- 신설이 필요한 자격종목은 이 분야 자격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 연구의 목적

- 사회서비스 분야의 자격종목 활성화를 통해 첫째, 국민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제도를 구축하고 둘째, 신규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신규 자격종목 개발 방안 마련
 -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자격 중 국가자격화가 필요한 자격종목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 제안
 - 사회서비스 분야 국가 및 민간자격의 개선방안 제시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 방법

- 문헌 및 관련 자료분석
 - 국내 사회서비스분야 노동시장 구조 및 사업체 고용동향 분석
 -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사회서비스분야 고용지원정책 및 관련 정책추진 동향 분석
 - 사회서비스 분야 직업동향 분석: 미국, 일본, 한국

- 사회서비스 분야 외국의 자격운영 현황(미국, 일본)
- 국내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종목 현황 등

□ 전문가 협의회

- 사회서비스 분야 관련 자격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 사회서비스 분야 관련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 설문조사¹⁾

-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 분야 자격종목 활용성 분석과 신규로 발굴할 자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조사 실시
- 설문대상 및 응답자수: 학계전문가(50명), 민간자격관련 협회 전문가(50명), 민간자격취득자(200명)
- 설문기간: 2010년 11월 15일 ~ 2010년 12월 8일
- 설문조사 문항별 구성내용

<표 1-3> 설문조사 내용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기초조사	인적사항 관련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보유자격, 근무경력 등
자격의 활용성 평가	교육 분야 영역별 자격의 활용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분야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민간자격의 활용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준: 취업가능성, 고용안정성, 직무전문성, 보수의 적정성
	공공행정 분야 영역별 자격의 활용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민간자격의 활용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준: 취업가능성, 고용안정성, 직무전문성, 보수의 적정성

<표 계속>

1)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의 설문조사 결과는 “서비스산업의 자격연구(1):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심으로” (박종성 외, 2010) 연구결과를 활용함.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신규자격 도입	교육 서비스 분야 신규자격 도입에 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서비스 분야 신규자격 도입을 위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기준: 서비스요구도, 직무전문성, 능력인정필요성, 일자리 가능성 - 신설가능성 타진 자격종목: 학습전문상담교사, 진로전문상담교사, 영재교사, 영재지도사, 입학사정관컨설턴트, 학습컨설턴트, HRD 컨설턴트, 문화교육사, 방과후지도전문가, 영아돌보미, 장애인평생교육지도사 등

설문조사 결과는 제6장 자격운영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내용 마련시에 직접 포함하였음

- 총리실 주관 “사회서비스분야 자격 활성화 TF” 구성 운영
- 청와대, 고용부, 교과부, 복지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TF 구성 운영
 - 민간자격의 국가자격화, 신규 자격종목 선정, 기존 자격종목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방안 마련 및 논의
 - 복지부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 자격현황과 개선방향(안)(2010. 11.16)”을 마련하여 제시함
 - 여기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한약조제사 자격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아울러 국제진료관광코디네이터, 언어치료사 등의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신설하는 안이 제시되었음

2. 연구 범위

-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체 자격종목을 대상으로 함
- 그러나 이 분야 870개 이상의 자격종목 모두를 대상으로 연구를

추진하기에는 제한된 연구기간과 예산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제한 점이 있었음

- 더욱이, 교육서비스업에 속한 자격 종목 수가 700개를 넘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중요 자격종목을 선정하여 연구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음
- 따라서 교육서비스분야의 민간과 국가자격을 대영역과 중영역으로 분류하여 그 중에서 중요한 자격으로 판단되는 자격을 선별하여 이 자격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함([부록 1. 교육서비스 분야 자격 종목 분류] 참조)
- 중요 연구대상 자격종목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기반한 선정작업을 추진함([부록 2. 사회서비스 분야 주요 연구대상 자격종목 추출기준])

□ 교육서비스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 주요 자격종목의 선정([부록 3. 교육·기타서비스업 설문조사지] 참조), 민간자격의 실태파악을 위한 개요 조사([부록 4. 교육서비스분야 민간자격의 개요] 참조) 시에도 이 자격종목들을 중심으로 하였음

- 향후 본 과제이후의 후속과제 추진 시 필요에 따라서는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자격종목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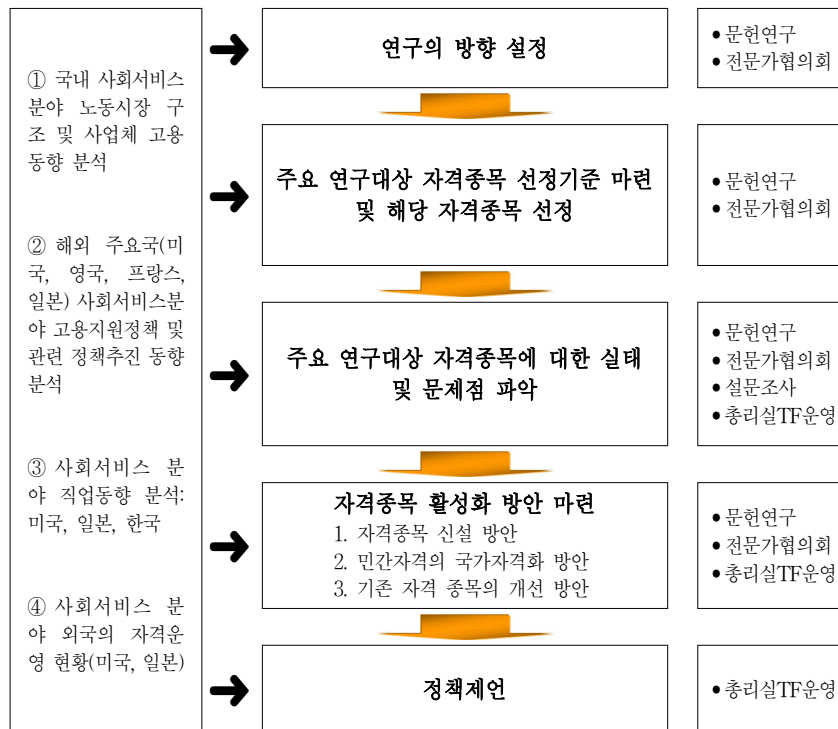
제3절 연구 수행 절차 및 내용

□ 주요 연구수행 절차와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1-1]과 같음

- [그림 1-1]의 중앙에 연구수행의 주요 단계를 제시하였으면 오른쪽

에 주요 연구내용, 한편에는 주요 연구방법을 제시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음

[그림 1-1] 연구추진 절차 및 내용



제4절 연구의 한계

- 이 연구는 직능원 외부 요청에 의해서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종목의 선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추진된 단기 수시과제(2010. 8. ~ 12.)임

- 이 연구에서 사회서비스분야 자격제도 및 종목 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폭넓게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서비스 등의 중요자격을 중심으로 자격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사회서비스업 중에서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및 민간자격이 없음에 따라 자격현황분석을 할 수 없었으며, 보고서에는 공공행정서비스분야만을 제시하였음
- 사회서비스 세부분야별 중요자격은 연구진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선정된 이후 외부 전문가에 의한 검토과정을 거쳐 정하였음

□ 향후 개별 자격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 추진이 필요

- 이 연구에서는 개별 부처소관의 자격종목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종목별 개선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이러한 측면에서 후속과제 추진 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서비스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자격종목의 개선방안이 제안되기 위해서는 개별 자격종목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국가 및 민간 자격관리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

제2장

사회서비스 노동시장과 고용 동향 및 자격 현황

제1절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구조분석

-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직업의 노동시장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직업 관련 노동시장 분석에 활용되는 기존 직업분류(한국고용직업분류)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직업을 선정하였음
 - 특정 자격에서 취업 가능한 직업은 2010년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협업하여 개발한 ‘직업-훈련-자격 연계테이블’을 기준으로 함

- 자격을 기준으로 취업 가능한 관련 직업목록들은 <표 2-1>과 같음
 - 사회서비스 하위 분야의 직업적 특성을 살펴보면, 공공행정서비스에는 주로 공무원이, 교육서비스에는 교사, 학원강사 등이, 보건의료서비스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등이, 사회복지서비스에는 사회복지사, 육아도우미 등이 포함되어 있음

<표 2-1> 사회서비스분야 관련 직업목록

사회서비스 분야	세부직업
공공행정 서비스	정부행정 관리자/법률, 경찰, 소방 및 교도 관리자,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 조세행정 사무원, 관세행정 사무원, 병무행정 사무원, 국가·지방 및 공공행정 사무원, 경찰관, 소방관, 소년보호관 및 교도관, 관제사, 소방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교육 서비스	교육 관리자/연구 관리자, 대학 교수, 대학 시간강사,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중·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특수교육 교사, 보조 교사 및 기타 교사, 유치원 교사, 문리 및 어학 강사, 컴퓨터 강사, 기술 및 기능계 강사, 예능 강사, 학습지 및 방문 교사, 기타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보육교사,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강사 및 관련 전문가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의료관련 관리자, 전문 의사, 일반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및 한약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물리 및 작업 치료사, 임상심리사 및 기타 치료사, 임상 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의지보조기기사, 안경사, 안마사/위생사, 영양사, 의무기록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기타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관련 관리자, 사회복지사, 상담 전문가 및 청소년 지도사,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 시민 단체 활동가,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기타 사회복지관련 종사원

주: '세부직업'은 한국고용직업분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의 2008년 조사하여 2009년에 발표한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를 활용함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는 매년 전국의 7만 5천 가구의 취업자 (조사년도 9월 1일 기준)를 대상으로 228개 산업 소분류별, 426개 직업세분류별 임금, 종사자 수, 근로시간, 여성비율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함

1. 사회서비스분야의 종사자 규모

- 사회서비스 종사자 규모를 보면 <표 2-2>, 종사자 수는 3,010,728명으로 전체 취업자 23,734,000명 대비 종사자 비율은 12.7%임
 - 특히 전체 사회서비스분야 중 교육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53.8%로, 다른 사회서비스분야에 비해 노동시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사회서비스의 성별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행정을 제외한 분야들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아 사회서비스에서의 여성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사회서비스분야의 여성 쏠림현상은 사회서비스 외 직업과 비교해도 뚜렷이 나타나는데, 사회서비스 외 직업에서의 여성비율은 39.1%인데 비해 사회서비스에서는 63.0%임

<표 2-2> 사회서비스의 종사자 규모

		남성		여성		전체	
		종사자 수 (명)	비율 (%)	종사자 수 (명)	비율 (%)	종사자 수 (명)	비율 (%)
사회 서비스 관련 직업	공공행정	429,004	79.2	112,393	20.8	541,397	100.0
	교육	483,126	29.8	1,137,577	70.2	1,620,703	100.0
	보건의료	159,560	24.5	493,031	75.5	652,591	100.0
	사회복지 서비스	43,134	22.0	152,939	78.0	196,037	100.0
	소계	1,114,824	37.0	1,895,940	63.0	3,010,728	100.0

<표 계속>

	남성		여성		전체	
	종사자 수 (명)	비율 (%)	종사자 수 (명)	비율 (%)	종사자 수 (명)	비율 (%)
사회서비스 외 직업	12,626,239	60.9	8,096,997	39.1	20,723,236	100.0
전체	13,741,063	57.9	9,992,937	42.1	23,734,000	100.0
사회서비스 비율(%)		8.1		19.0		12.7

- 이러한 경향은 사회서비스분야에 여성 선호 직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교육서비스에서 교사, 보건의료서비스에서 간호원 및 간호조무사, 간병인,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등임

2. 사회서비스분야의 인적자본 특성

- 사회서비스분야의 인적자본 특성 중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표 2-3>,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 외 직업에 비해 20대, 30대의 비율이 높음
 - 즉, 사회서비스 외 직업에서의 20~30대 비율은 29.9%인데 비해, 사회서비스분야는 57.0%임
 - 사회서비스분야의 하위 분야 중 보건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의 20~30대 비율은 각각 65.6%와 61.4%로, 다른 하위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종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교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서 20~30대가 다수 취업하고 있기 때문임
 - 이에 반해 사회복지서비스는 40대, 50대 이상의 연령 비율이 60.8%로 다른 사회서비스분야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등 경력단절여성이나 고령여성이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한 직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표 2-3> 사회서비스의 연령 분포

(단위: 종사자 수(명), 비율(%))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전체	
		종사자 수	비율	종사자 수	비율	종사자 수	비율	종사자 수	비율	종사자 수	비율
사회서비스 관련 직업	공공행정 서비스	62,106	11.5	174,409	32.2	192,644	35.6	112,238	20.7	541,397	100.0
	교육 서비스	445,801	27.5	549,466	33.9	414,155	25.6	211,282	13.0	1,620,704	100.0
	보건의료 서비스	229,659	35.2	198,643	30.4	123,678	19.0	100,612	15.4	652,592	100.0
	사회복지 서비스	32,883	16.8	43,943	22.4	52,767	26.9	66,481	33.9	196,074	100.0
	소계	770,449	23.5	966,461	33.5	783,244	28.1	490,613	15.0	3,010,767	100.0
사회서비스 외 직업	3,253,382	15.7	5,015,300	24.2	5,781,484	27.9	6,673,069	32.2	20,723,235	100.0	
전체	4,023,831	17.0	5,981,761	25.2	6,564,728	27.7	7,163,682	30.2	23,734,002	100.0	

- 사회서비스분야의 학력분포를 살펴보면<표 2-4>,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 외 직업에 비해 4년제 이상의 학력의 비율이 높음
- 사회서비스 외 직업에서의 4년제 이상의 학력 비율은 23.4%인데 비해, 사회서비스분야는 64.8%인데, 공공행정서비스의 공무원, 교육서비스의 교사 등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학력 직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이에 반해 사회복지서비스는 고졸이하 학력비율이 50.9%로 나타나 다른 사회서비스 하위 분야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데,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등 상대적으로 저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표 2-4> 사회서비스의 학력 분포

(단위: 종사자 수(명), 비율(%))

		고졸이하		전문대		4년제		대학원 이상		전체	
		종사자 수	비율	종사자 수	비율	종사자 수	비율	종사자 수	비율	종사자 수	비율
사회서비스 관련직업	공공행정 서비스	136,683	25.3	71,215	13.2	306,161	56.7	26,348	4.9	540,417	100.0
	교육 서비스	123,533	7.6	230,717	14.3	1,039,959	64.3	224,104	13.8	1,618,313	100.0
	보건의료 서비스	176,883	27.1	195,417	30.0	226,728	34.8	52,957	8.1	651,985	100.0
	사회복지 서비스	99,141	50.9	24,389	12.5	62,462	32.1	8,739	4.5	194,731	100.0
	소계	536,250	17.8	521,738	17.4	1,635,310	54.4	312,148	10.4	3,005,446	100.0
사회서비스 외 직업	13,722,155	66.7	2,055,592	10.0	4,335,886	21.1	468,939	2.3	20,582,572	100.0	
전체	14,258,405	60.4	2,577,330	10.9	5,971,196	25.3	781,087	3.3	23,588,018	100.0	

- 사회서비스분야의 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표 2-5>,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 외 직업에 비해 자격증 보유률이 높음
 - 사회서비스 외 직업에서의 자격증 보유률은 14.4%인데 비해 사회서비스분야는 49.6%인데, 이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의사, 간호사 등 특정 자격증을 보유해야만 입직 가능한 직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표 2-5> 사회서비스의 자격증 보유 현황

(단위: 명, %)

		보유		미보유		전체	
		종사자 수	비율	종사자 수	비율	종사자 수	비율
사회서비스 관련 직업	공공행정 서비스	80,731	14.9	460,666	85.1	541,397	100.0
	교육서비스	820,876	50.6	799,828	49.4	1,620,704	100.0
	보건의료 서비스	525,646	80.5	126,946	19.5	652,592	100.0

<표 계속>

		보유		미보유		전체	
		종사자 수	비율	종사자 수	비율	종사자 수	비율
사회 서비스 관련 직업	사회복지 서비스	65,292	33.3	130,782	66.7	196,074	100.0
	소계	1,492,545	49.6	1,518,222	50.4	3,010,767	100.0
사회서비스 외 직업		2,979,122	14.4	17,744,113	85.6	20,723,235	100.0
전체		4,471,667	18.8	19,262,335	81.2	23,734,002	100.0

주: 자격증 보유여부는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민간자격을 모두 포함한 것임.

- 공공행정서비스의 경우 자격 보유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 14.9%로 현저히 낮는데 자격에 상관없이 행정고시를 합격해야 하는 입직 특성이 반영된 것임
- 사회복지서비스 역시 사회서비스분야 중 상대적으로 자격증 보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등은 자격 보다는 학력 혹은 전공이 취업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과 보육교사 등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는 직업이 포함된 것이 원인임

3. 사회서비스분야의 고용의 질

- 사회서비스분야의 근로형태를 살펴보면<표 2-6>, 사회서비스 외 직업에 비해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아 고용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높음
 - 사회서비스 외 직업의 상용근로자 비율이 67.5%인 것에 비해 사회서비스분야는 85.6%로 나타나는데, 공공행정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이 나은 직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사회서비스의 하위 분야 중 사회복지서비스는 상용근로자 비

율이 59.0%로 사회서비스분야 중에서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외 직업에 비해서도 상용근로자 비율이 낮아 고용안정성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표 2-6> 사회서비스의 근로형태 분포

(단위: 명, %)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전체	
		종사자 수	비율	종사자 수	비율	종사자 수	비율	종사자 수	비율
사회 서비스 관련 직업	공공행정 서비스	526,503	98.8	5,986	1.1	419	0.1	532,998	100.0
	교육 서비스	1,098,964	83.9	194,182	14.8	16,646	1.3	1,309,792	100.0
	보건의료 서비스	479,716	84.6	55,322	9.8	32,180	5.7	567,218	100.0
	사회복지 서비스	93,071	59.0	44,491	28.2	20,069	12.7	157,631	100.0
	소계	2,198,344	85.6	299,981	11.7	69,314	2.7	2,567,639	100.0
사회서비스 외 직업		9,215,138	67.5	2,759,298	20.2	1,677,254	12.3	13,651,690	100.0
전체		11,413,482	70.4	3,059,279	18.9	1,746,568	10.8	16,219,329	100.0

주: 상용직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임금을 받는자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1년이상 고용이 예상되고 일정한 임금을 받는자로 유급임원과 수습근로자도 포함(자영업주 제외), 임시직은 1개월에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임금을 받는자, 일용직은 일일수당제로 고용된 자를 의미함

- 사회서비스분야의 근로조건을 살펴보면<표 2-7>, 사회서비스 외 직업에 비해 월평균임금은 높고 평균주당근로시간은 낮아 양질의 근로조건을 보이고 있음
 - 사회서비스 외 직업의 월평균임금은 199만원, 평균주당근로시간은 59.8시간인데 비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223만원, 56.3시간으로 나타남

- 사회서비스의 하위 분야 중 사회복지서비스는 월평균임금이 133만원, 평균주당근로시간이 59.9시간으로 다른 사회서비스 하위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외 직업에 비해서도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등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직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임

<표 2-7> 사회서비스의 근로조건 현황

		월평균임금(만원)	평균주당근로시간(시간)
사회서비스 관련 직업	공공행정서비스	304	57.4
	교육서비스	232	49.6
	보건의료서비스	224	58.4
	사회복지	133	59.9
	소계	893	56.3
사회서비스 외 직업		199	59.8
전체		1,092	59.1

제2절 사회서비스 산업체 고용동향 분석

- 사회서비스 산업체고용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2010년 상반기(4월 1일 기준) 「산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를 활용할 것임
- 노동부의 산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는 매년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체²⁾를 대상으로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 수준에서 직업별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현원, 부족인원 등을 조사하여 발표함

2) 단, 농업, 임업 및 어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등의 사업체는 조사에서 제외.

- 사회서비스분야의 인력 부족현황을 살펴보면<표 2-8>, 부족인원은 20,174명이며 이중 상용직 부족인원은 17,193(85.2%), 기타직 부족인원은 2,981(14.8%)임
 - 사회서비스 외 직업의 기타직 부족인원 비율 9.9%와 비교하여 사회서비스분야에서의 기타직 부족인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서비스 하위 분야 중 교육서비스에서의 기타직 부족인원 비율이 40.9%로 상대적으로 높는데,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학습지교사 등 단기간 근로형태의 직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세부 직업별로 사회서비스분야의 부족인원 규모는 교육서비스에서 학원강사 및 학습지교사 3,085명, 보건의료서비스에서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5,481명,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보육교사·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등에서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8> 사회서비스의 부족인원

(단위: 명, %)

분 야	직 업	부 족 인 원						
		총원		상용		기타직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사 회 서 비 스 관 리 자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	14	100.0	14	100.0	-	0.0	
	교육 서비스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1,118	100.0	545	48.8	573	51.2
		장학관 및 교육관련 전문가	148	100.0	121	81.7	27	18.3
		학교교사	115	100.0	89	77.1	26	22.9
		유치원교사	610	100.0	409	67.0	201	33.0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3,085	100.0	1,833	59.4	1,252	40.6
	소 계	5,089	100.0	3,010	59.1	2,079	40.9	
	보 건 의 료 서 비 스	의사	656	100.0	641	97.8	15	2.2
		수의사	6	100.0	6	100.0	-	0.0
		약사	252	100.0	251	99.6	1	0.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5,481	100.0	5,285	96.4	197	3.6	
치료사		530	100.0	478	90.2	52	9.8	
의료장비 및 치료 관련 기술 종사자		489	100.0	418	85.3	72	14.7	

<표 계속>

분 야	직 업	부 족 인 원						
		총원		상용		기타직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사 회 서 비 스 관 련 직 업	보건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5	100.0	159	81.5	36	18.5
	의료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3,873	100.0	3,660	94.5	214	5.5
	서비스	소 계	11,483	100.0	10,897	94.9	586	5.1
	사회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154	100.0	1,089	94.3	65	5.7
	복지	보육교사·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2,449	100.0	2,198	89.7	251	10.3
	서비스	소 계	3,603	100.0	3,286	91.2	316	8.8
		합계	20,174	100.0	17,193	85.2	2,981	14.8
	사회서비스 외 직업	248,521	100.0	223,817	90.1	24,705	9.9	
	총 계	268,696	100.0	241,010	89.7	27,686	10.3	

- 주 1. 직업은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임.
 2.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에는 교육관리자, 연구관리자, 법률·경찰·소방 및 교도 관리자, 보건의료 관련 관리자, 사회복지관련 관리자 등이 포함.
 3. 직종은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임.
 4.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에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은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행정 서비스는 제외됨.

- 사회서비스 분야의 201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내국인 기준의 사업체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등을 살펴보면<표 2-9>,
 - 사회서비스분야는 109,504명을 구인하여 101,707명을 채용하고, 7,797명은 미채용하여 충원률은 92.9%임
 - 사회서비스분야의 충원률은 사회서비스 외 직업의 80.2%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특이한 점은 의료복지 관련 단순종사자, 보육교사·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등 사회서비스분야의 단순 직종 역시 충원률이 각각 89.5%, 92.9%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임
 - 이는 이들 직업들에 경력단절여성, 고령여성 등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의 취업이 용이하여 고용의 질이 좋지 않음에도 충원률이 높은 것임
- 사회서비스분야에서 미충원 규모가 큰 하위 분야는 보건의료서비스로 5,237명이며, 직업으로는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가 2,849명임
 -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의 미충원 인원이 많은 것은 다른 직업에 비해 월평균임금(192만원)에 비해 노동강도가 높아 취업을 꺼리기 때문으로 보임

<표 2-9> 직종별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내국인 기준)

분 야	직 종	구 인						채 용						미충원 인원 (A-B)	
		총원 (A)		상용		기타		총원 (B)		상용		기타			총원률 (B/A×100)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사회 서비스 관련 직업	사회서비스 관리자	96	100.0	-	0.0	82	100.0	-	0.0	85.6	14				
		30,434	12.0	26,786	88.0	30,268	10.8	26,986	89.2	99.5	166				
	교육 서비스	2,201	1.976	89.8	2.25	10.2	2,138	1.940	90.7	198	9.3	63			
		5,529	4.239	76.7	1.290	23.3	5,501	4.213	76.6	1,288	23.4	27			
	의사	3,769	3.736	99.1	3.3	0.9	3,598	3.565	99.1	3.3	0.9	171			
		8,569	5.857	68.4	2.712	31.6	7,519	5.178	68.9	2,341	31.1	1,050			
	수의사	50,597	19.551	38.6	31.046	61.4	49,105	18.259	37.2	30,846	62.8	1,492			
		7,035	7.026	99.9	9	0.1	6,613	6.605	99.9	8	0.1	422			
	약사	7	7	100.0	-	0.0	6	6	100.0	-	0.0	1			
		920	873	94.9	47	5.1	712	664	93.3	48	6.7	208			
보건 의료 서비스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3,117	12.649	96.4	468	3.6	10,268	9.833	95.8	436	4.2	78.3			
	치료사	3,046	2.758	90.5	288	9.5	2,781	2.546	91.6	235	8.4	91.3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1,795	1.588	88.8	202	11.2	1,766	1.547	87.6	219	12.4	98.4				
	1,376	1.240	90.1	136	9.9	1,345	1.209	89.9	136	10.1	97.8				
사회 복지 서비스	13,628	11.879	87.2	1,749	12.8	12,195	10.399	85.3	1,795	14.7	89.5				
	40,924	38.025	92.9	2,899	7.1	35,687	32.810	91.9	2,876	8.1	87.2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3,489	3.030	86.8	459	13.2	3,167	2.722	86.0	445	14.0	90.8				
	14,494	13.801	95.2	693	4.8	13,748	13.079	95.1	670	4.9	94.9				
합 계	17,983	16.831	93.6	1,152	6.4	16,915	15.800	93.4	1,114	6.6	94.1				
	109,504	74.407	67.9	35,097	32.1	101,707	66.870	65.7	34,837	34.3	92.9				
사회서비스 외 직업 총 계	489,619	406,564	83.0	83,054	17.0	392,535	317,242	80.8	75,293	19.2	80.2				
	599,123	480,971	80.3	118,152	19.7	494,242	384,112	77.7	110,130	22.3	82.5				

(단위: 명, %)

제3절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종목 현황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의 검정실시기관별 자격종목, 자격종목별 검정방법, 자격종목별 검정결과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음

1. 검정실시기관별 자격종목

- 사회서비스 분야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공공행정서비스업 총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전체 자격종목 중 민간자격이 109개로 가장 많음
 - 교육서비스업의 경우도 민간자격이 447개로 가장 많고, 국가기술자격은 전무함

-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체 자격 종목 수는 총 630개이며, 그 중 민간자격이 8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가자격이 8.7%로 두 번째로 많음

<표 2-10>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종목 현황³⁾

(단위: 개, %)

분야 \ 구분	국가	국가기술	공인민간	민간	합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2	9	3	109	153
교육서비스업	18	-	2	447	467
공공행정서비스업	5	1	1	3	10
총 계	55(8.7)	10(1.6)	6(1.0)	559(88.7)	630(100.0)

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종목 데이터는 2010년 6월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및 자격 관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내·외부 자료를 통합하여 적용한 것임.

3) 본문에서는 ‘개별법의 국가자격’을 국가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으로, ‘국가공인민간자격’은 공인민간자격으로, ‘비공인민간자격’은 민간자격으로 표기하였음.

- 보건·의료 분야의 자격종목은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공인민간자격이 있음
 -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자격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등 총 21개의 자격종목 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각 시·도지사에서 각각 2개, 1개의 자격종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 총 3개의 자격종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 공인민간자격은 대한행정관리자협회에서 ‘병원행정사’ 1개의 자격종목의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 사회복지분야의 자격종목은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공인민간자격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국가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을의 종목이 각각 6개씩으로 그 수가 같음
 - 사회복지분야의 국가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각각 ‘사회복지사1급’, ‘청소년상담사’ 자격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총 4개의 자격의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 국가기술자격을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직업상담사’, ‘소비자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자격에 대한 검정을 급수별로 실시하고 있음
 - 공인민간자격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점역·교정사’ 단 1개 자격종목의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표 2-11>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검정실시기관별 자격종목

분야	자격의 구분	검정실시 기관(수)	자격종목
보건 · 의료	국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21)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영양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의무기록사, 의 지·보조기기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 사, 치과위생사, 보건교육사, 간호사, 조 산사, 약사, 한약사, 한약조제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임상병리사
		보건복지가족부(2)	안마사, 정신보건간호사
		각 시·도지사(1)	간호조무사
	국가기술	한국산업인력공단(3)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
	공인민간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1)	병원행정사
사회 복지	국가	한국산업인력공단(1)	사회복지사1급
		보건복지가족부(4)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 사, 건강가정사, 영양보호사
		한국청소년 상담원(1)	청소년상담사
	국가기술	한국산업인력공단(6)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 소비자 전문상담사1급, 소비자전문상담사2급, 임 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공인민간	(사)한국농아인협회(1)	수화통역사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1)	점역·교정사

- 교육 분야의 자격종목은 국가자격, 공인민간자격으로 구분됨
- 교육 분야의 국가자격은 교육부(현 교과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및 시도교육청이 ‘정교사 및 준교사’, ‘보건교사’ 등 총 6개의 자격종목의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체육지도자연수원이 각각 3개의 자격종목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 평생교육진흥원, 지방노동사무소 등의 기관이 각각 1개의 자격종목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표 2-12> 교육 분야 자격종목의 검정실시기관별 자격종목

분야	자격의 구분	검정실시 기관(수)	자격종목
교육	국가	교육인적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및 시도교육청(6)	정교사 및 준교사 ⁴⁾ (특수학교 포함), 보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평생교육진흥원(1)	평생교육사
		지방노동사무소(1)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1)	보육교사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1)	청소년지도사
		경찰청 운전면허계(1)	자동차운전 전문학원강사
		한국산업인력공단(3)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한국어교원(3급) ⁵⁾
		체육과학연구원(1)	경기지도사
		체육지도자연수원(3)	생활체육지도자 1급, 생활체육지도자 2급, 생활체육지도자 3급
	공인 민간	(사)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1)	한자·한문전문지도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1)		브레인트레이너	

- 공공행정서비스 분야의 자격종목은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공인민간자격으로 나뉘어짐
- 공공행정서비스 분야의 국가자격은 행정안전부와 산업인력공단이 각각 ‘행정사’,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의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 국가기술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종목의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4) 준교사의 경우 82년 입학자부터 실시되지 않음.
 5) 한국어교원의 경우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양성과정을 수료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한국어 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함.

- 공익민간자격은 한국행정관리협회에서 ‘행정관리사’ 자격종목을 급수별로 나누어 검정을 실시하고 있음

<표 2-13> 공공행정서비스 분야 검정실시기관별 자격종목

분야	자격의 구분	검정실시 기관	자격종목
공공 행정 서비스	국가	행정안전부	행정사
	국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위생 지도사
	국가기술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위생 관리기술사
	공인민간	(사)한국행정관리협회	행정관리사1급 행정관리사2급, 행정관리사3급

2. 자격종목별 검정방법

- 보건·의료 분야의 자격종목은 필시, 실기, 면접, 교육과정이수로 총 4가지의 검정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 국가자격종목들은 모두 필기시험 방법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중 ‘정신보건간호사’는 필기시험 방법을 실시하지 않고 교육과정이수만을 검정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음
 - 국가기술자격종목은 모두 필기, 실기를 검정방법으로 적용하고 있음
 - 공인민간자격의 단 한 개 종목인 ‘병원행정사’는 필기를 검정방법으로 적용하고 있음

<표 2-14> 보건·의료 분야 자격종목의 검정방법

분야	자격종목	구분	검정방법			
			필기	실기	면접	교육과정 이수
보건· 의료	의사	국가	○	-	-	-
	치과의사	국가	○	-	-	-

<표 계속>

분야	자격종목	구분	검정방법			
			필기	실기	면접	교육과정 이수
보건 · 의료	한의사	국가	○	-	-	-
	조산사	국가	○	-	-	-
	간호사	국가	○	-	-	-
	정신보건간호사	국가	-	-	-	○
	간호조무사	국가	○	○	-	-
	약사	국가	○	-	-	-
	한약사	국가	○	-	-	-
	한약조제자격	국가	○	○	-	-
	영양사	국가	○	-	-	-
	임상병리사	국가	○	○	-	-
	방사선사	국가	○	○	-	-
	물리치료사	국가	○	○	-	-
	작업치료사	국가	○	○	-	-
	치과기공사	국가	○	○	-	-
	치과위생사	국가	○	○	-	-
	의무기록사	국가	○	○	-	-
	안경사	국가	○	○	-	-
	위생사	국가	○	-	-	-
	응급구조사	국가	○	○	-	-
	의지·보조기사	국가	○	○	-	-
	보건교육사 ⁶⁾	국가	○	-	-	-
	의공기사	국가기술	○	○	-	-
	의공산업기사	국가기술	○	○	-	-
	의료전자기능사	국가기술	○	○	-	-
	임상심리사1급	국가기술	○	○	-	-
	임상심리사2급	국가기술	○	○	-	-
병원행정사	공인민간	○	-	-	-	

6) 보건교육사 1급, 2급, 3급은 2010년 국가자격으로 지정, 제1회 시험을 2010년 3월에 치른 관계로 현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통계 작업 중임.

-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종목은 필기, 실기, 면접, 교육과정 이수로 검정을 실시
- ‘사회복지사’ 자격종목의 경우, 1급만이 필기를 검정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나머지 2급과 3급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검정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음
 - ‘청소년상담사’ 자격종목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 자격종목 중 유일하게 필기와 면접을 검정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음

<표 2-15> 사회복지 분야 자격종목의 검정방법

분야	자격종목	구분	검정방법			
			필기	실기	면접	교육과정 이수
사회 복지	사회복지사1급	국가	○	-	-	-
	사회복지사2급	국가	-	-	-	○
	사회복지사3급	국가	-	-	-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국가	-	-	-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국가	-	-	-	○
	건강가정사	국가	-	-	-	○
	요양보호사	국가	○	○	-	-
	청소년상담사	국가	○	-	○	-
	직업상담사1급	국가기술	○	○	-	-
	직업상담사2급	국가기술	○	○	-	-
	소비자전문상담사1급	국가기술	○	○	-	-
	소비자전문상담사2급	국가기술	○	○	-	-
	접역·교정사	공인민간	○	○	-	-
	수화통역사	공인민간	○	○	-	-

- 교육 분야의 자격종목은 필기, 실기, 면접, 교육과정 이수 총 4가지의 검정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 국가자격종목 중 ‘보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 ‘정교사’ 등 10개 자격종목은 교육과정 이수만을 검정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음. 단, ‘실기교사’, ‘준교사’의 경우, 관련 과정을 교고에서 이수하면 필기, 실기, 면접시험을 모두 치루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가자격종목 중 ‘산업안전지도사’는 유일하게 필기시험만을 검정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음
- 공인민간자격종목은 ‘한자·한문전문지도사’의 경우 필기시험만을, ‘브레인트레이너’는 필기와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함

<표 2-16> 교육 분야 자격종목의 검정방법

자격종목	구분	검정방법			
		필기	실기	면접	교육과정 이수
보건교사	국가	-	-	-	○
사서교사	국가	-	-	-	○
실기교사	무시험	-	-	-	○
	시험	○	○	○	○
영양교사	국가	-	-	-	○
전문상담교사	국가	-	-	-	○
정교사(특수학교 포함)	국가	-	-	-	○
준교사 (특수학교 포함)	무시험	-	-	-	○
	시험	○	○	○	○
평생교사	국가	-	-	-	○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국가	-	-	-	○
보육교사	국가	-	-	-	○
청소년지도사	국가	○	-	○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강사	국가	○	-	○	-
산업안전지도사	국가	○	-	-	-
산업위생지도사	국가	○	-	○	-
한국어교원(3급)	국가	○	-	○	○
경기지도자	국가	○	-	-	○
생활체육지도자	국가	-	○	○	○
한자·한문전문지도사	공인민간	○	-	-	-
브레인트레이너	공인민간	○	○	-	-

- 공공행정서비스 분야의 자격종목은 필시, 실기, 면접, 교육과정이수의 검정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와는 달리 논문을 추가하여 총 5가지 검정방법을 실시하고 있음
- 국가자격종목 중 ‘행정사’는 필기시험에 논술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위생지도사’는 필기와 면접을 검정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음
 - 국가기술자격인 ‘산업위생 관리기술사’는 논술을 포함한 필기시험과 실기를 검정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음
 - 공인민간자격인 ‘행정관리사1급’의 경우, 필기와 함께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검정방법을 실시하고 있음

<표 2-17> 공공행정서비스 분야 자격종목의 검정방법

자격종목	구분	검정방법					
		필기	실기	면접	논문	교육과정 이수	
행정사	국가	○ (논술포함)	-	-	-	-	
산업위생 지도사	국가	○	-	○	-	-	
산업위생 관리기술사	국가기술	○ (논술포함)	○	-	-	-	
행정관리사	공인 민간	1급	○	-	-	○	-
		2급	○	-	-	-	○
		3급	○	-	-	-	-

3. 자격종목별 검정결과

- 자격종목별 검정결과에서는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공인민간자격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음

-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합격률은 필기에서는 ‘임상심리사 2급’이 88.5%로, 실기에서는 ‘의료전자기능사’가 90.5%로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임상심리사1급’의 경우, 필기에서 가장 낮은 합격률(12.9%)을 보이고 있고, 실기에서는 ‘의공기사’가 가장 낮은 합격률(3.0%)을 보이고 있음

<표 2-18> 보건·의료 분야 국가기술자격종목의 합격자 현황⁷⁾ (단위: 명, %)

구분	자격종목명	필기			실기		
		응시	합격	합격률(%)	응시	합격	합격률(%)
국가 기술	의공기사	432	156	36.1	334	10	3.0
	의공산업기사	476	125	26.3	268	59	22.0
	의료전자기능사	80	22	27.5	21	19	90.5
	임상심리사1급	186	24	12.9	22	1	4.5
	임상심리사2급	763	675	88.5	814	28	3.4

-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자격은 5개 자격종목과 합격률을 알 수 없는 자격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50% 이상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음
 - 그 중 ‘조산사’의 경우 합격률이 100%이고, ‘한약조제자격’은 응시자가 전혀 없음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경우, 합격률이 90% 이상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음
- 공인민간자격인 ‘병원행정사’는 59.0%로 절반 이상의 응시자가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남

7) 분야별 국가기술자격 합격자 현황은 2010년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홈페이지 게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표 2-19> 보건·의료분야 국가자격 및 공인민간자격종목의 합격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자격종목	총 응시자 수	총 합격자 수	합격률	
국가	의사	3,469	3,224	92.9	
	치과의사	831	800	96.3	
	한의사	845	769	91.0	
	조산사	16	16	100.0	
	간호사	12,738	11,857	93.1	
	정신보건간호사	-	-	-	
	약사	1,590	1,423	89.5	
	한약사	171	159	93.0	
	한약조제자격	0	0	0.0	
	영양사	8,677	5,494	63.3	
	임상병리사	2,372	1,203	50.7	
	방사선사	2,399	1,668	69.5	
	물리치료사	3,481	3,112	89.4	
	작업치료사	1,199	1,008	84.1	
	치과기공사	1,649	1,355	82.2	
	치과위생사	3,943	3,511	89.0	
	의무기록사	2,037	1,036	50.9	
	안경사	2,557	1,731	67.7	
	위생사	9,033	4,786	53.0	
	1급 응급구조사	915	762	83.3	
	2급 응급구조사	792	639	80.7	
	의지·보조기기사	156	66	42.3	
	보건교육사 1급 ⁸⁾	-	-	-	
	보건교육사 2급	-	-	-	
	보건교육사 3급	-	-	-	
	공인 민간	병원행정사	13,098	22,196	59.0

주: 보건·의료 분야의 응시현황은 2010년도 관련 기관 게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됨.

8) 보건교육사 1급, 2급, 3급은 2010년 국가자격으로 지정, 제1회 시험을 2010년 3월에 치른 관계로 현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통계 작업 중임.

-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국가자격기술종목의 필기 합격률에 비해 실기 합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직업상담사1급'의 경우, 필기 합격률이 43.5%이지만, 실기 합격률은 0%로 나타나 매우 대조적임

<표 2-20> 사회복지 분야 국가기술자격종목의 합격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자격종목명	필기			실기		
		응시	합격	합격률(%)	응시	합격	합격률(%)
국가 기술	소비자전문상담사1급	49	38	77.6	42	8	19.0
	소비자전문상담사2급	837	638	76.2	775	105	13.5
	직업상담사1급	62	27	43.5	35	0	0.0
	직업상담사2급	12,540	6,247	49.8	7,396	1,774	24.0

주1: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응시현황은 2010년도 관련 기관 게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됨.

- 사회복지 분야 국가자격은 합격률이 집계되지 않았고, 공인민간자격 종목의 합격률은 20%대로 저조한 편임

<표 2-21> 사회복지분야 국가자격 및 공인민간자격 종목의 합격자 현황 (단위: 명, %)

분야	자격종목	총 응시자 수	총 합격자 수	합격률(%)
국가	사회복지사1·2·3급	-	-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	-
	건강가정사	-	-	-
	요양보호사	-	-	-
	청소년지도사	-	-	-
공인 민간	점역·교정사	1,627	366	22.5
	수화통역사	3,695	835	22.6

주1: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응시현황은 2010년도 관련 기관 게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됨.

주2: 국가자격의 영역에 속하는 '안마사'는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합격자 현황에서 제외하였음.

- 교육 분야 공인민간자격종목의 합격률은 ‘한자·한문전문지도사’는 76.6%로 높은 반면, ‘브레인트레이너’는 18.3%로 저조한 편임

<표 2-22> 교육 분야 자격종목의 합격자 현황

구분	자격종목	응시	합격	합격률(%)
공인 민간	한자·한문전문지도사	769	589	76.6
	브레인트레이너	2,437	446	18.3

주1: 교육 분야의 응시현황은 2010년도 관련 기관 게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됨.

- 공공행정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종목인 ‘산업위생관리기술사’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률은 11.5%로 저조하지만, 실기시험 합격률은 55.6%로 높은 편임
- 공공행정서비스 분야 공인민간자격종목인 ‘행정관리사’의 경우, 필기시험만을 검정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어 필기시험 합격률만을 볼 수 있으며, 합격률이 70.1%로 높게 나타남

<표 2-23> 공공행정서비스 분야 자격종목의 합격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자격종목	필기			실기		
		응시	합격	합격률(%)	응시	합격	합격률(%)
국가	행정사	-	-	-	-	-	-
국가	산업위생지도사	-	-	-	-	-	-
국가 기술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30	15	11.5	36	20	55.6
공인 민간	행정관리사	2,188	1,533	70.1	-	-	-

주1: 공공행정서비스 분야의 응시현황은 2010년도 관련 기관 게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됨.

주2: ‘행정사’의 경우, 2012년 시행 예정인 자격종목임.

주3: ‘산업위생지도사’의 경우, 1998년도 이후 미시행인 자격종목임.

4.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의 문제점

- 보건·의료 분야의 민간자격의 다수가 유사의료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는 이유로 민간자격의 신설이 금지되고 있음
 - 사회복지 분야 일부 자격도 유사 자격과의 업무중복으로 민간에서 자격신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의 치료서비스와 관련한 자격신설의 규제나 제한이 외국에 비하여 심한 상태임

- 보건·의료 분야 일부 자격종목은 포괄적인 직무범위로 인하여 자격종목 간 직무영역에 대한 마찰이 일어나고 있음
 - 예를 들면, 한의사-한약조제사-약사, 한의사-침구사, 안과의사-안경사, 행정사-행정관리사-행정정보사-정책평가분석사 등 임
 - 자격종목 간 마찰은 자격집단 간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한계와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

- 시장 및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자격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음
 - 교육서비스 분야 일부 자격은 새로운 시장에서의 자격수요에 따라 직무영역의 분화되거나 신설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음
 - 자격 신설·운영 기준과 표준화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

- 전문분야 일부 자격들이 검정기관마다 각기 다른 응시자격, 시험과목, 검정방법 등을 적용함으로써 자격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태임
 - 전문분야별 자격종목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자격의 등급수준을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제4절 시사점

- 향후 사회서비스분야는 안전, 건강, 복지 등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개인의 요구 증대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 고령화 등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직업들이, 개인의 복지수혜에 대한 요구 증대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직업들이, 더 나은 교육의 질에 대한 요구 증대로 교육서비스 관련 직업들이 유망한 직업으로 전망되고 있음
 - 또한 사회서비스의 특성상 일대일 서비스 제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물량은 크다고 할 수 있음

- 특징적인 것은 개인의 질 높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는 강화될 것이며, 이는 사회서비스 관련 직업들의 더 높은 전문성을 요구될 것이란 점임
 - 그러나 앞에서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구조를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서비스 등에서는 전문직보다는 저숙련 단순직에서 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고, 이로 인해 고용의 질 역시 낮은 수준을 보였음
 - 저숙련 단순직 중심으로 인력 유입이 지속된다면 향후 개인의 질 높은 사회서비스 요구와 괴리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사회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 민간자격 금지분야 설정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함
 - 그동안 우리나라도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시장에서 언어치료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놀이치료사 등의 자격종목 등이 요구되고 있었으나 부처의 치료 명칭 사용규제로 인하여 그동안 이 분야 민간자격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음

- 민간자격에서 치료 등의 자격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금지분야에 대한 설정 완화가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사회적 혹은 개인의 요구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관련 직업들을 전문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노력 중 하나가 사회서비스분야의 자격체계와 훈련체계를 재정비하고, 전문화가 요구되는 사회서비스 관련 직업의 자격과 훈련을 신설·개편하여 직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임
- 사회서비스 관련 직업에서의 전문성 확보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과 함께 고용의 질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어 양질의 인력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보육교사’, ‘요양보호사’에서 경험했듯이 직업의 전문성 확보보다는 대량 생산적 자격 중심으로 자격을 개편할 경우, 오히려 자격의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실제로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의 경우 훈련이수 및 자격 취득 후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월평균임금은 각각 130만원, 9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서비스 외 직업(199만원)에 비해서도 낮음
- ※ 근거: 2008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자격증의 개편은 더 높은 사회서비스 질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회서비스 분야에 자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질의 인력이 유입되어 사회서비스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자격 개편을 의미하는 것임

제3장

해외 주요국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지원정책 및 추진 동향

제1절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고용지원 정책

1. 미국

- 미국의 사회서비스 관련 산업 및 직업에서 고용안전망은 상당히 고무적임
 - 노인인구의 증가와 가족기능의 변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다른 어떤 영역과 비교하여 고용증가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 부문과 마찬가지로 일반 서비스 부문의 고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 증가율은 사회서비스 부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 서비스 부문의 고용증가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편안하고 안전하며,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국민의 서비스 이용욕구 확대 및 고령화의 영향으로 판단됨

- 이러한 논의는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에서 실시한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고용규모 추계결과에 근거한 것인데, BLS의 고용추계는 GDP 2.8%의 성장률을 전제로 총량차원의 인력수급에 대한 전망을 근거로 하고 있음
- 이러한 추계의 결과에 따르면 표준직업분류(SOC)에 포함되는 800여개 직업 중에서 Personal and Home Care Aides는 두 번째로 고용증가율이 빠르고, 증가율 또한 높을 것(50.6%)으로 예상되는 직업으로 나타났음
- 지역사회서비스(community and social service) 관련 직업의 고용율이 2016년까지 27.7%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는 인구 고령화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장애인, 환자, 약물중독자 및 위기의 개인과 가족에 대한 각종 대인 사회서비스의 확충으로 현실화될 수 있음

<표 3-1> 미국 표준직업분류(SOC)기준 직업별 임금근로자 규모 추계결과
(단위: 천명, %)

사회서비스 관련 직업 Occupation Title	고용규모		고정비율		증감율 '06~'16
	2006	2016	2006	2016	
00_0000 TOTAL ALL Occupations	150,620	166,220	100.0	100.0	▲10.4
21_0000 Community and Social Service Occupations	2,386	2,927	1.6	1.8	22.7
21_1000 Counselors, social workers, and other community and social service specialist	1,843	2,280	1.2	1.4	23.8
21_1010 Counselors	635	771	0.4	0.5	21.3
21_1011 Substance abuse & behavioral disorder counselor	83	112	0.1	0.1	34.4
21_1012 Educational, vocational and school counselors	260	292	0.2	0.2	12.6

<표 계속>

사회서비스 관련 직업 Occupation Title	고용규모		고정비율		증감율 '06~'16
	2006	2016	2006	2016	
21_2013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s	25	32	.0	.0	29.8
21_1014 Mental health counselors	100	130	0.1	0.1	30.0
21_1015 Rehabilitation counselors	141	173	0.1	0.1	23.0
21_1019 counselor All Others	27	32	.0	.0	16.6
21_1020 Social workers	595	727	0.4	0.4	22.2
21_1021 Child, family, and school social workers	282	336	0.2	0.2	19.1
21_1022 Medical and public health social workers	124	154	0.1	0.1	24.2
21_1023 Mental health & substance abuse social workers	122	159	0.1	0.1	29.9
21_1029 Social workers, All Others	66	78	.0	.0	17.8
21_1090 기타 지역사회서비스 specialist	613	783	0.4	0.5	27.7
21_1093 Social and Human Service Assistants	339	453	0.2	0.3	33.6
21_1099 Community & social service specialists, all others	118	148	0.1	0.1	25.1
39_0000 Person Care and Service Occupations	4,966	6,060	3.3	3.6	22.0
39_1000 Supervisors, personal care and service workers	268	312	0.2	0.2	16.2
39_9000 Other Personal Care and Service Workers	2,853	3,593	1.9	2.2	25.9
39_9012 Child care workers	1,388	1,636	0.9	1.0	17.9
39_9021 Personal and home care aids	767	1,156	0.5	0.7	▲50.6
39_9041 Residential advisors	57	67	.0	.0	18.5
39_9099 Personal care and service workers, All Others	86	75	0.1	.0	-12.9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2008), <http://www.bls.gov/oes/current/oesrci.htm>.

<표 3-2> 미국 사회적 지원(social assistance) 관련 직종 고용규모 예측

(단위: 천명, %)

사회적 원조 관련 직종	고용자 수	고용 비율	변화율 2004~3025년
사회서비스 경영	138	10.1	33.0
전문직 사회서비스(사회복지사)	486	35.6	35.1
단순 서비스 및 돌봄	449	32.9	36.8
사회서비스 관리직	170	12.4	17.9
기타(노무직)	65	4.7	27.4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7.

-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원서비스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사회 서비스로 나누어질 수 있음
 - 첫째, 개인과 가족 서비스인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로 2004년 현재 85만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음
 - 둘째, 지역사회 서비스로써 푸드뱅크, 주거복지, 그리고 재난과 같은 긴급원조에 필요한 서비스 직종으로 13만 취업자가 분포되어 있음
 - 셋째, 직업훈련 서비스 직종은 실업자, 장애인,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를 중심으로 약 38만 명이 종사하고 있음

가. 캘리포니아주 사회서비스 인력훈련 프로그램: Bay Area Academy

-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베이 에어리어 아카데미(The Bay Area Academy, 이하 BAA)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교육·훈련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1997년 Berkeley대학 사회복지과 부설로 설립되었음
 - 1999년 이후 San Francisco 주립대학교 사회복지과 부설로 운영되

면서 그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음

- 우선, 지역 내 8개 지방정부(county governments)와의 계약에 따라 아동, 청소년, 가족대상 서비스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아울러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공하고 있는 성인보호프로그램(Adult Protective Services) 제공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교과과정의 개발·보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캘리포니아주 교정재활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와의 계약을 바탕으로 재소자의 사회복지 이후 가족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복지 관련 사회복지사의 교육·훈련도 실시하고 있음
- BAA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관계(partnerships & collaborations)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협력기관 및 단체들로서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Consortium BASSC), 지역내 12개 카운티 정부, 카운티복지국장연합, the Academy's training Advisory Board(TBA) 등이 참여하고 있음
- 공공-민간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BAA는 향후 보건·복지서비스 부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영역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참여율 제고와 내용의 실천 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아울러 교육·훈련 효과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장소로의 접근성이 낮은 인력들에 대한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교육·훈련 전달체계의 강화를 기관의 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음
- BAA 프로그램은 교육·훈련 주제에 따라 핵심과정(Core course), 심화과정(Advance course), 관리과정(Supervisor course) 등 3단계로 구성됨

- 핵심과정(Core course)은 캘리포니아주의 신규 아동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그밖에도 아동복지관련기관 및 공중보건간호사로서 취업한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BAA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도입 단계적 성격을 갖고 있음
-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이 BAA 훈련 장소까지의 이동 불편 및 시간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핵심과정은 월 4회로 총 6개월 과정임

<표 3-3> 미국 BAA 아동복지 핵심과정(Core course)의 교육내용 예시

모듈	교육·훈련 주제	모듈	교육·훈련 주제
1	캘리포니아 아동복지정책의 이해	13	캘리포니아 사정도구(assessment tool)
2	초기 사정 및 기초 상담기법	14	부양자 약물중독과 아동복지
3	사회복지와 아동청소년의 발달	15	인디언 아동복지법의 이해
4	구조적 의사결정 방법	16	다인종 아동복지법의 이해
5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의 이해	17	의료보호 필요 아동과 청소년
6	아동학대 예방과 접근 1	18	가치와 윤리
7	아동권리의 이해와 증진	19	다문화 사회에서의 아동복지 실천
8	사례관리를 위한 가족 참여	20	가정위탁과 입양의 이해
9	법정 대응 절차	21	아동학대의 이해 2
10	법체계와 아동복지서비스 문서관리	22	아동복지 인력의 안전문제
11	가정폭력의 이해	23	시간관리와 스트레스 관리
12	안전-위기-보호에 관한 비판적 고찰	24	수료식

자료: http://www.bayareaacademy.org/downloads/Core_d-2_AtAGlance.pdf.

- 심화과정(Advance course)은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아동복지 관련 지식과 실천기술을 향상시키기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사회의 연간 교육·훈련 수요를 고려하여 특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수립되며, 연간교육·훈련수요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사회의 서비스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따라서 심화과정(Advance course)은 핵심과정(Core course)과 같이 세분화된 교육과정이 미리 제시되지는 않음
- 관리과정(Supervisor course)은 월 2일, 5개월간 5모듈로 진행되며, 슈퍼바이저 수준의 인력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강의와 토론, 현장실습까지 포함한 집중 관리과정은 특히 신규 슈퍼바이저들의 역량강화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표 3-4> 미국 BAA 아동복지 관리 과정(Supervisor course) 교육내용 예시

모듈	교육·훈련 주제	
1	- 정책과 실천 -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해 - 기대감의 형성 - 행동양식의 이해	- 슈퍼비전의 5원칙 - 실천 중심의 강점 - 팀전략의 추진
2	- 행동양식의 재이해 -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관리 - 공정성과 형평성의 통합	- 권위의 형성 - 급기시 되는 주제의 접근 - 자료의 분석
3	- 성과평과의 이해 - 사례의 종료와 종료후 관리	- 시간관리 - 적극적 지도·지침
4	- 사례관리	- 문화적 민감성
5	- 팀작업 효율성 제고 - 발표전략	- 팀워크를 위한 다학제적 접근

자료: http://www.bayareaacademy.org/downloads/Core_D-2_AtAGlance.pdf.

- 원칙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사회서비스 관련 지원예산은 총 58개 지방정부(county office) 인구 수, 복지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되고 있음

- 캘리포니아 사회서비스부(Dept. of Social Services)와 보건부(Dept. of Health) 재정지원 이외에 Medicaid와 Medicare 재원 일부를 포함하고 있음
- 주요 서비스 영역으로서,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 Programs), 재가서비스(In-Home Supportive Services), 요보호서비스(Protective Services) 등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 제공의 일관성 결여의 문제가 주요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 특히, 재가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품질을 담보하고 적정 서비스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표준, 예를 들어 서비스 표준, 교육·훈련표준, 성과지표 등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최근의 실증연구 결과들이 인구고령화에 따라 서비스 욕구가 증대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원을 비롯하여 한정된 자원(재정포함)으로 인한 우려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방정부(county government)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훈련 부분에 대한 지원액 규모를 동결 또는 삭감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훈련시간의 단축이나 교육 대상자의 감축이라는 부정적 결과로 가시화되고 있음

나. 메사추세츠주 사회서비스 고용정책

- 메사추세츠주는 인구 650만여 명(2007년 기준)의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 남부에 위치한 주이며, 인구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학업 등을 이유로 유입된 인구를 제외하고는 인구증가율 및 출산율이 정체 또는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노동인구(20~65세)의 증가속도는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05년도 기준으로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65명의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하지만, 2030년에는 83명으로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이러한 인구규모와 인구구조의 변동양상은 메사추세츠 주의 대인 사회서비스(Human services)산업인력 문제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아동, 노인, 장애인, 빈곤계층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는 관련 인력의 확충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비단 메사추세츠 주의 현상만은 아니지만, 노동부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home health aids, personal and home care aids, 등록간호사, 보육교사 등은 향후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직업분야로 조사되고 있음
- 고용추계에 따르면 2006년대비 2016년에는 이들 직업의 고용성장률은 35% 내외로 예측되고 있음

□ 메사추세츠 주정부와 관련 단체들은 Massachusetts Council of Human Service Providers를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2006~2007년에는 메사추세츠대학(University of Massachusetts)의 도나휴연구소(Donahue Institute)와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사회서비스 산업부문의 인력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음

□ 연구과제에서 발표된 2권의 보고서 『Help Wanted: The future of

the human services workforce in Massachusetts』와 『Help Wanted 2: Recruiting and retaining the next generation of human service workers in Massachusetts』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사회서비스 인력지원 정책

- 노동 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고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2014년까지 메사추세츠주의 사회서비스 산업은 39천여 명의 추가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었음
- 그러나 2005년도 현재, 주 전체에서 74천여 개의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 가운데 21%(15,744)는 사회서비스 분야였음
- 메사추세츠 주의 20대 산업분야 중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은 보건 의료 분야와 함께 대표적인 구인 불충족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 州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6대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설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분야 근로자의 이직율은 이미 50%를 육박하고 있었음
- 이와 같은 높은 이직율은 임금수준이 매우 낮고, 지역사회 주민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활동 중인 인력의 노동 부담이 높고 근로시간이 길며, 아울러 의료보험 등 각종 후생급여 제공체계가 취약하기 때문임
- 한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탈시설화 정책이 기본 원칙으로 자리매김하자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인력들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더 많은 지식과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받으면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그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 되고 있음
 - 메사추세츠 사회서비스 고용조사(Mesachusetts Human Service Survey)에서 실시된 인력부족의 원인에 대한 공급기관 운영자 의견조사에서도 인력의 높은 이직률의 원인으로 낮은 임금수준, 인력의 소진(burn out), 이용자의 높은 서비스 기대수준, 경력관리의 한계, 장시간 근로시간 문제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적합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정책을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나라에도 함의를 전달하기에 충분함
- 메사추세츠 주정부에 제안하고 있는 6대 고용촉진 및 유지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음⁹⁾
- ① 사회서비스 고용정책의 통합적 접근
 - 통합적 접근은 사회서비스 인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촉진 전략과 고용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전략, 그리고 인력의 양성전략 등 고용정책 3대 영역이 상호적 영향력을 주고 받으면서 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② 사회서비스 부문의 직업정체성 확립
 - 사회서비스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이 낮기 때문에 신규인력들이 선의와 열정만을 갖고서 직업을 선택하기를 기다릴 수 없음
 - 아울러, 현재 고용된 근로자의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용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인력 전반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평판을 간과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 관련 직업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동 분야
 에서 작동할 수 있는 고용정책의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③ 고용조건외 향상(임금수준 및 후생복지 수준)

- 사회서비스의 근로활동에 대한 적정수준의 임금은 경제적 안정성
 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질을 갖춘 인력이 사회서비스 부문으
 로 유입될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함
- 이를 위해 가장 간단한 시도는 공공재정의 투입을 확대한 것이지
 만, 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운영현황 및 고용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됨
-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고용조건을 개선
 하고 서비스 제공의 성과를 효율화시킬 수 있도록 성과주의 예
 산제도를 정착시켜야 함
- 임금수준 이외에도 사회서비스 관련 직업적 특성 자체를 전문화
 함으로써 고용유지를 위한 동기유발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메사추세츠 주에는 Providers' eAcademy를 설치·운
 영하고 있는데 관련 지식과 사전정보가 없는 구직자들에게 사회
 서비스 관련 지식과 기술을 온라인으로 전달하여 보다 손쉽게
 구직준비를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사회서비스 인력이 전문적인 교육을 희망할 경우 학비를 지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내 대학 및 교육기관과 연계하
 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④ 사회서비스 인력관리의 표준화

-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해 사회서비스 인력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업무량을 제시해야 함
- 인력의 지식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활동과정의 애로사항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덜어낼 수 있는 지지와 멘토링 프로그램의 활용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개별 인력의 특성과 취약점을 파악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능력에 부합되는 업무량의 달성을 요구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인력은 보다 안정적으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됨

⑤ 채용과정의 체계화 및 지원체계 수립

- 사회서비스 인력의 채용과정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서비스 인력의 채용기준이 사전에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함
- 아울러 채용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직업의 특성에 대한 구직자의 이해수준을 파악해야 하며, 지원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채용일정을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력이 스스로 채용과정에 참여하여 신규 근로자를 공급기관에 소개하거나 구인을 알선할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해 기관차원에서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구인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음

⑥ 과학적, 객관적 고용정보 수집체계의 구축 및 활용

-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현장에 적용되어 실질적인 성화를 거두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

료(data)에 근거한 정책의 설계와 추진이 필요함

- 그러나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보(data)는 매우 제한적이며, 정보수집 체계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고용인력에 대한 기초실태의 파악을 위한 정보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동시에 서비스이용자의 욕구와 수요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이에 대응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서비스 수요 및 수요자 관련 정보도 지속적으로 수집·관리되어야 함

2. 영국

가. 사회서비스 인력 정책 마련(Adult Social Care Workforce Strategy)

- 영국의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인적자원 관리 정책을 돌봄 서비스 부문의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며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특히 영국 보건부는 돌봄서비스의 변화를 위한 야심찬 아젠다 『Putting People First: A Shared Vision and community to the Transformation of Adult Social Care』를 발간하고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수행중임
 - 본 아젠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이며, 서비스 개혁과 확대를 위한 본 아젠다는 인력에게 필요한 서비스 전달과 수행방식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9) 7대 고용전략은 'Help Wanted: the future of the human services in Masachusetts'와 'Help Wanted 2: Recruiting and retaining the next generation of human service workers in Massachusetts'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강혜규 외 『사회서비스 인력운영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에서 재인용.

- 개혁 아젠다로부터 인력의 중요성을 확인시키기 위해 보건부는 사회적돌봄인력전략위원회 및 실행그룹(Adult Social Care Workforce Strategy Board and Executive Group)을 창설하였으며, 본 위원회는 새로운 전략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고 사회적 돌봄 개혁의 보급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 역할을 맡고 있음
- 전략위원회 및 실행그룹은 인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리더십, 관리운영 및 위임기술(Leadership, Management and Commissioning Skills)
 - 인력개발(Workforce Development)
 - 인력모집, 유지, 경력개발(Recruitment, Retention, and Career Pathways)
 - 인력 재편성(Workforce Re-Modeling)
 - 규제(질향상)(REgulation-Quality Improvement)
 - 타 분야와의 연계 및 통합(Joint and Integrated Working across Sectors)

나. 인력모집을 위한 국가적 홍보(National social care recruitment campaign)

- 보건부는 국가적 홍보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홍보하고 인력을 모집하고 있음
 - 2008년의 경우, 3월 한달 간 TV, 라디오, 신문 등을 이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돌봄서비스 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홍보를 진행하였음
 - 또한 보건부는 국가적 홍보와 지방의 결원 현상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음

다. 돌봄서비스 능력개발 아카데미(Social Care Skills Academy)

- 보건부는 돌봄서비스를 위한 국가직무능력 아카데미(National Skills Academy for Social Care)를 발전시키며 돌봄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음
 - 본 아카데미는 2005년을 시작으로 전개되었고 아동학교가족부(DCSF,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와 혁신대학기술부(DIUS, 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에 의해 지원받고 있음
 - 국가직무능력 아카데미는 돌봄서비스의 모든 수준에서 필요한 의무와 리더십 기술에 중점을 두며, 구체적 내용은 skills for Care, the Social Care Institute for Excellence와 돌봄서비스 고용주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지도 그룹에 의해 발전되고 있음
 - 특히 아카데미에서는 커리어개발 및 인력유지 프로그램, 인력모집 및 확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커리어개발 및 인력유지 프로그램으로는 훈련제공자 양성이 신설되어 QCA를 통해 돌봄서비스 교육과정 2단계에서 기술향상과 평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 이를 통해 고용주와 학습자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부족하거나 빠져있던 중요한 기술들을 식별해내고 변화시키는 데 보다 민감히 대처할 수 있음
 - 또한 돌봄 종사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향상 과정을 계획하며, 훈련 및 직원 인력과 리더십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기획함.
 - 아카데미는 또한 돌봄서비스 커리어를 장려시키기 위해 14~19개의 교육인증 과정과 도제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음

라. 새로운 인력 프로그램(New type of Worker Programme)

- Skills for Care는 돌봄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재설계하는 새로운 돌봄 인력 프로그램(New Type of Worker Programme)을 선도하고 있음
 - 본 프로그램에서는 활동 조사(action research)와 활동학습(action learning)을 활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돌봄인력과 돌봄 서비스의 증거기반(evidence base)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10년에서 20년 안에 맞이하게 될 새로운 도전들에 대비하기 위해 인력 개발에 힘쓰고 있음
 - 본 프로그램은 차후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모델을 둘러싼 정책의 등장과 변화를 유연하게 고려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증거기반 인력성과(evidence-based workforce outcomes)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을 조정하고, 개별화된 서비스와 자기 주도적 지원(self-directed support) 철학을 포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마.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International Recruitment)

- 영국에서는 인력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보건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서비스 인력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노동력 조사(The Labor Survey)에 따르면 2006년 현재, 돌봄인력의 약 11%(95,000명)가 외국 인력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25개의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시민들은 영국에서 노동허가 없이 일할 수 있으며, 이는 인력채용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언어적·문화적 측면 및 실제적인 근로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기초적인 기술 습득 및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ETF(European Training Foundation)은 Leonardo project를 통해 유럽 공통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럽돌봄자격증’(European care Licence)을 개발중이며, 이는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이동성과 돌봄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바. 돌봄고용주 실천강령(Code of Practice for Employers of Social Care Workers)

□ 제도 도입배경

- 영국은 2007년 기준 약 75만 명에 달하는 직접적인 돌봄종사자들이 있으며 이들의 돌봄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로서 케어기준법(Care Standards Act, 2000)은 국가케어직무능력표준위원회(National Care Standards Commission), 일반사회보호심의회(General Social Care Council), 개인서비스훈련조직(TOPSS: Training Organization for Personal Social Service)등을 제도화하였음
- 특히 일반사회보호심의회는 케어 인력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최초의 비정부기구로서 케어인력의 고용 관련 규제도 함께 책임지고 있음
- 돌봄종사자들의 등록 및 관리 그리고 교육훈련 뿐 아니라 일반사회 보호심의회는 등록되어 있는 돌봄종사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실천 강령들을 강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사회보호조사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에 등록된 사회서비스 기관은 돌봄서비스 고용주 실천강령(Code of

Practice for Employers of Social Workers)을 준수할 의무를 갖고 있음

□ 제도 운영내용

- 일반사회보호심의회의 돌봄 종사자 고용주들이 지켜야할 실천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 첫째, 돌봄서비스 고용주는 인력채용 시에 돌봄종사자들의 적합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지 확인하고 범죄 기록을 확인하며 이에 맞는 적절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함
 - 둘째, 돌봄종사자의 비밀보장(confidentiality), 기회균등(equal opportunities), 위기사정, 약물남용, 기록유지, 서비스 이용자로 부터의 선물이나 현금수수와 관련된 실천강령(Code of Practice for Social Care Workers)을 준수시키기 위하여 문서화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수시로 모니터 해야 함
 - 셋째, 돌봄종사자들에게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훈련기회를 제공해야 함
 - 넷째, 돌봄 직무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차별, 학대행위들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발생 시 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 정책과 절차들을 마련해야 함
 - 다섯째, 실천강령은 돌봄종사자들, 이용자들, 기타 돌봄인력들에게 충분히 인식되어야 함
- 이러한 강령들이 준수되는지 여부는 사회보호조사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가 담당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사회서비스 전달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평가하는 책임을 지는 기구로서 위에서 언급된 돌봄서비스 고용주가 실천강령을 이해하는지 파악하는 책임을 맡고 있음
- 위원회는 케어의 국가최소수준에 맞추어서 모든 돌봄서비스 기관

들을 조사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점검한 결과는 ‘사회보호 현황’(The state of social care)이라는 형태로 발간하고 있음

- 영국에서 돌봄서비스 인력의 열악한 고용조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낮은 대우와 자격조건 부족 등의 이슈들은 여전히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미비한 것이 현실임

사. 수발자를 위한 국가전략(The National Strategy for Carers)

□ 제도 도입배경

- 영국 보건국은 1998년 이후 사회서비스의 현대화와 관련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일련의 정책이 되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직접지불방식(direct payment), 취약계층 보호, 보건법 유연화, 그리고 돌봄제공자에 대한 지원을 향상시키는 것임
- 수발자를 위한 국가전략(The National Strategy for Carers, 1999)을 통해 서비스의 범위, 내용, 시간에 대한 상당한 통제권을 돌봄제공자에게 부여하고, 돌봄제공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을 동원하고 이들에게 임시휴식을 제공하고자 하였음

□ 제도 운영체계

- 영국에서 수발자 중 약 3분의 2는 비공식적인 돌봄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임금근로자로서 존재함
- 대다수 수발자들에게 상당한 시간이 돌봄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근로활동가의 병행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영국 정부는 수발자들이 근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사회서비스 현대화 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수발자 고용보장 정책은 유

연한 고용정책을 통해 개인들이 노동과 가정 내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노동백서(Faimes at Work)에서도 모든 노동자들이 가족의 위급상황에 시간을 배려해야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 수발자들의 욕구에 대응하는 고용정책은 다음과 같음
 - 우선 유연한 근로형태로서 파트타임, 시간제, 일자리 나누기, 년단위의 시간총량제 등이 제시되며, 또한 유사시의 가족휴가제도, 돌봄 바우처, 주간보호, 고용상담 및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음
 - 정부는 많은 고용주들이 이와 같은 돌봄 친화적인 정책을 수용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음
 - 또한 사회서비스 현대화 백서에는 돌봄 제공자가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돌봄수당(Invalid Care Allowance)임
 - 이는 16세에서 65세 사이에 주당 35시간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으로 현재 37만명 이상이 수혜자이며, 돌봄제공으로 인한 전일제 고용포기에 발생하는 소득을 보전해 주고 있음

3. 프랑스

- 프랑스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취업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짐
 -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사회적 근로자 양성기관과 사회서비스 종사자 활동 기관간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한 방법임
 - 두 번째 방법은 잡지, 인터넷 사이트 등 일반적인 구인광고를 통한 방법임

- 세 번째 방법은 국립 고용안정센터(ANPE)을 통한 방법인데 여타 분야에 비해 사회서비스 취업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취업조건 및 절차는 의무적인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첫째, 관련 분야, 직종에 적합한 능력 인정으로 필요한 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요건 충족이 요구되어야 함
 - 둘째, 제시된 일자리에 대한 지원자의 소양 및 능력, 근로동기, 사회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프랑스에서 사회서비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직업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은 1970년대 전후임
- 지난 20~30여 년간 프랑스 사회적 직업 일자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 특히 1993년과 2002년의 10년 사이 사회적 직업 일자리는 매년 6%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제3차 산업의 연평균 증가율 2.1%의 3배 가까운 수치임

가. 사회서비스 직업의 활성화 정책

- 기존 사회적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비공식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직업들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직업으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 이들 직업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체계의 강화를 통해 해당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제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음
 - 대표적인 해당 직업으로, 보육사를 들 수 있으며, 사회적 직업으로서 보육사 인정은 1977년과 1992년의 법을 통해 이루어졌음
 - 특히 1992년의 관련법은 보육사 수의 급증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공인보육사 고용가족지원제도(AFEAMA)는 유아녀 가정이 공인보육사를 고용할 경우, 이에 대한 보육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임

- 이 제도의 시행으로 보육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많은 유자녀 가정이 보육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고, 보육사 역시 비공식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음
- 동시에 동 법은 보육사의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이수 시간뿐만 아니라 채용 또한 광역자치단체가 관할하도록 하고 있음
- 공인보육사 고용 가족 지원제도가 도입되기 전, 보육사 숫자는 15만여 명이었는데, 제도 도입 이후 3년여 만에 2배로 증가된 것은 이 제도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치임
- 프랑스 정부의 이러한 사회서비스 직업의 활성화 정책은 가사서비스 분야에서도 실시되어 ‘고용서비스 바우처’(cheque emploi-service) 제도가 바로 그것인데 가정이 사회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음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 비용에 대해선 감세 혜택을 주는 것임
- 대신 해당 가정은 가사서비스 근로자를 위해 단체 협상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법정 최저 임금을 지불해야 함
- 이 제도의 시행으로 50만에 불과했던 가사서비스 직접 고용 가구 숫자가 1998년에는 120만 가구로 급증했음
- 이러한 증대는 케어 욕구의 증대, 가사서비스 근로자 고용 부담의 감소와 함께 일자리 증대의 상당 부분이 기존의 미신고 근로에 대한 활성화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임 (European fou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2006:41)

나.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보수 교육 제도 도입

□ 프랑스 사회서비스 취업 정책 특징 중의 하나는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보수 교육 제도 도입을 통한 직업의 질적 제고임

- 현재 프랑스의 사회적 직업 관련 자격증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음
- 이런 배경에는 역사적으로 사회적 직업 자체가 자원봉사, 인도주의, 자선적 개입에 의해 형성되었고, 각 개입 영역 또한 고유의 개입 철학을 갖고 있으며, 개입에 대한 국가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고유의 자격증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였음
 - 또한 정부개입과정에서 등급이 서로 다른 자격증이 만들어지면서 복잡하고 세분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음
- 자격증의 인플레이션 현상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사회적 직업 양성 교육은 사회적 직업을 질적으로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특히 인구의 고령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 근로자의 평균 연령의 상승으로 사회적 직업 양성 교육의 중요성은 이전보다 더 강조되고 있음
- 프랑스 사회적 직업 양성 교육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사회적 직업 양성기관의 대부분이 비영리 단체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음
 - 320여개 양성기관의 4분의 3은 1901년에 제정된 단체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공립 고등학교, 도의회, 병원 등 공공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음
 - 성격에 관계없이, 재원은 국가에 의해 충당되는 반면 교육 방식이나 내용은 법에서 정해진 틀 내에서 자율적으로 마련, 운영되고 있음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사회 근로자의 질적 제고(qualification)와

사회적 직업의 활성화에 대한 국가 의지가 있음

- 즉 사회적 직업의 활성화를 통해 그동안 비공식 영역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이들 직업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 것임
- 아동 교육가(EJE)의 교육 기간을 기존 2년에서 27개월로, 일반 보육사 교육이수시간을 6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가족 보육사의 교육이수시간을 12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연장한 것이 대표적 사례임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활성화 정책 및 질 제고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일정 부분 그 성과가 가시화되어 나타나고 있음
 - 취업 현황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사회서비스 분야의 등급 III 자격증 취득자의 최초 취업 소요 기간은 1.2개월로 동일한 등급의 전체 취업 소요 기간인 2.1개월 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음¹⁰⁾
 - 등급 III과 IV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증 취득자 중 80%는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했으며, 등급 III의 자격증 취득자의 95%는 취득 후 2년 반 이내에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일 등급의 86%보다 높은 수치임
 - 뿐만 아니라 취업 후의 일자리 안정성 역시 여타 분야에 비해 사회서비스 분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아래 <표 3-5>는 취업 후 근속 기간에 대한 비교 결과임

10) 이러한 현상은 등급 IV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전체 평균은 2.9개월인데 비해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증 취득자의 구직 소요 기간은 2.4개월임.

<표 3-5> 프랑스의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 일자리 근속기간(2001)

(단위: %)

자격증 등급	분야	취득자 수	0~3개월	4~6개월	7~12개월	1~2년	2년이상
등급Ⅲ	사회 서비스	5,400	18	11	10	13	49
	전체	136,200	32	13	11	12	32
등급Ⅳ	사회 서비스	1,500	29	6	7	9	49
	전체	90,100	31	10	10	16	32

자료: M. Momic, 2006: 3과 5의 Table 1과 4를 재정리.

- <표 3-5>에서처럼,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 중 약 50%정도는 취업 후 2년 이상의 근속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등급 Ⅲ과 Ⅳ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동일 등급의 종사자 전체 평균보다 17% 높은 수치임.
- 아래 <표 3-6>과 같이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안정성은 근로 계약 형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음

<표 3-6> 프랑스의 사회서비스 최소 일자리의 근로 지위 비교(2001)

(단위: %)

자격증 등급	분야	무기계약(민간)/ 공무원	유기계약 (민간)	보조일자리 (공공영역)	인턴
등급Ⅲ	사회서비스	38	57	3	2
	전체	30	36	3	20
등급Ⅳ	사회서비스	40	51	4	3
	전체	31	28	13	20

자료: M. Momic, 2006: 5의 그림 2를 재정리.

- 등급 III 혹은 등급 IV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이루어지는 최초 근로 계약의 약 40%는 민간 영역 무기 계약 혹은 공무원 지위의 성격을 보이고 있어 동일 등급의 평균치인 30%에 비해 약 10%정도 높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로 계약의 반 이상은 기간제 계약(CDD)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등급 III은 57%, 등급 IV는 51%)
- 자격증 취득 3년 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10분의 8은 무기 계약 근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볼 때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취업한 종사자의 상당수가 무기 계약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등급 III 자격증 소지자의 6%, 등급 IV 자격증 소지자의 9%가 실업 혹은 비경황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같은 등급의 전체 비율인 11%와 17%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임
- 이런 자료를 종합해 보면 프랑스의 사회서비스 인력 취업 정책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활성화 정책,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보수 교육 제도 도입을 통한 사회적 직업의 질적 제고에 대한 국가 관심에 대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임
 - 높은 비율의 조기 취업률, 고용 안정성,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열악한 임금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제2절 주요국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정책 사례

1. 미국

- WIA(Work Investment Act)와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연방 및 주정부의 노동정책은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의 인력 확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연방정부는 매년 80억 달러 이상을 저소득 및 실업자의 취업지원 정책에 사용하고 있으나 고용지원 및 훈련은 오히려 돌봄서비스 근로자들의 창출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이는 교육이수 및 자격 소지자들이 최저생계비 수준의 돌봄서비스에 종사하지는 않으려 하기 때문임
 - 연방정부의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WIA)이나 빈곤가정에 대한 한시적 지원프로그램(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과 같이 장기요양 서비스 등 돌봄서비스의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제도들이 주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임
 - 미국의 경우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은 주로 WIA와 TANF 제도하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님.
 - 실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은 주정부와 지방정부 하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WIA와 TANF의 포괄보조금을 이용하여 많은 고용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1,500만 달러의 WIA 예산을 노인돌보미 훈련 지방정부 계획사업(Caregiver Training Initiative)

에 사용하여 가사간병 돌보미의 리쿠르트와 직업유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음

- WIA는 지역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훈련을 제공하면서 저소득 및 여성 그리고 취약계층의 복지관련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제도임
 -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지방정부는 아동보육에 일반재정 보조를 직접적으로 교부하지 않는 대신, 보조금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일부에게만 지급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음
 - 인력투자프로그램 예산의 일부를 아동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 사용하게 하여 TANF와 같이 빈곤의 해결책은 고용이며, 무엇보다 '일이 먼저'에 초점을 둔 직업훈련 프로그램임
- WIA는 7대 운영원칙을 가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간소화된 서비스
 - 개인 역량강화
 -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 성과지표 모니터링의 신뢰도 증대
 - 지역 인력투자위원회 및 민간역할 강화
 - 주정부와 지자체의 유연성 강화
 - 청년프로그램 강화
- 이러한 원칙의 시행을 위해 WIA는 3,400여개의 원스톱 커리어 센터, 그리고 600개 이상의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 협력체인 인력투자위원회(WIB)를 구성하고 있음
 - 이에는 주지사 및 상하원 의원, 지역사회의 영리기업과 비영리기관이 참여하여 지역의 고용 및 훈련서비스 제공에 참여를 제도화 하였으며, 훈련수요가 급증하는 일자리에 대한 현장수요가 최대한 반영하고 있음
 - 인력투자위원회(WIB)의 핵심은 원스톱센터의 운영에 있으며 원

- 스톱센터를 통해 지자체, 기업, 비영리 조직, 복지단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 파트너들이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임
- 인력투자위원회(WIB)는 지역사회의 적절한 교육훈련을 공급하며, 핵심-집중-훈련 3단계로 이뤄진 사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이들에게 개인훈련계좌를 개설하고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음(Raynor, 2003)
 - TANF 포괄보조금의 경우도 빈곤가정의 복지의존도를 줄이고 취업준비 및 노동시장 복귀를 전제로 하는 공공보조 프로그램임과 동시에 각 주의 고용연계 프로그램에 핵심적인 제도임
 - 주정부는 카운티마다 공공기관/비영리/영리기관들의 훈련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고용창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TANF 대상자들이 싱글맘과 같은 저숙련 여성노동자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대부분임
 - 미국의 이러한 고용창출정책이 반드시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서비스와 같이 지역사회 욕구에 의해 수요가 창출되는 경우 효과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임
 -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펜실바니아 랭카스터 카운티의 인력투자위원회는 노인 돌봄과 관련하여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Health Care Employment and Training)을 조직한 후, 돌봄서비스 근로자를 모집하기 위한 광고를 하고 있음
 - 이 프로젝트는 커리어 변화를 원하는 기존 돌봄서비스 근로자들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었으며, 원스톱(One-Stop)센터는 전화 상담을 통해 돌봄서비스에 대한 브리핑 섹션과 오리엔테이션 섹션을 통해 고용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영국

- 영국에서도 돌봄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동향에서 돌봄서비스의 특성상 여성일자리 창출이 비교 우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고용조건이 취약한 점과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반 정책적·제도적 체계의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가. 돌봄서비스 고용 현대화 전략(Modernising the Social care Workforce)

□ 개요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경우에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노인(성인 장애인 포함)의 돌봄서비스는 가정에서 가족원을 보살피는 돌봄과 유사한 수준이면 자격조건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보편적이었음
- 결과적으로 돌봄서비스 인력의 대부분이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저조하였음
 - 전체 돌봄서비스 인력의 80% 가까이가 공식적인 교육·훈련의 경험이 없고, 관련 자격증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영국 정부는 2000년 「돌봄서비스 고용 현대화 전략(Modernising the Social Care Workforce Green Paper)」을 통해 돌봄서비스 인력의 자질 향상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국가 직업훈련 및 고용 전략을 추진하였음

□ 주요내용

- 「돌봄서비스 고용 현대화 전략(Modernising the Social care Workforce)」은 지역사회에서 증대되고 있는 서비스 욕구 및 수요 파악에 근거한 것으로 돌봄서비스 부문에 있어서의 핵심 서비스

(Key services)와 표준서비스(service standards)에 대한 자료수집과 연구결과의 축적을 기초로 이루어 졌음

- Green Paper에 제시된 고용 현대화 전략의 주요 추진 영역은 다음과 같음
- 인력수급 전략
 - 지역, 권역, 국가수준의 돌봄서비스 인력 수급전략 수립
 - 고용평등 보장을 위한 돌봄서비스 부문 고용정책 분석
 - 지역단위 효과적 인력수급 방안의 발굴 및 선진사례 보급
 - 돌봄서비스 관련 지식 및 기술 현황 파악
 - 돌봄서비스 직무능력표준 체계 구축
- 돌봄서비스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인증체계 구축
 - 돌봄서비스 관련지식 및 기술현황 파악
 - 돌봄서비스 직무능력표준 체계 구축
 - 서비스분야 국가 직무능력 표준(National Occupational and Service Standards)에 준하는 교육훈련기관 실태 파악
 - 직업교육 훈련기관 인증체계의 우수사례 학습
 - 직업교육 훈련기관 및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
- 기능별·역할별 협력 파트너십 촉진
 - 전문 교육기관 연계·협력 추진
 - 돌봄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사소통 통로 활성화
 - 돌봄서비스 제공자와 고용주의 협력관계 도모

나. 돌봄직무능력표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목적

□ 위원회의 구성 및 설립목적

- 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영국 교육기술부(Departmanet od Education and Skills)가 인증한 단체들 중의 하나임

- 전문적 돌봄서비스 인력의 양성과 자격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돌봄 고용의 현대화 전략의 일환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5개 기관 연합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음¹¹⁾
- 6만여 명에 이르는 돌봄 인력의 고용주 및 250만여 명이 이르는 아동 및 성인(노인) 돌봄서비스 인력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주요 임무는 다음 5가지임
 - 첫째, 교육·훈련 및 인력관리 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임
 - 둘째, 돌봄 영역 전반에 걸쳐 적용 가능한 자격체계를 구축함
 - 셋째,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돌봄 기술의 발전을 도모함
 - 넷째, 돌봄 인력의 양성 및 이직률을 낮추고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지원함
 - 다섯째, 돌봄 인력의 수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함
- 현재 돌봄기술향상위원회는 정기적인 돌봄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용동향을 파악하고 서비스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을 돌봄 서비스 영역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사업 및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11) 2005년5월 TOPSS에서 Skill for Care로 전환되었음(<http://www.topssenglnad.net/view.asp?id=36>).

□ 국가직업자격(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제도와 돌봄서비스

- 1980년대 중반 소개된 국가직업자격(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NVQs)제도는 단일 직업훈련 및 교육체계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기존의 직업교육이 지식과 기술전달을 목적으로 실시된 성과중심적 설계였다면, 국가직업자격(NVQs) 제도는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특정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업교육, 기술훈련을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설계되었음
-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보다는 특정 직업에 부합되는 직무수행을 위한 훈련을 강조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을 근거로 하여 국가직업자격(NVQs) 제도는 훈련대상자의 능력단위(units of competence)별로 다차원적으로 설계·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영국은 국가직업자격(NVQ) 제도를 통해 돌봄서비스 인력 고용에 있어 적용되고 있는 기존 제각각의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음
- 국가직업자격(NVQ) 제도가 정착되면 모든 돌봄서비스 근로자는 국가직업자격(NVQ) 2급 또는 3급의 인력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 아울러 '현대적 도제 제도(Morden Apprenticeship)', '핵심기술(Key Skills)'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교육수준이 특히 낮은 돌봄서비스 인력이 국가직업자격(NVQ)을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음
 - 이들 프로그램은 국가직업자격(NVQ) 취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완적 방안으로서 실시되고 있음

3. 프랑스

가. 사회서비스 직업의 양성화(陽性化) 정책

□ 프랑스에서 사회서비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직업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은 1970년대 전후부터이며 사회적 직업이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사회적 근로, 사회적 근로자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도 바로 이 시기임

- 지난 20~30여년간 프랑스 사회적 직업 일자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 특히 1993년과 2002년의 10년 사이 사회적 직업 일자리 매년 6%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제3차 산업의 연평균 증가율 2.1%의 3배 가까운 수치임
- 이러한 결과는 사회서비스 직업의 양성화(陽性化) 정책에서 비롯되었음
- 기존의 사회적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비공식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직업들에 대한 양성화를 통해 사회적 직업으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 이들 직업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체계의 강화를 통해 사회적 인지도 제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음
 - 대표적으로, 보육사 직업을 들 수 있으며, 사회적 직업으로서 보육사 인정은 1977년과 1992년의 법을 통해 이루어졌음

나.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보수 교육제도 도입을 통한 사회적 직업의 질적 제고

□ 사회적 직업마다 고유의 교육과정이 실시되고 있는데 교육과정대상자는 두 종류로서, 하나는 사회적 직업에의 진출을 원하는 사람을 대

상으로 한 최초 교육(formation initiale)과 필요한 자격증(학위)의 미취득 상태에서 사회적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중 교육(formation en cours d'emploi)이 있음

- 현재 프랑스의 사회적 직업 관련 자격증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고, 프랑스의 사회적 직업 양성 교육은 사회적 직업을 질적으로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특히 인구의 고령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 사회 근로자의 평균 연령의 상승으로 사회적 직업 양성 교육의 중요성은 이전보다 더 강조되고 있음
- 프랑스 사회적 직업 양성 교육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사회적 직업 양성기관의 대부분이 비영리 단체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음
 - 320여개 양성기관의 4분의 3은 1901년에 제정된 단체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공립 고등학교, 도의회, 병원 등 공공기관임
 - 성격에 관계없이, 재원은 국가에 의해 충당되는 반면 교육 방식이나 내용은 법에서 정해진 틀 내에서 자율적으로 마련, 운영되고 있음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사회 근로자의 질적 제고(qualification)와 사회적 직업의 활성화에 대한 국가 의지가 있음
 - 즉, 사회적 직업의 활성화를 통해 그동안 비공식 영역에서 열악한 환경 하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이들 직업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였다는 것임

- 아동 교육가(EJE)의 교육 기간을 기존 2년에서 27개월로, 일반 보육사 교육이수시간을 6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가족 보육사의 교육이수시간을 12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연장한 것이 대표적 사례임
- 프랑스의 보수교육은 평생(지속) 교육(la formation professionnelle continue, FPC)로 불리며 근로 활동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식과 능력을 제고하고 직업적으로 개인의 발전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FPC의 기본 취지임
- 보수 교육에서 특이한 점은 현장에서의 수습 기회의 제공에 고용주의 직접 개입임
 - 보수 교육 자체가 고용주 단체에 의해 조직되기도 하며 자격증 취득 이전에 취업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분야 영역에서 자주 목격됨
- 보수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단순한 보수 교육이 아니라 등급이 더 높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에 대한 참여가 보장된다는 것임
 - 현재 프랑스에서는 FSFS(사회적 근로 고등 교육 자격증) 등을 비롯한 복수의 2등급 자격증 제도가 운영, 실시되고 있음
 - 일반 근로자에게 양질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직업의 질적 제고를 꾀하고 있음
 - 대학 간의 연계를 통한 복수 학위(자격증) 제도의 도입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다. 제3섹터(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한 돌봄서비스 일자리 창출

- 사회적 기업은 제3섹터의 핵심 영역으로서 최근 일자리 창출 및 사회경제 분야의 활성화를 메카니즘으로 최근 유럽에서 매우 높은 관

심을 받고 있음¹²⁾

- 세 가지 유형의 사회적 기업¹³⁾ 중 돌봄서비스와 관련되는 것은 대인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임
- 대인 서비스 사회적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혹은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공적 혜택에서 배제된 집단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유럽에서 대인 서비스 사회적 기업은 보육 분야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프랑스 역시 예외가 아님
- 프랑스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보육 서비스가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초이며, 2001년에 제정된 공익적 협동조합(SCICs)에 관한 법의 도입을 통해 활성화되었음
-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부모 탁아소(creche parentale)이며, 부모 탁아소는 시 혹은 도가 운영하는 기존의 집단 탁아소와는 달리 비영리 부모 단체에 의해 관리 운영됨
- 부모 탁아소의 종사자는 시나 동이 아닌 부모 단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음
- 부모 탁아소 제도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실적이 괄목할 만 함
 - 1980년, 10개에 불과했던 부모 탁아소는 1994년 기준, 720여개로 늘어나 부모 탁아소는 10,800여명의 아동 보육 역할 수행과 함께 3,000여개의 풀타임 일자리에 버금가는 일자리를 창출했음 (J.L. Laville, 2001:106-107)
 - 현재 부모 탁아소의 수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1,000여개에 이름
- 1990년대 초, 아동·부모·종사자 공동 보육 협회인 ACEPP의 설

12) 사회적 기업의 개념 정의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시론적 연구에 대해서는 심창학, 2007을 참조.

13) 활동영역에 따라 사회적 기업은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 지역개발 사회적 기업, 대인 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C. Borzaga and J. Defourny, 2001:351-352.

립을 등을 포함해 돌봄서비스의 일자리 창출 및 질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해 왔음

4. 일본

- 일본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개호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개호노동자에 대한 고용관리의 개선, 능력개발 및 향상 등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1992년 5월 법률 제64호로 ‘개호 노동자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 이 법률은 사업주가 고용하는 개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교육훈련 실시, 복지후생 확충, 기타 고용관리의 개선을 도모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정하고 있음
 - 후생노동성은 개호노동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호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 능력개발 및 향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이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개호노동자의 고용동향에 관한 사항, 개호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을 촉진하고 그 능력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기타 개호노동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이 있음
 - 후생노동성은 개호노동자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호고용관리개선 등 계획을 2000년에 수립하였음
 - 본 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추진되었고 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도에 투입된 예산은 총 99.4억 엔임

- 개호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의 사업으로 71.5억 엔, 개호노동자의 능력개발 및 향상사업에 12.8억 엔, 개호분야의 노동력 수요 조정기능의 정비, 강화에 15.1이 투입되었음
- 사업주는 개호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고용하는 개호노동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노동환경 개선, 교육훈련실시, 복리후생확충, 기타 고용관리 개선에 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관한 지역 도도부현 지사에 게 제출하고 인정받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정부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용보험법의 고용 안정 사업 또는 능력개발 사업으로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표 3-7> 일본의 개호노동자고용관리개선 관련시책

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개호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	인재확보 등 지원조성금	개호기반인재 확보조성금	63.0억 엔
		개호고용관리 조성금	1.0억 엔
	고용관리 개선을 위한 상담 원조사업	-	6.6억 엔
	기타	-	0.9억 엔
개호노동자의 능력 개발 및 향상	개호노동안정센터의 교육·훈련 실시	-	12.8억 엔
개호분야 노동력 수요조정기능의 정비, 강화	공공직업안정소에 의한 노동력수요조정기능 강화	-	3.3억 엔
	고령자에 의한 고령자 개호 참가 지원	-	11.8억 엔
전체			99.4억 엔

자료: 介護福祉士のあり方及びその養成プロセスの見直し等關する検討會, 2006년 4월 24일 회의 자료.

- 개호노동안정센터를 설치하여 개호노동자의 고용 및 복지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사업주, 직업소개사업자, 기타 관계자에 관한 사항과 직업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원조, 개호노동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동향·법·고용특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 및 관련법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8>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사회서비스 관련 동향 및 관련법

국가	사회서비스 관련 동향	주요 관련법·제도
미국	최소한의 공공복지 체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 사회서비스 공급 배경: a) 사회서비스를 민간 자선과 자조적 지역사회봉사의 기능으로 인식, b) 영리서비스 공급조직의 적극적 시장 진출 - 20만에 이르는 비영리조직과 880만 명의 비영리 부문 인력, 570만 명의 자원봉사자 - 사회서비스 부문 비영리부분 고용 규모: 175만('97년 기준)	메디케어(Medicare): 서비스 비용상환 정책 (reimbursement policy) 사회서비스포괄보조금 (Social Service Block Grant) 지역사회서비스포괄 보조금 (Community Service Block Grant)
영국	사회서비스와 대인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 대상별 돌봄서비스 공급의 법적 근거 구분, 아동 vs 성인 (노인) 돌봄서비스 공급에 있어 지방 정부의 강력한 재량권 인정	국민보건서비스와지역사회보호법 (NHSCCA)

<표 계속>

국가	사회서비스 관련 동향	주요 관련법·제도
영국	중앙정부는 서비스 관련 정책의 주요 골자 및 공급자 기본 자격기준, 소비자 권리 보장, 서비스 국가표준 제시 이용자 참여를 강조하고 대인 사회서비스(돌봄서비스) 계획과 전달에 있어 적극적 관리기제 도입	지역사회보호와직접지불에관한법 (CCDPA)
프랑스	입금생활자 및 그 가족을 주요 보호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및 실업부조 체계 구축 최저생활수준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적 미니멈(minima sociaux)' GDP 대비 전체 공공사회지출 비율: 28.5% 중에서('03년 기준) - 사회서비스 관련 지출(2.0%), 보건 서비스 관련 지출(7.2%)	『지방화법』: 중앙 사회활동국(DGAS)·광역자치단체위생 및사회문제국(DRASS) 기초자치단체 사회활동기초센터(CCAS) or 사회활동초차체통합지방센터(CLIC)
일본	전체 사회보장급여비 중 노인관련 지출: 43.4%('05년 기준) - 개호보험제도 도입 이후 재가보호 서비스 및 주간보호 급증 전체 사회보장급여비 중 아동가족 관련 지출: 3.5%('05년 기준) - 아동인구 감소 등으로 유아원 감소, 보육소, 장애아동 서비스 시설(지적장애아통원시설, 지체부자유아 통원 시설 등) 증가	개호보험제도 『개호노동자고용관리개선등에 관한법률』의 제정

자료 1) 강혜규 외 『사회서비스 인력운영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2) 박세경 외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환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사회서비스, 아동 돌봄 서비스, 가사, 간병 서비스 부분의 고용 특성을 다음 <표 3-9>, <표 3-10>, <표 3-11>에 제시하였음

<표 3-9>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특성

국가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특성
미국	<p>사회서비스 고용창출의 쟁점보다는 인력부족과 인력의 질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원조(social assistance) 영역 고용: 18,298천명('07년 기준) - 돌봄서비스(personal care and service) 고용: 4,660천명('07년 기준)
영국	<p>노동집약적 저임금 직종으로 특성상 비공식적 고용계약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서비스 관련 핵심인력: 922,000명('04년 기준) - 공공부문 돌봄서비스 관련 고용규모: 216,000명('05년 기준) - 광의의 돌봄서비스 인력: 1,598,000명('04년 기준) - 여성 고용비율: 아동돌봄 인력의 96%, 재가돌봄 인력의 91%
프랑스	<p>‘사회활동(action sociale)’ 사회서비스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 ‘사회근로(le travail social)’와 ‘사회적 직업(professions sociales)’ 사회적 직업(사회부조, 특수교육, 엔터테인먼트, 보육영역) 고용규모: 598,800명('02년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고용비율: 86% - 시간제 고용비율: 29% - 주요소속·활동기관: 재가서비스(23%), 사회서비스시설 및 의료시설(15%), 중앙정부 및 사회보호기구(2%), 지방자치단체(6%), 광역자치단체(7%), 무소속·개인활동(38%)
일본	<p>사회보험·사회복지·개호사업 부문 고용규모 지속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분야 전체 고용자수: 1,398,790명('04년 기준) - 전체 고용자 중 상근근로자: 1,252,781명(89.6%)

자료 1) 강혜규 외(2008). 『사회서비스 인력운영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박세경 외(2007).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환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3-10>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아동 돌봄서비스 부문 고용특성

국가	보육서비스 관련 고용특성	주요 자격기준 및 훈련과정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고용 규모: 1,280천명('05년 기준 BLS 자료) - 보육관련 유급 종사자: 2,301천명('99년 기준 CCOW 자료) * 사회서비스 시장화·민영화 대표영역: 전체 보육서비스의 41% 민간에서 담당 *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보육시설 종사자 추정 고용증가율 20% 내외, 연간 창출 일자리 수 39,96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州)정부별 다양한 자격 기준 - 아동발달사 자격증(child oevaluation Associates, CDA): 18세 이상, 480시간 이상 실무경력, 지난 5년간 120시간 이상 보수교육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 및 아동돌봄서비스의 공급은 주로 자원 봉사자를 포함한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제공 a) 공공부문의 서비스는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제공 b) 14세 이하 아동의 돌봄과 교육, 놀이서비스 제공 c) 대상아동의 연령별, 주요서비스 내용별 직종 다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만하게 전개되던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체계를 진입단계(induction level) 포함 5급까지로 구분하여 시행 - 현장 서비스 제공인력은 보통 2급 내지 3급 자격증 소지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사(assistante maternelle): 377천명('05년 기준) - 일반보육사 80%, 가족보육사 20% a) 일반보육사(assistante maternelle): 보육사 집에서 낮시간 동안 6세 이하 아동보호 b) 가족보육사(assistante familiale): 24시간 21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 여성 보육사 비율: 100%, 평균연령 45세, 전일제 고용 72%, 시간제 고용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보육사: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전제하지 않음 단, 광역자치단체 교부 인증서 필요, 기본이수과정 120시간 - 가족보육사: 예비수습(60시간)과 능력함양 교육훈련과정(240시간)으로 구성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소 수의 증가: 22,199세고('00) → 22,624개소('05) - 보육사 고용증가: 274,998명('00) → 306,253명('05) - 공립보육사의 규모가 사립보육사 수보다 많음 a) 남성 보육사 비율: 공립(1.0%), 사립(1.9%) b) 보육사자격증 소지율: 공립(93.9%), 사립(9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사: 아동복지법 근거, 후생노동대신 지정 보육사 양성학교 또는 시설과정 수료 후 취득, 국가공인자격이지만 시험은 도도부현 단위 실시

자료 1) 강혜규 외(2008). 『사회서비스 인력운영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박세경 외(2008).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환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3-11>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가사·간병서비스 부문 고용특성

국가	가사·간병서비스 관련 고용	주요 자격기준 및 훈련과정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병인(nursing aides): 1,262,000명 - 방문간호도우미(home health aides): 57,700명 - 가정봉사원(personal and home care aides): 366,600명 *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가정봉사원 추정 고용증가율 41%, 연간 창출 일자리 수 39,96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州)정부별 다양한 자격기준 -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가정봉사원 파견 담당기관이 준수해야 할 교육훈련 명시 - NAHC: 교육과정 이수(75시간)시 취득, 의무조항 아님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서비스의 대표적 유형: 가사지원(home helps 또는 home care)-재가돌봄인력(home carer) - 노인 돌봄서비스 부문 고용인력(SOC 2000문류, '00년 기준): 674,862명 - 여성인력 비율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간병서비스를 비롯한 노인 돌봄서비스 인력의 80%가 관련 자격증 소지 않고 있으며, 관련 교육·훈련 경험 없음 * 국가직업자격(NVQ)제도: '08년까지 재가돌봄 인력의 50% 이상이 NVQ 2급 취득 권고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간병서비스 여성인력 79%, 평균연령 40.5세 - 사회서비스 조사 중 여성인력 비율 95% - 시간제 고용비율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체계: 320여개에 달하는 사회적근로 양성 학교(EFIS), 자격증 등급별, 수준별 차별화된 교육훈련 및 자격증 부여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호보험제도 중 재가서비스: 방문개호, 방문입욕개호, 통소재활, 단기입소생활보호,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 특정시설입소자생활개호 등 포함 - 방문개호 인력 규모: 72,178('00) → 400,284('05) - 홈헬퍼(1, 2, 3급)규모: 54,812('00) → 324,772('05) - 방문개호서비스 여성인력 비율: 91.8% - 방문개호서비스 인력 평균연령: 44.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호복지사: 양성시설 2년제, 1,650시간, 복지계 고등학교 졸업·개호현장 3년이상 근무 - 홈헬퍼(기본교육시간) 1급(230시간)-1, 2급 관리 2급(130시간)-신체개호전반, 전문 방문수발 - 3급(50시간)-생활원조 서비스

자료 1) 강혜규 외(2008). 『사회서비스 인력운영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박세경 외(2007).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환경 연구』.

제3절 시사점

-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 사회서비스 고용조사에서 실시된 이 분야 인력구복의 원인에 대한 공급기관 운영자 의견조사 결과 높은 이직율의 원인으로 낮은 임금수준, 인력의 소진, 이용자의 높은 서비스 기대수준, 경력관리의 한계, 장시간 근로문제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사추세츠 주에서는 6대 고용촉진 및 유지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음
 - 6대 전략에는 사회서비스 고용정책의 통합적 접근, 사회서비스 부문의 직업정체성 확립, 고용조건의 향상, 인력관리의 표준화, 채용과정의 체계화 및 지원체계 수립, 과학적/객관적 고용정보수집 체계의 구축 및 활용이 포함되어 있음

- 미국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은 연방정부의 인력투자법(WIA)이나 빈곤가정에 대한 한시적 지원프로그램(TANF)과 같이 장기요양서비스 등 돌봄서비스의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들이 주된 것임

- 영국 보건부는 사회적 돌봄인력전략위원회 및 실행그룹을 창설하여 이 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개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
 - 효과적으로 사회돌봄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서 보건부는 2008년의 경우 3월 한달간 TV, 라디오, 신문 등을 이용하여 돌봄서비스를 홍보하고 인력을 모집하였음
 - 돌봄 고용주 실천강령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질을 고양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영국에서 돌봄서비스 인력의 열악한 고용조건 문제는 지속

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낮은 대우와 자격조건 부족 등의 이슈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영국은 돌봄 서비스 고용 현대화 전략에 기반하여 돌봄서비스 인력의 자질 향상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국가 직업교육훈련 및 고용전략을 추진하였음
 -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해서 서비스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마련하였으며 이것은 국가직업자격제도와 연계하여 관리·운영되도록 하고 있음
 - 영국은 국가직업자격제도를 통하여 돌봄서비스 인력고용에 있어 적용되고 있는 기존 제각각의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대체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였음. 국가직업자격제도가 정착이 되면 모든 돌봄서비스 근로자는 국가직업자격 2급과 3급 인력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 프랑스의 경우 1992년에 기존 보육사 자격을 공인보육사로 국가자격화하고 공인보육사를 고용할 경우 보육비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음
 - 국가 지원 제도의 시행으로 보육혜택을 받지 못했던 많은 유자녀가정이 공인보육사를 고용하게 되었고, 보육사 역시 비공식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던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음
 - 공인보육사 고용가족 지원제도가 도입되기 전 보육사 숫자는 15만여명이었는데 이 제도 도입이후 3년여만에 2배로 증가된 것은 이 제도의 효과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임

- 프랑스에서는 사회서비스 직업의 양성화 정책을 통해 사회적 직업으

로 인정받지 못한 채 비공식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직업들에 대한 양성화를 통해 사회적 직업으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 이들 직업에 대한 교육 및 훈련체계의 강화를 통해서 사회적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 이러한 대인서비스 사회적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혹은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공적 혜택에서 배제된 집단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미국 등 선진국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대 국민 서비스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고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프랑스, 영국 등은 이 분야 종사인력의 수준을 높이고 해당 직업의 양성화를 위해서 관련 자격을 국가자격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음
- 이러한 접근이 대국민 서비스 확대와 질적 향상을 거두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창출로 연계되었음을 알 수 있음

제4장

사회서비스 분야 산업 및 직업 동향: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제1절 미국

1. 미국의 사회서비스업 동향

- 사회서비스업의 생산액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6.4%씩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 산업 전체 대비 생산액 비중은 2001년 0.11%에서 2009년 0.12%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서비스 분야의 생산액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5.6%씩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 산업 전체 대비 생산액 비중은 2001년 1.4%에서 조금씩 증가하여 2009년 2.0%를 차지하고 있음
 - 의료·보건서비스 분야의 생산액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6.6%씩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 산업 전체 대비 생산액 비중은 2001년 0.09%에서 2009년 0.10%로 사회서비스업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생산액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5.4%씩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 산업 전체 대비 생산액 비중은 2001년 0.01%에서 정체상태를 보이며 2008년까지 1.0%를 유지하고 있음

<표 4-1> 사회서비스업 생산액(비중) 추이

(단위: 십억달러, %)

		2001	2003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01~'08
서비스 산업 전체		10,785.9 (100.00)	11,705.3 (100.00)	13,523.4 (100.00)	14,388.1 (100.00)	15,177.1 (100.00)	15,548.8 (100.00)	5.4
사회 서비스업 분야별	교육서비스	153.8 (0.01)	163.4 (0.01)	184.8 (0.01)	197.4 (0.01)	210.8 (0.01)	224.9 (0.01)	5.6
	의료·보건 서비스	963.4 (0.09)	1,112.1 (0.10)	1,263.9 (0.09)	1,333.7 (0.09)	1,426.7 (0.09)	1,508.8 (0.10)	6.6
	사회복지 서비스	93.5 (0.01)	105.5 (0.01)	113.9 (0.01)	119.6 (0.01)	128.7 (0.01)	134.9 (0.01)	5.4
	계	1,210.7 (0.11)	1,381.0 (0.12)	1,562.6 (0.11)	1,650.7 (0.11)	1,766.2 (0.11)	1,868.6 (0.12)	6.4

자료: BEA(2010). Industry Economic Accounts.

- 사회서비스업의 부가가치액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6.4%씩 증가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율은 2001년 60.2%에서 증가와 하락을 반복하며 2009년 60.9%로 상승하였음
 - 교육서비스 분야의 부가가치액의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사회서비스업 분야 중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고, 부가가치율은 2001년 57.7%에서 꾸준히 성장하여 2006년 65.2%를 기록하고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09년 64.9%로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 의료·보건서비스 분야의 부가가치액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연

평균 6.4%씩 증가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율은 2001년 60.8%에서 감소세를 보이며 2008년에 60.0%를 기록함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부가가치액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6.6%씩 증가하고 있고, 부가가치율은 2001년 58.8%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08년 64.0%를 기록함

<표 4-2> 사회서비스업 부가가치액(부가가치율) 추이 (단위: 십억달러, %)

		2001	2003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01~'08
서비스 산업 전체		6,781.0 (62.9)	7,374.8 (63.0)	8,348.2 (61.7)	8,840.9 (61.4)	9,309.3 (61.3)	9,553.6 (61.4)	5.0
사 회 서 비 스 업 분 야 별	교육 서비스	88.7 (57.7)	106.1 (64.9)	120.1 (65.0)	128.7 (65.2)	137.1 (65.0)	145.9 (64.9)	7.4
	의료·보건서비스	585.5 (60.8)	676.8 (60.9)	760.5 (60.2)	810.0 (60.7)	857.6 (60.1)	905.1 (60.0)	6.4
	사회복지서비스	55.0 (58.8)	64.4 (61.0)	72.8 (63.9)	76.4 (63.9)	82.0 (63.7)	86.3 (64.0)	6.6
	계	729.2 (60.2)	847.3 (61.4)	953.4 (61.0)	1,015.1 (61.5)	1,076.7 (61.0)	1,137.3 (60.9)	6.6

자료: BEA(2010). Industry Economic Accounts.

□ 사회서비스업의 GDP 비중은 2001년 0.2%에서 소폭의 증가와 하락을 반복하며 2008년 0.2%를 차지하고 있고, 성장기여도는 2001년 0.2% 수준을 유지하며 2008년 0.2%를 기록함

- 교육서비스 분야의 GDP 비중은 2001년 0.9%에서 조금 상승하여 2008년 1.0%를 차지하고 있고, 성장기여도는 2001년 -0.01%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2008년 0.02%를 기록함
- 의료·보건서비스 분야의 GDP 비중은 2001년 5.6%에서 2003년

6.1%로 상승한 이후 2007년까지 정체상태를 보이고 2008년 6.3%를 차지하고 있고, 성장기여도는 2001년 0.17%에서 증가와 하락을 반복하며 2008년 0.21%를 기록함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GDP 비중은 2001년 0.5%에서 정체상태를 보이며 2008년 0.6%를 차지하고 있고, 성장기여도는 2001년 0.01%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2009년 0.01%를 기록함

<표 4-3> 사회서비스업 GDP 비중(성장기여도)

(단위: %, p)

		2001	2003	2005	2006	2007	2008
GDP 성장률(%)		1.1	2.5	3.1	2.7	2.1	0.4
서비스 산업 전체		65.9 (1.95)	66.2 (1.47)	65.9 (2.44)	65.9 (2.01)	66.0 (1.51)	66.2 (0.28)
사회서비스업분야별	교육서비스	0.9 (-0.01)	1.0 (0.01)	1.0 (-0.03)	1.0 (0.01)	1.0 (0.02)	1.0 (0.02)
	의료·보건서비스	5.6 (0.17)	6.1 (0.22)	6.0 (0.14)	6.0 (0.23)	6.1 (0.11)	6.3 (0.21)
	사회복지서비스	0.5 (0.01)	0.6 (0.03)	0.6 (0.02)	0.6 (0.01)	0.6 (0.02)	0.6 (0.01)
	계	7.0 (0.2)	7.7 (0.3)	7.6 (0.1)	7.6 (0.3)	7.7 (0.2)	7.9 (0.2)

자료: BEA(2010). Industry Economic Accounts.

□ 사회서비스업의 생산유발효과는 1995년 1.603에서 2000년 1.743으로 상승한 후 소폭 하락하여 2005년 1.723을 기록하였으나 1995년 대비 생산유발효과가 다소 강화되었음

- 교육서비스 분야 생산유발효과는 1995년 1.503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00년 1.775를 정점으로 2005년 하락하여 1.738을 기록함
-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생산유발계수는 1995년 1.702에서 정체상태를 보이며 2005년 1.707을 기록함

<표 4-4> 사회서비스업 생산유발계수 추이

		1995년	2000년	2005년
서비스 산업 전체		1.742	1.752	1.779
사회 서비스업 분야별	교육서비스	1.503	1.775	1.738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	1.702	1.710	1.707
	평균	1.603	1.743	1.723

자료: OECD(2010). STAN Input Output Database.

2. 미국의 사회서비스업 직업 동향

가. 사회서비스업 직업 분류

-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 통계청에서 직업들을 범주화하여 직업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및 제공에 활용하는 표준직업분류(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OC)를 기준으로 사회서비스업 직업을 선정
-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회서비스업은 표준직업분류에서 대분류 사회서비스직(21-0000) 교육, 훈련, 도서관 관련직(25-0000), 의료 전문가 및 기사직(29-0000), 의료보조 관련직(31-0000)에 분류되어 있음
 - 사회서비스직(21-0000)에서는 상담전문가·사회복지사·사회복지 관련 종사자(21-1000)가 포함됨
 - 교육, 훈련, 도서관 관련직(25-0000)에서는 유치원·초등학교·초·중고등학교 및 특수교사(25-2000)와 기타 교사 및 강사(25-3000)가 포함됨
 - 의료 전문가 및 기사직(29-0000)에서는 의료 진단·치료 전문가(29-1000)와 의료기사(29-2000)가 포함됨

- 의료보조 관련직(31-0000)에서는 간호·정신치료 및 가정보건조력원(31-1000), 작업치료 및 물리치료보조원 및 조력원(31-2000), 기타 의료보조원(31-9000)이 포함됨

<표 4-5> 미국표준직업분류(SOC)의 사회서비스업 관련 직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02 전문직 (Professional)	21-0000 사회서비스직 (Community and Social Service Occupations)	21-1000 상담전문가 · 사회복지사·사회복지관련 종사자 (Counselors)	21-1010 상담전문가	21-1011 약물남용 및 행동질환상담전문가		
				21-1012 교육, 직업 및 학교상담전문가		
				21-1013 결혼 및 가정문제치료전문가		
				21-1014 정신건강상담전문가		
				21-1015 재활상담전문가		
				21-1019 기타 상담전문가		
			21-1020 사회복지사	21-1021 아동, 가정 및 학교 사회복지사		
				21-1022 의료 및 공공보건 사회복지사		
				21-1023 정신보건 및 약물남용 사회복지사		
				21-1029 기타 사회복지사		
				25-2010 유아원 및 유치원 교사	25-2011 유아원 교사	
					25-2012 유치원 교사	
					25-2020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	25-2021 초등학교 교사
						25-2022 중학교 교사
25-2023 중학교 직업/기술 교육 교사						
25-2030 고등학교 교사	25-2031 고등학교 교사					
	25-2032 고등학교 직업/기술 교육 교사					

<표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02 전문직 (Professional)	25-0000 교육, 훈련, 도서관 관련직 (Education, Training, and Library Occupations)	25-2000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	25-2050 특수교육 교사	25-2051 유아원 특수교육 교사		
				25-2052 유치원 및 초등학교 특수교육 교사		
				25-2053 중학교 특수교육 교사		
				25-2054 고등학교 특수교육 교사		
				25-2059 기타 특수교육 교사		
		25-3000 기타 교사 및 강사	25-3010 평생교육 및 성인보수교육 교사	25-3011 평생교육 및 성인보수교육 교사	25-3021 자기계발교사	
					25-3020 자기계발교사	
	25-3021 자기계발교사					
	25-3090 다양한 교사 및 강사	25-3099 기타 교사 및 강사				
	29-0000 의료 전문가 및 기사직 (Healthcare Practitioners and Technical Occupations)	29-1000 의료 진단 및 치료 전문가	29-1010 지압사	29-1011 지압사	29-1021 일반 치과의사	
					29-1020 치과의사	29-1022 구강 및 턱교정 외과의
						29-1023 치열교정의사
						29-1024 치과보철의사
					29-1029 기타 전문 치과의사	29-1031 영양사
29-1030 영양사					29-1041 검안사	
29-1040 검안사					29-1051 약사	
29-1050 약사			29-1061 마취과의사			
29-1060 내과의사 및 외과의사			29-1062 가정의학과 의사			
			29-1063 일반 내과의사			
			29-1064 산부인과의사			
			29-1065 일반 소아과의사			
			29-1066 정신과의사			
			29-1067 외과의사			
	29-1069 기타 내과의사 및 외과의사					

<표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02 전문직 (Professional)	29-0000 의료 전문가 및 기사직 (Healthcare Practitioners and Technical Occupations)	29-1000 의료 진단 및 치료 전문가	29-1070 의사보조사	29-1071 의사보조사
			29-1080 발치료전문의	29-1081 발치료전문의
			29-1120 치료사	29-1122 작업치료사
				29-1123 물리치료사
				29-1124 방사선치료사
				29-1125 레크리에이션치 료사
				29-1126 호흡치료사
				29-1127 언어병리학자
				29-1128 운동생리학자
			29-1129 기타 치료사	
			29-1130 수의사	29-1131 수의사
			29-1140 등록간호사	29-1141 등록간호사
			29-1150 마취간호사	29-1151 마취간호사
			29-1160 산과간호사	29-1161 산과간호사
		29-1170 임상간호사	29-1171 임상간호사	
		29-1180 청각학자	29-1181 청각학자	
		29-1190 다양한 의료 진단 및 치료 전문가	29-1199 기타 의료 진단 및 치료 전문가	
		29-2000 의료기사 및 기술공	29-2010 임상병리사 및 기술공	29-2011 임상병리사
				29-2012 임상병리기술공
			29-2020 치과위생사	29-2021 치과위생사
				29-2030
			29-2032 초음파기사	
			29-2033 핵의학기사	
			29-2034 방사선사	
			29-2035 MRI기사	
			29-2040 응급구조사	29-2041 응급구조사
			29-2050 보건진료원	29-2051 영양관리사
29-2052 약국보조원				
29-2053 정신의학전문 기사				

<표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02 전문직 (Professional)	29-0000 의료 전문가 및 기사직 (Healthcare Practitioners and Technical Occupations)	29-2000 의료기사 및 기술공	29-2050 보건진료원	29-2054 호흡기치료전문 기사	
				29-2055 외과기술자	
				29-2056 수의사 보조	
				29-2057 안과의료기사	
			29-2060 간호조무사	29-2061 간호조무사	
			29-2070 의무기록사	29-2071 의무기록사	
			29-2080 안경사	29-2081 안경사	
		29-2090 다양한 의료 기사 및 기술공	29-2091 보장구사		
			29-2092 보청기전문가		
			29-2099 기타 의료기사 및 기술공		
		29-9000 기타 의료기사 및 전문직	29-9010 산업안전·보 건전문가 및 기술공	29-9011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29-9012 산업안전·보건 기술공	
			29-9090 다양한 의료 기사 및 전문직	29-9091 운동치료사	
				29-9092 유전상담원	
29-9099 기타 의료기사 및 전문직	29-9099 기타 의료기사 및 전문직				
03 서비스직 (Service)	31-0000 의료보조 관련직 (Healthcare Support Occupations)	31-1000 간호, 정신 치료 및 가정 보건조력원	31-1010 간호, 정신치 료 및 가정보건조력원	31-1011 가정보건조력원	
				31-1013 정신치료조력원	
				31-1014 간호조력원	
				31-1015 병원위생사	
				31-2011 작업치료보조원	
		31-2000 작업치료 및 물리치료보조원 및 조력원	31-2010 작업치료보조 원 및 조력원	31-2012 작업치료조력원	
				31-2021 물리치료보조원	
		31-9000 기타 의료보조원	31-9010 마사지치료사	31-2022 물리치료조력원	
				31-9090 다양한 의료 보조원	31-9011 마사지치료사
					31-9091 치과보조원
31-9092 의료보조원					
31-9093 의료장비준비원					

<표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03 서비스직 (Service)	31-0000 의료보조 관련직 (Healthcare Support Occupations)	31-9000 기타 의료보조원	31-9090 다양한 의료 보조원	31-9094 의료필사원
				31-9095 약국보조원
				31-9096 수의과 보조 및 실험실 동물 관리인
				31-9097 채혈사
				31-9099 기타 의료보조원

출처: Bureau of Labor Statistics(2009). 2010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나. 사회서비스업 직업별 인력 수요 전망

- 취업자 수는 의료 진단 및 치료 전문가가 가장 많고, 취업자 증가율은 작업치료 및 물리치료 보조원 및 조력원이 가장 많이 상승할 전망이다
 - 의료 진단 및 치료 전문가의 인력 수요는 2008년 463만 명에서 2018년 564만 명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작업치료 및 물리치료 보조원 및 조력원의 인력 수요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3.0% 상승할 전망이며, 그 뒤를 이어 간호·정신치료 및 가정보건 조력원이 2.7%임

- 취업자 비중은 의료 진단 및 치료 전문가가, 취업자 비중 증가율은 간호·정신치료 및 가정보건 조력원이 가장 많이 상승할 전망이다
 - 의료 진단 및 치료 전문가의 취업자 비중은 2008년 3.1%에서 2018년 3.4%로 상승할 전망이다
 - 취업자 비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직업은 간호·정신치료 및 가정보건 조력원(1.7%)이고 그 뒤를 이어 기타 교사 및 강사(1.3%)임

<표 4-6> 사회서비스업 직업중분류 인력 수요 전망

(단위: 천명, %)

	취업자 (취업자 비중)			취업자 증감 (취업자 비중 증감)		연평균 증감률 (취업자 비중 증감률)		
	'00	'08	'18	'00~'08	'08~'18	'00~'08	'08~'18	
전직업	145,594	150,932	166,206	5,338	15,274	0.5	1.0	
사 회 서 비 스 업	21-1000 상담전문가, 사회 복지사, 사회 복지관련	1,331 (0.9)	1,945 (1.3)	2,295 (1.4)	614 (0.4)	350 (0.1)	4.9 (4.7)	1.7 (0.7)
	25-2000 유치원, 초 등학교, 중·고등 학 교 및 특수학교 교사	4,284 (2.9)	4,522 (3.0)	5,169 (3.1)	238 (0.1)	647 (0.1)	0.7 (0.4)	1.3 (0.3)
	25-3000 기타 교사 및 강사	901 (0.6)	1,099 (0.7)	1,306 (0.8)	198 (0.1)	207 (0.1)	2.5 (1.9)	1.7 (1.3)
	29-1000 의료 진단 및 치료 전문가	3,912 (2.7)	4,630 (3.1)	5,646 (3.4)	718 (0.4)	1,016 (0.3)	2.1 (1.7)	2.0 (0.9)
	29-2000 의료기사 및 기술공	2,191 (1.5)	2,719 (1.8)	3,280 (2.0)	528 (0.3)	561 (0.2)	2.7 (2.3)	1.9 (1.1)
	29-9000 기타 의료 기사 및 전문직	266 (0.2)	142 (0.1)	165 (0.1)	-124 (-0.1)	23 (0.0)	-7.5 (-8.3)	1.5 (0.0)
	31-1000 간호, 정신 치료 및 가정보건 조력원	2,053 (1.4)	2,454 (1.6)	3,194 (1.9)	401 (0.2)	740 (0.3)	2.3 (1.7)	2.7 (1.7)
	31-2000 작업치료 및 물리치료 보조원 및 조력원	105 (0.1)	144 (0.1)	193 (0.1)	39 (0.0)	49 (0.0)	4.0 (0.0)	3.0 (0.0)
	31-9000 기타 의료 보조원	1,038 (0.7)	1,384 (0.9)	1,743 (1.0)	346 (0.2)	359 (0.1)	3.7 (3.2)	2.3 (1.1)
	계	16,081 (11.0)	19,039 (12.6)	22,991 (13.8)	2,958 (1.6)	3,952 (1.2)	2.1 (1.7)	1.9 (0.9)

출처: Bureau of Labor Statistics(2010). Employment Projections Program.

다. 사회서비스업 유망 직업

- 미국 노동성에서는 향후 10년간 고용의 증가를 중심으로 장기고용예측을 통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가장 빠르게 직업의 종사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한 성장직업(fastest growing occupation) 30을 선정하여 발표함
 - 성장직업 30에 속해있는 사회서비스업 직업으로는 운동치료사, 물리치료조력원, 치과위생사, 의사 보조, 치과보조원, 의료보조원, 물리치료보조원, 의사, 작업치료조력원, 약국보조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보조원 등이 있음

<표 4-7> 직업성장률로 본 유망 직종(2008-2018)

(단위: 천명)

직업명	직업코드	취업자 수		증감	
		2008	2018	수	%
운동치료사	29-9091	16.3	22.4	6.0	36.95
물리치료조력원	31-2022	46.1	62.8	16.7	36.29
치과위생사	29-2021	174.1	237.0	62.9	36.14
수의사 보조	29-2056	79.6	108.1	28.5	35.77
치과보조원	21-9091	295.3	400.9	105.6	35.75
의료보조원	31-9092	483.6	647.5	163.9	33.90
물리치료보조원	31-2021	253.6	334.9	81.3	32.05
수의사	29-1131	59.7	79.4	19.7	32.95
작업치료조력원	31-2012	7.8	10.2	2.4	30.74
약국보조원	29-2052	326.3	426.0	99.8	30.57
물리치료사	29-1123	185.5	241.7	56.2	30.27
작업치료보조원	31-2011	26.6	34.6	7.9	2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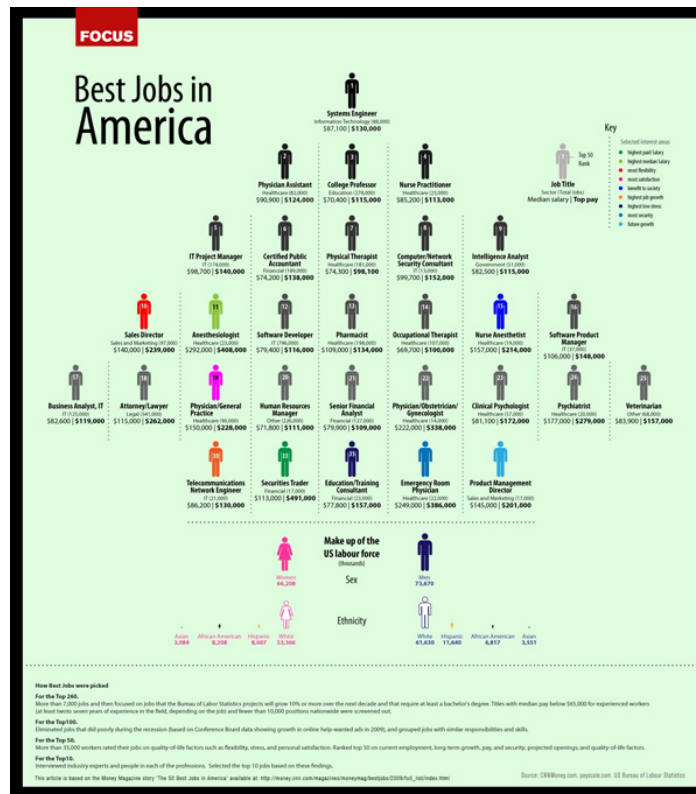
출처: Bureau of Labor Statistics(2010). Employment Projections Program.

- 미국의 Focus.com가 발표한 미국 최고 유망직업(Best job in America) 중 사회서비스업 직업으로는 의료보조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마취

전문의사, 약사, 작업치료사, 마취 전문 간호사, 의사 등이 있음

- 2010년 미국 Focus.com은 머니매거진(Money Magazine), 연봉 조사 웹사이트 페이스케일(PayScale), BLS의 고용 정보를 바탕으로 학사 학위가 필요하고 10년 동안 10%이상 성장할 전망인 직업 7,000여개를 분석함(CPST, 2010)
- 현재 고용, 장기간 성장, 연봉, 안정성, 일자리 전망, 생활 수준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최고의 유망 직업 50을 선정함(CPST, 2010)

[그림 4-1] 미국 최고의 유망 직업



출처: Focus. (2010). The Best Jobs in America. Retrieved from <http://www.focus.com/fyi/human-resources/best-jobs/>

- 미국 최고의 유망 직업 중 사회서비스업 직업으로는 의료보조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마취 전문 의사, 약사, 작업치료사, 마취 전문 간호사, 의사 등이 있음

제2절 일본

1. 일본의 사회서비스 분야 산업동향

- 일본의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명목부가가치 비중은 2000년 21.9%에서 2008년에는 25.0%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2000~2008년 연평균 실질 부가가치성장률(2000년 기준)을 보면, 전산업 평균이 0.8% 성장하였고, 제조업은 1.5%, 농업은 0.4%, 서비스업은 2.3%로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견실한 추세임(사공목, 2010)

<표 4-8> 일본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

(단위: %)

	명목부가가치 비중			고용 비중			부가가치성장률
	2000	2005	2008	2000	2005	2008	'00-'08
농림수산업	1.9	1.6	1.6	6.4	5.6	5.4	1.5%
제조업	23.8	23.2	22.0	20.7	18.5	18.4	0.4%
서비스업	21.9	23.2	25.0	31.2	36.7	37.8	2.3%

자료: 사공목, (2010). 일본 산업구조 비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일본 내각부, (2010).『국민경제계산연보』.

- 일본정부는 「산업구조비전 2010」에서 중점 육성대상 5개 산업분야 중 하나로 사회과제 해결 서비스를 제시함
 - 「산업구조비전 2010」의 중점 육성대상 5개 산업분야는 신홍국 인프라 시장, 차세대 에너지 솔루션, 사회과제 해결 서비스, 감성·문화산업, 첨단 분야임
 - 사회과제 해결 서비스의 주요 업종은 건강(의료, 의료기기, 의약품, 간병), 육아관련, 생활인프라 서비스 등을 포함함
 - 사회과제 해결 서비스 육성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는 의료서비스의 국제전개 추진, 외국인 의료투어 활성화, 의료체제 비자 창설 등이 있음
 - 사회과제 해결 서비스 분야의 2020년 시장 규모는 2007년 대비 12.9조엔 늘어난 30.5조엔이 될 전망임
 - 사회과제 해결 서비스 분야의 2020년 취업자 수는 2007년 취업자 211.8만명에서 113.4만명 증가한 325.2만명으로 전망됨

<표 4-9> 사회과제 해결 서비스 분야

(단위: 조엔, 만명)

전략 분야	주요 업종	주요 전략	시장규모 전망과 증가분		취업자 수 증가 전망		
			2020년 시장 규모	2007년부터 증가분	2007년 취업자	2020년 취업자	2007년부터 증가분
사회과제 해결 서비스	건강(의료, 의료기기, 의약품, 간병), 육아관련, 생활인프라 서비스, 전자정부, 순환형산업(도시광산 등)	의료서비스의 국제전개 추진, 외국인 의료투어 활성화, 의료체제 비자 창설 등	30.5	12.9	211.8	325.2	113.4

자료: 사공목. (2010). 일본 산업구조 비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경제산업성. (2010). 「산업구조비전 2010」.

2. 일본의 사회서비스 분야 직업동향

가. 사회서비스업 직업 분류

- 본 연구에서는 일본 총무성에서 개인이 맡는 직무들 간의 유사성에 따라 직업을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일본표준직업분류(Japan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JSOC)를 기준으로 사회서비스업 직업을 선정함
 -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회서비스업은 표준직업분류에서 대분류 전문적·기술적 직업 종사자(B)와 서비스 직업 종사자(E)에 분류되어 있음
 - 전문적·기술적 직업 종사자(B)에서는 의사·치과의사·수의사·약제사(12), 공중보건간호사·조산사·간호사(13), 의료기술자(14), 기타 보건 의료 종사자(15), 사회 복지 전문직업 종사자(16), 교사(19)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서비스 직업 종사자(E)에는 돌봄서비스 종사자(36), 의료서비스 종사자(37)이 포함되어 있음

<표 4-10> 일본표준직업분류(JSOC)의 사회서비스업 관련 직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B. 전문적·기술적 직업 종사자	12.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제사	121. 의사
		122. 치과의사
		123. 수의사
		124. 약제사
	13. 공중보건간호사, 조산부, 간호사	131. 공중보건간호사
		132. 조산부
		133. 간호사

<표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B. 전문적·기술적 직업 종사자	14. 의료기술자	141. 진료 방사선 기사
		142. 임상검사기사
		143. 임상연구기술자
		144.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145. 시각교정사, 언어치료사
		146. 치과위생사
		147. 치과기공사
	15. 기타 보건 의료 종사자	151. 영양사
		152. 안마사, 지압치료사, 침술사, 뜸치료사, 유도 정형외과 의사
		159. 그 외 보건 의료 종사자
	16. 사회 복지 전문직업 종사자	161. 복지 상담 지도 전문원
		162. 복지 시설 지도 전문원
		163. 보모·보부
		169. 기타 사회 복지 전문직업 종사자
	19. 교사	191. 유치원 교사
		192. 초등학교 교사
		193. 중학교 교사
		194. 고등학교 교사
		195. 고등 전문학교 교사
		196. 특별지원교육 학교 교사
197. 직업학교 교사		
198. 대학 교수		
199. 기타 교사		
E. 서비스 직업 종사자		36. 돌봄서비스 종사자
	362. 방문간병인	
	37. 의료서비스 종사자	371. 노인간병인
		372. 치과보조원
		379. 기타 돌봄서비스 종사자

출처: Ministry of Internatio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2010). Japan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Rev. 5th, December 2009).

나. 사회서비스업 직업별 인력 수요 전망

- 직업소분류별 취업자 수 전망을 살펴보면 2020년 취업자 수는 간호사가 가장 많고, 취업자 증가율은 기타 보험 의료 종사자가 가장 많이 상승할 전망이다
 - 간호사의 인력 수요는 2010년 105만 명에서 2020년 104만 명으로 감소하나 사회서비스 분야 중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음
 - 기타 보험 의료 종사자의 인력 수요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7% 상승할 전망이며, 그 뒤를 이어 수의사와 특수학교 교사가 각각 1.1%임

- 취업자 비중은 의료 진단 및 치료 전문가가, 취업자 비중 증가율은 간호·정신치료 및 가정보건 조력원이 가장 많이 상승할 전망이다
 - 간호사의 취업자 비중은 2010년 1.67%에서 2020년 1.72%로 상승할 전망이다
 - 취업자 비중 증가가 가장 높은 직업은 간호·정신치료 및 가정보건 조력원(1.7%)이고 그 뒤를 이어 기타 교사 및 강사(1.3%)임

<표 4-11> 사회서비스 분야 직업중분류 인력 수요 전망

(단위: 천명, %)

		취업자 (취업자 비중)			취업자 증감 (취업자 비중 증감)		연평균 증감률	
		'00	'10	'20	'00~'10	'10~'20	'00~'10	'10~'20
전직업		62,893.6 (100.0)	62,966.6 (100.0)	60,667.9 (100.0)	73.0 (0.00)	-2,298.7 (0.00)	0.0	-0.4
사 회 서 비 스 업	의사	227.4 (0.36)	221.5 (0.35)	195.4 (0.32)	-5.9 (-0.01)	-26.1 (-0.03)	-0.3	-1.2
	치과 의사	78.5 (0.12)	78.8 (0.13)	70.4 (0.12)	0.3 (0.01)	-8.4 (-0.01)	0.0	-1.1
	수의사	17.0 (0.03)	23.6 (0.04)	26.4 (0.04)	6.6 (0.01)	2.8 (0.00)	3.3	1.1

<표 계속>

	취업자 (취업자 비중)			취업자 증감 (취업자 비중 증감)		연평균 증감률	
	'00	'10	'20	'00~'10	'10~'20	'00~'10	'10~'20
약사	139.9 (0.22)	154.2 (0.24)	162.5 (0.27)	14.3 (0.02)	8.3 (0.03)	1.0	0.5
보건 간호사 건강 전문가	33.0 (0.05)	38.6 (0.06)	40.6 (0.07)	5.6 (0.01)	2.0 (0.01)	1.6	0.5
조산사	17.4 (0.03)	10.0 (0.02)	3.8 (0.01)	-7.4 (-0.01)	-6.2 (-0.01)	-5.4	-9.2
간호사	991.3 (1.58)	1,054.5 (1.67)	1,044.2 (1.72)	63.2 (0.09)	-10.3 (0.05)	0.6	-0.1
진료 방사선·엑스선 기술자	44.5 (0.07)	13.9 (0.02)	12.6 (0.02)	-30.6 (-0.05)	-1.3 (0.00)	-11.0	-1.0
임상 위생 검사 기사	62.0 (0.10)	60.5 (0.10)	53.5 (0.09)	-1.5 (0.00)	-7.0 (-0.01)	-0.2	-1.2
치과 위생사	63.0 (0.10)	30.8 (0.05)	10.7 (0.02)	-32.2 (-0.05)	-20.1 (-0.03)	-6.9	-10.0
치과 기공 전문가	48.9 (0.08)	15.2 (0.02)	1.4 (0.00)	-33.7 (-0.06)	-13.8 (-0.02)	-11.0	-21.2
영양사	76.0 (0.12)	81.0 (0.13)	78.0 (0.13)	5.0 (0.01)	-3.0 (0.00)	0.6	-0.4
안마사, 지압치료사, 침술사, 뜸치료사, 유도 정형외과 의사	98.2 (0.16)	82.7 (0.13)	64.7 (0.11)	-15.5 (-0.03)	-18.0 (-0.02)	-1.7	-2.4
기타 보험 의료 종사자	457.4 (0.73)	638.6 (1.01)	759.0 (1.25)	181.2 (0.28)	120.4 (0.24)	3.4	1.7
선생님	362.5 (0.58)	296.6 (0.47)	212.1 (0.35)	-65.9 (-0.11)	-84.5 (-0.12)	-2.0	-3.3
기타 사회 복지 전문 요원	224.4 (0.36)	262.7 (0.42)	259.9 (0.43)	38.3 (0.06)	-2.8 (0.01)	1.6	-0.1
유치원 교사	91.0 (0.14)	83.2 (0.13)	73.8 (0.12)	-7.8 (-0.01)	-9.4 (-0.01)	-0.9	-1.2
초등학교 교사	387.7 (0.62)	323.1 (0.51)	251.6 (0.41)	-64.6 (-0.11)	-71.5 (-0.10)	-1.8	-2.5
중학교 교사	247.2 (0.39)	237.1 (0.38)	211.6 (0.35)	-10.1 (-0.01)	-25.5 (-0.03)	-0.4	-1.1
고등학교 교사	317.7 (0.51)	333.3 (0.53)	328.6 (0.54)	15.6 (0.02)	-4.7 (0.01)	0.5	-0.1
특수 학교 교사	61.6 (0.10)	70.7 (0.11)	79.2 (0.13)	9.1 (0.01)	8.5 (0.02)	1.4	1.1
기타 교원	96.1 (0.15)	110.6 (0.18)	116.7 (0.19)	14.5 (0.03)	6.1 (0.01)	1.4	0.5

출처: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JILPT). (2004). 産業別・職業別就業者数の将来予測.

다. 사회서비스업 유망 직업

- 2000~2010년 동안 고용증가가 빠른 직업 20위 중 사회서비스업 직업에는 수의사, 기타 사회복지전문직업종사자가 있음
 - 일본의 노동연구기구(勞働政策研究機構)가 발표한 소분류 수준의 직업별 고용전망결과에 따른 2000~2010년 동안 고용이 빨리 증가하는 직업 20위 중 사회서비스업 직업에는 수의사, 기타 사회복지전문직업종사자가 있음
 - 수의사는 취업자는 2000년 26.3천명에서 2010년 39.3천명으로 연평균 4.1%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 기타 사회복지전문직업종사자는 2000년 256.7천명에서 2010년 322.0천명으로 연평균 2.3%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 일본 직업 핸드북에서 고용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 직업 중 사회서비스업 직업에는 보건의료종사자, 간호사, 의료관련기술자 및 물리치료사, 유치원교사 등이 있음
 - 일본에서는 총무청 조사를 통해 일본 직업 핸드북을 발간하고 고용증가율이라는 기준에 따라 증가 및 감소 유형별 직업 변화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
 - 높은 고용 증가율이 예상되는 직업 중 사회서비스업 직업에는 보건의료종사자, 간병인, 사회복지관련종사자, 이학 요법사 등이 있음
 - 전문 기술직 중 빠르게 고용이 증가하는 직업 중 사회서비스업 직업에는 간호사, 의료관련기술자 및 물리치료사, 유치원교사 등이 있음

제3절 우리나라 동향과 시사점

1. 한국의 사회서비스업 동향

- 사회서비스업의 동향은 산업동향 지표 중 생산, 부가가치, 성장기여도,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를 통해 알 수 있음
 - 생산과 부가가치 규모와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서비스업이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성장기여도를 통해 사회서비스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정도의 추이를 살펴봄
 - 사회서비스업에 지출된 1원이 각국 전 산업에 어느 정도의 생산과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이러한 연관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를 살펴봄

- 사회서비스업의 생산액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10.9%씩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 산업 전체 대비 생산액 비중은 2001년 7.3%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09년 9.7%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서비스 분야의 생산액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11.6%씩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 산업 전체 대비 생산액 비중은 2001년 1.4%에서 조금씩 증가하여 2009년 2.0%를 차지하고 있음
 - 의료·보건서비스 분야의 생산액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10.5%씩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 산업 전체 대비 생산액 비중은 2001년 5.2%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 6.7%로 사회서비스업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생산액의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2.0%로 사회서비스업 분야 중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 산업 전체 대비 생산액 비중은 2001년 0.7%에서 2005년 0.9%로 상승한 후 2008년까지 정체상태를 보이다가 2009년 1.0%로 증가하였음

<표 4-12> 사회서비스업 생산액(비중) 추이

(단위: 십억원, %)

		2001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01~'09
서비스 산업 전체		581,590 (100.0)	690,681 (100.0)	780,691 (100.0)	835,545 (100.0)	911,497 (100.0)	994,509 (100.0)	1,016,635 (100.0)	7.2
사회 서비스업 분야별	교육 서비스	8,430 (1.4)	11,752 (1.7)	13,569 (1.7)	15,912 (1.9)	17,668 (1.9)	19,831 (2.0)	20,223 (2.0)	11.6
	의료·보건 서비스	30,399 (5.2)	36,617 (5.3)	44,366 (5.7)	49,701 (5.9)	55,022 (6.0)	60,177 (6.1)	67,669 (6.7)	10.5
	사회복지 서비스	4,182 (0.7)	5,417 (0.8)	6,733 (0.9)	7,232 (0.9)	8,626 (0.9)	9,429 (0.9)	10,318 (1.0)	12.0
	계	43,011 (7.3)	53,786 (7.8)	64,668 (8.3)	72,865 (8.7)	81,316 (8.8)	89,437 (9.0)	98,210 (9.7)	10.9

자료: 지식경제부·산업연구원(2010).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 사회서비스업의 부가가치액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9.5%씩 증가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율은 2001년 63.9%에서 조금씩 감소하여 2009년 62.7%로 1.2%p 하락하였음

- 교육서비스 분야의 부가가치액의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2.4%로 사회서비스업 분야 중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고, 부가가치율은 2005년 70.7%를 정점으로 해서 2007년까지 감소한 후 2009년 69.3%로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 의료·보건서비스 분야의 부가가치액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9.8%씩 증가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율은 2001년 56.1%에서 2003년에 2.8%p 하락한 후 2005년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했으나

-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며 2009년에는 53.3%를 기록함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부가가치액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12.1%씩 증가하고 있고, 부가가치율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한 후 하락과 증가를 반복하며 2009년 68.1%를 기록함

<표 4-13> 사회서비스업 부가가치액(부가가치율) 추이 (단위: 십억원, %)

		2001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01~'09
서비스 산업 전체		340,653 (58.6)	405,434 (58.7)	455,905 (58.4)	484,430 (58.0)	522,975 (57.4)	557,517 (56.1)	579,334 (57.0)	6.9
사 회 서 비 스 업 분 야 별	교육 서비스	5,509 (65.4)	8,057 (68.6)	9,594 (70.7)	11,078 (69.6)	12,218 (69.2)	13,739 (69.3)	14,011 (69.3)	12.4
	의료·보건 서비스	17,056 (56.1)	19,516 (53.3)	23,962 (54.0)	26,679 (53.7)	29,562 (53.7)	32,029 (53.2)	36,055 (53.3)	9.8
	사회복지 서비스	2,815 (67.3)	3,668 (67.7)	4,596 (68.3)	4,939 (68.1)	5,890 (68.3)	6,423 (68.1)	7,025 (68.1)	12.1
	계	25,300 (62.9)	31,241 (63.2)	38,152 (64.3)	42,696 (63.8)	47,670 (63.7)	52,191 (63.5)	57,091 (63.6)	9.5

자료: 지식경제부·산업연구원(2010).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 사회서비스업의 GDP 비중은 2001년 4.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6.0%를 차지하고 있고, 성장기여도는 2001년 -0.09%에서 2003년 0.36%로 큰 폭 상승한 후 2005년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2008년에는 0.41%를 기록함
 - 교육서비스 분야의 GDP 비중은 2001년 1.0%에서 조금씩 증가하여 2009년 1.5%를 차지하고 있고, 성장기여도는 2001년 0.11%에서 2005년까지 하락세를 보인 후 증가와 하락을 반복하고 2008년 0.26%를 정점으로 큰 폭 하락하여 2009년에는 -0.01%를 기록함
 - 의료·보건서비스 분야의 GDP 비중은 2001년 2.9%에서 꾸준히 상

승하여 2009년 3.8%를 차지하고 있고, 성장기여도는 2001년 -0.21%에서 2007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에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2009년 0.31%를 기록함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GDP 비중은 2001년 0.5%에서 정체와 상승을 반복하며 2009년 0.7%를 차지하고 있고, 성장기여도는 2001년 0.01%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2009년 0.03%를 기록함

<표 4-14> 사회서비스업 GDP 비중(성장기여도)

(단위: %, %p)

		2001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GDP 성장률(%)		4.0	2.8	4.0	5.2	5.1	2.3	0.2
서비스 산업 전체		58.8 (2.48)	59.4 (1.04)	58.8 (2.09)	59.5 (2.59)	59.8 (2.99)	60.6 (1.62)	60.5 (0.56)
사회서비스업 분야별	교육서비스	1.0 (0.11)	1.2 (0.15)	1.2 (0.04)	1.4 (0.12)	1.4 (0.04)	1.5 (0.26)	1.5 (-0.01)
	의료·보건 서비스	2.9 (-0.21)	2.9 (0.17)	3.1 (0.21)	3.3 (0.22)	3.4 (0.24)	3.5 (0.14)	3.8 (0.31)
	사회복지 서비스	0.5 (0.01)	0.5 (0.04)	0.6 (0.03)	0.6 (0.01)	0.7 (0.06)	0.7 (0.01)	0.7 (0.03)
	계	4.4 (-0.09)	4.6 (0.36)	4.9 (0.28)	5.3 (0.35)	5.5 (0.34)	5.7 (0.41)	6.0 (0.33)

자료: 지식경제부·산업연구원(2010).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 사회서비스업의 생산유발효과는 2000년 1.627에서 2005년 하락한 이후 2007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8년 감소하여 1.586을 기록하여 2000년 대비 생산유발효과가 다소 약화되었음

- 교육서비스 분야의 생산유발효과는 2000년 1.293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08년 1.381을 기록함
- 의료·보건서비스 분야의 생산유발계수는 2000년 1.821에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6년 일시적으로 조금 상승하기도 했으나 이후 다

시 하락하여 2008년 1.756을 기록함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생산유발계수는 2000년 1.768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7년 1.662%까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2008년에는 1.621로 하락함

<표 4-15> 사회서비스업 생산유발계수 추이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서비스 산업 전체		1.700	1.769	1.786	1.784	1.777
사회 서비스업 분야별	교육서비스	1.293	1.367	1.378	1.378	1.381
	의료·보건서비스	1.821	1.766	1.781	1.773	1.756
	사회복지서비스	1.768	1.615	1.625	1.662	1.621
	평균	1.627	1.583	1.595	1.604	1.586

자료: 한국은행(2010). 산업연관표 2005-2006-2007 연결표.
한국은행(2010). 산업연관표 1995-2000-2005 연결표.

- 사회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05년 0.88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0.851을 기록함
 - 교육 및 보건서비스 분야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05년 0.900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2008년 0.867을 기록함
 - 사회 및 기타서비스 분야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05년 0.872에서 계속해서 감소하여 2008년 0.834를 기록함

<표 4-16> 사회서비스업 부가가치유발계수 추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서비스 산업 전체		0.865	0.862	0.855	0.819
사회 서비스업 분야별	교육 및 보건서비스	0.900	0.897	0.893	0.867
	사회 및 기타서비스	0.872	0.870	0.865	0.834
	평균	0.886	0.884	0.879	0.851

자료: 한국은행(2010). 2008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결과.

2. 한국의 사회서비스업 직업동향

가. 사회서비스업 직업 분류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에 따라 훈련, 자격, 학과 등 직업 관련 정보의 생산과 제공에 활용되고 있는 한국고용직업분류(Korean Employment Classification of Occupation, KECO)를 기준으로 사회서비스업 직업을 선정함
 - 한국고용직업분류는 직능유형(skill type)을 중심으로 분류가 구성되어 있어 사회서비스업 관련 직군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비하여 활용이 용이함(한상근 외, 2006; 박천수, 2005)
 -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회서비스업은 한국고용직업분류에서 대분류 사회서비스직(Ⅲ) 이하에 중분류 교육 및 자연·사회과학 연구 관련직(04), 보건 및 의료 관련직(06),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07)로 분류되어 있음
 - 교육 및 자연·사회과학 연구 관련직(04)에서는 학교교사(046), 유치원교사(047)와 학원강사 및 학습지교사(048) 중 기술 및 기능계 강사(0483) 등이 포함됨
 - 보건 및 의료 관련직(06)에서는 의사(061), 약사(063),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064), 치료사(065),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066),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067), 의료복지 지원종사자(068) 등이 포함됨
 -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07)에서는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071), 보육교사·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072) 등이 포함됨

<표 4-17>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의 사회서비스업 관련 직업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04 교육 및 자연·사 회과학 연구 관련	046 학교교사	0461 중·고등학교 교사	04611 중·고등학교 교사	
		0462 초등학교교사	04621 초등학교교사	
		0463 특수교육교사	04631 특수교육교사	
		0469 보조교사 및 기타 교사	04691 보조교사 및 기타 교사	
	047 유치원교사	0471 유치원교사	04711 유치원교사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도교사	0483 기술 및 기능계 강사	04830 기술 및 기능계 강사	04830 기술 및 기능계 강사
			04831 사무관리강사 (직업능력훈련교사 포함)	04831 사무관리강사 (직업능력훈련교사 포함)
			04832 기계장비강사 (직업능력훈련교사 포함)	04832 기계장비강사 (직업능력훈련교사 포함)
			04833 서비스강사 (직업능력훈련교사 포함)	04833 서비스강사 (직업능력훈련교사 포함)
			04834 금융보험증권강사 (직업능력훈련교사 포함)	04834 금융보험증권강사 (직업능력훈련교사 포함)
04835 자동차운전강사			04835 자동차운전강사	
06 보건 및 의료 관련	061 의사	0611 전문의사	06111 전문의사	
		0612 일반의사	06121 일반의사	
		0613 한의사	06131 한의사	
		0614 치과의사	06141 치과의사	
	063 약사	0631 약사 및 한약사	06311 약사 및 한약사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0641 간호사(조산사 포함)	06410 간호사(조산사 포함)	06410 간호사(조산사 포함)
			06411 간호사	06411 간호사
			06412 보건교사	06412 보건교사
		06413 조산사	06413 조산사	
	0642 치과위생사	06421 치과위생사	06421 치과위생사	
	065 치료사	0651 물리 및 작업 치료사	06510 물리 및 작업 치료사	06510 물리 및 작업 치료사
			06511 물리치료사	06511 물리치료사
			06512 작업치료사	06512 작업치료사
		0652 임상심리사 및 기타 치료사	06520 임상심리사 및 기타 치료사	06520 임상심리사 및 기타 치료사
			06521 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	06521 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
	06529 기타 치료사(언어치료 및 놀이치료 등)	06529 기타 치료사(언어치료 및 놀이치료 등)	06529 기타 치료사(언어치료 및 놀이치료 등)	

<표 계속>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06 보건 및 의료 관련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0661 임상병리사	06611 임상병리사	
		0662 방사선사	06621 방사선사	
		0663 치과기공사	06631 치과기공사	
		0664 의지보조기기사	06641 의지보조기기사	
		0665 안경사	06651 안경사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0671 안마사	06711 안마사	
		0672 위생사	06721 위생사	
		0673 영양사	06731 영양사	
		0674 의무기록사	06741 의무기록사	
		0675 응급구조사 및 인명구조원	06751 응급구조사 및 인명구조원	
		0681 간호조무사	06811 간호조무사	
	068 의료복지 지원종사자	0682 간병인	06820 간병인	06820 간병인
			06821 간병인	06821 간병인
			06822 요양보호사(노인요양사)	06822 요양보호사(노인요양사)
			06823 산후조리원	06823 산후조리원
		0689 기타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종사원	06890 기타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종사원	
	06891 병원코디네이터	06891 병원코디네이터		
	07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0711 사회복지사	07111 사회복지사
0712 청소년지도사 및 기타 상담전문가			07120 청소년지도사 및 기타 상담전문가	07120 청소년지도사 및 기타 상담전문가
			07121 청소년지도사	07121 청소년지도사
			07129 기타 상담전문가(노인 및 여성 상담 등)	07129 기타 상담전문가(노인 및 여성 상담 등)
0713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			07130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	07130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
		07131 직업상담 및 경력상담원	07131 직업상담 및 경력상담원	
07132 취업알선원		07132 취업알선원		
0714 시민단체활동가		07141 시민단체활동가		
072 보육교사·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0721 보육교사	07211 보육교사	
		0722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07221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0729 기타 사회복지 관련 종사원	07290 기타 사회복지 관련 종사원	07290 기타 사회복지 관련 종사원
			07291 노인생활지도원	07291 노인생활지도원
			07292 아동생활지도원	07292 아동생활지도원
			07293 장애인생활지도원	07293 장애인생활지도원
07294 사회복지보조원		07294 사회복지보조원		

출처: 한국고용정보원(2009). 한국고용직업분류표(KECO '09).

나. 사회서비스업 직업별 인력 수요 전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한국고용직업분류를 기준으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직업대분류 수준과 직업 중분류 수준에서 직업별 노동수요 전망을 제시함.
 - 2016년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직업은 학원강사(3.0%)이고 학교교사(2.4%),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1.4%), 기타보건의료관련직(1.2%)가 그 뒤를 이음
 -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취업자 수의 증가율이 가장 큰 직업은 사회복지전문직(8.7%)이고 치료사(5.5%), 의사(5.2%),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5.2%) 순임.

<표 4-18> 사회서비스업 직업소분류 인력 수요 전망

(단위: 천명, %)

	취업자				취업자 증감			연평균 증감률			
	'01	'06	'11	'16	'01~'06	'06~'11	'06~'16	'01~'06	'06~'11	'06~'16	
전직업	21,572 (100.0)	23,151 (100.0)	24,734 (100.0)	26,301 (100.0)	1,579 (0.0)	1,583 (0.0)	3,150 (0.0)	14	13	13	
사회서비스업	학교교사(직업 훈련교사 포함)	45 (21)	515 (22)	567 (23)	639 (24)	70 (0.1)	52 (0.1)	124 (0.1)	30	19	22
	학원강사	458 (21)	549 (24)	671 (27)	798 (30)	90 (0.3)	123 (0.3)	250 (0.3)	38	41	38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53 (0.2)	73 (0.3)	89 (0.4)	116 (0.4)	20 (0.1)	17 (0.1)	43 (0.0)	72	42	48
	수의사	3 (0.0)	4 (0.0)	5 (0.0)	6 (0.0)	0 (0.0)	1 (0.0)	2 (0.0)	182	56	52
	약사	41 (0.2)	38 (0.2)	34 (0.1)	32 (0.1)	-3 (0.0)	-4 (-0.1)	-6 (0.0)	-0.9	-2.0	-1.6
	간호사 (조무사 제외)	102 (0.5)	152 (0.7)	188 (0.8)	245 (0.9)	51 (0.2)	35 (0.1)	92 (0.1)	90	42	48
	치료사	12 (0.1)	26 (0.1)	32 (0.1)	44 (0.2)	14 (0.0)	7 (0.0)	18 (0.1)	19.9	4.7	5.5

<표 계속>

		취업자				취업자 증감			연평균 증감률		
		'01	'06	'11	'16	'01~'06	'06~'11	'06~'16	'01~'06	'06~'11	'06~'16
사회서비스업	의료장비 및 치과관련기술직	47 (0.2)	70 (0.3)	84 (0.3)	107 (0.4)	23 (0.1)	14 (0.0)	36 (0.1)	8.3	3.7	4.2
	기타보건의료 관련직	146 (0.7)	210 (0.9)	254 (1.0)	321 (1.2)	64 (0.2)	44 (0.1)	111 (0.2)	7.8	3.9	4.3
	사회복지전문직	76 (0.4)	93 (0.4)	143 (0.6)	213 (0.8)	16 (0.0)	51 (0.2)	120 (0.2)	9.1	9.1	8.7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64 (0.3)	229 (1.0)	296 (1.2)	381 (1.4)	165 (0.7)	66 (0.2)	151 (0.2)	29.0	5.2	5.2
	계	1,684 (8.4)	2,283 (10.3)	2,697 (11.4)	3,250 (12.9)	566 (1.9)	418 (1.1)	964 (1.5)	6.3	3.4	3.6

출처: 주무현 외(2007).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06~2016.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직업대분류 수준과 직업 중분류 수준에서 직업별 노동수요 전망을 제시함
 - 보건의료전문가의 노동자 수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2.05%, 2015년부터 2020년까지 0.96%의 증가율을 보이며 노동자 비중은 2001년 1.03%에서 2020년 1.26%로 상승할 전망이다
 - 교육전문가의 노동자 수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0.15%, 2015년부터 2020년까지 0.96%씩 증가하고 노동자 비중은 2001년 2.70%에서 2020년 2.69%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보건의료전문가의 노동자 수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99%,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43%씩 증가하고 노동자 비중은 2001년 0.60%에서 2020년 0.74%로 증가할 전망이다
 - 교육전문가의 노동자 수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01%,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0.57%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으로 노동자 비중 또한 2001년 1.93%에서 2020년 1.77%로 하락할 전망이다

- 사회서비스·종교전문가의 노동자 수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0.02%,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01%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노동자 비중은 2001년 0.22%에서 2020년 0.16%로 하락할 전망이다

<표 4-19> 사회서비스업 직업종분류 노동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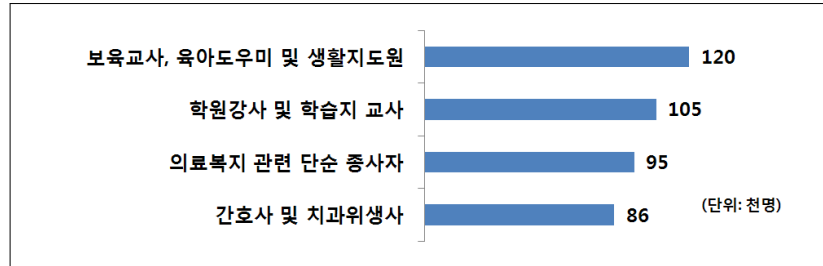
(단위: 천명, %)

	노동자 수(비중)						연평균 증가율						
	2001	2002	2003	2010	2015	2020	2001~2002	2002~2003	2003~2020	2003~2010	2010~2015	2015~2020	
전직종	21,572 (100.0)	22,169 (100.0)	22,138 (100.0)	25,227 (100.0)	27,084 (100.0)	28,579 (100.0)	2.77	-0.14	1.51	1.88	1.43	1.08	
사회서비스업	14. 보건 의료 전문가	222 (1.03)	244 (1.10)	255 (1.15)	300 (1.19)	333 (1.23)	360 (1.26)	9.70	4.59	2.06	2.38	2.05	1.61
	15. 교육 전문가	43 (2.70)	44 (2.74)	52 (3.24)	65 (2.88)	78 (2.70)	89 (2.69)	4.27	18.29	0.40	0.18	0.15	0.96
	24. 보건 의료 준전문가	129 (0.60)	140 (0.63)	143 (0.64)	178 (0.70)	196 (0.72)	211 (0.74)	8.53	1.84	2.32	3.20	1.99	1.43
	25. 교육 준전문가	416 (1.93)	446 (2.01)	501 (2.26)	548 (2.17)	521 (1.92)	506 (1.77)	7.37	12.13	0.07	1.31	-1.01	-0.57
	27. 사회 서비스·종교 준전문가	48 (0.22)	51 (0.23)	40 (0.18)	52 (0.21)	52 (0.19)	47 (0.16)	5.65	-21.85	0.96	3.83	0.02	-2.01

출처: 안주엽(2005).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05~2020.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부가 2010년 제5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발표한 ‘2008~2018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과 정책과제’에서는 직업별 취업자 전망과 연평균 성장률 상위 직업 30을 제시함
 -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취업자 수 증가가 큰 주요 직업 중 사회서비스업 직업으로는 보육교사·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12만명),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10.5만명), 의료 복지 관련 단순종사자(9.5만명),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8.6만명)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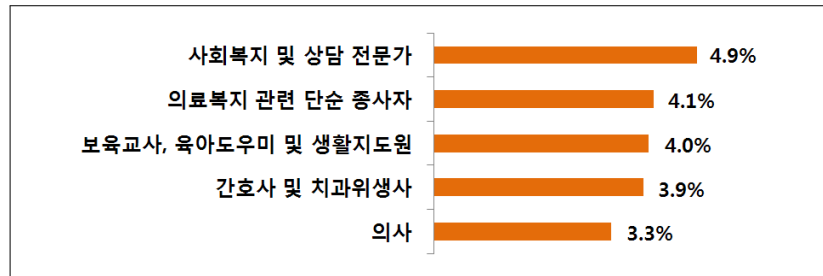
[그림 4-2] '08~'18 취업자 수 증가가 큰 사회서비스업 직업



출처: 노동부. (201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정책과제.

-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취업자수 증가율이 큰 주요 직업 중 사회서비스업 직업으로는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4.9%),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4.1%), 보육교사·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4.0%),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3.9%), 의사(3.3%) 등이 있음

[그림 4-3] '08~'18 취업자 수 증가율이 큰 사회서비스업 직업



출처: 노동부. (201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정책과제.

다. 사회서비스업 유망 직업

- 사회서비스업 유망 직업으로 정운경 외(2008)는 의사, 치과 의사, 약사 및 한약사, 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 상담전문가, 한의사, 수의사, 특수학교교사 등을 제시함

<표 4-20> 사회서비스업 유망 직업의 지표영역별 순위

직업 코드	세분류 직업명	전체	보상	고용 전망	고용 안정	발전 가능성	근무 여건	고용 평등
0611	의사	2	3	·	4	1	·	1
0613	치과의사	3	2	14	5	·	·	5
0630	약사 및 한약사	6	·	·	10	·	9	·
0652	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	7	·	10	14	·	2	15
0712	상담전문가	9	20	7	19	·	·	8
0612	한의사	11	·	·	17	·	16	10
0620	수의사	12	·	12	·	·	12	19
0454	특수학교교사	18	·	·	11	·	·	·

주: ‘·’는 상위 20위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출처: 정윤경 외(2008). KRIVET 직업전망 지표 개발.

- 사회서비스 분야 유망 직업으로 노동부는 수의사,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치료사,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보육교사·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의사,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등을 제시함

<표 4-21> 연평균 성장률 상위 직업 중 사회서비스업 직업군

직업군	연평균 성장률	정성적 전망 ¹⁾
수의사	5.3	증가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5.0	증가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4.9	증가
치료사	4.2	증가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4.1	증가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4.0	증가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3.9	증가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3.4	증가

<표 계속>

직업군	연평균 성장률	정성적 전망 ¹⁾
의사	3.3	증가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3.3	증가

주 1) 정성적 전망 : '08~'18 직업별 정성적 전망 및 고용변동 요인분석 결과(한국 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2) 취업자수가 10만명에 미달하더라도 연평균 성장률 전망과 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유망직종으로 선정.

출처: 노동부(201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전망 및 정책과제.

□ 사회서비스 분야 유망 직업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은 특수학교교사, 한 의사, 간호사, 물리 및 작업치료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간병인,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등을 제시함

- 교육관련직의 유치원교사는 다수 증가하고 특수학교교사는 증가할 전망이다
- 의료 및 보건관련직의 의사, 치과의사, 약사 및 한약사, 치과위생사, 임상심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는 다수 증가할 전망이고, 한의사, 간호사, 물리 및 작업치료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간병인은 증가할 전망이다
- 사회복지관련직의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 사회단체활동가, 보육교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전망이고 사회복지사와 상담전문가의 고용은 증가할 전망이다

<표 4-22> 연평균 성장률 상위 직업 중 사회서비스업 직업

분야	직업	고용전망
교육관련직	중등학교교사	유지
	초등학교교사	유지
	특수학교교사	증가
	유치원교사	다소증가
	학원강사 및 학습지교사	유지

<표 계속>

분야	직업	고용전망	
의료 및 보건관련직	의사	다소증가	
	한 의사	증가	
	치과 의사	다소증가	
	수의사	유지	
	약사 및 한약사	다소증가	
	간호사	증가	
	치과 위생사	다소증가	
	물리 및 작업치료사	증가	
	임상심리사	다소증가	
	임상병리사	유지	
	방사선사	다소증가	
	치과기공사	다소증가	
	안경사	다소증가	
	영양사	증가	
	의무기록사	다소증가	
	응급구조사	증가	
	간호조무사	다소증가	
	간병인	증가	
	사회복지관련직	사회복지사	증가
		상담전문가	증가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		다소증가	
사회단체활동가		다소증가	
보육교사		다소증가	

출처: 한국고용정보원(2009). 한국직업전망.

3. 시사점

- 미국, 일본을 살펴본 결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을 증대하고 대 국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결과 이 부문에서 고용가능성이 높은 유망직종이 많이 출연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음

-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분야의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을 확장하고 고용의 질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과 이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

□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사례를 종합화하면 3개국 공히 사회서비스 분야의 유망직업을 중심으로 고용증가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전문가가 전망하는 것처럼 이 분야가 향후 고용의 블루오션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미국과 일본의 사회서비스 분야 유망 직업으로 전자는 운동치료사, 물리치료조력원, 치과위생사 등 보건의료 관련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음
- 후자는 보건의료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이학요법사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일본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세부 직종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유망직종의 수도 적음

□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이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부문의 면허성 자격과 관련된 직종이 대부분이므로 자격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을 증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와 민간자격의 개선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의 면허성 국가자격 신설 혹은 국가공인 민간자격화 하는 방안, 새로운 국가자격의 신설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제5장 사회서비스분야 미국, 일본 자격운영 현황

제1절 미국

1. 미국의 자격제도 개요

- 미국의 자격제도는 주로 주(州)정부 단위로 이루어지며 각 주에서는 또 다시 각 전문단체가 자격을 관리하도록 위임함
- 그러나 각 주정부 간에는 자격별로 호혜 원칙을 두어 일정 형식이나 요건을 갖추면 유사 종목의 경우 서로 인정함
- 따라서 영국 등의 유럽국가처럼 자격의 수준이 연방단위에서 정해진 것이 없고 주정부 간에 응시자 학력 요건이나 소요 실무경력을 고려하여 상호 인정하며 차이가 날 경우 의무 강습기간 등 일정한 조건을 부과함

□ 미국의 자격분류는 크게 국가면허(licensure)와 민간자격(private certification)으로 구분됨

- 면허는 가장 엄격하고 영향력이 강력한 것으로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주도로 개발되고 고용에 있어 자격증 요건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국가자격으로 특정한 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함
- 주정부 단위의 면허로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부문, 부동산, 화장품학(cosmetology) 관련 부문 등이 있고, 연방정부 단위로는 원자력 발전, 해양 관련 부문, 항공관계직업영역 등에 관련된 직업에 대한 면허가 있음
- 미국의 자격제도는 주로 민간부문 주도하에 운영되는 형태임
- 자율적이고 민간부문 주도적인 자격제도가 확립된 배경에는 정부에 의한 규제보다는 민간부문, 자치단체 등 자율에 의한 규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 미국 특유의 정치적 배경과 아울러 고용평등에 관한 엄격한 노동법적 규제라는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양한 역사와 배경을 가진 집단들이 모여 광범위한 지역에서 국가를 이루고 있어 정부 주도에 의한 직접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는 일차적으로 불가능함
- 정부 대신에 업계연합, 전문인단체와 같은 연합체가 활발하게 기능하여 자율규제의 핵심 주체가 되어 옴
- 그러나 자격부문에서 국가가 직접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보건, 의료 관련 부문이나 안전 부문의 영역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자격제도의 개발이나 통용 등은 업계의 필요에 따라 전문인 협회를 중심으로 민간영역에서 발전해 옴
- 자격제도는 건축, 의료 영역 등 사람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된 직종 중심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점차 서비스 영역 등 다양한 영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2.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자격 현황

- 보건·의료·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미국자격은 <표 5-1>과 같이 우리나라에 있는 자격과 중복되는 종목도 있고 일부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미국에는 존재하는 자격종목 등이 있음
- 특이 사항으로는 한국에서는 법령에 의해 금지분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의 자격이 미국에서는 상당부분 자격종목이 시행 운영됨

<표 5-1> 미국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자격종목

분야	자격종목
보건 ·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upuncture(침술) • Ambulatory Health Care(외래건강관리) • Art Therapists(미술치료사) • Cardiovascular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심장혈관전문기술자) • Chiropractors(지압사) • Clinical Consultants(임상병리사) •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임상병리 전문기술자) • CPR and First Aid Practitioners(CPR 및 응급처치사) • Dental Assistants(치과보조원) • Dental Laboratory Technicians(치과기공사) • Dentists(치과의사) • Dietitians and Nutritionists(영양사) • Dispensing Opticians(안경사) •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응급치료기술자) • Health Services Manager(건강서비스매니저) • Hygienists(위생사) • Hypnotists(최면학) • Medical Assistants(의학보조사) • Medical Illustrators(의학삽화가) • Medical Record Technicians(의무기록사) • Music Therapists(음악치료사) • Naturopathy(자연요법)

<표 계속>

분야	자격종목
보건 ·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uclear Medicine Technologists(핵의학 기술자) • Nursing Aides and Psychiatric Aides(간호보조 및 정신과보조) • Occupational Therapist(작업치료사) • Oriental Medicine Practitioners(한의학) • Orthopaedic Technologists(정형 전문의) • Orthoptists(정시(正視)훈련전문가) • Orthotics and Prosthetics(의료장구학) • Orthotists and Prosthetists(교정 및 보철전문가) • Pharmacists(약사) • Pharmacy Aides(약사보조사) • Physical Therapists(물리치료사) • Physician Assistants(의사보조사) • Physicians(의사) • Podiatrists(발병학: foot) • Practical Nurses(간호조무사) • Radiologic Technologists(방사선사) • Recreational Therapists(요양관리(치료)사) • Registered Nurses(간호사) • Respiratory Therapists(호흡기치료사) • Sonographers(초음파검사기사) • Speech-Language Pathologists and Audiologists(언어 및 청각치료사) • Surgical Technicians(외과의)
사회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ldbirth and Child Care Assistants(보육보조사) • Counselors(상담원/상담사) • Human Services Workers(인적서비스 종사자) • Social Workers(사회복지사)

- 한국에서는 대체의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침술사, 지압사 및 각종 치료관련 자격들이 신설금지분야로 제한되어 있는데 반하여 미국은 침술(Acupuncture), 지압사(Chiropractors), 최면가(Hypnotists), 음악치료사(Music Therapists), 자연요법사(Naturopathy), 미술치료사(Art Therapists) 등의 대체의학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자격으로 형성되지 못한 자격종목의 예로서 외래건

강관리(Ambulatory Health Care), 임상병리 전문기술자(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 의학 삽화가(Medical Illustrators), 핵의학 기술자(Nuclear Medicine Technologists), 요양 관리치료사(Recreational Therapists), 정시(正視)훈련전문가(Orthoptists), 발병전문의(Podiatrists), 검안사(Optometrists) 등을 들 수 있음

- 이는 아직 우리의 보건·의료 분야 직무가 분화되지 않거나 관련 전문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분야의 개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우리나라에 비해 자격이 세분화되어 있거나 다양화되어 있는 자격을 예를 들면, 치과 보조원(Dental Assistants), 교정 및 보철전문가(Orthotists and Prosthetists), 의사보조사(Physician Assistants), 의학보조사(Medical Assistants), 약사보조사(Pharmacy Aides) 등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와 달리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민간자격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 이는 각 자격별로 분명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기보다는 상당 부분 유사한 자격이 특정분야에 중첩적으로 신설되어 있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많은 자격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서비스종사원(Human Services Workers), 보육보조사(Childbirth and Child Care Assistants) 등과 같이 최근 사회 변화에 따라 필요가 증대되고 있는 자격은 미국에서 더 많이 운영되고 있음
- 세부적으로 미국 내 자격의 직무내용과 직무전망, 응시수준 및 자격부여 기관 등을 살펴보면 <표 5-2>와 같음

<표 5-2> 미국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자격의 개요(일부)

분야	직무명	직무내용	직무전망	관련 자격명	자격응시수준	자격부여기관	기타
보건 · 의료	의사 보조사 Physician Assistants	의사의 감독 하에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며, 의사에게 업무를 위임받아 진단, 치료, 예방보건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함. 보건관리팀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병력을 조사하며, 환자의 치료/검사, 실험실 연구, X-레이 판독, 진단, 약 처방 등을 함. 환자들의 치료 상황을 기록·상담하고, 치료를 지시하거나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음 의사 보조사의 고용은 보건서비스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비용 감소가 강조될 것으로 보여 향후 2014년까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직업 중의 하나일 것으로 예상됨.	공인 의사 보조사 (P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 2년의 단과대학 및 의료 분야에서 일한 경력 ● 교육: 학사학위 이상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CPA ● PAC(Physician Assistant-Certified) 	연봉 평균 : \$69,410 (2004년 기준)
	간호 보조 및 정신과보조 Nursing Aides and Psychiatric Aides	병원, 간호 및 개인 보호시설, 정신요양원 등에 수용된 신체적·정신적 환자, 부상자, 장애인, 노인 등을 돌보는 일을 도움. 맥박, 체온, 호흡을 체크하기도 하고, 간단한 처방된 운동을 도와주고, 환자의 방을 청결하게 유지시키며, 환자가 잠을 자거나 목욕하고 옷을 입히는 일 등을 수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좋음 대부분의 간호, 정신치료 및 가정보건조력원의 고용은 2014년까지 다른 전체 직업의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가정 보건 조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법으로 제정된 정식 간호사가 주관하는 최소 75시간의 이론교육 및 실습 이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Nation Association for Home Care ● NCPT1(Nationally Certified Psychiatric Technician, Level 1) ● NCPT2(Level 2) ● NCPT3(Level 3) ● NCPT4(Leve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평균: \$10.09 ● 중간 50% : \$8.59~\$12.09 ● 고용자 수: 약 2,100,000명

<표 계속>

분야	직무명	직무내용	직무전망	관련 자격명	자격응시수준	자격부여기관	기타
보건 · 의료	심장 혈관 전문 기술자 Cardio- vascular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	심장 및 말초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 의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함. 관혈심장학, 초음파심장검진 및 혈관기술의 세부야를 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 노령층의 심장 질환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구가 노령화됨에 따라 심혈관기사 및 기술공의 고용은 2014년까지 전체 직업의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CCT (Certified Cardiographic Technologist) •RCS (Registered Cardiac Sonograp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분야 종사자, 자원봉사자, 학생 •교육: 2년제 지역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 <p>The Joint Review Committee on Education in Cardiovascular Technology에서 승인하는 33개 과정을 졸업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Cardiovascular Credentialing International •Cardiovascular Credentialing Internatio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봉 평균: \$38,600 •증진50% \$27,890 ~ \$50,130 •고용자 수: 45,000명이 고용 (2004년)
				R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2년제 지역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 	Cardiovascular Credentialing International	
				Registered Vascular Specialist (CCI)	-	Cardiovascular Credentialing International	
사회 복지	사회 복지사 Social Workers	소속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인간관계를 논의해 주고, 개인 및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함. 문제 가정, 실업, 직업기술의 부족, 재정적 부실경영, 심각한 질병, 무능력, 물리적 학대, 원치 않는 임신, 반사회적 행위 등이 포함되며, 자녀나 배우자 학대를 포함한 심각한 문제를 알고 있는 가정을 도와주기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 사회복지사의 고용은 2014년까지 전체 직업의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Diplomate in Clinical Social Work (DC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5년 이상의 실무경험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자 수 약 562,000명 (2004년)
				Member, Academy of Certified Baccalaureate Social Work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2년 이상 	Academy of Certified Baccalaureate Social Workers	
				Member of the Academy of Certified Social Work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2년 이상 	Academy of Certified Social Workers (ACSW)	
				School Social Work Special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력: 2년 이상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3. 자격 신설 가능 종목

-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없는 자격종목을 중심으로 자격 신설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표 5-3>에 제시함
 - 고려할 점은 기존의 자격을 세분화하여 좀 더 전문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자격으로 만드는 것과 이전에 없던 분야의 새로운 자격을 만드는 것이다. 자격신설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관련 규제의 완화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임

<표 5-3> 미국 사례에 근거한 신설가능 자격종목의 예

분야	신설가능 자격종목
보건 ·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upuncture(침술사) • Art Therapists(미술치료사) • Chiropractors(지압사) •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임상병리 전문기술자) • Dental Assistants(치과보조사) • Health Services Manager(건강서비스매니저) • Hygienists(위생사) • Hypnotists(최면학) • Medical Assistants(의학보조사) • Medical Illustrators(의학삽화가) • Music Therapists(음악치료사) • Naturopathy(자연요법) • Nursing Aides and Psychiatric Aides(간호보조 및 정신과보조) • Orthoptists(정시(正視)훈련전문가) • Orthotists and Prosthetists(교정 및 보철전문가) • Pharmacy Aides(약사보조사) • Physician Assistants(의사보조사) • Podiatrists(발병학: foot) • Respiratory Therapists(호흡기치료사) • Speech-Language Pathologists and Audiologists(언어 및 청각치료사) • 놀이, 행동, 예술치료사
사회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ildbirth and Child Care Assistants(보육보조사) • Human Services Workers(인적서비스 종사자)

제2절 일본

1. 일본의 자격제도 개요

- 일본의 자격제도는 근거법령의 유무, 행정의 관여, 자격의 성격 등에 따라 업무독점자격, 의무배치자격, 명칭독점자격, 국가인정자격, 민간자격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업무독점자격은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리사 등의 국가자격 외에 교원면허, 자동차면허 등의 각종 면허가 해당
 - 단, 국가자격 가운데 ‘면허’는 특정업무·직업의 필요조건으로 취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원의 경우는 면허취득뿐만 아니라 필히 각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공립학교 교원채용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구함
- 의무배치 자격은 택지건물 거래주임자, 여행업무 취급주임자 등이 해당됨
 - 기업에 특정 자격자의 선임을 의무화함
 - 변호사 등과 달리 기업 대표자가 자격을 가질 필요가 없이 구성원 가운데 자격자가 존재하면 됨
 - 자격자가 직접 업무행위를 맡아해야 할 필요 없음
- 명칭독점자격은 정보처리기술자나 기능사 등이 해당
 - 공무원 등과는 달리 개인의 능력이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아니므로, 그 자격이 없더라도 해당 직종에 종사할 수 있고, 자격유무가 직장에서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음

-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자격은 일반적으로 1급·2급과 같이 지식·기능의 수준을 분명하게 나누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일단 일정한 지식·기능을 가진 사람이 시험을 치르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능력정도를 가늠할 수 있으므로 보유한 자격이 지식·기능평가의 척도가 됨

□ 민간자격은 국가인정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됨

- 일반적으로 민간자격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정부의 관여 없이 민간이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격제도임
- 여기에는 민간단체나 업계단체가 실시하는 것과 민간업체가 고용 노동자를 평가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내검정제도 등이 포함됨
-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3,000종 가량으로 추측함
- 같은 민간자격에 해당되지만 법령에 근거를 두고 민간단체나 업계에서 실시하는 자격 가운데 국가가 법령 등에 따라 인정하는 것으로 민간 기능심사사업인정제는 현재 폐지되었으며, 다만 이미 운영되는 있던 자격종목은 공적자격(국가인정자격) 형태로 유지되고 있음

2.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자격 현황

-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의 일본자격은 우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이 모두 존재함
- 민간이 참여할 수 없는 자격신설 금지분야는 국가자격으로 운영되는 자격분야에 한하며, 국가자격과 동일한 명칭 역시 사용할 수 없음
- 민간자격 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없고, 제3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만 개별 법률에 의거하여 판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비교적 금지·제한의 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음

- 국가자격 중 의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의지장구사, 유도정복사, 침술사, 간호사, 언어청각사 등의 자격은 업무독점형 자격으로 구분되고, 사회복지사, 보육사 등은 의무배치형, 보건사, 영양사 등은 명칭독점형 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민간자격은 임상심리사, 케어시설관리사, 수화기능검정시험, 수화통역사, 진료정보관리사, 의료사무관리사 등이 있음

<표 5-4> 일본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자격종목 및 구분

분야	일본의 자격종목 및 자격구분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사(국가) ● 구급구명사(국가) ● 대중약 등록판매자(국가) ● 뜸사(국가) ● 라이프세이버(민간) ● 보건사(국가) ● 세포검사사(민간) ● 시력훈련사(국가) ● 안마마사지지압사(국가) ● 약제사(국가) ● 언어청각사(국가) ● 영양사(국가) ● 유도접골사(국가) ● 의료비서기능검정(민간) ● 의료사무관리사(민간) ● 의료사무원(민간) ● 의사(국가) ● 의사사무작업보조기능검정(민간) ● 의사컴퓨터기능검정(민간) ● 의지장구사(국가) ● 이학요법사(국가)

<표 계속>

분야	일본의 자격종목 및 자격구분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검사기사(국가) ● 임상공학기사(국가) ● 임상심리사(민간) ● 작업요법사(국가) ● 적십자구급법구급원(민간) ● 적십자수상안전법구조원I, II(민간) ● 조산사(국가) ● 조제사무관리사기능검정(민간) ● 진료방사전기사(국가) ● 진료보수청구사무관리능력검정(민간) ● 진료정보관리사(민간) ● 치과기공사(국가) ● 치과위생사(국가) ● 치과의사(국가) ● 침술사(국가)
사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사(국가) ● 보행지도원(민간) ● 복지사무관리기능검정(민간) ● 복지사환경코디네이터 기능검정(공적) ● 복지용구전문상담원(공적) ● 사회보험노무사(국가) ● 사회복지사(국가) ● 서비스개조사2급(민간) ● 수화기능검정시험(민간) ● 수화통역사(국가) ● 접자기능검정시험(민간) ● 정신보건복지사(국가) ● 차일드마인더(민간) ● 케어복지사(국가) ● 케어사무관리사(민간) ● 케어시설관리사(민간) ● 케어지원 전문원-케어 매니저(공적) ● 케어크라크기능인정시험(민간) ● 홈헬퍼(민간)

※ ()안의 내용은 자격의 성격을 표시한 것으로 국가와 공적, 민간자격으로 구분함.

일본에 있는 자격종목 중 한국에 없는 자격으로는 시력훈련사, 대중약 등록판매원, 조제사무관리사, 침술사, 뜸사, 복지용구전문상담원,

세포검사사 등이 있음

- 이들 자격이 대부분 기존 자격의 직무를 세분화하여 일자리 나눔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자격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자격종목 신설시 이러한 사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일본 자격종목들의 세부적인 직무내용과 직무전망, 응시수준 및 자격 부여 기관 등은 <표 5-5>에서 확인 가능함

<표 5-5> 일본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자격의 개요(일부)

분야	자격종목	자격구분	직무내용 및 전망	수험자격	시험내용
보건·의료	언어청각사	국가	후생 노동장관 면허의 국가자격인 언어 청각사는 음성·언어기능이나 청각에 장애를 가진 자의 기능회복을 돕는 역할을 함. 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언어 훈련을 시작으로 하는 다양한 훈련, 이것에 필요한 검사나 조언, 지도·지원을 실시함.	① 대학 입학자격을 가지고 문부과학장관이 지정한 학교나 후생노동장관이 지정한 언어청각사 양성소에서 3년 이상 언어청각사로서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한 자 ② 대학, 고등전문학교, 문교연수시설나 양성소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후생노동장관이 지정하는 과목을 수료한 자로 문부과학장관이 지정한 학교나 후생노동장관이 지정한 언어청각사 양성소에서 1년 이상 언어청각사로서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한 자 ③ 외국에서 언어청각사 면허에 상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로서 후생노동장관이 ①, ②와 동등 이상의 지식 및 기능을 가진다고 인정된 자	기초의학, 임상의학, 임상치과의학, 음성·언어·청각의학, 심리학, 음성·언어학, 사회복지·교육, 언어청각 장애학 총론, 실어·고차뇌기능 장애학, 언어발달 장애학, 발성발어·부하 장애학, 청각장애학

<표 계속>

분야	자격 종목	자격 구분	직무내용 및 전망	수험자격	시험내용
보건 · 의료	뜸 치료사	국가	쑥뜸을 피부 표 면의 경혈에 놓 고 태워서 열자 극을 주는 온열 요법을 수행함. 자격 취득은 용 이하지 않지만 취득 후 침술인 을 겸업하여 독 립하여 개업하 는 예도 많음.	대학입학자격을 가지고 문 부과학장관이 인정한 학교 나 후생노동장관이 인정한 양성시설(수업연수 3년 이 상)에서 뜸사에 필요한 지 식 및 기능을 습득한 사람 ※ 현저한 시각장애가 있는 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을 갖고 학교나 양성시설에서 5년 이상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면 시험을 볼 수 있음. ※ 침술사 시험을 보는 사람 에 대해서는 침이론이나 뜸 이론 이외의 공통과목에 대 해 한쪽의 시험을 면제함.	의료개론(의학사 제외), 위생학·공중위생학, 관계법규, 해부학, 생 리학, 병리학개론, 임 상의학 총론, 임상의 학 각론, 사회복지요 법 의학, 동양의학 개 론, 경락경혈 개론, 뜸 이론, 동양의학 임상론 ※ 단, 시각장애자는 다 음 방법으로 수험을 인정함. ① 확대문자, 초확대 문자, 점자에 의한 수 험 ② 시험문제를 녹 음한 테이프의 사용, 시험문제의 낭독의 병 용에 의한 수험 ③ 조 명기구, 독서 보조도 구, 점자 타이프라이 터 등을 사용한 수험
	침술사	국가	금, 은, 철 등의 금속바늘을 이 용해 인체 환부 에 자극을 주는 치료법을 수행 함. 침술은 부작용 이 거의 없고, 신경통이나 관 절염 등의 통증 완화에도 뛰어나 현대의료에 활용범위가 넓 음. 후생노동장 관의 면허를 받 으면 개업할 수 있고 안정된 수 입이 전망되는 견실한 자격임.	대학입학 자격을 갖고 문 부과학장관이 인정한 학교 나 후생노동장관이 인정한 양성시설(수업연수 3년 이 상)에서 침술인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 득한 자 ※ 현저한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입학자격 을 갖고 학교 또는 양성시 설에서 5년 이상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	● 필기: 의료개론(의학 사제외), 위생학·공 중위생학, 관계법규, 해부학, 생리학, 병리 학 개론, 임상의학 총 론, 임상의학 각론, 사회복지요법의학, 동양의학 개론, 경락 경혈 개론, 침이론, 동양의학 임상론 ※ 단, 시각장애자는 다 음 방법으로 수험을 인정함. ① 확대문자, 초확대 문자, 점자에 의한 수 험 ② 시험문제를 녹 음한 테이프의 사용, 시험문제의 낭독의 병 용에 의한 수험 ③ 조 명기구, 독서 보조도 구, 점자 타이프라이 터 등을 사용한 수험

<표 계속>

분야	자격 종목	자격 구분	직무내용 및 전망	수험자격	시험내용
보건 · 의료	등록 판매자	국가	대중약품 등록 판매자는 구입자의 상황을 관찰, 질문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함. 구입자의 적절한 의약품 선택을 지원하며, 일반용 의약품의 판매 등에 대한 보건 위생상의 문제를 예방함.	① 대학 및 전문학교에서 약학에 관한 전문과정을 수료한 자 ② 2006년 3월 31일 이전에 학교교육법에 근거하는 대학에 입학하여 해당대학에서 약학의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③ 고교 및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이며, 1년 이상 약국이나 일반 판매업(도매일반판매업 제외), 약종상 판매업, 배치판매업의 실무에 종사한 자 ④ 4년 이상 약국 또는 일반 판매업(도매 일반 판매업을 제외한다), 약종상 판매업 혹은 배치 판매업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⑤ 위 ①~④와 동등 이상의 지식경험을 가졌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자	의약품의 본질, 의약품의 효력이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인체의 구조와 움직임, 약이 작용구조, 증상에서 본 주된 부작용, 정신신경에 작용하는 약, 호흡기관에 작용하는 약, 위장에 작용하는 약, 배설과 관계되는 부위에 작용하는 약, 부인약, 한방 처방제제·생약제제, 의약품의 판매업 허가, 의약품의 취급, 의약품 판매에 관한 법령 준수, 의약품의 적정사용정보, 의약품의 안전대책, 의약품의 부작용 등에 의한 건강피해의 구제, 일반용 의약품에 관한 주된 안전 대책 등
	시력 훈련사	국가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시력을 잃거나 시각기능에 장애를 입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훈련을 담당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회복훈련과 검사를 실시함. 이는 배려가 필요한 업무로 실제 자격취득자 대부분이 여성이며, 전문분야에	① 대학입학 자격이 있는 자로 문부과학장관이 지정한 학교나 후생노동장관이 지정한 시력훈련사 양성소에서 3년 이상 시력 훈련사로서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한 자 ② 대학, 양성소 등에서 2년 이상 수업하고 지정과목을 수료한 후에 ①의 학교, 양성소에서 1년 이상, 시력 훈련사로서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한 자	기초의학개요, 기초시력교정학, 시력검사학, 시력장해학, 시력훈련학

<표 계속>

분야	자격 종목	자격 구분	직무내용 및 전망	수험자격	시험내용
보건 · 의료	시력 훈련사	국가	서 간호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하는 자격임.	③ 외국의 시력훈련에 관한 학교나 양성소를 졸업했으며 외국에서 시력 훈련사 면허에 상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로 후생노동장관이 위 ①, ②와 동등 이상의 지식과 기능을 소유한다고 인정된 자	
사회 복지	복지 용구 전문 상담원	공적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것도 보험금부 대상이므로 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소에는 2명 이상의 전문 상담원을 두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복지기기에 대해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격자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용구에 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하므로 자격 취득 후에 후생노동장관이 지정한 강습회를 수강해야 함.	누구라도 수강할 수 있음.	후생노동장관이 지정하는 「복지용구 전문상담원 지정 강습회」의 강의와 실습을 총 40시간 수강. ※ 요양 복지사, 의지장비사(의족), 보건사, 간호사, 중간호사,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사회복지사, 홈헬퍼2급 이상의 자격취득자 등은 강습을 받지 않아도 복지용구 전문상담원의 자격을 인정함.

3. 자격신설 가능 종목

일본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자격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일본의 전통에 적합한 자격종목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국가 및 민간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자격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한국

과 마찬가지로 국가자격으로 운영되는 자격은 민간참여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에서는 대체의학으로 금지하고 있는 침술사, 뜸사 등을 일본에서는 국가자격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라 할 수 있음
- 한국의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이 자격시험의 응시대상이 될 수 있는데 반해 일본의 경우는 안마·마사지 지압사 자격에 정상인도 응시할 수 있음
 - 대학입학 자격을 가지고, 문부과학장관이 인정한 학교 또는 후생노동장관이 인정한 양성 시설(수업연수 3년 이상)에서 안마·마사지 지압사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한 사람은 모두 응시가 가능함
 - 현저한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도 고등학교 입학자격을 갖고 학교 또는 양성시설에서 3년 이상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면 시험을 볼 수 있음
 - 이는 한국의 경우 안마사 자격으로 인하여 스포츠 마사지 등 민간 자격이 금지분야로 설정되어 있어 자격 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사례라 할 수 있음
 -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자격제도는 관리·운영 면에서 서로 유사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표 5-6> 일본 사례에 근거한 신설가능 자격종목의 예

분야	신설가능 자격종목
보건 ·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약 등록판매자 • 뜸사 • 세포검사사

<표 계속>

분야	신설가능 자격종목
보건 ·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력훈련사 ● 안마·마사지지압사 ● 언어청각사 ● 의료비서기능검정 ● 의료사무관리사 ● 의료사무원 ● 의사사무작업보조기능검정 ● 의사컴퓨터기능검정 ● 임상공학기사 ● 조제사무관리사기능검정 ● 진료보수청구사무관리능력검정 ● 진료정보관리사 ● 침술사 ● 음악, 놀이, 행동, 예술치료사
사회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지도원 ● 복지사무관리기능검정 ● 복지사환경코디네이터 기능검정 ● 복지용구전문상담원 ● 차일드마인더 ● 케어사무관리사 ● 케어시설관리사 ● 케어지원 전문원-케어 매니저 ● 케어사무원기능인정시험 ● 홈헬퍼

제3절 시사점

- 미국과 일본의 자격을 비교하면,
 - 첫째, 두 나라 모두 대체의학을 인정하고 있음
 - 둘째, 안마사, 지압사 등의 자격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셋째, 기존 자격의 영역이 세분화되어 자격종목의 독점영역이 줄어들어 대신 자격을 통한 일자리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예를 들어 약사와 약사보조사, 의사와 의사보조사 등이 일자리 나눔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미국과 일본 모두 언어청각사 자격이 있어 이 분야 자격신설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미국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자격은 한국에는 없는 다양한 자격들이 존재함

- 예컨대, 검안사, 약사보조사, 지압사, 의사보조, 의학기구 준비자, 발병전문의, 언어 및 청각치료사, 호흡기치료 기능공, 침술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등의 자격이 한국에는 없는 자격들임
- 현재 한국에서는 법으로 ‘치료’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언어치료사나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등이 자격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들 자격에 해당하는 직무가 필요할 경우 미술심리상담사나 언어재활 전문가 등의 형태로 변형되어 민간에서 자격이 운영되고 있음

□ 일본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자격 중 한국에 없는 자격종

- 목으로는 대중약 등록판매자, 뜸사, 세포검사사, 시력훈련사, 안마·마사지 지압사언어청각사, 의료비서기능검정, 의료사무관리사, 의료사무원, 의사사무작업보조기능검정, 의사컴퓨터기능검정, 임상공학기사, 조제사무관리사기능검정, 진료보수청구사무관리능력검정, 진료정보관리사, 침술사, 보행지도원, 복지사무관리기능검정, 복지사환경코디네이터기능검정, 차일드마인더, 케어사무관리사, 케어시설관리사, 케어지원 전문원, 케어사무원 기능인정시험, 홈헬퍼 등이 있음
- 한국의 자격제도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특성과 함께 상당부분 일본의 자격제도를 참조하여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일본의 경우 침술사나 뜸사 등이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자격으로 관리·운영되어 오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침이나 뜸 등의 대체의학 금지분야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또 다시 합헌판정(대법원 판결-2010. 7. 16)이 내려진 상태임
- 안마사 자격은 한국에서는 시각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인데 반해 일본에서는 일반인도 안마·마사지 지압사라는 자격에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음

-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하여 자격신설 시 한국에는 없지만 외국에는 있는 자격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한국에서는 금지종목으로 제한되어 있는 자격이지만 외국에서는 금지가 아닌 종목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확인절차를 거쳐 신설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제6장 사회서비스분야 자격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¹⁴⁾ 서비스분야

1. 보건 및 사회복지 자격 현황

가. 현황

- 2010년 6월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자격은 9개의 국가기술자격과 32개의 개별법 상의 국가자격, 112개의 민간자격(<http://www.pqi.or.kr/>, 2010)이 존재함
 -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민간자격은 보건·의료분야 1개 종목과 사회복지분야 2개 종목 등 총 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09개 자격이 순수 민간자격임

14)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결과는 박종성 외(2010), 서비스 산업의 자격연구(1) - 보건 및 사회복지업을 중심으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를 재구성하여 제시함.

<표 6-1> 국내 사회서비스업 자격종목의 구분 및 규모

서비스 분야	구분	국가기술 자격	개별법의 자격	민간자격		합계
				공인	비공인	
사회 서비스업	보건·의료	5	26	공인	1	66
				비공인	34	
				소계	35	
	사회복지	4	6	공인	2	87
				비공인	75	
				소계	77	
	계	9	32	공인	3	153
				비공인	109	
				소계	112	

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종목 데이터는 2010년 6월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보건직업인국가시험원 및 자격 관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내·외부 자료를 통합하여 적용한 것임.

나. 보건·의료 분야 자격의 활용성

- 보건·의료분야 자격의 취업가능성과 고용안정성, 직무전문성 등에 대한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본 결과 의사와 치과의사가 가장 높은 점수(4.86)를 얻은 것으로 분석됨
 - 이들 자격은 세 가지 활용성 측정지표 모두 5점 만점에 4.8 이상의 점수를 얻어 시장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안마사, 보건교육사, 위생사 등은 국가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나타남

<표 6-2> 보건·의료 분야 자격의 활용성에 대한 종합적 비교

구분	자격종목명	취업가능성	고용안정성	직무전문성	문항평균
국가	치과 의사	4.88	4.83	4.88	4.86
국가	의사	4.86	4.83	4.90	4.86
국가	한 의사	4.76	4.74	4.80	4.77
국가	약사	4.72	4.62	4.77	4.70
국가	간호사	4.68	4.54	4.63	4.62
국가	한약사	4.24	4.14	4.41	4.26
국가	물리치료사	4.26	4.00	4.41	4.22
국가	방사선사	4.12	4.01	4.42	4.18
국가	치과기공사	4.12	3.94	4.41	4.16
국가	치과위생사	4.21	3.95	4.21	4.12
국가	임상병리사	3.95	3.91	4.34	4.07
국가	정신보건간호사	3.91	3.86	4.14	3.97
국가	작업치료사	3.81	3.76	4.08	3.88
국가	응급구조사1.2급	3.80	3.65	4.07	3.84
국가	영양사	3.82	3.67	3.91	3.80
국가	간호조무사	3.90	3.62	3.52	3.68
국가	의무기록사	3.58	3.48	3.71	3.59
국가	안경사	3.71	3.35	3.68	3.58
국가	한약조제사	3.88	2.76	4.10	3.58
국가기술	임상심리사1.2급	3.39	3.40	3.86	3.55
민간	건강보험관련자격	3.48	3.41	3.74	3.54
국가기술	의공기사	3.34	3.39	3.71	3.48
민간	병원행정관련자격	3.42	3.30	3.65	3.46
국가	조산사	3.25	3.31	3.75	3.44
국가	의지보조기사	3.37	3.34	3.61	3.44
민간	인명구조관련자격	3.38	3.15	3.76	3.43
민간	간병지원관련자격	3.81	3.17	3.25	3.41
국가기술	의공산업기사	3.23	3.29	3.61	3.38
국가	의료관리자	3.21	3.22	3.48	3.30
국가기술	의료전자기능사	3.08	3.15	3.50	3.24
국가	위생사	3.23	3.13	3.36	3.24
민간	재활관련자격	3.10	3.01	3.48	3.20
국가	보건교육사	3.07	3.01	3.36	3.15
국가	안마사	3.15	3.00	3.18	3.11

- 1) 취업가능성: 해당 직업 분야에서 일자리(취업, 창업)를 가질 수 있는 정도.
- 2) 고용안정성: 해당 직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
- 3) 직무전문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의 고유성 정도.

다. 사회복지 분야 자격의 활용성

1) 사회복지 분야 국가자격의 활용성 비교

□ 사회복지 분야 자격 중 사회복지사 1급과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의 자격은 활용성이 3.5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복지사 2급과 3급 등은 활용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표 6-3> 사회복지 분야 자격의 활용성에 대한 종합적 비교

구분	자격종목명	취업가능성	고용안정성	직무전문성	문항평균
국가	사회복지사1급	3.80	3.53	3.63	3.65
국가	정신보건사회복지사1.2급	3.69	3.46	3.70	3.62
국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1.2급	3.54	3.42	3.58	3.51
국가	청소년상담사1.2.3급	3.42	3.35	3.47	3.41
국가기술	직업상담사1.2급	3.37	3.28	3.48	3.38
국가기술	소비자전문상담사1.2급	3.18	3.12	3.35	3.22
민간	학교.아동복지관련자격	3.03	2.89	3.21	3.04
국가	건강가정사	2.95	2.83	2.85	2.88
국가	요양보호사1.2급	3.08	2.77	2.77	2.87
민간	재활관련자격	2.84	2.69	3.06	2.86
민간	복지보험관련자격	2.70	2.67	3.10	2.82
민간	발달장애관련자격	2.70	2.61	3.05	2.79
민간	심리상담관련자격	2.74	2.61	2.97	2.77
국가	사회복지사2급	2.78	2.63	2.69	2.70
국가	사회복지사3급	1.98	1.96	2.06	2.00

라. 민간자격 참여금지 현황 및 사례

□ 부처별 민간자격의 공인률과 금지종목 비율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자격의 금지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6-4> 부처별 공인률 및 금지종목 비율

(단위: 개, (%))

소관부처	신청종목 (a)	공인종목 (b)	공인률 (b/a)	금지종목 (c)	금지종목 비율(c/a)	순수 공인률 (b/(a-c))
방송통신위원회	113(12.2)	10(12.3)	8.8	0(0.0)	0.0	8.8
금융위원회	7(0.8)	2(2.5)	28.6	0(0.0)	0.0	28.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	0(0.0)	0.0	0(0.0)	0.0	0.0
공정거래위원회	1(0.1)	0(0.0)	0.0	0(0.0)	0.0	0.0
기획재정부	37(4.0)	7(8.6)	18.9	2(0.9)	5.4	20.0
교육과학기술부	189(20.4)	20(24.7)	10.6	1(0.4)	0.5	10.6
법무부	13(1.4)	0(0.0)	0.0	7(3.1)	53.8	0.0
행정안전부	7(0.8)	4(4.9)	57.1	1(0.4)	14.3	66.7
문화체육관광부	84(9.1)	5(6.2)	6.0	1(0.4)	1.2	6.0
농림수산식품부	5(0.5)	0(0.0)	0.0	1(0.4)	20.0	0.0
지식경제부	60(6.5)	11(13.6)	18.3	2(0.9)	3.3	19.0
보건복지가족부	252(27.2)	3(3.7)	1.2	169(74.1)	67.1	3.6
노동부	78(8.4)	14(17.3)	17.9	22(9.6)	28.2	25.0
국토해양부	40(4.3)	0(0.0)	0.0	22(9.6)	55.0	0.0
환경부	1(0.1)	0(0.0)	0.0	0(0.0)	0.0	0.0
조달청	2(0.2)	1(1.2)	50.0	0(0.0)	0.0	50.0
소방방재청	7(0.8)	0(0.0)	0.0	0(0.0)	0.0	0.0
경찰청	13(1.4)	2(2.5)	15.4	0(0.0)	0.0	15.4
산림청	4(0.4)	2(2.5)	50.0	0(0.0)	0.0	50.0
농촌진흥청	2(0.2)	0(0.0)	0.0	0(0.0)	0.0	0.0
중소기업청	1(0.1)	0(0.0)	0.0	0(0.0)	0.0	0.0
해양경찰청	6(0.6)	0(0.0)	0.0	0(0.0)	0.0	0.0
미소관	3(0.3)	0(0.0)	0.0	0(0.0)	0.0	0.0
합 계	927	81	8.7	228	24.6	11.6

출처: 박종성(2009). 민간자격제도 현황과 문제, 포럼발표자료.

-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현재 ‘치료’나 ‘요법’, ‘테라피’ 등의 직무도 모두 유사의료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는 이유로 민간자격의 신설이 금지되고 있음

-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업무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여 ‘노인복지와 장애인 수발, 병간호 등의 직무분야’에 대하여 민간에서 자격신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표 6-5>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민간자격 참여제한 유형 및 사례

분야	관계부처	금지 유형	금지사례	부처의견	근거	비고
보건 · 의료	보건복지가족부	분야 금지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안마사 등 의료법상 해당 면허의 소지자만이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및 유사의료행위를 포함한 자격분야	면허소지자 외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치료”, “요법”, “테라피” 등의 직무도 유사의료행위에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청	분야 금지	약, 한약에 대한 제조, 투약, 품질관리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함.	자격기본법 제17조 1항	-
사회복지	보건복지가족부	분야 금지	노인복지 사회 복지 등 노인 및 장애인의 수발, 병간호 등을 직무로 하는 자격분야	사회복지사와 업무중복으로 인한 혼란 우려, 특히 노인 및 장애인의 수발, 병간호 등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관련있음	자격기본법 제17조 1항	노인 대상 체육활동(댄스, 스포츠 등)은 노인복지와 관련없는 것으로 민간자격 운영 가능

마. 해외 치료서비스업 현황 및 금지 해제 관련 사례

- 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자격신설의 규제나 제한이 심하지 않은 편임
 - 예컨대,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분야로 제한되어 자격으로 존재하지 않는 언어치료사나 레크리에이션치료사 등이 40개 이

- 상의 주(州)에서 공인자격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음
- 현재 미국에서는 언어치료사의 경우 Speech-Language Pathologists (언어병리학자)라는 명칭으로 46개 주에서 공인자격제도를 실시, 2002년 기준으로 약 94,000여 명의 자격취득자들이 학교나 병원, 보건센터 및 언어·청각센터 등에서 근무하고 있음
 - 청능사(청각사)는 Audiologists(청각학자)라는 이름으로 48개 주에서 면허를 요구하고 있으며, 병원이나 보건기관, 학교 등에서 약 11,000여 명이 근무
 - 미술치료사는 보완대체의학으로서 인정을 받아 의과대학에서 정식 교과과정으로 개설된 사례가 있으며, 음악치료사는 뉴욕주에서 ‘정신보건행위에 관한 종합의안’으로서 법제화(보건복지가족부, 2007)

<표 6-6> 언어치료 관련 외국의 자격제도 사례

국가	검정기준	검정방법	자격명칭 및 인증	소관 부처/자격취득과정
미국	언어치료학 석사	국가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C-SLP(Certificate of Clinical Competence of Speech Language Pathologist) - 공인자격증 - 주 자격증담당국 	※ 미국언어병리청각협회 (ASHA, American Speech-Language and Hearing Association) 인증교육 기관에서 75학점, 400시간 임상실습 이수, 석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내 국가시험 통과, 통과 후 임상수련 36주 전일제, 임상수련 보고서 제출 및 승인
캐나다	언어치료학 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언어임상병리 및 청능사 협회 주관 • 공인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eech-Language Pathologist - 국가공인자격증 - 캐나다언어임상병리 및 청능사협회 	※ 석사과정 후 캐나다언어임상병리 및 청능사협회 정회원 등록 및 실습과정 이수, 자격취득 후 3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표 계속>

국가	검정기준	검정방법	자격명칭 및 인증	소관 부처/자격취득과정
호주	언어치료학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언어병리학회 주관 공인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Speech Pathologist 지역공인자격증 호주언어병리학회 	
프랑스	4년제 언어치료 교육과정	보건부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Orthophoniste 국가자격증 보건부 	보건부: 14,500명의 언어치료사 등록(1964년부터 인정) ※ 언어치료 학위과정 응시자 중 10%만 선발(교과 1,700시간, 실습 1,200시간, 논문)
독일	3년제 직업전문학교 과정	국가자격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gopaden 국가자격증 보건부 	보건부: 9,000명 등록 - 아동수혜자 100% 보험 - 성인수혜자 10% 보험 ※ 1,740시간 교과과정, 2,100시간 실습
영국	3-4년제 언어치료 학사, 비전공학사+2년제 전공석사	보건전문인 협회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Speech-Language Therapist 국가공인자격증 보건전문인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국립보건국소속(일부 교육국, 개인치료실 소속) 등록치료사: 11,566명
일본	3-4년제 언어치료 학사, 비전공학사 + 2년석사	국가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청각사 국가자격증 의료연수추진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생노동부 언어청각사 약 5,100명 ※ 국가자격 합격 후 임상 실습
홍콩	홍콩대 언어치료학 학사	홍콩언어치료사협회 정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자격증 홍콩언어치료사협회 	
말레이시아	4년제 언어치료학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자격증 말레이시아언어청각학회 	
싱가폴	언어치료 석사	언어치료사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자격증 싱가폴언어청각학회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7), 『일자리창출을 위한 치료서비스 자격 체계화』T/F회의자료.

- 언어치료사 이외에 음악치료사, 놀이치료사 등 치료관련 자격에 대해서도 미국을 비롯한 일본, 캐나다, 호주 등 국가에서는 이미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과정으로 자격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이러한 해외 사례에 근거해 볼 때 우리나라도 이제는 치료서비스 분야의 자격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2.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의 문제점

가. 민간자격 금지분야 설정 문제

- 보건·의료 분야의 민간자격은 현재 ‘치료’나 ‘요법’, ‘테라피’ 등의 직무를 모두 유사의료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는 이유로 민간자격의 신설이 금지되고 있음
 - 자격명이나 직무 내용에 ‘치료’, ‘요법’, ‘테라피’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의료법에 의한 무면허 의료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정하고 있음

예시) 유사 의료행위 제한 사례(언어치료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놀이치료사, 심리치료사, 장애인치료사 등)

-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업무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여 ‘노인복지와 장애인 수발, 병간호 등의 직무분야’에 대하여 민간에서 자격신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예시) 사회복지사 업무와 중복으로 인한 제한(케어복지사, 개호복지사, 노인복지사, 노인심리상담사 등), 이·미용사 업무와 중복으로 인한 제한(네일아티스트, 메이크업아티스트, 퍼머넌트메이크업 등)

- 외국의 자격은 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비하여 자격신설의 규제나 제한이 심하지 않음
 -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분야로 제한되어 자격으로 존재하지 않는 언어치료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놀이치료사, 행동치료사, 예술치료사, 레크리에이션치료사 등이 존재함
 - 케나다는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행동치료, 청능치료 등의 자격이 있음
 - 호주는 언어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청능치료 등의 자격이 운영되고, 프랑스도 언어치료, 놀이치료, 예술치료, 청능치료 등의 자격이 있음
 - 독일의 경우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청능치료 등의 자격이 있고, 영국도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예술치료, 청능치료 등의 자격이 운영되고 있음
 - 일본은 언어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행동치료, 예술치료, 청능치료 등의 자격종목이 있음

-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치료분야 자격을 일부는 국가자격으로 일부는 민간자격으로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련분야 국가자격도 없으면서 치료 분야를 민간자격 금지분야로 설정하여 과잉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민간자격의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확인을 통해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 부처의 제한 기준에 대한 적용이 포괄적이고 다양하여 각종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재활'분야의 경우 '08년에는 제한분야가 아니었으나 '10년부터는 제한분야로 판단하고 있고, 반대로 간병사의 경우 '08년에는 제한

분야로 판단했다가 '09년 2차부터 제한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등 행정공무원의 재량에 의한 정책차원에서의 규제와 완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민간자격 금지분야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함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자격시장에서 언어치료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놀이치료사 등의 자격종목 등이 요구되고 있었으나 부처의 치료 명칭 사용규제로 인하여 그동안 이 분야 민간자격이 활성화되지 못함
 - 민간자격에서 금지된 자격 분야인 치료, 노인복지와 장애인 수발 등의 내용을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금지분야에 대한 설정 완화가 검토되어야 함

-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아동 재활 치료 서비스'사업에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인력 기준으로 등록된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자격증을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명시하였음
 - 현재 치료용어를 사용하는 자격은 등록되지 못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제도의 모순(치료서비스사업에서는 등록된 치료자격 활용근거 있으나 실제 치료자격 등록 금지임)이 발생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5월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중 치료지원과 관련된 '제28조(치료지원 등) ① 치료지원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치료, 심리·행동치료 등을 포함한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의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자격 또는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자로 채용·배치·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음

- 이는 민간자격 중 국가공인을 받은 치료관련 자격을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관련법에 제정되었는데 보건복지부는 ‘치료’ 용어사용을 민간자격 종목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어 민간자격 국가공인 이전에 이루어져야하는 등록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여 문제가 되며, 이에 대한 부처차원에서의 개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나. 자격종목 간 직무영역 마찰 및 포괄적 직무범위로 인한 문제

- 보건·의료 분야의 일부 자격종목은 포괄적 직무범위로 인하여 자격종목간 직무영역에 대한 마찰을 겪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한의사-한약조제사-약사의 관계, 혹은 안과의사-안경사, 정형외과 의사와 물리치료사 등의 관계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절반 이상(66.0%)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산업체와 학계, 협회 및 단체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보건의료분야의 자격은 면허범위에 관한 부분으로 자격종목 간 이해관계가 다름으로 인하여 마찰이 발생될 소지가 많음
 - 한약분쟁으로 일컬어지는 한의계와 약사회의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이익집단간의 집단이기주의를 표출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임
 - 극히 일부의 약사들에 의하여 이뤄지던 약사의 한약조제행위를 금지시키고자 제기된 한약업사의 헌법소원사건(89헌마163, 1991. 9. 16선고)이 각하결정으로 내려지자 당시의 보사부와 약사회가 주도적으로 약사의 한약조제를 공식화하기 위해 1993년 3월 5일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삭제를 공포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며, 과다배출된 약사들의 수익이 떨어져 활로를 모색하던 약

사회는 장래의 의약분업을 염두에 두고 한약에 대한 조제권을 확보하여 발생함

□ 다른 이익집단간의 갈등으로 의약분업분쟁이 있음

- 한약분쟁 당시에 실시시기를 정한 양방의학에 대한 의약분업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고, 시행을 1개월여 남긴 시기에 의료계는 시행의 중단 또는 연기를 주장하며 파업을 시작
- 의료대란으로 명명된 이 사태는 응급환자의 치료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하여, 의료계는 지금까지 의료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하여 들고 나왔고, 약사회는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주사제도 포함된 철저한 의약분업을 요구하였던 사례임

□ 한의사와 침구사 등의 경우는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침이나 뜸 등을 이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이른바 ‘대체의학’을 전면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음

- 그러나 재판관 가운데 합헌보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고 합헌 쪽에선 재판관 중에서도 “제도권 의료행위 이외의 치료방법을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음
- 조대현 재판관 등 5명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대해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하여 이에 대한 자격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이처럼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자격종목 간 마찰은 자격집단 간의 문

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피해로까지 나타나는 데서 더 큰 문제점이 있음

- 이익집단들의 이익이 우선시되다보니 국민들이 자격취득자 들에게 요구하는 서비스요구도 등이 충족될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남
- 따라서 자격종목 간 직무영역 마찰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포괄적 직무범위로 인하여 타 자격과의 마찰이 줄어들 수 있도록 부처 차원에서의 조율이 필요함

다. 시장에서 민간자격의 질관리 문제

-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민간자격의 경우는 자격의 검정기관에 따라 동일한 자격일지라도 다른 등급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점은 민간자격의 특징일 수도 있지만, 전문분야 민간자격의 경우는 검정기관마다 각기 다른 응시자격, 시험과목, 검정방법 등의 차이로 인하여 자격 시장에서의 질관리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현재 언어치료 관련 유사 자격종목이 많은데,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수준이나 응시요건, 시험과목 등에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의 자격적용 및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일정한 교육과 학력수준이 요구되는 직무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자격 운영기관에 따라 요구수준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나는 점 또한 문제가 됨
 - 예컨대 보건·의료 분야의 ‘수상인명구조’ 관련 자격은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에서 ‘지도관과 강사, 구조원’으로 구분하는가 하면, (사)대한수중협회에서는 ‘강사와 강사트레이너’로 등급을 정한 반면 대한적십자사와 (사)한국체육지도자 총연합회에서는 따로 등급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자격종목의 등급을 구분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무내용이나 검정과목, 응시자격 자체가 다르게 규정되는 경우로 이어져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 이는 직무내용이나 자격검정의 방법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자격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자격 취득 후 현장에서 자격의 적용 및 활용을 저해하는 부작용 등이 나타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치료분야의 자격은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과 검정수준의 난이도가 필요한데 일부 민간자격관리자들은 이 분야 자격종목의 직무수행 요구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응시자격을 설정하고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자격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음
- 분야별 자격종목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자격의 등급수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라. 개별 자격종목별 문제점

-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자격은 66개 종목,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자격은 87개 종목이 운영 중
 - 실태조사 결과 보건·의료 자격은 크게 문제가 되는 자격종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위생사 및 보건교육사 등 일부자격은 타 국가자격에 비해 취업가능성, 고용안정성, 직무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자격은 설문조사 결과 건강가정사, 영양보호사, 재활관련 자격, 복지보험관련 자격, 발달장애관련 자격, 심리상담관련

자격, 사회복지사 2, 3급 자격 등이 5점 리커트척도(Likert Scales) 기준 평가에서 3.0(보통)이하로 나타남

- 한약조제사는 2004년 이후 응시자가 없는 자격으로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사회복지사 2·3급과 위생사, 보건교육사, 건강가정사, 영양보호사, 재활 관련 민간자격, 복지보험 관련 민간자격 등에 대한 전문가 협의 회 및 면담조사를 통하여 문제원인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음

1) 위생사

- 응시자격의 문제
 - 보건의료 분야의 자격은 분야의 특성상 시험응시 전에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가 높는데, 위생사는 응시자격에 대한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식품보건, 환경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1과목 이상을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 과목으로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어 대학의 위생과 등이 없어지고 자격취득도 식품영양학과 등 타과에서 취득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남
 - 임상병리사 시험은 임상병리학과를 졸업한 자만, 영양사 시험은 식품영양학과 해당 학과 졸업자만이 응시가 가능한 반면, 위생사는 학과 구분 없이 1과목 이수로 응시가 가능하여 인력배출이 과잉되고,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취업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음
 - 이 분야 자격은 국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직무수행(위생해충 문제, 멜라민사건, 집단식중독 문제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재는 영양사 자격 취득자가 위생사 자격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식품위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외부 감독 없이 위생사 자격을 가진 영양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자신이 만든 식품이나 음식의 위생 상태를 자신이 판단하고 있는 실정임

2) 보건교육사

□ 국가자격으로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격종목

- 국회의원 발의로 자격종목이 신설되면서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의 활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항 등을 관련법에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설문조사에서 취업가능성, 고용안정성, 직무전문성 등의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 등급은 1등급~3급으로 구분이 되고 있으며 2010년 첫 회 시험을 실시한 자격으로 향후의 활용성을 높여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부처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보건·의료분야 자격종목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임

3) 건강가정사

□ 자격의 전문성

- 과정 이수형 자격으로 시험이 아닌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자격을 발급하고 있어, 자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수교과목 내용에 사회복지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회복지사 자격종목과도 중복되고 있어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과의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개선방안으로는 교육과정 이수자격에서 검정을 실시하는 자격시험의 형태로의 검토가 필요하고, 사회복지사의 자격과의 차별성을 확대시켜나가는 것을 제안할 수 있음

4) 요양보호사

- 자격시험의 변별력 및 자격종목의 전문성 문제
 - 요양보호사 자격(요양보호사 자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분야 인력양성이 필요하여 도입)은 그동안 과정 이수형 자격으로 자격을 발급하다가 2010년 8월에 제1회 요양보호사 시험을 실시하였는데 높은 합격률(98.7%)로 시험응시자 대부분 취득함

- 요양보호사 1, 2급간의 차별화 부족함이 지적됨
 - 개선 방법으로 자격검정 시험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필기시험이나 실습 등에 있어서 간호 또는 신체와 관련한 평가 등이 검토되어야 함
 - 1, 2급간의 차별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함

5) 발달장애관련 및 재활관련 자격

- 발달장애관련 자격(발달장애 상담사 등), 재활관련 자격(언어재활 등)은 장애아동 치료 및 바우처 사업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의 등록된 민간자격의 활용보다는 등록 되지 않은 미등록 민간 자격이 노동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언어치료사, 미술치료사, 놀이치료사 자격 등은 시장에서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규제로 인하여 민간자격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 일부 민간자격관리자들은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격을 등록(예: 언어장애상담사 등)하고 있음
 - 여러 단체에서 민간자격을 운영하여 분야별 인력요구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음

- 발달장애 관련 및 재활관련 자격 분야에서는 민간자격 규제 완화를 통하여 치료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치료라는 용어가 민간자격으로 사용되기 어렵다면 국가자격으로의 자격신설이 검토되어야 함
- 민간자격으로 유지되더라도 관련 학회 단체 등에서의 자율적 기준(응시자격, 관련전공 기준, 교육내용 등)을 제시하여 민간자격 국가공인 시 분야별 기준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함

6) 심리상담관련 자격(심리상담사 등)

- 자격검정기관과 운영기관별 응시자격, 시험과목, 출제기준, 검정과목 등이 상이하여 민간자격에 대한 질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음
 - 현재 각 기관별 응시자격 차이 문제, 교육요건 차이 문제, 자격의 전문성 부족 문제 등으로 시장에서의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 분야의 대표적인 민간자격 관련 학회 단체 등에서의 자율적 기준(응시자격, 관련전공 기준, 교육내용 등)등을 제시하여 이 분야의 자격운영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기준의 설정은 민간자격 평가 시에 고려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도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 복지보험관련 자격(보험심사평가사 등)

- 국가재산을 청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으로 역할이 중요하나,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보험 청구관련 업무를 비전문가들이 수행하고 있고 일부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들이 수행하는 것

는 실정임(대략 7만명 정도가 보험청구 업무 수행함)

- 복지보험관련 대부분의 자격이 시험과목 등에 건강보험 청구 방법 등의 포함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기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인력을 보험청구 업무에 대체 사용함으로써 복지보험관련 자격(보험심사평가사 등)의 활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자격검정시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비 전문인력을 전문인력으로 교체해 나간다면 자격의 활용성 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임

8) 사회복지사 2·3급

- 교육과정 이수로 자격이 발급되는 이수형 자격으로, 자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 특히 3급은 노동시장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취업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은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부분의 사회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동의하고 있는 실정임
 -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협의회 및 이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 조사 결과에서도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은 폐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소지자는 2009년 통계로 22만명을 넘고 있으며, 1급을 보조하는 수준의 자격으로 시장에서 인식되고 있음
- 현장에서의 활용성은 사회복지사 1급에 비해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일부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의 통합하자는 의견과 일부에서는 2급을 존치 할 경우 과정형 이수자격에서 시험을 보는 검정형 이수 자격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일부 개별종목별 문제가 되는 자격종목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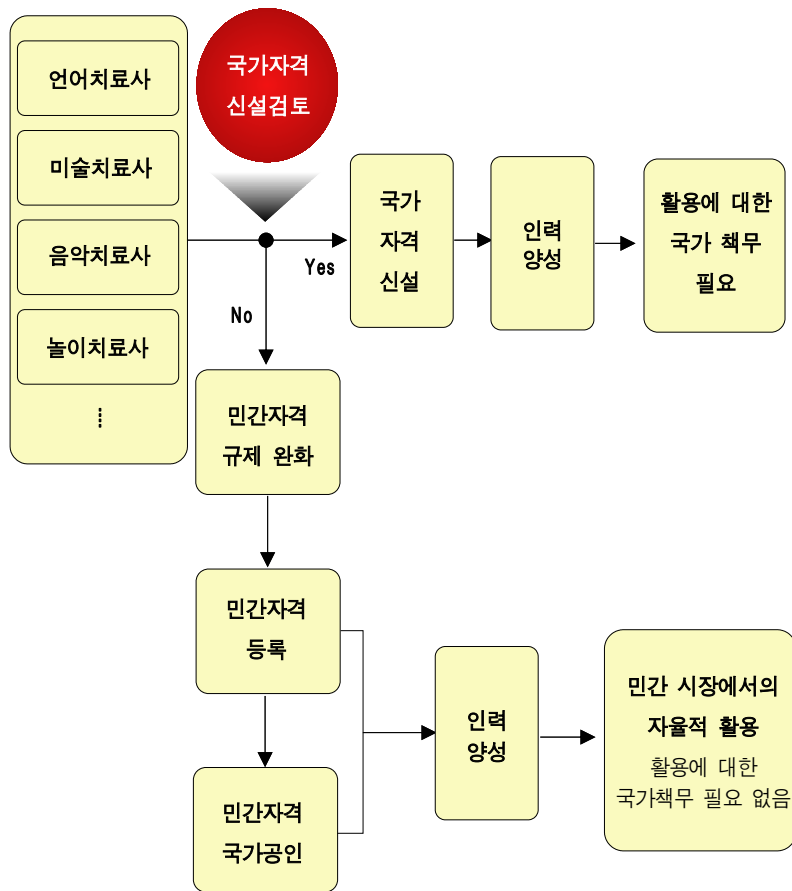
3. 보건 및 사회복지 자격의 개선 방향

가. 민간자격 금지분야 규제 완화 필요

- 보건·의료 분야의 민간자격은 유사의료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는 이유로 민간자격의 신설이 금지되고 있음
 - 자격명이나 직무 내용에 ‘치료’, ‘요법’, ‘테라피’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의료법에 의한 무면허 의료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정하고 있음
 -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판단기준으로 ‘위해의 발생 가능성’을 들고 있고, 그 ‘위해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유형이라 할지라도 ‘구체적 위험성’이 없다면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유사 의료행위로 판단하여 제한하고 있는 언어치료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놀이치료사, 심리치료사, 장애인치료사 등의 자격을 민간자격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중 언어치료사는 국가자격을 추진하고 있으니 언어치료사 이외의 치료 자격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함
 - 미국, 일본을 비롯한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영국 등 대부분의 나라가 치료자격을 통하여 인력을 양성 배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규제를 하고 있어 이 분야 인력양성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제도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음악대학원, 미술대학원 등 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의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과정이 있어 이에 대한 교육 및 자격시험이 이루어지는데 치료라는 용어사용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자격발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인력양성의 큰 틀을 무시하고, 기존 의료인의 기득권 세력의 유지하는 측면에서 민간자격을 바라본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그림 6-1]과 같이 이루어져야 함

[그림 6-1] 치료 관련 자격의 개선 방향



- 우리나라 치료사 자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치료사 자격 이외에도 국가자격에 대한 신설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국가자격 신설은 자격의 공신력을 높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향

후 국가자격 취득자들에 대한 활용을 정부차원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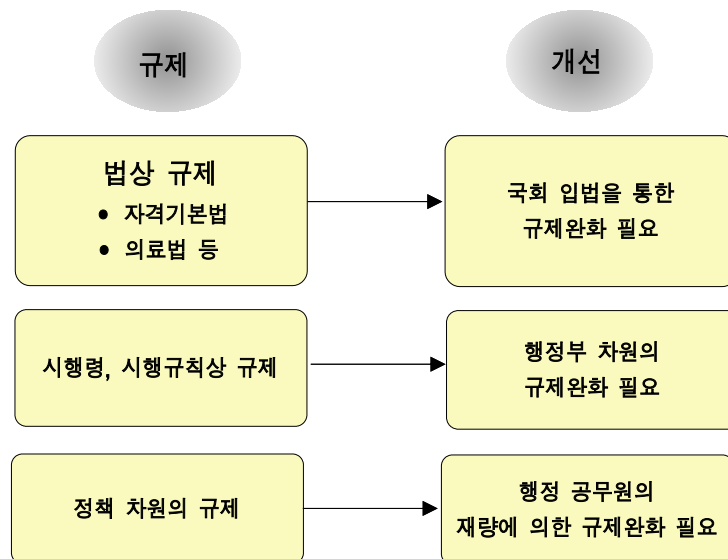
-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의 자격이 민간자격으로 등록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민간자격으로 운영 시 전문 분야별 학회 및 협회, 단체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별 자격증의 응시자격, 수준, 자격의 직무범위 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출받아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시 고려하도록 하여 민간자격 시장의 질 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한다면 민간자격종목 및 검정기관 난립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치료분야의 자격을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업무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여 ‘노인복지와 장애인 수발, 병간호 등의 직무분야’에 대하여 민간에서 자격신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예: 사회복지사 업무 영역으로 판단하여 민간참여 금지분야(케어복지사, 개호복지사, 노인복지사, 노인심리상담사 등 금지))

- 이는 현재의 사회복지사 업무영역과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민간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사회복지영역은 장애인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 교도사회복지, 군사회복지, 학교 및 청소년 사회복지, 여성사회복지, 아동사회복지, 산업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가족사회복지 등으로 업무영역이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어 현재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영역에 바로 가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임
- 대부분은 바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어 새로 교육을 배우고 경력을 쌓아서 각 전문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의 직무영역이라고 해서 민간자격 금지분야로 설정하

- 고 있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판단됨
- 규제완화를 통해 분야별 전문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자가 민간자격에 대한 분야별 자격검정을 통하여 현장에 투입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회복지분야의 규제완화가 어렵다면 국가자격으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자격을 신설해야 함
 - 민간자격에 대한 규제의 유형은 법상의 규제와 시행령, 시행규칙상의 규제, 그리고 정책차원의 규제로 구분할 수 있음
 - 민간자격 금지분야에 대한 규제를 개선할 때는 [그림 6-2]과 같은 형태로 규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민간자격의 규제는 정책차원의 규제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회 및 행정부 차원에서의 규제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

[그림 6-2] 민간자격 규제의 개선 방향



나. 자격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필요

- 보건·의료 분야의 자격은 대부분 면허성 자격으로 자격종목 간 직무영역의 마찰이 나타나고 있음
- 한의사-한약조제사-약사, 안과의사-안경사, 정형외과 의사와 물리치료사, 한의사-침구사, 안마사-스포츠마사지사 등 다양한 형태의 마찰 및 충돌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직무영역의 다툼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임
 - 이런 마찰을 줄이기 위해 부처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함
 - 현재 자격, 신설, 통합 폐지 등은 자격기본법상 자격정책심의회 의견 상정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자격종목 간 직무영역에 대한 마찰은 조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나 자격기본법 제 8조 ①항 6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격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가 가능함
 - 자격정책심의회는 교과부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부처 간의 갈등 조종 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국무총리실 안에 비상설기구인 자격분쟁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자격 간 마찰, 영역 다툼 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격분쟁조정위원회는 자격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처가 참여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자격분쟁조정위원회 아래에 소위원회는 분쟁이 되는 자격종목과 관련한 학계, 산업계, 단체, 부처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가능함
 - 자격 간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격종목 신규개발 시 부터 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자격종목 개발 시 직무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직무분석 실시 시 유관 자격전문가 들로 부터의 검토를 거쳐 분쟁 소지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함

- 자격종목 간 마찰은 자격집단 간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피해로까지 나타나는데서 더 큰 문제이므로 자격분쟁조정위원회를 자격종목 간 마찰을 줄여나가야 함

다. 민간자격 시장의 질 관리

- 민간자격은 동일한 성격 혹은 동일한 명칭의 자격일지라도 관리·운영하는 기관이 어딘가에 따라 자격의 등급을 다르게 구분함
 - 이는 자격종목의 등급을 구분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무내용이나 검정과목, 응시자격 자체가 다르게 규정되는 경우로 이어져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직무내용이나 자격검정의 방법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자격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자격 취득 후 현장에서 자격의 적용 및 활용을 저해하는 부작용 등이 나타날 우려가 상존함
 - 전문분야(치료 등)의 자격은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과 검정수준의 난이도가 확보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자격관리자들은 이 분야 자격종목의 직무수행 요구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응시자격을 설정하고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자격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음
 - 전문분야별 자격종목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자격의 등급수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함
 - 관련 학회 및 부처 추천 단체 등에서 각 분야별 자격에 대한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응시자격이나 교육의 범위 등의 요건을 가이드라인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제시하여 준다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시 고려할 수 있음

- 민간자격 시장의 질 관리에 대한 접근방법은 전문분야 민간자격을 중심으로 실시해야 함

4. 개별 자격종목별 개선 방향

- 개별 자격종목별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자격은 66개 종목,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자격은 87개 종목 중 일부 문제가 되는 자격종목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함

가. 위생사

- 응시자격 및 활용성 문제
 - 국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직무수행(위생해충 문제, 멜라민사건, 집단식중독 문제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현재의 자격보다 보다 전문성 있는 자격종목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1과목 이수 요건을 확대하고 전국의 지역 보건소 등에서 위생사 등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이루어져야 함

나. 보건교육사

- 신설된 후 관련법에서의 활용여부 등이 반영되지 못하여, 취업가능성, 고용안정성, 직무전문성 등의 낮게 나타남
 - 신규자격으로 인한 사회적 인지도 개선이 필요하며, 관련법에서의 활용성 강화, 시험과목 및 출제기준의 현장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다. 건강가정사

- 과정 이수형 자격으로, 자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
 - 교육과정 이수자격에서 검정을 실시하는 자격의 형태로의 검토가 필요함

- 이수교과목에 사회복지학 내용이 포함되어 사회복지사 자격과 중복
 - 사회복지사의 자격과의 차별성을 확대시켜나가기 위해 자격종목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사와 차별화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자격종목을 개선해야 함

라. 요양보호사

- 과정 이수형 자격에서 올해 첫 시험이 실시되었으나, 높은 합격률 (98.7%)로 시험응시자 대부분 취득하는 자격종목으로 자격시험의 변별력문제 자격종목의 전문성 문제 등이 지적됨
 -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강화하고 시험의 난이도 조정을 통해 적정 합격률이 유지되도록 자격에 대한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자격검정 시험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필기시험이나 실습 등에 있어서 간호 또는 신체와 관련한 평가 등이 검토되어야 함

- 요양보호사 1, 2급간의 차별화 부족이 지적됨
 - 재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요양보호사 1급과 2급자격간 직무내용의 차별화를 통해 시험과목 및 출제기준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함

마. 발달장애관련 및 재활관련 자격

- 장애아동 치료 및 바우처 사업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의 등록된 민간자격의 활용보다는 등록 되지 않은 미등록 민간자격이 노동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현실임
 - 언어치료사, 미술치료사, 놀이치료사 자격 등은 시장에서는 필요한데 법적인 규제로 인하여 민간자격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여, 일부 민간자격관리자들은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격을 등록하고 있음
 - 발달장애 관련 및 재활관련 자격 분야에서는 민간자격 규제 완화를 통하여 치료사용을 사용토록 하거나, 민간자격으로의 사용이 어렵다면 국가자격으로의 자격신설이 검토되어야 함

- 여러 단체에서 민간자격을 운영하다보니 분야별 인력요구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임
 - 민간자격으로 유지되더라도 관련 학회 단체 등에서의 자율적 기준(응시자격, 관련전공 기준, 교육내용 등)을 제시하여 민간자격 국가공인 시 분야별 기준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바. 심리상담관련 자격

- 자격검정 기관이 다양하고 운영기관별로, 응시자격, 시험과목, 출제기준, 검정과목 등이 상이하여 민간자격에 대한 질관리에 문제가 있음
 - 현재는 각 기관별 응시자격 차이 문제, 교육요건 차이 문제, 자격의 전문성 부족 문제 등으로 시장에서의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 분야의 대표적인 민간자격 관련 학회 단체 등에서의 자율적 기준(응시자격, 관련전공 기준, 교육내용 등)등을 제시하여 이 분야

의 자격운영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설정된 기준은 민간자격 평가 시 고려하고, 노동시장에서도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임

사. 복지보험 관련 자격

- 국가재산 청구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자격이지만,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보험 청구관련 업무를 준전문가나 비전문가들과 일부 간호사 자격취득자들(준전문인력)이 수행(대략 7만명 정도가 보험청구 업무 수행)하고 있으며, 복지보험관련 대부분의 자격이 시험과목 등에 건강보험 청구 방법 등의 포함되지 못하며, 자격의 활용성을 부족함
 - 자격검정시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준전문인력 및 비전문인력을 전문인력으로 교체한다면 자격의 활용성 등이 강화될 것임

아. 사회복지사 2·3급

- 과정 이수형 자격으로, 자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 2급 자격소지자는 2009년 통계로 22만 명 넘고 있으며, 1급을 보조하는 수준의 자격으로 시장에서 인식됨
 - 일부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의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2급을 존치 할 경우 과정형 이수자격에서 시험을 보는 검정형 자격으로 전환이 필요함
 - 과정형 유지가 필요하다면 자격의 질관리를 위하여 약 3.6/4.5 점(80%) 이상인자만을 대상으로 자격을 발급하는 것이 필요함
- 3급은 노동시장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으며, 취업가능성이 거의 없음
 - 3급의 자격은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사회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개진되어, 폐지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함

5.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신규자격 발굴

가. 자격 발굴 필요성

- 서비스산업은 국민총소득과 상관관계가 높으며, 고용창출효과가 커서 경제발전의 주요한 원동력으로 평가되고 있음
 - 따라서 제조업 중심의 인력양성 체제에서 벗어나 서비스 분야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적자원에 크게 의존하는데 반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
 - ※ 서비스 분야의 유망직업, 유망자격이 발굴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서비스산업 중 사회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는 정부에서 우리나라 전체 예산(292조 8천 억)의 약 1/3에 해당하는 81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
 - 이 분야에 대한 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2010년 우리나라 분야별 예산은 <표 6-7>와 같이 보건·복지 예산이 81조 2천억 원으로 국방예산 다음으로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음
 - 따라서 보건·복지 분야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인력양성시스템, 특히 자격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표 6-7> 주요 분야별 예산(2010년 기준)

분야	예산	전년대비 증가율
R & D	13조 7천억 원	11%
SOC(민간투자사업)	25조 1천억 원	1.5%
보건·복지	81조 2천억 원	8.9%
문화·체육·관광	3조 9천억 원	12.2%
국방	129조 6천억 원	3.6%
공공질서·안전	12조 9천억 원	5.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조 1천억 원	6.7%
농림수산식품	17조 3천억 원	2.4%
교육	38조 3천억 원	-
환경	5조 4천억 원	6.3%
통일·외교	3조 3천억 원	13.1%
일반공공행정	48조 7천억 원	0.1%

출처: 기획재정부,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2010).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인간의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산업인 지식기반서비스에 포함됨
 - 보건, 의료, 사회복지 서비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파급 효과가 큰 고부가치 산업으로, 전문인력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전문인력양성에 있어 교육 및 자격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며, 해외 자격제도의 벤치마킹 필요성도 요구됨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자격종목 발굴 등의 연구 검토가 필요함
 - 우리나라에는 없는 자격종목이나 외국에는 있는 자격종목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자격종목으로 도입 가능한지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나. 신규자격 발굴

□ 신규자격 발굴 절차

- 각종 문헌 등을 검토하여 자격을 발굴하고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자격신설 기준을 마련함
- 신설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협의회를 통하여 신설자격을 도출
- 도출된 자격을 다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자격으로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를 거침

[그림 6-3] 신설자격 발굴 절차



<표 6-8> 신규자격 신설기준 및 내용

신설기준	내용
서비스요구도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대 국민 서비스 요구가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기존 자격취득자의 업무수행 범위와 능력으로 국민의 서비스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격종목
직무전문성	자격취득자의 업무 수행시 필요한 지식, 스킬, 태도의 고유성이 존재하여 자격취득자가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격종목
능력인정가능성	일정기간 동안 체계적인 학습에 참여한 결과(outcomes)를 정형화된 형태의 평가를 통해서 확인하여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자격종목
일자리가능성	자격종목의 신설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은 자격종목

다. 신설자격의 적합성 조사결과

- 보건·의료분야의 자격 신설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보건·의료분야의 자격 신설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사회복지분야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점수가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3.5점을 넘는 자격종목이 언어치료사 하나만 제시되었지만,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사회복지사 외 11개 자격종목의 신설 가능성이 평균 3.5점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종목 신설 가능성이 높은 것은 보건·의료의 경우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직결된 분야로서 직업 진입 규제성이 높고, 각 직업영역별로 보수적인 관점을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3.0점 이상~3.5점 미만의 점수를 얻은 자격은 해부병리사(3.40)와 운동처방사(3.26), 인공심폐사(3.25), 침술사(3.24), 알콜 및 약물중독상담사(3.23), 카이로프랙틱스(3.22), 외과

수술보조사(3.13), 검안사(3.11), 호흡기치료사(3.09), 뜯치료사(3.01) 등으로 나타남

- 정신과보조사와 마사지사, 약무관련 인허가 전문가, 금연관리자, 발 치료전문가, 수술기구준비사, 일반약품판매사, 약무사무관리사, 약 사보조사 등의 자격은 평균 3.0점 미만으로 평가됨

□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 신설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는 보건·의료 분야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자격신설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됨
- 평균 4.0점 이상의 고득점을 얻은 자격으로는 학교사회복지사(4.16)와 의료사회복지사(4.13), 아동청소년사회복지사(4.04), 미술치료사(4.00) 등이 있었으며, 나머지 놀이치료사와 음악치료사, 교정사회복지사, 가족사회복지사, 장애사회복지사, 요양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사, 레크리에이션치료사, 군사회복지사, 재활용구 전문상담사 등도 모두 평균 3.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하여 제시한 거의 모든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이 신설가능 대상이 되고 있음

□ 각 지표별(서비스요구도, 직무전문성, 능력인정필요성, 일자리가능성)로 측정된 자격의 신설 가능성을 종합한 결과는 <표 6-9>와 같음

<표 6-9>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신설자격의 적합성 조사 결과

평균 분야	2.4 이하	2.5-2.9	3.0-3.4	3.5-3.9	4.0 이상
보건·의료	-	정신과보조사(2.96) 마사지사(2.93) 약무관련인허가 전문가-RA(2.91)	해부병리사(3.40) 운동처방사(3.26) 인공심폐사(3.25) 침술사(3.24)	언어치료사(3.52)	-

<표 계속>

평균 분야	2.4 이하	2.5-2.9	3.0-3.4	3.5-3.9	4.0 이상
보건 · 의료		금연관리사(2.90) 발치료전문가(2.86) 수술기구준비사(2.78) 일반약품판매사(2.63) 약무사무관리사(2.58) 약사보조사(2.55)	알콜및약물중독 상담사(3.23) 카이로프랙틱스(3.22) 외과수술보조사(3.13) 검안사(3.11) 호흡기치료사(3.09) 뜸치료사(3.01)		
사회 복지	-	-	-	놀이치료사(3.99) 음악치료사(3.90) 교정사회복지사(3.81) 가족사회복지사(3.81) 장애사회복지사(3.78) 요양관리사(3.76) 장애인활동보조사(3.70) 레크레이션치료사(3.68) 군사회복지사(3.64) 재활용구 전문상담사(3.59)	학교사회복지사(4.16) 의료사회복지사(4.13) 아동청소년사회복지사(4.04) 미술치료사(4.00)

6.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신규발굴 자격종목

가. 신규발굴 자격종목

- 전문가 협의회, 면담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자격신설 가능
종목은 A, B, C, D의 형태로 구분하여 제시함
 - A, B, C그룹의 자격은 모두 자격신설 필요성이 보통 이상으로 제시
된 것으로서 자격신설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D그룹 중 일부의
자격은 부처에서 국가자격을 추진하고 있는 등 신설이 필요한 자
격종목이 있음

【자격 그룹화의 기준】

※ 서비스요구도, 직무전문성, 능력인정필요성, 일자리가능성 4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를 그룹화 하였음

- A그룹 : 전체 평균 4.0 이상
- B그룹 : 전체 평균 3.5-3.9
- C그룹 : 전체 평균 3.0-3.4
- D그룹 : 전체 평균 2.5-2.9

<표 6-10> 신규자격의 그룹화

그룹구분	자격종목	종목 수
A 그룹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사회복지사, 미술치료사	4
B 그룹	언어치료사, 놀이치료사, 음악치료사, 교정사회복지사, 가족사회복지사, 장애사회복지사, 영양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사, 레크레이션치료사, 군사회복지사, 재활용구전문상담사	11
C 그룹	해부병리사, 운동처방사, 인공심폐사, 침술사, 알콜및약물중독상담사, 카이로프랙틱스, 검안사, 뜸치료사 외과수술보조사, 호흡기치료사	10
D 그룹	정신과보조사, 마사지사, 약물관련인허가전문가(RA), 금연관리사, 발치료전문가, 수술기구준비사, 일반약품판매사, 약무사무관리사, 약사보조사	9

□ 자격화 검토 우선 순위

- 자격화 검토의 우선순위는 A, B, C의 형태로 접근해야 함
-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사회복지사, 미술치료사 등의 자격은 A그룹에 해당되는 자격으로 자격신설이 강하게 요구됨
- B그룹 언어치료사, 놀이치료사, 음악치료사, 교정사회복지사, 가족사회복지사, 장애사회복지사, 영양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사, 레크레이션치료사, 군사회복지사, 재활용구전문상담사 등도 자격신설이 요구됨

- 언어치료사는 국가자격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음
- C그룹은 해부병리사, 운동처방사, 인공심폐사, 침술사, 알콜및약물 중독상담사, 카이로프랙틱스, 검안사, 뜸치료사 외과수술보조사, 호흡기치료사 등의 자격이 신설 검토가 필요한 자격으로 도출됨
- D그룹도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자격종목 발굴할 때 모두 신설이 필요한 자격으로 제시된 종목들임
- 정신과보조사, 마사지사, 약물관련인허가전문가(RA), 금연관리사, 발치료전문가, 수술기구준비사, 일반약품판매사, 약무사무관리사, 약사보조사 모두 신설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된 종목인데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3.0 미만으로 제시되었으나 대부분의 자격이 3.0 근처에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3.0 미만 중 약물관련인허가전문가(RA)는 2.91로 제시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미 국가자격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자격을 신설하고자 하는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신설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나. 발굴된 보건 및 사회복지 자격 직무내용

<표 6-11>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신규자격의 직무내용

분야	자격종목명	자격의 직무내용	해외 사례 및 전문가 추천
의료 지원	외과수술 보조사	외과의사, 간호사 등의 지도 하에 외과 수술실의 팀원으로서 보조 업무를 수행	(미)Surgical Technologists
	정신과 보조사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 등에 수용된 환자의 상태를 돌보고, 환자의 위생 및 일상생활을 돕는 역할을 수행	(미)Nursing Aides and Psychiatric Aides (미)Psychiatric Technicians

<표 계속>

분야	자격종목명	자격의 직무내용	해외 사례 및 전문가 추천
약무 관리 및 지원	약무관련 인허가전문가 (RA)	의약품 등의 인허가 관련 업무와 약무행정 전반에 걸친 민원업무를 처리함	(미)RAC USA (Regulatory Affairs Certification)
검사	검안사	시력과 안구질환을 진단하기 위하여 눈을 검사하는 역할을 수행	(미)Optometrists (일)시능훈련사
	해부 병리사	악성세포(암 포함)의 조기발견 및 진단을 위해 정밀한 검사를 진행함	(일)세포검사사
	인공 심폐사	심장, 말초혈관 질환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	(미)Cardiovascular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
마사지	카이로프랙틱스	손기술을 이용해 비정상적인 척추의 배열을 교정, 통증을 완화, 치유하는 역할을 수행	(미)Chiropractors
	마사지사	아픈 부분을 밀거나 주물러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수행	(일)안마·마사지업사 (미)Massage Therapists
치료	언어치료사 (언어장애 전문가)	음성·언어기능 장애를 가진 자의 언어기능 회복 및 유지를 위해 다양한 언어훈련과 검사, 조인, 지도·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치료를 도움	(미)Speech-Langu age Pathologists (미)Audiologists (일)언어청각사
	호흡기 치료사	호흡질환이 있는 환자를 평가, 치료, 돌보는 업무 수행	(미)Respiratory Therapists
	발치료 전문가	발과 다리의 장애와 질병, 부상을 진단, 치료함	(미)Podiatrists
	뜸치료사	뜸을 떠서 피부 표면에 열자극을 주는 온열요법으로 치료함	(일)뜸치료사
	침술사	침을 놓아서 인체 환부에 자극을 주어 아픔을 완화시키고 치료함	(미)Acupuncture (일)침술사
	금연 관리사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금연에 이르게끔 도와주고 관리함	전문가 추천
	운동 처방사	대상자의 체력에 따라 운동의 종류와 양을 처방하는 역할을 수행	전문가 추천
중독 치료	알코올 및 약물중독 상담사	술이나 약물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상담을 실시하여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	(미)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Social

<표 계속>

분야	자격종목명	자격의 직무내용	해외 사례 및 전문가 추천
치료 상담	레크레이션 치료사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 장애인 이나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를 완화, 치유하는 역할을 수행	(미)Recreational Therapists
	미술치료사	내담자의 심리문제에 대하여 미술매체를 활용한 심리상담업무를 수행	(미)Art Therapists
	음악치료사	내담자의 심리문제에 대하여 음악매체를 활용한 심리상담업무를 수행	(미)Music Therapists
	놀이 치료사	아동이나 치매노인 등의 심리문제를 다 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상담, 치유 하는 역할을 수행	전문가 추천
전문 사회 복지사	장애사회복지사	장애인 대상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 발·운영하며, 생활지도 및 상담업무를 수행	전문가 추천
	교정사회복지사	교정시설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운영하며, 생활지 도 및 상담업무를 수행	전문가 추천
	군사회복지사	군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 발·운영하며, 군인들의 생활지도 및 상 담업무를 수행	전문가 추천
	가족사회복지사	가족 내 문제(결혼, 이혼, 다문화가정 문 제 등)에 관하여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 발·운영하며, 가족 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및 전문가 연결업무를 수행	전문가 추천
	학교사회복지사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성폭행 등의 문제를 예방, 해결하기 위하여 프로 그램을 개발·운영하며, 상담 및 전문가 연결업무를 수행	전문가 추천
	아동· 청소년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상담 및 전문가 연결업 무를 수행	전문가 추천
	의료사회복지사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에게 적당한 조치를 제안, 상담하거나 관 련 기관을 연결하는 업무를 수행	전문가 추천

<표 계속>

분야	자격종목명	자격의 직무내용	해외 사례 및 전문가 추천
소외 계층 지원	요양관리사 (요양설계사, 요양관리 복지사)	노인들을 대상으로 요양계획을 세워주고, 서비스 제공자와 연결하여 줌. 요양보호사의 업무나 관련 시설·사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일)개호지원전문원
	장애인 활동 보조사	노인이나 장애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가정을 방문해 생활지원, 신체시중 업무를 지원함	(일)서비스개조사2급 (일)홈헬퍼 (미)Home Health Aides
복지 업무 지원	재활용구 전문상담사	재활을 위한 복지기기에 대해 적절한 조언 및 상담업무를 수행함	(일)복지용구전문상담원

제2절 교육 서비스 분야

1. 교육서비스 자격 현황

가. 현황

- 2010년 현재 우리나라 교육서비스 분야의 자격은 25개의 정부 부처 관할 국가자격, 447개의 민간자격이 있음
- 민간자격의 경우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공인민간자격'은 없음

<표 6-12> 국내 교육·기타 서비스업 자격종목의 구분 및 규모

서비스 분야	구분		국가기술자격	개별법의 국가자격	민간자격		합계
	교육	기타서비스			공인	비공인	
교육·기타서비스	교육 서비스	-	18	공인	-	447	465

출처: 박종성 외(2010). 『서비스 산업의 자격연구(1)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민간자격 등록 현황¹⁵⁾(2010년 6월 현재)은 2.5개년 간 문화체육관광부가 430개 종목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 382개 종목, 보건복지부 311개 종목임
- 분야별 등록 민간자격은 교육·사회복지 분야가 345개 종목(73.6%)으로 제일 많으며, 등록불가 비율(26.4%)도 가장 높음

<표 6-13> 분야별 민간자격 등록 현황('08~'10. 6)

자격분야	종목 수(비율)		
	접수	등록	등록불가
경영관리	182(11.9)	146(80.1)	36(19.8)
교육·사회복지	469(30.6)	345(73.6)	124(26.4)
기술·기능	74(4.8)	65(87.8)	9(12.2)
기초사무	26(1.7)	25(96.2)	1(3.8)
기타서비스	136(8.9)	116(85.3)	20(14.7)
스포츠·건강	274(17.9)	211(77.0)	63(23.0)
어학·어문	118(7.7)	116(98.3)	2(1.7)
취미·미용	209(13.6)	192(91.9)	17(8.1)
컴퓨터·정보기술	47(3.1)	47(100.0)	0(0.0)
계	1,535(100.0)	1,250(100.0)	272(100.0)

출처: 서준호(2010), “민간자격 등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THE HRD REVIEW 2010 AUTUMN, pp. 45~59.

- 교육서비스 분야의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은 다음의 10개 분야로 유형화할 수 있음

15) “민간자격 등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THE HRD REVIEW 2010 AUTUMN, pp. 45-59. 참조.

<표 6-14> 국내 교육서비스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분야

구분 유형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습지도관련자격	사서교사, 실기교사, 정교사, 준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 자동차운전전문	두뇌운동전문지도사, 브레인트레이너, 아동학습지도사, 유아 및 아동 교육지도사, 학습케어교육사, 학습전문코치, 학습코치자격증 등
자기주도학습 관련자격	학원기능검정원,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한국어교원(3급), 경기지도사사 생활체육지도사	사이버학습코치,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자기주도학습코치, 멘토링지도사 등
방과후지도 관련자격		방과후아동지도사, 방과후지도사, 방과후학교지도사자격증, 방과후아동지도사자격증 등
영재지도관련자격		아이브레인영재지도사, 영재놀이지도사, 영재전문지도사자격증 등
성격지도관련자격		아동성격지도사, 어린이성품전문지도사, 학습성격지도전문가자격증 등
상담관련자격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등
심리지도관련자격		미술심리지도사, 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지도사 등
진로 및 경력지도 관련자격	평생교육사	인재파견지도사자격증, 청소년진로코칭지도사자격증, 커리어코치 등
발달관련자격	보건교사(1,2급), 영양교사	발달놀이교육사, 발달심리자격증, 발달장애지도사, 발달장애상담사 등
특수교육관련자격	특수학교 정교사 및 준교사	장애인평생교육전문가, 특수아동교육사, 특수아동지도사, 자폐증재활교육사, 재활놀이교육사, 특수재활교육사, 특수재활체육교육사 등

나. 교육서비스 분야 자격의 활용성 비교·분석

- 정부부처 관할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활용성을 취업가능성과 고용안정성, 직무전문성 개발 가능성, 보수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비교함
- 정부부처 관할 자격인 보육교사(3.58)의 활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지도사와 평생교육사가 4항목 평균이 가장 낮아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자격인 보육교사는 취업가능성, 고용안정성, 직무전문성 세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보수적정성은 2.95로 민간자격인 발달관련자격보다 낮음

□ 민간자격 중 특수교육관련자격이 전 항목 평균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주도학습관련자격(2.88)의 활용성이 가장 낮았음.

- 민간자격 중 취업가능성과 고용안정성이 가장 낮은 자격은 성격지도관련자격과 자기주도학습관련자격으로 나타남
- 직무전문성이 가장 낮은 자격은 자기주도학습관련자격, 방과후지도관련자격 순으로 나타남

□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공히 직무전문성이 그 외 3항목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공히 고용안정성과 보수적정성이 취업가능성, 직무전문성보다 낮음
- 국가자격 중 전문상담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의 보수적정성이 민간자격 전반의 보수적정성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음(2.75~2.97)

□ 국가자격 수준으로 활용성 지표(4항목) 평균이 높은 민간자격은 특수교육관련자격, 발달관련자격, 상담관련자격, 심리지도관련자격 등으로 나타남

- 특히 직무전문성에서 민간자격인 심리지도관련자격, 상담관련자격(3.69~3.72)이 국가자격인 보육교사와 청소년상담사 수준(3.67~3.76)으로 높게 나타남
- 상대적으로 국가자격인 청소년지도사와 평생교육사의 경우 대부분의 민간자격보다 직무전문성이 낮게 나타남

<표 6-15> 교육서비스 분야 자격의 활용성에 대한 종합적 비교

구분	자격종목	취업 가능성	고용 안정성	직무 전문성	보수 적정성	문항 평균
국가	보육교사	3.96	3.64	3.76	2.95	3.58
국가	전문상담교사	3.46	3.36	3.65	2.97	3.36
국가	청소년상담사	3.32	3.39	3.67	3.00	3.34
민간	특수교육관련자격	3.37	3.23	3.61	3.02	3.31
민간	발달관련자격	3.29	3.20	3.65	3.06	3.30
민간	상담관련자격	3.26	3.27	3.69	2.97	3.29
민간	심리지도관련자격	3.36	3.08	3.72	2.79	3.24
민간	진로/경력지도관련자격	3.30	3.08	3.56	2.92	3.22
민간	학습지도관련자격	3.25	3.01	3.49	2.90	3.17
민간	영재지도관련자격	3.08	2.88	3.41	3.05	3.11
국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15	3.09	3.38	2.78	3.10
국가	청소년지도사	3.20	3.06	3.30	2.77	3.08
국가	평생교육사	3.13	3.11	3.31	2.75	3.07
민간	방과후지도관련자격	3.18	3.01	3.20	2.84	3.06
민간	성격지도관련자격	2.96	2.94	3.42	2.77	3.02
민간	자기주도학습관련자격	2.96	2.64	3.13	2.76	2.88

주) 1: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 2: 도움이 되지 않음 3: 보통 4: 도움이 됨 5: 매우 도움이 됨.

- 1) 취업가능성: 해당 직업 분야에서 일자리(취업, 창업)를 가질 수 있는 정도.
- 2) 고용안정성: 해당 직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
- 3) 직무전문성 개발 가능성: 자격취득 이후 관련 직무수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더 높은 직무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격체계가 갖추어진 정도.
- 4) 보수적정성: 자격에 기반하여 취업하였을 때 적절한 수준의 보수를 받는 정도.

2. 교육서비스 자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시장 및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자격의 설치·운영 미비

교육서비스의 특성 상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공히 직무전문성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새로운 자격 수요에 따른 직무영역의 분화, 신설 및 그룹핑

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분야가 소비자 수요를 포괄하지 못하고 직무 내용의 최신성 부족
- 민간자격의 경우는 교육대상,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 일정 자격 설치·운영 기준과 직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수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질 관리가 어려움
- 예컨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대상과 대상별 특성에 따른 직무 차별화 및 연계가 혼재되어 있음

□ 민간자격시장의 유사 분야 난립과 더불어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차별적 역할 분담이 부재한 것도 문제로 나타남

- 중장기적으로 국가 및 민간자격 간의 공통직무범위와 위계(자격 간 등급 수준 맵핑)를 고려한 교육서비스 자격의 정비 및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필요할 경우 국가자격의 신설 또는 민간자격 공인을 통해 시장 수요에 대한 양적 질적 대응 안 마련이 시급함

나. 자격검정 방법 및 관리체계 문제

□ 교육서비스 분야의 특성 상 자격검정과 함께 과정이수가 중요함

- 예컨대 상담 또는 교육관련 임상과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이수자격 인증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음
- 검정에 의한 직무능력 측정 방법은 교육서비스의 경우 적절성이 부족함
- 특히 민간자격은 교육 분야의 포괄적이며 공통적 직무범위의 공유 여부를 인증하는 것이 필요함
- 인간발달단계와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교육서비스 자격인증 방법 구안이 필요함

-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질 관리체계 마련 필요
 - 연수, 재교육-재인증을 통한 자격 추수 관리와 자격취득자 누적 관리, 분석이 필요함
 - 민간자격의 경우 등록과 공인을 통해 구축

다. 자격 유형별 문제점 및 자격화 필요성

- 교육서비스 분야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들에 대한 전문가협의회 및 면담을 통하여 검토 대상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을 연계하여 설정하고 문제와 그 원인을 살펴보고,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들을 정리함
 - 포괄적으로 교육 일반과 관련하여 국가자격의 최신성 보완, 민간자격의 공인과 관리가 필요함
 - 내용적으로 교육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전문 상담, 발달장애 및 영유아 관련 자격들의 분화, 신설이 필요함

1) 상담 관련 자격

- 전문상담교사는 학생의 여러 심리적 문제, 진학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학교에서 발생될 여러 문제들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학교에서 상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자격으로 1급과 2급으로 구분됨

<표 6-16> 전문상담 관련 국가자격의 응시자격

등급	응시자격
1급 전문 상담 교사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표 계속>

등급	응시자격
	- 전문상담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2급 전문상담교사	-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상담교사의 직무영역은 학습과, 진로, 가정, 심리적 문제 전반을 포괄하여 직무 영역이 매우 넓어 각 영역의 전문적인 상담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상담교사의 직무영역을 학습, 진로, 정서지도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전문영역 상담교사를 선발하고, 직무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전문상담교사와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민간자격은 진로 및 경력지도 관련 자격, 심리지도 관련 자격, 자기주도학습 관련 자격, 상담 관련 자격 등이 있으나, 자격종목과 자격관리기관에 따라 응시자격 기준이 다양함
 - 따라서, 자격증 응시 자격을 일정 수준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자격 취득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가자격과의 직무영역 차별화와 연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6-17> 전문상담 관련 민간자격의 영역 분류 및 응시자격

* 응시자격 예시는 검정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인 민간자격을 정리함.

진로지도 영역: 청소년진로코칭지도사, 커리어코치, 인재파견지도사자격증, 직업상담사, 진로상담사 등		
정서지도 영역: 가족복지상담사, 가족상담사, 가족상담지도사, 교육상담사, 놀이상담사, 놀이심리상담사, 독서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미술음악지도사, 미술정서인지상담사, 발달심리자격증, 발달장애상담사, 상담매니저, 상담사, 상담심리사, 성폭력상담사, 심리·행동적응지도사, 심리분석사, 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자격증, 심리장애상담사, 심리재활전문가, 아동미술심리상담사, 아동미술심리지도사, 아동발달상담사, 아동상담사자격증, 음악심리지도사, 인성·심리상담사자격증, 임상미술심리사, 전문상담사 등		
학습지도 영역: 두뇌운동전문지도사, 멘토링지도사, 방과후명품지도사, 방과후아동지도사, 방과후아동지도사자격증, 방과후지도사, 방과후학교지도사, 브레인트레이너, 사이버학습코치, 유아 및아동교육지도사, 아동학습지도사,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자기주도학습코치, 학습 CARE교육사, 학습전전문코치, 학습코치 자격증, 아이브레인영재지도사, 영재전문지도사자격증 등		
분야	민간자격 종목	응시자격
진로 상담 영역	청소년진로 코칭지도사	전문대졸이상의 학력수준 혹은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청소년진로지도에 상당한 능력을 갖춘 자, 노동부 및 산화관련기관 또는 유사한 기관·단체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 한 자, 본 기관 훈련원에서 소정의 훈련과정을 이수 한 자
	커리어코치	<3급> 20시간 이상의 커리어코치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2급> 20시간 이상의 커리어코치 고급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1급> 24시간 이상의 커리어코치 강사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정서 상담 영역	상담심리사	<1급> - 상담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상담 비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관련 분야 박사과정에 입학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표 계속>

분야	민간자격 종목	응시자격
정서 상담 영역	상담심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4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심리사 1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과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을 가진 자 - 대학의 상담전공 부교수 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경력의 상담전공자의 경우,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특별전형할 수 있다. <p><2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2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심리사 2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학습 상담 영역	자기주도 학습지도사	<p><1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협회가 지정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2. 2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p><2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협회가 지정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2. 3급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p><3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협회가 지정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2) 영재교육 관련 자격

- 국가수준에서 영재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전체 학생 중 1%의 학생들이 영재교육을 받게 될 것이며, 2013년까지는 3%의 학생이 영재교육에 참여하게 될 것임에 따라 영재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음
- 현재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국가자격 소지 교사들은 60시간의 연수를 받아 자격을 부여받고 있음
 - 영재교육관련 민간자격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는 편이며, 각 자격 관리기관에서 제시하는 교육훈련과 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있음
 - 영재교육의 다양한 분야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직무범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자격의 난립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됨
- 영재교육 담당 교사의 전문성 확보와 사교육 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자격증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 영재 요구 분야를 조사, 선정하고 영재지도사의 직무 특성과 내용을 추출하여 현재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역할 분담 및 자격체계를 전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표 6-18> 영재교육 관련 민간자격의 응시자격

분야	자격종목	응시자격
영재교육 관련	아이브레인 영재지도사	<1급> 2급자격 취득 후 현장실습 6개월, 심층면접 <2급> 3급자격 취득 후 현장실습 6개월 <3급> 전문대졸 이상

<표 계속>

분야	자격종목	응시자격
영재교육 관련	영재놀이 지도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학력 및 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① 금지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본원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기타 부정행위 방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회 시험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영유아 돌봄 관련 자격

- 베이비시터 양성은 건강가정지원센터(2009년 기준 98개)¹⁶⁾와 베이비시터 회사(2007년 기준 104개)¹⁷⁾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베이비시터로 활동할 수 있음
- 일정한 시간 기준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잘 구성되어 있지 않아 베이비시터의 자질이나 능력이 검증되지 못한 채 파견되는 경우가 많아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영유아기는 인간의 발달에서 미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영유아 발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 신설 검토가 필요함
 - 여성의 출산과 사회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영아에 대한 돌봄 서비

16) 출처: 여성가족부(각 시·도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자료), <http://www.index.go.kr>.

17) 출처: 서문희 외(2007), “한국 베이비시터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스가 전문적인 민간자격으로 반드시 신설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

4) 학습 지도 관련 자격

(1) 학습컨설턴트

-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성취도 저하 및 학업포기 등의 문제가 증가됨에 따라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컨설팅의 필요가 발생함

- 미국의 경우 학교심리학 전공 대학원에서 학습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약 200개의 대학에서 학교심리학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학교에서 학습컨설턴트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학교심리학자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 영국의 경우에도 최근 10년간 컨설팅을 통해 학교에서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심리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교육심리학자들이 미국의 학교심리학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학습컨설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냄

- 한국의 경우 아직 학습컨설턴트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기관이 없음
 - 한국교육심리학회에서 2011년부터 학습컨설턴트 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준비 중에 있음
 - 현재 운영중인 민간자격 중 유사한 자격으로는 학습전문코치, 학습코치자격증, 학습·성격지도전문가자격증이 있으며, 응시자격에는 자격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일정 시간의 자격을 이수한 자로 제한하고 있음

<표 6-19> 학습 지도 관련 민간자격의 응시자격

분야	자격종목	응시자격
학습 지도 관련	학습 전문코치	<1급> 2급 학습전문코치 자격 소지자 <2급> 제한없음
	학습 코치 자격증	학습코치 양성과정 24시간 이수자
	학습·성격 지도전문가 자격증	<수석급> 학습·성격지도전문가자격증 수석과정(180시간)수료한 자 <1급> 학습·성격지도전문가자격증 1급 과정(180시간)수료한 자 <2급> 학습·성격지도전문가자격증 2급 과정(180시간)수료한 자 <3급> 학습·성격지도전문가자격증 3급 과정(180시간)수료한 자

- 학습컨설팅은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높여주고, 학생들이 행동 및 정서적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통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외국의 경우에는 관련 자격의 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주어지고 있음
 - 이 점을 감안할 때, 민간자격으로 유지되더라도 관련 학회 단체 등에서의 자율적 기준(응시자격, 관련전공 기준, 교육내용 등)을 제시하여 민간자격 국가공인 시 분야별 기준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영재지도사

- 국가수준에서 영재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전체 학생 중 1%의 학생들이 영재교육을 받게 될 것이며, 2013년까지는 3%의 학생이 영재교육에 참여하게 될 것임에 따라 영재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음
- 현재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국가자격 소지 교사들은 60시간의 연수를

받아 자격을 부여받고 있음

- 영재교육관련 민간자격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는 편이며, 각 자격 관리기관에서 제시하는 교육훈련과 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있음
- 영재교육의 다양한 분야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직무범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자격의 난립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됨

□ 영재교육 담당 교사의 전문성 확보와 사교육 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자격증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 영재 요구 분야를 조사, 선정하고 영재지도사의 직무 특성과 내용을 추출하여 현재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역할 분담 및 자격체계를 전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표 6-20> 영재교육 관련 민간자격의 응시자격

분야	자격종목	응시자격
영재교육 관련	아이브레인 영재지도사	<1급> 2급자격 취득 후 현장실습 6개월, 심층면접 <2급> 3급자격 취득 후 현장실습 6개월 <3급> 전문대졸 이상
	영재놀이 지도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학력 및 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본원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기타 부정행위 방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회 시험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방과후 학교 교사

- 2009년 10월 기준 초·중·고등학교(11,164개교)의 99.9%(11,160개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¹⁸⁾.
- 강사 유형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고등학교는 현직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학과, 특기적성 프로그램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에서는 교과 프로그램은 90% 이상이 현직교사가 담당하고 있었으나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외부강사 담당 비율이 43%로 다소 높음
 - 초등학교는 교과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외부강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거의 절반 정도로 높으며,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경우 90% 이상 외부강사가 담당하고 있음

<표 6-21> 강사 유형별 프로그램 현황

구 분		교과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현직교사	외부강사	계	현직교사	외부강사	계
초등학교	수(개)	19,132	18,483	37,615	9,425	88,323	97,748
	비율(%)	50.9	49.1	100	9.6	90.4	100
중학교	수(개)	79,438	8,355	87,793	12,830	9,664	22,494
	비율(%)	90.5	9.5	100	57.0	43.0	100
일반계고	수(개)	95,991	2,258	98,249	4,809	1,192	6,001
	비율(%)	97.7	2.3	100	80.1	19.9	100
기타고	수(개)	13,791	694	14,485	4,761	1,261	6,022
	비율(%)	95.2	4.8	100	79.1	20.9	100
계	수(개)	208,352	29,790	238,142	31,825	100,440	132,265
	비율(%)	87.5	12.5	100	24.1	75.9	10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방과후학교 현황 분석', 2010. 2.

18) 2006년 제도 시행으로 전체학교의 98.7%가 도입하였음(교육과학기술부, 2007. 3).

- 방과 후 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경우 외부강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외부강사의 표준화가 요구되고 있음
 - 또한, 교과관련 프로그램도 담당학교의 교사보다 전문적인 외부강사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사업 추진 단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강사의 자질에 대한 수준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강사를 확보하여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강사의 질 관리를 위해 자격 요건의 표준화 내지 국가공인 자격으로의 필요성 검토가 요구됨

(4) 문화교육사

- 문화교육사는 중앙 및 지역박물관(예술관)의 전시물을 소개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역사기본소양(국사, 동양사, 서양사, 예술사 등)과 의사소통능력(말하기와 관련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함
 - 현재 문화예술기관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어 일정 교육훈련과정과 자격 검정을 통한 인력 배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역사교과 지원자와 미술교사 지원자의 수가 교원충원 수에 비해 과도하게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에게 자격을 주고, 일정 기간의 현장교육 또는 자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교육서비스 신규자격 발굴

가. 자격 발굴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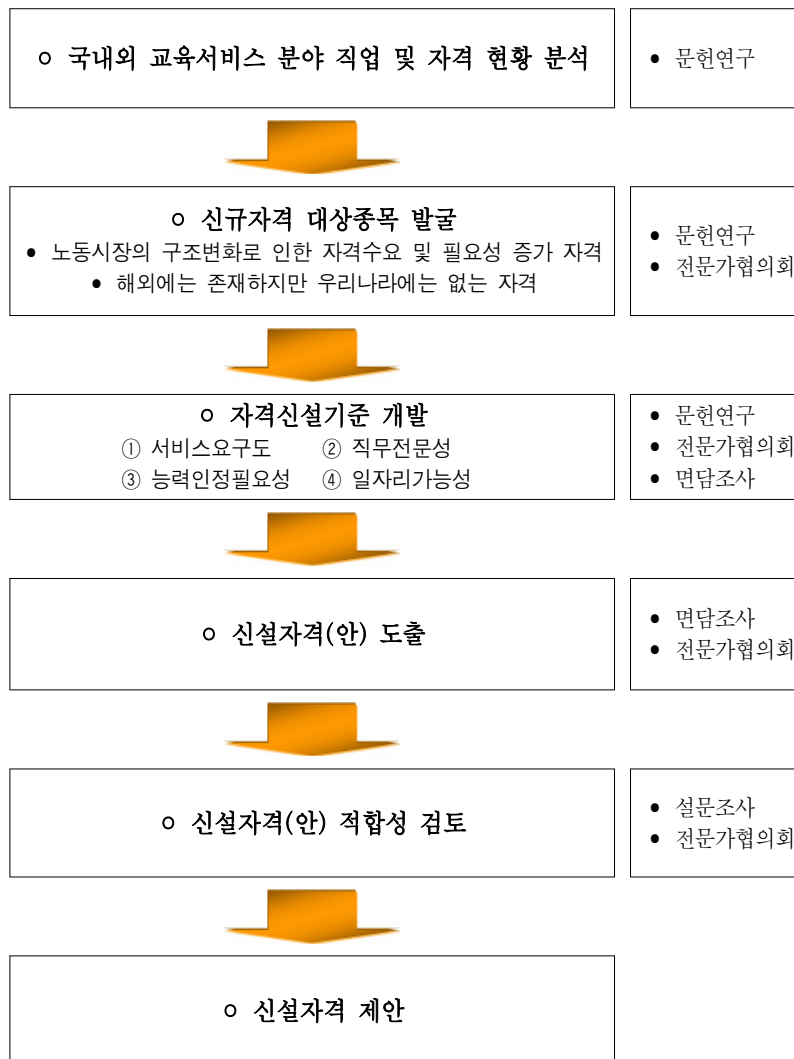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적자원에 크게 의존하는데 반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
 - ※ 서비스 분야의 유망직업, 유망자격이 발굴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고용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교육 서비스 분야는 새로운 영역의 직업 분야가 창출되고 있으며, 기존의 민간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던 분야 중 공공의 영역으로 포함되고 있는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서비스 이용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의 질 제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분야별 전문인력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교육 및 자격제도의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교육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자격 종목 발굴 등의 연구 검토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외국의 자격종목 등에 대한 연구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나. 신규자격 발굴

- 신규자격 발굴은 문헌 자료 검토를 통해 국내외 교육서비스 분야 직업 및 작업 현황 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자격신설 기준을 마련함

- 다음으로 마련된 신설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협의회를 통하여 신설자격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자격을 다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자격으로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함

[그림 6-4] 신설자격 발굴 절차



<표 6-22> 자격 신설 기준

신설기준	내용
서비스요구도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대 국민 서비스 요구가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기존 자격취득자의 업무수행 범위와 능력으로 국민의 서비스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격종목
직무전문성	자격취득자의 업무 수행시 필요한 지식, 스킬, 태도의 고유성이 존재하여 자격취득자가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격종목
능력인정가능성	일정기간 동안 체계적인 학습에 참여한 결과(outcomes)를 정형화된 형태의 평가를 통해서 확인하여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자격종목
일자리가능성	자격종목의 신설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은 자격종목

다. 신설자격의 적합성 조사결과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1개 분야 자격의 신설 가능성에 대하여 장애인평생교육지도사(3.89) 외 8개 자격종목의 신설 가능성이 평균 3.5점 이상으로 나타남
- 문항평균 3.5점 이상의 자격종목은 장애인평생교육지도사(3.89), 입학사정컨설턴트(3.79), 학습컨설턴트(3.71), 진로전문상담교사(3.68), 영아돌보미(3.66), HRD컨설턴트(3.65), 영재교사(3.58), 학습전문상담교사(3.50) 등임
- 문항평균 3.0 이상~3.5 미만의 자격종목은 방과후지도전문가(3.35), 영재지도사(3.34), 문화교육사(3.32) 등임

<표 6-23> 교육서비스 분야 신설자격의 적합성 조사 결과

평균 분야	2.9 이하	3.0-3.4	3.5-3.9	4.0 이상
교육 서비스		방과후지도전문가(3.35) 영재지도사(3.34) 문화교육사(3.32)	장애인평생교육지도사(3.89) 입학사정컨설턴트(3.79) 학습컨설턴트(3.71) 진로전문상담교사(3.68) 영아돌보미(3.66) HRD컨설턴트(3.65) 영재교사(3.58) 학습전문상담교사(3.50)	

4. 교육서비스 분야 신규 발굴 자격종목

가. 신규 발굴 자격 대상

-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문제점과 필요성 분석에 근거하여 위에서 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교육서비스 자격신설 가능종목을 다음과 같이 A, B, C, D의 형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D그룹을 제외한 A, B, C그룹의 자격은 모두 자격신설 필요성이 보통 이상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자격신설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D그룹 중 일부의 자격은 부처에서 국가자격을 추진하고 있는 등 신설이 필요한 자격종목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자격 그룹화의 기준

서비스요구도, 직무전문성, 능력인정필요성, 일자리가능성 4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를 그룹화하였음

- A그룹 : 전체 평균 4.0 이상
- B그룹 : 전체 평균 3.5-3.9
- C그룹 : 전체 평균 3.0-3.4
- D그룹 : 전체 평균 2.5-2.9

<표 6-24> 신규 자격화 대상

그룹구분	자격종목	종목 수
A 그룹	-	-
B 그룹	장애인평생교육지도사, 입학사정컨설턴트, 학습컨설턴트, 진로전문상담교사, 영아돌보미, HRD컨설턴트, 영재교사, 학습전문상담교사	8
C 그룹	방과후지도전문가, 영재지도사, 문화교육사	3
D 그룹	-	-

나. 발굴된 신규 교육서비스 자격 직무내용

- 발굴 대상 자격그룹을 근간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관련 전문가회의 및 면담, 연구진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신규자격의 직무내용을 제시함

<표 6-25> 신규 자격종목명 및 직무 내용

분야	자격종목명	자격의 직무내용	비고
상담 및 교육 관련	학습 컨설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처한 환경과 장단점 및 특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직무를 수행 - 학생 학습계획과 학습 전반의 문제를 상담하는 직무 수행(심리, 정서지도 등 상담교사의 직무 영역 분화) - 학생의 진로 전반의 문제를 상담하는 직무 수행(입시 지도 및 중등단계 학습자와 성인을 연결하는 생애진로지도. 상담교사의 직무 영역 분화) 	(미)Surgical Technologists (미)Nursing Aides and Psychiatric Aides (미)Psychiatric Technicians

<표 계속>

분야	자격 종목명	자격의 직무내용	비고
상담 및 교육 관련	장애인 평생 교육 지도사*	-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사업 계획 관련 업무를 수행 - 장애를 가진 유아, 청소년 및 성인 단계를 포괄하여 생애평생교육 관련 상담과 진로 지도 직무 수행	- 장애인 대상 학습지도, 정서 및 심리 상담과 진로지도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신규 자격 선정 단계에서 포함하였음
	영재 지도사	- 학교 내에서 영재 학생을 대상으로 영재성을 측정 및 증진,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 - 학교 외 사설 기관에서 학교와 연계하여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영재를 판별하고 교육하는 직무 수행	-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연계 체계 모색
영유아 돌봄 관련	영아 돌보미	- 갓 태어난 영아를 대상으로 발달단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돌봄 직무 수행	

제3절 공공 행정서비스분야

1. 공공 행정서비스 분야 자격 현황

- 사회서비스분야 중 기타에는 공공행정과 사회보장행정이 있으며, 공공행정과 사회보장행정 자격에는 재난관리, 정책분석평가사, 행정관리사, 행정정보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행정사, 화재조사관이 있음
- 이 중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업무중복, 검정 시행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있는 행정사, 행정관리사, 행정정보사, 정책분석평가사,

-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를 중점으로 검토함
-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의 경우, 기술자격이 1개 종목, 국가자격이 5개 종목, 민간자격 중 공인이 1개 종목, 비공인이 3개 종목으로 총 4개의 민간자격이 있음(<표 6-26> 참고)

<표 6-26> 공공행정서비스 분야 자격

구분	기술자격(1)	국가자격(5)	민간자격(4)	
			공인(1)	비공인(3)
자격종목	산업위생관리	행정사 산업위생지도사 소방시설관리 소방안전교육 화재조사관	행정관리사	재난관리 정책분석사 행정정보사

가. 공공행정서비스 분야 자격의 활용성

- 공공행정서비스 분야의 자격에 대해 취업안정성, 고용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본 결과 민간자격인 행정관리사가 3.79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얻은 것으로 분석됨
 - 행정관리사는 취업안정성, 고용안전성, 직무전문성, 보수적정성 총 4가지의 활용성에서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음
-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의 경우, 전체 평균에서 3.01로 가장 낮은 활용성을 얻은 것으로 분석됨. 또한 세부적으로 보면 고용안정성과 보수적정성에서도 다른 자격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 산업위생지도사는 취업가능성에서 그 활용성이 2.88로 나타나 자격 중 최하위 점수를 보이고 있음

- 산업위생관리기술사의 경우, 전체 문항 평균 중 두 번째로 높은 점수 (3.22)를 보이고 있음. 또한 산업위생지도사보다 4가지 활용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표 6-27> 공공행정서비스 분야 자격의 활용성 종합적 비교

구분	자격종목	취업가능성	고용안정성	직무전문성	보수적정성	문항평균
국가	행정사	3.20	3.09	3.22	3.02	3.13
민간	행정관리사	3.74	3.75	3.96	3.72	3.79
민간	행정정보사	3.02	2.98	3.12	3.05	3.04
민간	정책분석평가사	3.00	2.91	3.16	2.98	3.01
국가	산업위생지도사	2.88	3.13	3.35	3.00	3.09
국가 기술	산업위생관리기술사	3.03	3.20	3.48	3.18	3.22

주1: 1.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 2. 도움이 되지 않음, 3. 보통, 4. 도움이 됨, 5. 매우 도움이 됨.

주2: 취업가능성-해당 직업 분야에서 일자리(취업, 창업)를 가질 수 있는 정도.

주3: 고용안정성-해당 직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

주4: 직무전문성 개발 가능성-자격취득 이후 관련 직무수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더 높은 직무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격체계가 갖추어진 정도.

주5: 보수적정성-자격에 기반 하여 취업하였을 때 적절한 수준의 보수를 받는 정도.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행정사

-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번역 및 제출 대행과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및 자문,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하는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자격제도로 시작하였음

- 행정사는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부여하다가,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시험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 검정이 시행된 바 없음
 - 행안부는 2009년 10월 29일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임
 -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하고, 경력공무원 시험 전부면제제도를 폐지하여 일부만 면제하면서 필히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음

나. 행정관리사

- 행정관리사는 행정자치부에서 국가공인을 받은 자격으로 현대 행정 국가시대의 총체적 요구에 걸맞는 선도적 실천행정전문가를 인증·배출하기 위하여 행정관리능력을 검증하는 국가공인자격제도임
- 직무내용은 행정국가시대의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행정수요와 행정서비스 제공을 적정 관리하는 행정관리전문가로서 행정정책수립과 집행, 평가 등을 합리적으로 수행함
 - 3급자격증 소지자는 공인행정지도사로서 행정실무지식과 현장업무를 수행함
 - 2급자격증 소지자는 공인행정진단사로서 행정관리지식과 총괄관리업무를 수행함
 - 1급자격증 소지자는 공인행정심판사 행정전문지식과 정책평가와 의사결정업무를 수행함
- 행정관리사 자격취득자를 민원 대행업무 자격자로 활용하였을 때, 공공행정의 절차와 제도에 대한 민원인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행정절차 수행 부담을 줄이고, 행정관리사의 전문지식(사무관리, 조직, 인사, 회계, 정책평가분석 등의 검정된 능력)의 활용으로 공공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행정관리사 자격취득자를 활용함으로써 민원대행업무의 부여로 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행정관리사 전문성 보장으로 공무원 응시 시 공무원 가산점 부여에 따른 공무원 합격과 민간기업 취업을 보장할 수 있음
- 행정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는 3급, 2급, 1급 자격 취득 과정에서 사무관리, 행정학, 회계, 조직·인사, 행정법, 자치행정, 정책분석평가의 관련과목을 검증받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각 공기업 등의 행정관련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 분쟁조정위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음

다. 행정정보사

- 행정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활용하고 관련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는 자격임
- 직무내용은 행정에 대한 사무 관리의 개요와 문서, 관인, 서식 및 자료관리, 사무자동화와 전자 사무 관리를 익히고, 정책분석평가론의 전반적인 지식을 이해하며, 정보체계론, 컴퓨터 실무 등을 습득하여 체계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임
 - 공공기관 및 통계청 조사요원, 기업체 사무직, 시청·구청·동사무소·기타 공공기관의 행정업무를 수행함
 - 시험과목은 행정사무관리론, 정책분석평가론, 정보체계론, 컴퓨터실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료요건이 출석률 80% 이상 출석, 교육기간 중 실기실습 평가에 합격한 자로 되어있음

- 진출분야는 공무원 및 통계청 조사요원과 기업체 사무직이 가능할 것이나, 조사분석사나 행정관리사와의 직무내용이 중복되어 있음

라. 정책분석평가사

- 정책분석평가사는 민간자격으로 정책(시책, 계획, 법령 등)이나 사업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기획기능, 수립된 정책 및 사업이 집행되기 전에 치밀하게 점검하는 분석기능, 집행중이거나 또는 집행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평가기능 등의 능력을 검정하는 자격임
- 직무내용은 논리적 사고와 분석적 정책추론능력, 정책분석과 평가에 관한 지식과 기술로 정책이나 사업을 세부적으로 수립, 수립된 정책 및 사업이 집행되기 전에 치밀하게 점검하는 분석, 집행중이거나 또는 집행된 정책과 사업을 평가함
 - 시험과목은 조사방법론, 계량분석론,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등으로 구성되어 1급, 2급, 3급 총 3개의 자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응시자격 제한은 없음
- 행정 분야나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중간 관리자로서 분석평가업무를 수행함
 - 민간분야의 경우 기획, 심사분석, 평가부서에서 사업타당성 분석과 집행사업의 평가업무를 수행함
 - 기획, 분석, 심사, 평가 분야의 직원을 채용할 때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증은 중요한 인사평가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 예상됨
 - 독립적인 컨설팅의 경우 독자적인 기업 및 공공분야의 컨설팅업무 수행함
 - 정책분석평가사의 사회적 소요인력은 연 5천명 수준으로 예상됨

- 2000년 11월 12일과 2001년 5월 13일 제1회와 제2회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을 시작하였으나, 6회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부터는 2003년 행정자치부로부터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 인정받아 실시되었으나, 2005년 1급 자격시험문제 유출 사건으로 인해 (사)정책분석평가사협회의 국가공인자격 관리권한을 취소하고, 한국정책진흥연구원에서 민간자격으로 운영 중에 있음

- 이상과 같이 행정사, 행정관리사, 행정정보사, 정책분석평가사의 자격 제도를 살펴본 결과, 행정사 및 행정관리사와 정책분석평가사는 정부의 행정업무 및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 행정사는 헌법재판소의 경력공무원에게 무시험 자격부여방식에서 시험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검정이 시행된 바 없음
 - 행정관리사는 정책분석뿐만 아니라 행정관계 법규, 행정의 전반적인 일반부분(조직, 인사, 예산, 재무, 사무관리 등)을 다루면서 정책분석평가라는 1개 과목을 통해서 정책부분을 일부 다루는 반면, 정책분석평가사는 정책의 전반과 핵심 분야인 정책의 사전적 분석과 사후적 평가를 통해 정부정책의 타당성을 평가 할 뿐 아니라 이러한 결과를 조사나 통계분석을 통해 핵심보고서로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나 자격검정 관리에 한계가 나타난 상태임
 - 앞서 자격의 활용성에 대한 종합적 비교에서 보더라도 행정관리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격종목은 활용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행정관리업무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격종목으로 통합하여 전문분야별 수준을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마. 산업위생지도사

- 산업위생지도사는 1993년 정부의 행정규제완화방침에 따라 사업장내의 자율안전관리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고 생산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대형 산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사업장내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 직무내용은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작업환경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산업위생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임
 - 자격시험 과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위생일반, 산업위생공학임
- 사업장에서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지도,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지도, 평가, 자문 등 컨설팅 업무를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 수행할 수 있음
 - 산업위생지도사는 일종의 개인사업 면허로 자신의 전문지식에 따라 보수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임
 - 대기업에서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정착되도록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을 지원하는데 지도사의 역할이 부각될 전망이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로도 취업이 가능할 것임

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산업장 내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작업과정이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화학적·물리적·인체공학적이거나 생물학적 유해요인을 측정·평가하여 관리, 감소 및 제거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음

- 직무내용은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함
 - 자격시험 과목은 산업위생학, 산업 환기,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방법,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환경 및 보건관련 공무원, 각 산업체의 보건관리자, 작업환경 측정업체, 연구소, 학계 등으로 진출할 수 있음

- 이상과 같이 산업위생지도사와 산업위생관리기술사의 자격종목을 살펴본 결과, 두 자격종목의 직무내용이 유사함
 - 이에 산업위생지도사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산업위생관리기술사와의 업무중복으로 인하여 1998년 이후 자격검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현재 자격검정이 시행되고 있고, 활용성조사에서 비교적 높게 평가되고 있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자격을 실용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산업위생관리분야 자격 취득자의 고용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직업병 발생 등 사회문제가 야기된 후에야 수습대책을 모색하는 사후관리차원에서 벗어나, 사전의 근본적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사항에 대한 국제적 규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인증제도의 정착, 질병발생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산업안전보건법』제6차 개정)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산업 인구의 중·고령화와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 증가 등 작업조건의 변화에 의하여 신체에 부담이 되고, 뇌·심혈관계 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산업안전관리기술사 자격취득자의 고용 증대를 위하여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관련 행정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면 공공부문에 서 보다 민간부문에서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임

제7장 정책제언

1. 자격의 신설, 국가자격화, 개선정책 추진시 주요 고려사항

- 사회서비스 분야는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 인식되고 있어 고용없는 성장 추세 속에서 사회서비스 분야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관계부처합동, 2010)
 - 일과 복지를 연계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개선된 복지가 내수촉진을 통해 다시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하여 “사회안전망을 근로 유인형”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음(박기현, 2010)

- 사회서비스 분야에는 면허성 국가자격 등 다양한 국가 및 민간자격이 운영되고 있어 자격정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판단
 - 면허성 국가자격은 의무고용, 직무권한 부여, 회사 및 영업의 인허가 조건 등의 법률적 규제조건에 기반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 이러한 규제조치에 기반하여 이 분야 면허취득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향상할 수 있으며 이외의 국가 및 민간자격 취득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의 활성화 혹은 개선을 통하여 이 분야의 일자리창출은 물론 대 국민 서비스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 첫째, 새로운 서비스 요구가 있는 신규 자격종목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임. 둘째, 기존 민간자격을 국가자격 혹은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전환하여 자격의 수준을 향상함은 물론 국가 개입 근거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음. 셋째, 기존 국가와 민간자격의 개선을 통해 자격의 관리운영을 개선하여 사회서비스분야 시장확대와 서비스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임

- 이상에서 언급한 자격제도 개선작업 추진시 다음과 같은 긍정 및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첫째, 자격의 신설시 시장에서 서비스 요구도, 직무 전문성, 직무수행능력인정 필요성,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 신설근거를 충분히 고려하여 국가자격으로 신설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
 - 민간자격시장에서는 국가보다도 더 재빠르게 시장의 요구와 변화에 대응하기 때문에 국가자격으로 자격을 신설할 경우 위에서 제시한 신설근거에 기반하여 국가자격 신설여부를 숙고하는 것이 중요. 그렇지 않으면 민간자격시장이 왜곡되던지 고사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둘째, 기존 민간자격의 국가자격화를 통해 1) 관련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2) 서비스 질 향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3) 자격취득자의 직업적 위세강화를 통해 임금, 근로여건 등 처우개선이 가능해지는 긍정적인 점이 있음
 - 그러나 민간자격의 국가자격화는 민간자격관리자나 민간자격취득자에게 큰 혜택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민간자격관리자가 자신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당 자격의 수준과 내용을 개선하여 우

- 수한 민간자격으로 거듭나기보다는 정부에 기대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이것은 민간자격 시장의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은 물론 민간자격 시장을 왜곡함으로써 건전한 민간자격시장의 형성을 방해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 아울러 민간자격의 국가자격화는 대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에 따른 비용증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셋째, 기존 국가 및 민간자격의 개선시 국가자격의 경우 특히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분야 자격의 경우 업역조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업역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 원천적으로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하여 업역을 세분화하여 세부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
 - 그러나 업역조정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해당사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 마련 필요
 - 민간자격시장에서 유사한 자격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중복 자격종목의 경우 국가의 최소한 개입으로 민간주도로 바람직한 자격의 내용, 수준, 그리고 자격취득자의 활용 등을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추진이 필요. 그러나 이 접근은 특정 민간자격을 중심으로 민간자격시장을 재편하게 하여 민간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방해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함

2.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 자격제도와 관련한 정부규제는 진입규제(entry regulation)임. 정부의 진입규제가 타당성을 갖는 이유는 첫째,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며 둘째,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선진국과 개도국을 불문하고 정부는 자격제도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개입이 면허로서 나타나게 되면 가장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됨.
 -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자격제도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은 첫째, 아직 시장에 나타나지 않거나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자격종목을 신설하지 못하였던 자격종목을 국가자격 혹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신설하는 것임. 둘째,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국가자격화하여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함으로써 동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 국가자격을 관리운영을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자격취득자의 활용측면에서 정부가 책무성을 갖게 되는 부담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접근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공인화 과정을 거치는 것임. 둘 중 어떠한 방법을 택하는 가를 결정할 때는 시장실패와 공익과의 관련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국가자격화 또는 공인자격화 과정은 업역조정 등의 민감한 사안과 연관되어 관련 법의 개정이나 혹은 관련 단체의 동의 등을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 왜냐하면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의 신설을 통해 기존 국가자격 등의 업역을 나누거나 기존 업역을 선점한 자격자의 업역을 침범하

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임. 이러한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의료법과 관련한 해석임

- 업역조정은 정부가 나서서 조정하기도 매우 어려운 부분이나 이 과정이 국가자격 혹은 공인민간자격의 신설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므로 관련 단체를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이 치밀하게 마련되는 것이 필요
- 업역조정 전략 중에 가장 유효한 것은 첫째, 새로운 자격의 신설이 결코 기존 업역 선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공인보육사’ 국가자격화 사례에서 보았듯이 대 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 관련 시장을 엄청나게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점이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둘째, 관련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관련 분야 자격신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점을 부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언어치료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신설할 경우 현행과 같이 무자격 혹은 유사자격자에 의한 근거없는 치료가 성행하여 시장을 교란하고 서비스 질은 담보할 수 없는 무질서한 상황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해당 분야의 시장이 양성화되면서 확대되어 이 분야 전문가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상황이 될 것임을 이해토록 하는 것이 필요

□ 본 보고서에서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분야 사업체 고용동향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 분야의 부족인원수가 20,000명 정도로 총원율이 약 93%에 이르고 있음

- 이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시장의 일자리와 관련 자격취득자를 연계하는 정책은 별 실효성이 없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사회서비스분야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자격의 신설을 통한 관련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3.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개선방안 시행 전략

- 보복부가 관장하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제도 개선 전략 마련시 전체 153개 자격종목 모두를 한꺼번에 개선할 수 없으므로 자격종목별로 개선의 1) 시급성, 2) 타당성, 3) 가능성, 4) 효과성, 5) 파급효과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할 자격종목을 선정함으로써 단계별로 자격종목을 개선하는 전략추진이 필요
 - 예를 들어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격의 신설 요구가 제기되어 논의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국제진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종목 등을 우선적으로 신규 자격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임. 이외에도 국가자격화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경로로 이야기되고 있는 언어치료사 자격을 우선적으로 국가자격화하는 것임
 - 신규로 국가자격화 자격종목의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 자격의 효과성과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범사례화(best example)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 신설된 자격에 대한 후속조치와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행·재정적인 준비가 필요함
- 사회서비스 분야는 향후 국가차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속적인 국가의 관리운영이 필요한 영역이고 아울러 현재의 열악한 임금, 근로조건 등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추진 분야임

-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사회서비스에 속한 자격종목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자격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한 부처(이하 ‘주관부처’)가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고용부가 기술관련한 자격종목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국가가 필요한 기술·기능인력을 제공하고 있듯이 사회서비스분야의 자격종목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자격종목 관리운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 만일 별도로 사회서비스분야의 자격종목을 관리·운영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포함시켜 관리운영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사회서비스분야를 관리·운영하는 별도의 자격체제를 수립하면 개별 종목별 업역간 마찰에 따른 분쟁해소, 자격의 신설, 개선, 통합, 폐지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예를 들어 현행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분야 자격종목의 경우 보복부가 관리운영하고 있지만 보복부 내 개별부서 차원에서 자격종목이 관리되고 있지 부처차원이나 부처를 넘어선 시각으로 관련 자격종목을 관리운영하고 있지 못하여 해당 분야 자격종목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사회서비스 분야의 자격종목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주관부처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수행기관의 선정이 필요
 - 실무수행 기관의 선정을 통해서 이 분야 자격종목의 존립 타당성,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함으로써 동 분야

의 자격종목이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필요에 따라서는 시행기관이 자격검정을 시행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이 가능하여 유사 자격종목의 검정시행을 통괄하여 시행하여 자격검정 관리운영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임

4.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제도 활성화의 출발점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개발·활용 필요

- 수요자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의 자격종목을 개선하여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NCS를 개발하는 업무를 착수하여야 함
 - NCS 사업은 교과부와 고용부가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차원의 일로써 우리나라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사업임
 - NCS는 사회와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지식, 기술, 태도가 무엇인지를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작성토록 하고, 이에 기반하여 직업교육훈련결과를 평가함으로써 결과중심적(outcome-based)으로 인력양성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임
- 사회서비스분야 자격종목을 수요자가 원하는 내용과 수준으로 개선하고 또는 이 분야의 자격을 신규로 만들 때 NCS로부터 출발하도록 하자는 것임
 - 그동안 자격의 신설이나 개선이 소수의 관련 협회 및 단체 혹은 관련 교육훈련기관의 요구에 기반하여 추진한 경향이 강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자격을 신설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으로 자격제도를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폭넓은 수요자의 의견에 기반함은 물론 신설되거나 개선된 자격종목이 일자리와 직결될 수 있도록 자격이 신설되기 위해서는 NCS에 기반하여야 함

□ 고용부와 교과부는 NCS 개발 및 적용활용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의 NCS를 개발하여 적용할 계획임(고용부·교과부, 2010). 국가차원에서 NCS 사업을 통해서 일-자격-교육훈련을 긴밀하게 연계한 인력의 양성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현재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교육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NCS는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 분야의 교육훈련과 자격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함으로써 자격제도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NCS의 개발과 적용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
- 고용부와 교과부가 주도하는 NCS 사업과 협력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NCS가 함께 개발됨으로써 동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분야의 자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콘텐츠가 마련될 수 있어 체계적이면서 구체적인 자격제도 개선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임
- 이를 위해서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분야 자격을 관장하는 주관부처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관부처 주도로 NCS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러한 작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령도 준비하는 작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SUMMARY

Plan for Activating Qualification items in Social Service

Jeong-Yoon Cho, Jong-Sung Park, Hyang-Jin Jung
In-Joong Ju, Seung-II Na, Jong-Wook Won

social services comprising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welfare, medical care, etc, which are regarded as service areas to promote personal & social welfare and life quality, has been dealt with important areas to create job. However, our no. of jobs in service area are quite small comparing to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 U.K., France, Japan, and so on.

Under consideration of this issue Korea government planed to invest 1 trillion Won to create 280,000 jobs focusing on 5 promising fields of service in health and welfare by 2014. In addition to this plan the some of qualifications including Speech-language Pathologist will be entitled as national qualification in terms of manpower raising and quality control of social service from the viewpoint of expanding infrastructure of social service.

The purposes of introducing national qualification items in social service are as follows: first, to prepare preconditions to expand service market by securing customer's credibility, second, to get qualification holder have self-esteem as professional, which would be linked to upgrade social status, third, to improve the service quality to the public effectively.

This study has suggested plan to reform private qualification items which have been needed to become national qualification items by conducting th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qualification items, as well as, to make new national and private qualification items including subordinated plan to improve existing private qualification items in the area of social service .

Going into details, this study prepared policy measures to improve and create qualification items in following areas: first, health and medical areas focusing on recreational therapy, social welfare, development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etc., second, educational areas including learning instruction, counselling, talented education, infant and young children care, etc., third, public administration areas such as administrative management,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industry hygiene instruction, etc,

- 부 록 -

[부록 1-1] 교육서비스분야 자격 종목 분류

[부록 1-2] 교육서비스분야 민간자격종목 분류(100823)

[부록 1-3] 교육서비스분야 국가자격종목 분류(100823)

[부록 2] 교육서비스분야 주요 연구대상 자격종목 추출 기준

[부록 3] 교육·기타서비스업 설문조사지

[부록 4] 교육서비스분야 민간자격의 개요

[부록 5]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학습컨설턴트 자격 개선 세부
방안

[부록 1-1] 교육서비스분야 자격 종목 분류

1차분류	2차분류	예시	
학교교육			
초등교육	인지·적성개발	유아기 초등교육	
	초등학교교육		
중등교육	중등학교교육		
	언어·문자지도		
	독서·논술지도		
	보습지도		
고등교육			
직업훈련			
	경력지도		
	직무훈련		
사회교육			
예능지도	음악지도		
	미술·공예지도		
	무용지도		
	민속놀이지도		
생활지도	오락(취미)지도		
	스포츠·레저지도	건강관리포함	
	가정의례	경·조사	개인
	생활(문화)지도		복지
	카운슬링	카운슬링, 멘토링, 코칭	복지
장애·정서지도			
장애교육	장애교육	정신지체, 청각장애, 정서장애, 시각장애	복지
	재활지도		
	교정지도		보건의료
정서지도	정서지도	심리치료, 슬픔치료, 약물치료, 알콜치료 지도	보건의료
연구·행정			
연구·개발			
계획·평가			
행정·지원			

[부록 1-2] 교육서비스분야 민간자격종목 분류(100823)

1차분류	2차분류	자격종목
학교교육		
초등교육	인지 · 적성개발	가베지도사(사)전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가베지도사자격증 동화구연사자격증 동화구연실기지도사 동화구연사자격증 동화구연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자격증 두뇌운동전문지도사 두뇌운동전문지도사 디자인창의영재지도사 몬테소리교육사 몬테소리교육지도사 몬테소리지도사 브레인트레이너 아동성격지도사 아이브레인 영재지도사 어린이가베지도사자격증 어린이성품전문지도사 영재놀이지도사 영재전문지도사자격증 우뇌계발 미술학습 지도사 유아놀이교육사 유아및아동교육지도사 주산암산교육사 주산암산교육지도사자격증 주산암산수학지도사 주산암산지도사 자격증 주산활용수학교육사 프뢰벨가베교육사 학습 · 성격지도전문가자격증 한국몬테소리교육사
	초등학교교육	
중등교육	중등학교교육	
	언어 · 문자지도	un 파워스피치지도사 KBS한국어능력시험 POP예쁜글씨지도사(사)한국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 POP지도사 YBM商務漢檢 국어문장사 글짓기지도사

1차분류	2차분류	자격종목
		한국실용글쓰기검정 리더스피치 지도사 자격증 속독지도사 스토리텔링지도사 스피치지도사 스피치지도사 스피치지도사자격증 스피치토론지도사 실용손글씨 지도자 자격증 아동영어지도사 어린이영어지도사((사)전국국공립대학평생 교육원협의회) 영어회화평가시험-ESPT General/Junior MATE Speaking, MATE Writing CELP:JC-TOEP/(국문)실용영어회화자격증 영어번역능력인정 외국어역 번역능력인정 FLEX영어(말하기)/ FLEX영어(쓰기) 어린이예쁜글씨지도사 어린이예쁜글씨지도사(사단법인 한국예쁜 글씨협회) 어린이중국어지도사 어린이한자교육지도사 영어독서지도사 영어동화구연지도사 영어동화독서지도사 영어태권도지도사 초등학생영어지도사 태글리쉬지도사자격증 한국어 어휘활용능력 교육지도사 한국어강사 한국어지도사 한글지도사 한문지도사 한문지도사((사)한지교육진흥회) 한자·한문전문지도사 한자교육지도사 한자지도사 한자지도사((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 한자지도사((사)한지교육진흥회) 한자한문교육지도사 한자한문학습지도사 한중상용한자지도사 국제한자지도사 한자실력급수 한자혼용국어실력

1차분류	2차분류	자격종목
	독서·논술지도	지도사 글쓰기독서교육 지도자 논리논술지도사 논술지도사 논술토론지도사 독서논술능력급수증 독서논술전문지도사 독서논술지도사 독서지도사 리딩아트지도사 몬테소리독서논술지도사 문예교육지도사 문해교육사 자격증 북라이크 독서지도사 스크랩북킹지도사 신문활용교육지도사 아동독서지도사 어린이독서지도사 역사논술지도사 중등논술지도사 중등통합논술지도사
	보습지도	PTC학습지도사 국제수학지도사 놀이수학지도사(아이하람교육원) 문화유산체험학습지도사자격증 방과후고무찰흙지도사 방과후공예지도사(평생 학습실천연합) 방과 후 아동지도사 방과후수학지도사자격증 방과후지도사 방과후학교지도사자격증 방과후아동지도사(사)전국국공립대학평생 학습실천연합) 사이버 학습코치 아동학습지도사 역사체험방과후지도사자격증 유아컴퓨터지도사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자기주도학습코치 자기주도학습코치 자연생태체험지도사자격증 체험학습지도사 학습CARE교육사 학습전문코치 학습코치 자격증 학습코치자격증

1차분류	2차분류	자격종목
고등교육		
계획·평가		
행정·지원		
직업훈련		
	경력지도	인재파견지도사자격증 청소년로코칭지도사자격증 커리어코치(Career Coach) 커리어코치(취환경닷컴) 평생교육경영사
	직무훈련	EM환경지도사자격증 M&A지도사 경호요원지도사 경호지도사(사)국제경호무술연맹) 경호지도사(한국민간경비교육원) 방송실기지도사 서비스강사(취세마그룹) 서비스강사자격증(리드엠비컬리지) 서비스강사자격증(취중양지식인력개발원) 서비스전문강사((사)한국전문자격협회) 아웃소싱지도사 천연염색 전문강사 편경영지도사 편경영지도자 프리젠테이션지도자 환경관리지도사
사회교육		
예능지도	음악지도	CCM 지도사 가요전문지도사 국악교육지도사 국악실기지도사 국악실기지도사(가야금병창) 국악실기지도사(경기민요) 국악실기지도사(단소, 대금) 국악실기지도사(사물놀이) 국악실기지도사(풍물) 국악실기지도사(해금) 국악지도사 노래교실지도사 노래지도사 민속국악교육지도사 실버국악실기지도사 아동국악실기지도사 어린이음악실기지도사

1차분류	2차분류	자격종목
		오르포 지도사 유아국악지도사((사)전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유아난타지도사 음악실기자격(피아노연주) 재즈피아노지도사 컴퓨터미디어음악지도사 타악과모든복지도사 플룻실기지도사 피아노실기지도사
	미술 · 공예지도	고지공예지도사 교육북아트지도사자격증 문인화지도사 민화지도사 북마스터지도사 북아트교육지도사 북아트지도사자격증 비즈아트지도사 사진실기지도사 색지공예지도사 아동미술실기지도사 아동미술전문지도사 아동미술지도사 아동미술지도사 아동미술지도사 아동미술지도사((사)전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아동종이조형지도사 양초공예지도사 양초공예지도사(평생학습실천연합) 어린이북아트지도사자격증 영재미술지도사 이오클래식 비즈공예 지도사 종이공예지도사 종이장식지도사 종이접기영재지도사 종이접기지도사자격증 종이조각미술지도사 지공예지도사 지승공예지도사 초등미술실기지도사 클레이아트지도사 테디베어기술자격증 페이스페인팅 지도자 자격증 포크아트자격증 폴리머클레이자격증 폼아트(폴입문화연합회)

1차분류	2차분류	자격종목
		폼아트지도자 자격증 플라워디자인지도사한지공예지도사 한지그림 지도사 현대인형지도사
	무용지도	유아무용교육사 유아발레교육사 한국무용실기지도사 한국무용지도사 한국무용지도사 한국무용지도사
	민속놀이지도	아동전통문화놀이지도사 유아동조형미술지도사 유아전통문화놀이지도사
생활지도	오락(취미)지도	미술교육지도사 시낭송지도사((사)전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 원협의회) 아동놀이지도사 어린이요리교육지도사 어린이요리교육지도사 풍선아트 지도자 자격증 한국아동요리지도사자격증 행복을열어가는시지도사
	스포츠 · 레저지도	나이트댄스지도자 레크레이션지도사 마필관리지도사자격증 전래놀이지도사 전래놀이지도사 K.T.S 벨리댄스지도사 건강걷기지도사자격증 검도지도사 골프경기지도사 골프지도사 국궁지도사자격 궁도지도사 노인운동지도사 노인체육지도사 다이어트댄스지도사(Diet Dance) 댄스스포츠지도사 덩더꿍체조지도사 라인댄스지도사 라틴댄스스포츠지도사 러닝지도사 레크레이션 지도자 레크리에이션지도사 자격증 레포츠지도사 모던댄스스포츠지도사

1차분류	2차분류	자격종목
		모던댄스자격증 무기술지도자자격증 벨리댄스지도자 벨리댄스 지도사 벨리댄스 지도자 벨리댄스지도자 벨리댄스지도자자격증 벨리댄스특수체육지도자 볼링지도사 사격(실무)지도사 사교댄스지도자 살사댄스지도자자격증 살사지도사(Salsa) 삼단봉 지도사 상업시설스포츠지도자 생활건강지도사 생활댄스지도자 생활운동지도사 수중운동지도사 스윙댄스지도자자격증 스쿠버다이빙 강사 실버댄스지도사 실버요가지도자((사)한국요가협회) 실버웃음체조지도사 실용무용 실용무용 트라이벌 벨리댄스 지도사 실용무용홀라댄스지도자 아메리칸댄스지도사 어린이요가지도자((사)한국요가협회) 여가교육지도사 여가교육지도자 여가문화지도사 에어로빅지도사(Aerobic) 요가교육사 요가명상지도사 요가명상지도사 요가지도 요가지도사((사)대한요가협회) 요가지도사((사)전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 협의회) 요가지도사((사)한국요가연합회) 요가지도자자격증 우리춤체조지도사 운동지도사 웃음 실버 체육지도사 웰빙댄스지도사(well-being dance) 유소년농구지도자

1차분류	2차분류	자격종목
		유소년농구지도자 유소년야구지도자 유소년축구지도자 유소년축구지도자 유아레크리에이션지도사 유아수영지도사 유아스포츠택지도사 유아야구지도사 유아요가교육사 유아인라인지도사 유아체육교육사 유아체육지도사 유아체육지도자 유아축구지도사 유아태권도교육사 유아택견지도사 일반운동지도사 임산부요가지도자 임산부요가지도자 잠수교육지도사자격증 장애인태권도사범 재즈댄스지도사 전통검도지도사자격증 전통무예지도사 째저싸이즈 지도사 재즈댄스지도사(JazzDance) 차밍댄스지도사자격증 창작댄스지도사자격증 체형관리운동지도사 키즈요가 지도자 자격증 키즈요가 지도자 자격증 택견지도사자격증 탭댄스지도사자격증 투검술지도사 특수체육지도사 파티댄스지도사(Party Dance) 펀레크리에이션지도사 편생활건강지도사 페이스요가지도사자격증 프로 태권도지도사자격증 필라테스지도사 합기도지도사 합기도지도사 해동검도지도사 호신술강사 호신술지도사 홀리스틱요가지도사자격증

1차분류	2차분류	자격종목
		화랑도지도사 홀라댄스지도사 휘초타검도지도사 휘초타지도사 휘타구지도사 힙합댄스지도사
	가정의례	가정의례지도사자격증 장례전문지도사((사)전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장례전문지도사((사)한국전문자격협회) 장례지도사 자격증((사)한국전례원) 장례지도사((사)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장례지도사((사)한국복지문화교육원) 장례지도사((사)한국장례업협회) 장례지도사(장례지도사 자격검정원)
	생활(문화)지도	김치교육지도사 다도교육지도사 다도사범자격증 다도지도사자격증 대한민국안전명강사 맘코치자격증 명리학교육강사 부모교육지도사 부모교육지도자 부모코치 식습관코치 실천예절지도사 아동안전관리지도사 아동요리교육지도사 아버지학교지도사 안전강사자격증 예절교육지도사 예절교육지도사자격증 예절교육지도자 작명상담지도사 전통차예절지도사 차예절지도사 청소년예절지도사자격증 학교폭력예방전문강사 효행교육지도사
	카운슬링	KPC/Korea Pro Coach, KAC/Korea Associate Coach Luck Consulting Coach NPL Coach 자격증 SW라이프코치

1차분류	2차분류	자격종목
		리더십 지도사 자격증 마인드월드교육지도사 매너코칭지도사 멘토링지도사 생활경제라이프코치 서희협상리더십강사 아동청소년라이프코치 어린이리더십강사자격 이미지코치자격증 이순신리더십강사자격증 직무스트레스 관리사, 코치((사)한국직업 능력평가원) 편리더십지도사 편리더십지도사 한국라이프코치자격증 서비스 코칭 전문가 커뮤니케이션 코치 자격증
장애· 정서지도		
장애교육	장애교육	발달놀이교육사 발달장애예방교육강사 발달장애지도사 사회행동발달교육사 언어발달교육사 언어발달교육사 언어발달장애지도사 언어발달지도사 언어발달지도사 언어상호작용 지도사 자격증 장애인평생교육전문가 특수발달교육사 특수발달놀이교육사 특수아동교육사 특수아동지도사 특수아동지도사 특수아동체육교육사 특수아동학습지도사 특수아미술실기지도사 특수언어발달교육사 특수유아체육교육사 특수인지발달교육사 특수인지학습지도사 행동발달교육사
	재활지도	미술재활지도사 언어재활교육사 언어재활지도사

1차분류	2차분류	자격종목
		유아언어재활교육사 유아재활체육교육사 자폐증재활교육사 재활놀이교육사 재활미술교육사 재활웃음지도사 특수재활교육사 특수재활체육교육사
	교정지도	교정교화상담사 범죄예방지도사
정서지도	정서지도	미술심리지도사 색채심리지도사 스트레스관리지도사 스트레스관리지도자 스트레스지도사 울음지도사 울음지도자 웃음운동지도사 웃음지도사 웃음지도사 웃음지도사 웃음지도사 실버건강웃음지도사 웃음행복지도사 웰빙웃음지도사 웃음 레크레이션 지도사 웃음레크레이션 지도사 건강웃음지도사 레크웃음양육사 음악심리지도사 향기나무복아트심리지도사

[부록 1-3] 교육서비스분야 국가자격종목 분류(100823)

1차 분류	2차 분류		
학교교육			
초등교육	인지·적성개발	보육교사	
	초등학교교육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정교사(유치원), 준교사(유치원), 정교사(초등), 준교사(초등)	
중등교육	중등학교교육	실기교사, 전문상담교사, 정교사(특수학교 포함), 준교사(특수학교 포함), 보건교사(1, 2급), 한국어교원(3급), 정교사(중등), 준교사(중등)	
	언어·문자지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독서·논술지도		
	보습지도		
고등교육			
직업훈련			
	경력지도		
	직무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1, 2, 3급),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경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사회교육			
예능지도	음악지도		
	미술·공예지도		
	무용지도		
	민속놀이지도		
생활지도	오락(취미)지도		
	스포츠·레저지도	경기지도자(1·2급 각 50종), 생활체육지도자(1·2급 각 42종)	
	가정의례		개인
	생활(문화)지도	청소년지도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	복지
	카운슬링		복지
장애·정서지도			
장애교육	장애교육	정교사(특수학교), 준교사(특수학교)	복지
	재활지도		
	교정지도		보건의료
정서지도	정서지도		보건의료
연구·행정			
연구·계획	연구·개발		
	계획·평가	평생교육사(1, 2, 3급)	
행정·지원	행정·지원		

[부록 2] 교육서비스분야 주요 연구대상 자격종목 추출 기준

사회서비스 분야 국가 및 민간 자격종목 분류에 기반한 주요
연구대상 자격종목 추출 기준

1. 기존 자격종목 검토시

- 국가자격**: 국가자격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자격종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대상 종목을 추출하는 것이 필요

〈자격종목 선정기준〉

-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양화된 자격종목(예: 조산사 등)
- 자격의 활용성에 문제가 있는 자격종목

〈 자격의 활용성 평가를 위한 4대 척도 〉

1. **취업가능성** : 자격을 취득하여도 취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음
2. **고용안정성**: 취업한 직업, 직종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어 향후 5년내에 다른 직종으로 전직해야 하는 가능성 매우 높음
3. **직무전문성 개발 가능성**: 자격취득이후 관련 직무수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더 높은 직무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격체계(1, 2, 3급 등으로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자격종목이 사다리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자격의 구조) 가 갖추어져 있음
4. **보수의 적정성**: 자격에 기반하여 취업하였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받지 못함

- 직무대표성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자격종목
- 자격종목간(국가자격과 국가자격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간) 업무 중복성이 있는 자격종목(예: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

□ **민간자격**: 국가자격화가 필요한 민간자격종목을 선정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

〈자격종목 선정기준〉

- 국가, 사회적으로 수요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의료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되고 있는 자격종목(예: 언어치료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놀이치료사, ○○ 치료사 등)
- 사회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관련 분야의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이 미진하여 일정 수준이상으로 대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분야(예: 간병사 등)
- 국가차원에서 서비스 표준화가 요청되는 자격종목(예: 청능사, 간병사 등)

2. 국가자격 혹은 민간자격으로 신설

□ 신설대상 자격종목 선정기준:

-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로 인하여 국가, 사회적으로 새로운 직업 혹은 직종이 나타나 이에 종사할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해 자격종목의 신설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경우에 초점을 맞춤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존재하고 있어 조만간에 우리나라에서도 유사 자격종목에 대한 출현이 기대되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자격종목

〈자격종목 선정기준〉

- **서비스 요구도** :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대 국민 서비스 요구가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기존 자격취득자의 업무수행 범위와 능력으로 국민의 서비스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격종목
- **직무 전문성** : 자격취득자의 업무 수행시 필요한 지식, 스킬, 태도의 고유성이 존재하여 자격취득자가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격종목
- **능력인정 가능성** : 일정기간 동안 체계적인 학습에 참여한 결과 (outcomes)를 정형화된 형태의 평가를 통해서 확인하여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자격종목
-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자격종목의 신설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은 자격종목

[부록 3] 교육·기타서비스업 설문조사지

교육기타 서비스업 자격분석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공통	ID			
--	-----------	----	--	--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서비스 산업의 자격연구 (Ⅱ)- 교육 및 기타 서비스업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연구의 목적은 교육 및 기타 서비스 분야 기존 자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신규 자격을 도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교육·기타 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자격에 대한 귀하의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귀하의 고귀한 답변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바람직한 자격정책 구축 및 제도개선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에 부쳐질 것이며, 연구에 필요한 통계분석의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권 대 봉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관 : (주)트로스리서치
- ▶연락처 : 031)521-3762(오영미 실장)
- ▶이메일 : oym@trosresearch.com

1 응답자 관련사항

문A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문A2. 귀하의 연령은?

- ① 20대 미만 ② 20세~29세 ③ 30세~39세
 ④ 40세~49세 ⑤ 50세~59세 ⑥ 60세 이상

문A3.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졸 이상

문A4. 귀하의 직업영역을 해당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직업	체크
1) 교육 및 기타 서비스 관련 협회 및 단체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학습지도관련 자격자기주도학습관련자격 방과후 지도 관련자격 영재지도관련자격 성격지도관련자격 상담관련자격심리지도관련자격진로및경력지도관련자격 발달관련자격 특수교육관련자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교육 관련 학계	교육학 관련 교수	<input type="checkbox"/>
3) 기타 교육 및 기타 서비스 관련 직업	_____ _____	<input type="checkbox"/>

문A5. 귀하가 **보유하고 계신 자격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자격구분	자격종목
1) 부처별 국가자격	<input type="checkbox"/> 행정사 <input type="checkbox"/> 전문상담교사 <input type="checkbox"/> 평생교육사 <input type="checkbox"/>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input type="checkbox"/> 보육교사 <input type="checkbox"/> 청소년지도사 <input type="checkbox"/> 청소년상담사 <input type="checkbox"/> 산업위생지도사
2) 국가 기술자격	<input type="checkbox"/> 산업위생관리기술사
3) 민간자격	<input type="checkbox"/> 정책분석평가사 <input type="checkbox"/> 행정관리사 <input type="checkbox"/> 행정정보사 <input type="checkbox"/> 두뇌운동전문지도사 <input type="checkbox"/> 브레인트레이너 <input type="checkbox"/> 아동학습지도사 <input type="checkbox"/> 유아및아동교육지도사 <input type="checkbox"/> 학습CARE교육사 <input type="checkbox"/> 학습전문코치 <input type="checkbox"/> 학습코치자격증 <input type="checkbox"/> 사이버학습코치 <input type="checkbox"/> 자기주도학습지도사 <input type="checkbox"/> 자기주도학습코치 <input type="checkbox"/> 멘토링지도사 <input type="checkbox"/> 방과후아동지도사 <input type="checkbox"/> 방과후지도사 <input type="checkbox"/> 방과후학교지도사자격증 <input type="checkbox"/> 방과후아동지도사자격증 <input type="checkbox"/> 아이브레인영재지도사 <input type="checkbox"/> 영재놀이지도사 <input type="checkbox"/> 영재전문지도사자격증 <input type="checkbox"/> 아동성격지도사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성품전문지도사 <input type="checkbox"/> 학습·성격지도전문가자격증 <input type="checkbox"/> 전문상담사 <input type="checkbox"/> 상담심리전문가 <input type="checkbox"/> 미술심리지도사 <input type="checkbox"/> 미술심리상담사 <input type="checkbox"/> 음악심리지도사 <input type="checkbox"/> 인재과견지도사자격증 <input type="checkbox"/> 청소년진로코칭지도사자격증 <input type="checkbox"/> 커리어코치 <input type="checkbox"/> 발달놀이교육사 <input type="checkbox"/> 발달심리자격증 <input type="checkbox"/> 발달장애지도사 <input type="checkbox"/> 발달장애상담사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평생교육전문가 <input type="checkbox"/> 특수아동교육사 <input type="checkbox"/> 특수아동지도사 <input type="checkbox"/> 자폐증재활교육사 <input type="checkbox"/> 재활놀이교육사 <input type="checkbox"/> 특수재활교육사 <input type="checkbox"/> 특수재활체육교육사

문A6. 현재 직종에서의 **근무경력**은?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5년 미만 ④ 5년 이상~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2 교육 · 기타 서비스업 자격의 활용성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 · 기타 서비스업 관련 자격의 활용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격의 활용성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평가척도	내용
취업가능성	해당 직업 분야에서 일자리(취업, 창업)를 가질 수 있는 정도
고용안정성	해당 직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
직무전문성 개발 가능성	자격취득이후 관련 직무수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더 높은 직무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격체계가 갖추어진 정도
보수의 적정성	자격에 기반하여 취업하였을 때 적절한 수준의 보수를 받는 정도

문B1. 이에 대해 다음의 자격들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래 표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모든 자격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

자격종목		평가항목																			
		취업(창업)가능성					고용안정성					직무전문성					보수의 적정성				
정부부처관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국가자격	행정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국가기술자격	산업위생지도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산업위생관리기술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민간자격	정책분석평가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행정관리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행정정보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평가항목은 다음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 ② 도움이 되지 않음, ③ 보통, ④ 도움이 됨, ⑤ 매우 도움이 됨

(2) 교육분야

자격종목		평가항목	취업(정입)가능성					고용안정성					직무전문성					보수의 적정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정부부처 관할 국가자격		전문상담교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평생교육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보육교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지도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상담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민간 자격		학습지도 관련자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자기주도학습 관련자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방과후지도 관련자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영재지도 관련자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성격지도 관련자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상담 관련자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심리지도 관련자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진로 및 경력지도 관련자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발달 관련자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특수교육 관련자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평가항목은 다음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 ② 도움이 되지 않음, ③ 보통, ④ 도움이 됨, ⑤ 매우 도움이 됨

3 교육 · 기타 서비스업 신규자격 도입 필요성

교육 · 기타 서비스업 분야에서 신설 가능한 자격종목에 대한 평가항목입니다(아래 표는 자격종목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평가요인을 척도로 구성한 것입니다).

평가척도	내용
서비스 요구도	해당 직무분야에 대해 국민이 서비스를 요구하는 정도
직무전문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 기술의 고유성 정도
능력인증 필요성	전문성 보유정도를 평가하여 인정할 필요성
일자리 가능성	해당 직업분야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정도(취업, 창업 포함)

문C1. 이를 기준으로 다음 자격종목들의 신설 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하여 주십시오.

평가항목의 활용도는 다음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1점: 매우 낮음, 2점: 낮음, 3점: 보통, 4점: 높음, 5점: 매우 높음		평가항목																			
자격종목명	자격의 직무내용	평가항목																			
		서비스 요구도					직무 전문성					능력인증 필요성					일자리 가능성				
학습전문 상담교사	학생 학습 전반의 문제를 상담하는 직무 수행 (전문상담교사의 직무 영역 분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진로전문 상담교사	학생의 진로 전반의 문제를 상담하는 직무 수행 (전문상담교사의 직무 영역 분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영재교사	학교내에서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지도하고 영재성을 측정 및 증진하는 직무를 수행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영재지도사	학교의 사설 기관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영재를 판별하고 교육하는 직무 수행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입학사정 컨설턴트	대학 입시에서 개인 환경, 잠재력,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입학사정관제도의 전문가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진학지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평가항목의 활용도는 다음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1점: 매우 낮음, 2점: 낮음, 3점: 보통, 4점: 높음, 5점: 매우 높음

자격종목명	자격의 직무내용	평가항목																			
		서비스 요구도					직무 전문성					능력인증 필요성					일자리 가능성				
학습 컨설턴트	심리검사를 통해 학생이 지닌 장점과 단점 및 특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직무를 수행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HRD 컨설턴트	성인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컨설팅 업무 수행 및 프로그램 개발·적용·평가하는 직무를 수행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화교육사	학교의 정규과정과 연계 혹은 학교 외 활동으로 박물관, 미술관, 과학체험 등의 각종 문화 체험 커리큘럼을 개발 및 수행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방과후 지도전문가	방과 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생활지도 및 학습을 돕는 직무 수행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영아돌보미	갓 태어난 영아를 대상으로 한 육아도우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평생 교육지도사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사업계획 등의 관련업무를 수행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C2. 이 외에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신설되기를 원하는 자격종목이 있으면 모두 적어 주십시오.

♣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

[부록 4] 교육서비스분야 민간자격의 개요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차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1	교육	두뇌운동전문지도자	1급, 2급, 3급	비공인	(주)편두리	두뇌운동 전문지도자의 역할은 두뇌의 기능적 불균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다양한 운동을 통하여 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있다.	1급 - 운동프로그램 개념과 실제이론(고급), 뇌마케팅, 실기 2급 - 운동프로그램 개념과 실제이론(중급) 서비스 및 CS 마케팅 실기 3급 - 운동 프로그램 개념과 실제이론(초급) 서비스 및 CS 실무, 실기	1급 - 2급 자격증, 2급자격증 취득 후 최소 1년 경력, 임상논문 발표 2급 - 3급 자격증, 3급 자격증 취득 후 최소 5개월 경력 3급 - 제한없음
2	교육	브레인트레이너	등급없음	비공인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http://www.braintrainer.or.kr/	학습, 기억, 감정, 의식 등 두뇌의 고등인지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험적 교육방법을 통해 피교육자 스스로 자신의 두뇌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는 것	필기: 두뇌의 구조와 기능, 두뇌훈련법, 두뇌특성평가법, 두뇌훈련지도법 실기: 두뇌훈련지도실무능력	1. 대학졸업자 등 또는 졸업예정자 2. 3년제 전문대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6월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2년제 전문대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브레인 트레이너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상 예정자 6.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3	교육	유아및아동교육지도사	등급없음	비공인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http://www.kula.or.kr	유아 및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 및 놀이지도, 학원, 유아원	방과후아동지도	관련 등급의 교과목에 대하여 90시간 이상 수료한자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자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4	교육	사이버 학습코치	1급, 2급, 3급	비공인	청소년코칭협회 http://cafe.naver.com/csc	초등학생과 중, 고등학생 가운데 예, 복습을 통하여 수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이루기 위하여 사이버 학습, 메일링, 마인드맵, 원격조정, 시간관리, 자기관리 등의 지도를 하는 사이버학습코치 양성과정 - 작은도서관,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 독서지도 교사 - 초등학교 방과 후교실(특기적성) 사이버학습코치 - 대안학교, 홀스쿨 교사, 사회복지관 등 공공기관 특기적성 지도	1급 - 인터넷 관리, 마인드맵, 메일링, 인터넷 수강, 원격관리 등 과목 및 실행, 집중력, 진단 및 지도, 시간계획(메일, 주간, 월간, 시험), 과목관리, 학생 및 학부모상담 등 2급 - 인터넷 관리, 마인드맵, 메일링, 인터넷 수강, 원격관리 등 과목 및 실행 등 시간계획(메일, 주간, 월간, 시험), 과목관리, 학생 및 학부모상담 등 3급 - 마인드맵, 메일링, 인터넷 수강, 자기주도학습 기초계획 및 실행 등 일과보고, 원격관리, 시간관리, 과목관리, 시험관리 등	1. 만18세 이상 자격기본법 제18조 결정사유가 없는 자 2. 고졸 및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본회 자격과정을 수료한 자
5	교육	아동학습 지도사	1급, 2급, 3급	비공인	국제MBPA과학본부 http://www.mbps.org	아동학습센터, 유아교육기관 등에서 아동학습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1급 - 아동학습지도평가론, 아동학습지도론 2급 - 아동학습지도 교수-학습 방법론, 아동학습지도 프로그램 개발론, 아동학습 이론 심화 3급 - 아동학습지도론, 아동학습론	1급 - 1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1급 양성과정 지원 자격은 2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급 - 2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자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2급 양성과정 지원 자격은 3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대학교 재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자. 3급 - 3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6	교육	특수아동학습지도사	1급, 2급, 3급	비공인	(주)국제MBPA과학본부 http://www.mbpas.org	복지관, 아동발달센터, 특수교육기관 등에서 특수아동학습지도사를 전개	1급 - 특수아동학습지도평가론, 특수아동학습지도상담론 2급 - 특수아동학습 교수-학습 방법론, 특수아동학습지도 프로그램 개발론, 장애 이론-심화 3급 - 특수아동학습지도론, 장애론	1급 - 1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1급 양성과정 지원 자격은 2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급 - 2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2급 양성과정 지원 자격은 3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대학교 재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자.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차적관리기관	적부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3급 - 3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1급 : 1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로 한다. 1급 양성과정 지원 자격은 2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7	교육	특수인지 합습지도사	등급 없음	비공인	(주)국제MBPA 과학본부 http://www.mbpas.org	이동발달센터, 복지관, 특수교육학 원 등에서 상담 및 부모교육 등을 전개	특수인지학습평가론, 특수인지학습 상담론	2급 : 2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인급 양성과정 지원 자격은 3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대학교 재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자 3급 : 3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차기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8	교육	자기주도 학습지도사	등급 없음	비공인	(사)한국공립대학평 생교육원협의회 http://www.kula.or.kr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 는 학습전략·기술, 동기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행동프로그램 등의 설계·적용능력이 상급에 도달하여, 각 교육 현장에서 초·중·고교생 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지도가 가능한 수준	자기주도학습의 의의 자기주도학습전략 및 기술 학습요청의 실제	국립대학교평생교육원에서 해당종 목 관련 교과목을 최소 90시간이상 이수하고 수료한 자
9	교육	자기주도 학습지도사	1급, 2급, 3급	비공인	청소년코칭협회 http://cafe.naver.com/csci	1급 - 초, 중, 고 학생을 교과서 중 심의 예, 복습을 통하여 수업의 이 해도를 높이고 자존감 가운데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이루기 위하여 등 가꾸어 등 진단과 지도 및 관리를 통해 훈련 2급 - 초, 중, 고 학생이 스스로 학 습포실경험학습전략계획 및 실천 평가 및 계획화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지도하고 훈련 3급 - 초, 중, 고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코칭 하여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함.	청소년 지도자론, 자기주도학습 코 치이론(동기, 목표, 시간, 교정) 등 교과서, 중심 학습전략, 학습 및 기 질 조사 및 지도, 학습플랜, SQ3R, 마인드맵 등	1급 - 1. 본 협회가 지정한 평생교 육기관 등에서 1급 양성과정을 이 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2. 2급 자 격증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 소 지자 2급 - 1. 본 협회가 지정한 평생교 육기관 등에서 2급 양성과정을 이 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2. 3급자 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3급 - 1. 본 협회가 지정한 평생교 육기관 등에서 3급 양성과정을 이 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자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10	교육	자기주도 학습코치	1급, 2급, 3급	비공인	(주)홈스쿨링 http://www.hs1004.com	코칭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예, 학습, 학교수업성공 및 피드백 습관을 갖도록 힘을 길러주고, 효과적인 공부법을 습관화시켜주는 과정	1등급-자기주도학습관 운영론, 1인 기업론, 학습코치 수퍼비전, 학부모 교육론, 진로코칭 2등급-코칭개론, 성격유형과 동기 부여, 효과적인 공부법, 자기주도 학습 교육과정의 실제, 학습코칭의 실제 3등급-자기주도학습이론, 인성과 자기주도학습, 지능과 자기주도학습, 창의성과 자기주도학습, PTC 자기주도학습 교재 활용론	1급 - 대졸이상학력자로서 2급자격 취득후 3년실무경력을 가진 자 2급 - 대졸이상학력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급자격증취득 후 2년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자 3급 - 고졸이상학력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11	교육	학습CARE 교육사	1급, 2급	비공인	한국아동재활교육협회	1급 : 발달지체아동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재활서비스 및 학습재활 교육의 고급수준의 전문가 2급 : 발달지체아동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재활서비스 및 학습재활 교육의 전문가	1.특수교육론 2.학습장애(교육개론 3.인지학습교육 4.주의집중재활교육 5.읽기, 쓰기재활교육 6.경서행동장애아 학습치료 7.지각, 기억사고장애 재활교육 8.학습장애에 차별교수법 9.학습장애아부모상담 및 가정연계 지도방법	1급 -본회의 학습CARE교육사 2급 소지자 - 전교육과정별 이론, 실기, 실습시간 포함 90시간 이상 수강자 2급 -전교육과정별 이론, 실기, 실습시간 포함 90시간 이상 수강자
12	교육	학습 전문코치	1급, 2급	비공인	(주) 아시아코치센터 http://www.asiacoach.co.kr	1급 - 응용 수준이 높은 심화 코칭 대화 기술을 바탕으로 동기 유발과 학습관리를 위한 더욱 깊이 있는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전문가 수준의 코칭 역량 2급 - 기초적인 코칭 대화 기술을	1급 - 심화 코칭대화법, 심화 동기유발 기법, 심화 학습관리 기법(총 3과목) 2급 - 기본 코칭대화법, 기본 동기유발 기법, 기본 학습관리 기법(총 3과목)	1급 - 2급 학습전문코치 자격 소지자 2급 - 제한없음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자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p>비탕으로 동기유발과 학습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준전문가 수준의 코칭 역량</p> <p>학습목표를 바탕으로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대상에 따라 원하는 목표에 대한 정보를 주고 원하는대로 이끌어주는 과정</p>		
13	교육	학습코치 자격증	등급없음	비공인	평생교육실천포럼	<p>1급 - 환경 훈련을 통한 인계 육성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회사나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1:1로 전담하여 구성원(멘티:Mentee)을 지도, 코치, 조인하면서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 성장시키는 전문적 활동</p> <p>2급 - 환경 훈련을 통한 인계 육성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회사나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1:1로 전담하여 구성원(멘티:Mentee)을 지도, 코치, 조인하면서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 성장시키는 비전문적 활동</p>	<p>학습방법/모형스킬/모칭/동기유발 전략/기초학습/자기관리</p>	<p>학습코치 양성과정 24시간 이수자</p>
14	교육	멘토링 지도사	1급, 2급	비공인	(사)기독교문화선교종회 http://www.csm.or.kr	<p>1급 - 멘토링의 이해, 멘토링 프로세스 설계와 운영, 사례연구 및 상담 사례 분석</p> <p>2급 - 멘토링의 이해, 멘토링 프로세스 설계와 운영, 사례연구</p>	<p>1급 - 2급 자격취득자 및 상담심리계 대학교졸업자</p> <p>2급 - 고등학교 졸업이상자</p>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차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15	교육	방과후 아동지도사	1급, 2급	비공인	(사)기독교문화선교총회 http://www.csm.or.kr	1. 어린이를 보호하고 가정의 인락한 분위기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을 돕는다. 2. 생활지도와 학습지도를 동시에 병행한다.	필기시험(방과후 아동지도론, 아동지도프로그램 개발론, 아동발달과 상담, 아동생활 지도론, 아동복지 및 정책, 아동지도의 실무), 실기능력, 방과후아동지도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서류심사, 수련과정, 임상, 진단, 연구 등의 활동), 도덕성(면접시험) 등	1급 - 2급자격취득자 및 대학교졸업자 2급 - 고등학교 졸업이상자
16	교육	방과후 지도사	등급없음	비공인	평생교육진흥연구원 http://www.kyoyuk.org	학교와 가정의 기능을 보완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아동이 정서적, 신체적으로 건전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함	방과후 지도론, 아동발달, 아동복지, 놀이지도	고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17	교육	방과후 아동지도사 자격증	1급, 2급	비공인	(사)예성	방과 후 아동지도 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 관리, 평가하는 업무와 아동지도를 수행, 방과 후 아동지도 계획 작성, 프로그램개발과 아동들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	방과후 아동지도의 이론, 방과후 아동지도의 실제	1급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본 법인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급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본 법인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자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18	교육	방과후 아동지도사	등급 없음	비공인	(사)한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회 http://www.kua.or.kr	초등학교의 방과후교실 생활 안전 지도, 발달단계에 따른 적합한 교육 활동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부모와 아동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 등 방과후교실 교육 전반의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중상급의 방과후아동지도능력을 갖춘 수준	방과후아동지도의 이해, 아동의 발달 특성, 방과후 아동지도 유형, 교수 학습방법, 프로그램계획과 구성, 시설운영관리, 부모와 지역사회의 관계, 방과후아동지도사의 역할과 자질, 방과후아동지도의 평가, 발전 방향과 과제	국립대학평생교육원에서 해당종목 관련 교과목을 최소 30시간이상 이수하고 수료한 자
19	교육	방과후 학교지도자	등급 없음	비공인	평생교육실천포럼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제반 지식을 익히고 방과후학교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역할, 학생을 지도한다.	방과후 개념/방과후 지도론/프로그램 개발	제한 없음
20	교육	방과후 지도사	등급 없음	비공인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http://www.vocatio.or.kr	- 방과후 아동의 생활지도 및 가정과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미비한 교육의 보완 할 수 있는 방과후교실 등에서 강사로 활동 - 심화과정을 통한 특기적성과목의 강사	방과후지도론, 아동관, 방과후지도법, 교육방법, 선택과목(실습포함)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자격에 해당되는 일반인에 한하여 자격증을 발급 (1) 만 18세 이상 자격기본법 제18조 결정사유가 없는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 또는 그 졸업예정자 (3) 학점인정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자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 ※ 단,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자격취득을 원하는 자는 해당 자격과정에 이수 후 이수한 센터의 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21	교육	방과후 아동지도사	등급 없음	비공인	(사)체협학습연구개발협회 http://www.deuworld.or.kr	1) 방과후아동 학습 지도방법 강의 (이론) 2) 방과후아동 학습 실습지도 및 교육	1) 청소년 심리학 2) 해당과목 전문 / 심화 지식 숙지도 3) 지도사 연구 강의 기본 / 심화평가 4) 현장 지도 교수능력 평가 5) 아동심리학 6)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만 19세 이상 성인인 자 2) 진과 및 범법 사실이 없는 자 3)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자(정신지체, 청각/시각장애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제한됨)
22	교육	방과후 아동지도사	등급없음	비공인	(주)석정 http://cowell.kr/	발달단계에 따른 적합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부모와 아동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 등 방과후교실 교육 전반의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중상급의 방과후아동지도능력	방과후 아동지도의 이해, 학령기 아동의 발달 특성, 운영관리, 방과후 교육과정, 방과후 아동지도의 교육 계획안, 방과후 프로그램의 실제, 수업시간별 제작한 포트폴리오	주식회사 석정 관련 과정 수료 후 응시 가능
23	교육	방과후 아동지도사	1급, 2급, 전문강사	비공인	(사)국제민간자격전문협회 http://iaqa.hompee.net/	방과후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복지상담을 통한 방과후아동복지권선형을 전문으로 함	2급 - 방과후아동복지론, 방과후학습지도론 1급 - 방과후아동복지론, 방과후학	2급 - 학력 : 고졸 / 방과후아동복지론, 방과후학습지도론이수자 1급 - 학력 : 고졸 / 방과후아동복지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차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24	교육	방과후 아동지도사	1급, 2급, 3급	비공인	(주)국제MBPA과학본부 http://www.mbrpas.org	1급 - 방과후교실 강사, 이동센터 강사 전문강사 - 후진양성, 대학강사, 평생교육원 강사, 문화센터 강사, 복지상담센터 운영	습지도론 복지미전, 복지마인드 전문 강사 - 상황별 프로그램 강의 계획서	론, 방과후학습지도론 이수자전문 강사/전문강사 과정 이수 및 자격 연수과정 수료자
						1급 - 이동교육기관 등에서 방과후 아동지도(음악, 미술, 운동, 에어로빅, 문예, 스포츠 등 다양한 자기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를 실시한다. 2급 - 방과후아동지도론, 방과후아동교육론 3급 - 방과후아동지도론, 방과후아동교육론	1급 - 1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정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1급 양성과정 지원 자격은 2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급 - 2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정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2급 양성과정 지원 자격은 3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대학교 재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자. 3급 - 3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정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자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25	교육	방과후 아동지도사	등급 없음	비공인	진국대학교	아동의 방과후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지도할 수 있는 능력	아동지도론, 숙제지도, 기관실습, 사례발표	진국대학교 평생교육원 관련 과정 수료 후 응시 가능
26	교육	방과후 지도사	1급, 2급	비공인	세계독서치료학회 http://www.bibetherapy.co.kr/	방과후아동과 청소년들의 생활지도 및 보호, 학습을 도와주고 지역아동센터와 학교방과후수업의 강사로 활동	방과후아동지도론, 방과후놀이지도, 학습교안작성	1급 - 대학평생교육원 90시간 이수자, 방과후아동지도교재 2학기 교육 이수자/관련경력 인장자/1000원이상 독서수준자 2급 - 대학평생교육원 및 문화센터에서 45시간 이수/방과후아동지도교재 1학기 교육 이수자/관련경력 인장자/교졸 정도 학력, 500원 독서수준 자
27	교육	방과후 아동지도사	등급없음	비공인	(사)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http://www.kauce.or.kr	함양기 아동의 방과후 생활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도하며, 그들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지도교사로서의 역할과 자질을 기르고, 부모와 아동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와 합리적인 운영관리 등 방과후 지도 진반의 기술을 습득하며 방과후아동지도에 필요한 지도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방과후 아동지도사 양성과정	방과후 아동지도론, 이동발달 및 상담, 방과후 지도 프로그램 계획, 인성지도, 교과 및 숙제지도, 언어지도, 협정실습, 운영관리, 사고력 증진활동, 놀이지도, 예체능지도	1. 만 18세 이상 자격기본법 제18조 결정사유가 없는 자 2. 진문대(2년제) 졸업, 대학2년 이상 수료, 보육교사 자격취득자 3. 본회 자격과정을 수료한 자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자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28	교육	아이브레인 영재지도사	1급, 2급, 3급	비공인	케이티씨에듀평생교육원 http://www.ktcedu.com	아이브레인 전문 지도사로써 교육 현장에서 아이브레인 교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진행하고, 2급이상은 전문가 양성 교육을 할 수 있다.	필기 : 아이브레인(원론, 개론, 교수법) 실기 : 모의 수업(유아10개과정, 초등12개과정) 위크숍 : 유아10개과정, 초등 12개과정 프로그램	1급 - 2급자격 취득 후 현장실습 6개월, 심층면접 2급 - 3급자격 취득 후 현장실습 6개월 3급 - 전문대졸 이상
29	교육	영재놀이 지도사	등급 없음	비공인	(주) 한국자격개발원 http://www.ktcd.or.kr	영재관별법에 의한 영재이관별, 영재놀이 지도 및 교육, 영재아 교육용 교재 및 교구개발, 영재놀이 전문교육기관 운영, 영재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선정, 영재놀이 지도방법 및 평가	영재교육학개론, 놀이지도, 영재관별법, 영재교수학습법 상·하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학력 및 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차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30	교육	영재전문 지도사	1급, 2급	비공인	(주)시사주니어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비 하고 교육상담을 할 수 있으며 영재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이해하고 영재아를 지 도할 수 있으며 영재교육방법에 의 해 교육할 수 있는 수준	영재전문지도사 종합테스트, 시범 수업	④ 1급 이상의 영의 집행유예 선고 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 는 자 ⑤ 본원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서 부정행위로 인한 처분을 받았 거나 또는 기타 부정행 방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회 시 험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31	교육	아동성격 지도사	등급없음	비공인	한국아동성격개발원	부모의 인성적 경제생활을 돕는 동 시 아동의 인성과 전인적 성장과 성 격발달을 도모하는 직무를 수행함	아동심리상담, 아동발달론, 아동성 활지도론, 아동지도실무	전문대 졸업 또는 예정자, 응시종목 에 속하는 직무분야에 3년이상 실 무종사자, 법률규정에 의거 전문대 합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 은자, 고졸자로서 자격취득을 원하 는자는 합격후 30시간 직무연수를 받아야 함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자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32	교육	어린이성품전문지도사	1급, 2급	비공인	한국성품협회 http://www.goodtree.or.kr	1급 - 성품교육과정을 이수한 12가지(경청, 긍정적인태도, 기쁨, 배려, 감사, 책임감, 인내, 순종,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 성품교육과정으로 초등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선교원, 어학원) 방과 후 성품전문지도사, 홈스쿨링 교사, 문화센터에서 성품지도사로 활동 2급 - 성품교육과정을 이수한 6가지(경청, 긍정적인태도, 기쁨, 배려, 감사, 책임감) 성품교육과정으로 초등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선교원, 어학원) 방과 후 성품전문지도사, 홈스쿨링 교사, 문화센터에서 성품지도사로 활동	1급. 필기 성품교육 원리론, 성품교육의 기초태도, 성품교육의 기초철학 2급. 필기 6가지주제성품모의수업(인내, 순종,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	1급 - 1. 만 18세 이상 자격기본법 제8조 결과사유가 없는 자 2. 2년 이상의 대학 학력 소지자 및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지정교육기관에서 6가지 성품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어린이성품전문지도사 2급 자격검정을 취득한 자 2급 - 1. 만 18세 이상 자격기본법 제8조 결과사유가 없는 자 2. 2년 이상의 대학 학력 소지자 및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지정교육기관에서 6가지 성품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3	교육	합습, 성격지도전문가 자격증	수석, 1급, 2급	비공인	한국과학경영직업전문학교 http://www.bram114.co.kr	수석급 - 성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심리검사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그를 근간으로 성격교정과 학습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최교전문가급으로서, 학습·성격지도학원 프랜차이즈 운영 능력검비. 1급 - 성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심리검사의 전문지식을 습득	수석급 : 학습행동진단분석학(수석급), 성격교정학(수석급), 학습교정학(수석급), (총 3과목) 1급 : 학습행동진단분석학(1급), 성격교정학(1급), 학습교정학(1급), (총 3과목)	수석급 - 학습·성격지도전문가자격증 수석과정(180시간) 수료한 자 1급 - 학습·성격지도전문가자격증 1급과정(180시간) 수료한 자 2급 - 학습·성격지도전문가자격증 2급과정(180시간) 수료한 자 3급 - 학습·성격지도전문가자격증 3급과정(180시간) 수료한 자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자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34	교육	미술심리상담사	1급, 2급, 3급	비공인	한국미술심리상담협회 http://www.korean- apca.or.kr	<p>하고 그를 근간으로 성격교정과 학습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고급전문가급으로서, 학습·성격지도방 프로그램, 멘치이즈 운영 능력검비.</p> <p>2급 - 성격을 객관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심리검사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그를 근간으로 성격교정과 학습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상급전문가급으로서, 학습·성격지도화된 운영 능력있음.</p> <p>3급 - 성격을 객관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심리검사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그를 근간으로 성격교정과 학습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중급지도전문가로서, 학습·성격지도방 운영 능력있음.</p>	<p>2급 : 학습행동진단분석학(2급), 성격교정학(2급), 학습교정학(2급), (총 3과목)</p> <p>3급 : 학습행동진단분석학(3급), 성격교정학(3급), 학습교정학(3급), (총 3과목)</p>	<p>3급 - 자격시험(이론시험) 응시자격 1. 고등학교이상 졸업자(고졸검정고시합격자 포함) 또는 졸업예정자 2. 미술심리상담관련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본 협회가 인정하는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p>
						<p>3급 - 미술을 이용해 아동·노인에게 창작활동을 통한 심리적안정감과 즐거움을 주는 보고 능력 수준</p> <p>2급 - 미술심리활동을 통해 아동·노인 장애유에게 창작활동 속에서 상담과 지도를 통해 재활을 도우주는 능력수준</p>	<p>3급 - 1) 아동 미술심리상담 2) 가족 미술심리상담 3) 색채심리</p> <p>2급 - 1) 아동 및 가족 미술심리상담 2) 미술심리진단 및 평가 3) 투사기법</p> <p>1급 - 1) 상담 및 심리의 이론과 기법 2) 미술심리상담 사례 연구법3)</p>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자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1급 - 재할, 복지, 상기관에서 미술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재할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 수준	정신병리의 이해 4) 미술심리검단 및 평가 5) 투사법 및 심리검사	<p>득한 자 4.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을 입학 하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70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 5.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 기관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미술심리상담연수를 이수한 자</p> <p>2급 - 자격시험(이론시험) 응시자격 미술심리상담사 2급은 다음 각 항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협회 자격 규정에 적합한 자: 1. 본 협회 정회원으로서 본 협회가 인정하는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을 가진 자 2. 미술, 심리, 상담, 교육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자로서 해당 학교에서 본 협회 인정과목을 이수한 자, 미술심리상담사 3급을 취득한 후 2급에 필요한 본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 기관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이수과목(140시간)을 이수한 자</p> <p>1급 - 자격시험(이론시험) 응시자격 1. 본 협회가 인정하는 자격 취득</p>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자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35	교육	미술심리 상담사	2급, 3급	비공인	건국대학교	전문성을 가지고 미술이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개인과 집단의 심리틀 검사하고 상담함으로써 건강한 자아성장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필수 3과목 - 미술심리상담의 기초, 이상심리, 그림예의한심리검사 선택 1과목 - 상담의 기초, 예술심리 상담기초 중 택일	건축대학교 디지털대학원 미술심리상담 전문과정에서 미술심리상담사 교육을 이수한 자
36	교육	미술심리 상담사	1급, 2급	비공인	(사)한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http://www.kula.or.kr	1급 - 미술심리상담사해에 대한 분석 및 활용이 가능하고, 내담자(문)제아동 및 부모, 비행청소년, 사회부적응 성인 등)의 심리문제에 대하여 미술매체를 활용한 상담업무 능력이 상급인 수준 2급 - 내담자(문제아동 및 부모, 비	1급 - 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에서 해당자격종목 관련 교과목을 최소 180시간이상 이수하고 수료하였으면, 본 협의회 동 자격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2급 - 전문회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미술심리상담 관련분야 또는 미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차기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37	교육	미술심리지도사	등급없음	비공인	(사)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http://www.kauce.or.kr	미술심리지도는 미술의 창의적 과정과 표현을 통해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완화시켜 내담자로 하여금 원만하고 창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언어적인 심리지도과정 - 사회복지지사실/기관 - 특수학교, 일반학교 - 사설심리센터 -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 장애인거주시설	미술의 이해(미술심리학적 관점) 미술심리실습 I 심리이론과 미술심리 미술심리실습 II 진단, 평가 및 해석 I 대상별 미술심리 유형별 미술심리 진단, 평가 및 해석 II 임상실습 및 발표	1. 만18세 이상(자격기본법 제18조) 자격시유가 없는 자 2. 전문대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학전공, 관련기관 실무자 우선) 사회복지사 3. 본회 자격과정을 수료한 자
38	교육	미술심리상담사	1급, 2급, 3급	비공인	(사)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http://www.kapca.pe.kr	정서장애, 가족문제, 생활 등을 통한 미술심리상담과 지도능력이 있는 전문기로서 카운셀링 업무를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정	미술심리상담개론, 그림진단, 대상별 유형별 접근방법, 미술심리상담사의 역할, 대상별 유형별 미술상담, 진단평가 및 해석, 미술상담실습, 미술심리상담사의 자질과 슈퍼비전, 임상실습	전문학사 이상 학력소지자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차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39	교육	미술심리 지도사	등급없음	비공인	(사)한국공립대학평 생교육원협의회 http://www.kula.or.kr	각 교육환경에서 다양한 미술매체 를 활용한 미술심리상담 및 인성교 육이 가능하며, 상담관련 제반업무 (상담기록 및 사례분석 등) 처리가 가능한 중상급의 미술심리교육능력 을 갖춘 수준	미술심리지도개론, 상담 및 심리지 도기법, 미술심리지도의 심리학적 접근, 색채심리학	국립대학평생교육원에서 해당종 목 관련 교과목을 최소 90시간이상 이수하고 수료한 자
40	교육	미술심리 상담사	등급없음	비공인	(사)한국전문자격협회 http://www.kla.or.kr	미술 작품의 예술성 평가를 통하여 적응력과 경서적 문제 등의 미술 상 담 과 지도능력이 있는 전문가로써 미술 지도와 카운셀링 업무를 원활 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 추고 있는지 평가	미술상담의 기초, 미술 상담의 접근 과 실제, 미술 상담의 기법, 진단 도 구의 미술	미술 분야의 전공자로서 초대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자
41	교육	음악심리 지도사	등급없음	비공인	(사)한국공립대학평 생교육원협의회 http://www.kula.or.kr	각 교육환경에서 음악심리학적 상 담원리와 음악매체 및 도구를 활용 하여 내담자(아동 및 성인)의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심리지도가 가 능하며, 음악심리지도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음악심리지도결과를 평 가, 응용할 수 있는 중상급의 음악 심리지도능력을 갖춘 수준	음악심리지도의 개념과 이해, 음악 심리지도의 원리와 방법 음악심리지도의 실제, 음악심리지 도의 적용 및 분석	국립대학평생교육원에서 해당자 격종목 관련 교과목을 최소 90시간 이상 이수하고 수료한 자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자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42	교육	음악심리 지도사	등급없음	비공인	(사)한국대학평생교육 원협의회 http://www.keuce.or.kr	음악심리지도사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지식은 물론 음악심리에 인 접한 학문인 과학분야, 즉 정신의학, 심리학, 임상심리, 특수교육 등의 학문을 학습하며, 음악을 심리적인 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층있는 교육 을 한다. - 특수학교, 정신병원, 재활원 - 양로원, 아동감호소, 청소년 심리 센터 - 성인주간보호소, 호스피스 등, 아 동심리연구소, 아동보육시설	음악심리의 이해, 음악심리의 원리, 음악심리과정, 음악심리학, 음악심 리 연주, 아동을 위한 음악심리, 청 소년을 위한 음악심리, 정신질환심 리를 위한 음악심리, 노인을 위한 음악심리, 의료현장에서 쓰이는 음 악심리, 세션 발표, 임상실습	1. 만18세 이상(자격기본법 제18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나 기능을 가진 자 3. 자격과정을 수료한 자
43	교육	인제파견 지도사	등급없음	비공인	아웃소싱타임스 http://www.outsourcing21.com	파견근로자 사용 경영 방법론 [활 용 컨설팅], 근로자파견사업 경영 방법론 [사업 컨설팅], 사용기업의 공급업체 선정, 계약, 서비스 평가, 협력관리, 공급기업의 사용업체 영 업, 계약, 품질관리, 협력관리, 인제 파견기업 영업/마케팅 실무, 근로자 파견 관련 법률의 이해, 인제파견기 업 관리자 실무 [현장 파견근로자 관리, 견적서 작성, 요금 산정, 청구 /복리후생 관리 기초], 사용기업 관	인제파견법률, 인제파견실무	제한없음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자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44	교육	청소년진로 코칭지도사 자격증	등급없음	비공인	(사)월드유스비전	<p>리자 실무 [메치 파견근로자 교육, 직무관리, 보상, 직무 및 정규직 전환, 파견근로자 인력수급 및 직업 상담, 4대보험 관리 실무, 파견근로자 보호 및 유상론 기획 및 실행</p> <p>청소년을 위한 진로 및 직업관련 코칭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청소년들이 진로발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진로결정과 진로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진로현장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갖춘 수준</p>	<p>청소년심리론, 청소년상담론, 집단활동지도기술론, 인성·격성·성격검사, 직업가치관교육, 코칭이론과 실제, 직업체험활동지도이론과 실제, 청소년진로지도</p>	<p>전문대졸이상의 학력수준 혹은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청소년진로지도에 상당한 능력을 갖춘 자. 노동부 및 산화관련기관 또는 유사한 기관·단체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본 기관 훈련원에서 소정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p>
45	교육	커리어코치 (Career Coach)	1급, 2급, 3급	비공인	(주)한경닷컴 http://www.hankyung.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조직구성원들의 커리어비전 및 로드맵 작성 코치 - 어세스먼트 기법을 활용한 역량 진단 및 경력관리 코치 - 집단코칭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 리테이션 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면접스킬 등 인사관리 업무 활용 	<p>3급 - 커리어코칭 기본기법 활용능력 평가(커리어코칭 개념과 커리어진단, 커리어개발, 커리어코칭시 주의점)</p> <p>2급 - 커리어코칭 기본기법 활용능력 실기(피코치에게 프리젠테이션 시 유의사항, 역량어세스먼트, 올바른 진단을 통한 코칭방법)</p> <p>1급 - 커리어코칭 프리젠테이션 실습(비디오 촬영)(피코치에게 프리젠테이션 시 유의사항, 역량어세스먼트, 올바른 진단을 통한 코칭방법)</p>	<p>3급 - 20시간 이상의 커리어코치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p> <p>2급 - 20시간 이상의 커리어코치 고급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p> <p>1급 - 24시간 이상의 커리어코치 강사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p>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자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46	교육	평생교육 경영사	1급, 2급, 3급	비공인	(주)국제MBPA과학본부 http://www.mbrpas.org	평생교육센터, 복지관, 평생교육학 원 등에서 전문직 경영자 역할을 수 행한다.	1급 - 평생교육경영평가론, 평생교 육경영론 2급 - 평생교육경영 방법론, 평생교 육경영 프로그램 개발론, 발달장애 이론 심화 3급 - 평생교육경영론, 발달장애론	1급 - 1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 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 생교육기관 등에서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1급 양 성과정 지원 자격은 2급 자격증 소 지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급 - 2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 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 생교육기관 등에서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2급 양 성과정 지원 자격은 3급 자격증 소 지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대학교 제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자 3급 - 3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 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 생교육기관 등에서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47	교육	장애인 평생 교육전문가	1급, 2급, 3급	비공인	(주)국제MBPA과학본부 http://www.mbrpas.org	복지관, 아동발달센터 등에서 장애 인 평생교육 전문 지도를 전개 한다.	1급 - 장애인 평생교육평가론, 장애 인 평생교육 상담론 2급 - 장애인 평생교육 교수-학습 방법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장애 이론 심화 3급 - 장애인 평생교육론, 장애론	1급 - 1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 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 생교육기관 등에서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1급 양 성과정 지원 자격은 2급 자격증 소 지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자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48	교육	발달놀이 교육사	2급, 1급, 전문가	비공인	이엠텐서비스교육개발원 http://www.em21c.net	2급 - 교육현장에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놀이를 활용한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의력, 자기관리력, 사고력, 추리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1급 - 심리발달과 심리안정에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고령노인을 대상으로 놀이를 활용한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지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2급 - 발달놀이교육론, 레크레이션, 아동청소년지도론, 집단프로그램지도론 1급 - 발달놀이교육론, 특수아동교육론, 노인들이교육방법론, 집단프로그램지도론 전문가 - 발달놀이교육지도감동론, 교수-학습 방법론, 수퍼비전론, 사례연구	2급 - 2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2급 양성과정 지원 자격은 3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대학교 재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자. 3급 - 3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2급 - 교육현장에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놀이를 활용한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의력, 자기관리력, 사고력, 추리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1급 - 심리발달과 심리안정에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고령노인을 대상으로 놀이를 활용한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지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2급 - 발달놀이교육론, 레크레이션, 아동청소년지도론, 집단프로그램지도론 1급 - 발달놀이교육론, 특수아동교육론, 노인들이교육방법론, 집단프로그램지도론 전문가 - 발달놀이교육지도감동론, 교수-학습 방법론, 수퍼비전론, 사례연구	2급 -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교육학 또는 관련학과(유아교육, 특수교육학, 심리학, 상담학 등)를 전공한 자로서 2급 관련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급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자격검정위원회를 통하여 이와 동등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자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49	교육	발달장애 지도사	1급, 2급, 3급	비공인	(주)국제MDPA과학본부 http://www.mdpas.org	전문가 - 능력을 활용한 발달교육 프로그램 운영 뿐 아니라 발달장애 교육지도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한다. 관련업무 종사자 강의, 수퍼비전을 통해 1급·2급 교육사를 양성하고 방향 및 조연을 제공한다.	1급 - 발달장애지도평가론, 발달장애지도론 2급 - 발달장애지도 교수-학습 방법론, 발달장애지도 프로그램 개발론, 발달장애 이론 심화 3급 - 발달장애지도론, 발달장애이론	1급 - 1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로 한다. 2급 - 2급 응시자격은 1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 3급 - 3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전문가 - 능력을 활용한 발달교육 프로그램 운영 뿐 아니라 발달장애 교육지도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한다. 관련업무 종사자 강의, 수퍼비전을 통해 1급·2급 교육사를 양성하고 방향 및 조연을 제공한다.	1급 - 발달장애지도평가론, 발달장애지도론 2급 - 발달장애지도 교수-학습 방법론, 발달장애지도 프로그램 개발론, 발달장애 이론 심화 3급 - 발달장애지도론, 발달장애이론	1급 - 1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로 한다. 2급 - 2급 응시자격은 1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 3급 - 3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자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50	교육	발달심리 자격증	발달심리 전문가, 발달심리사	비공인	(사)한국심리학회 http://www.koreampsychology.or.kr/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시·도·군·구의 상담실, 복지시설, 아동 및 청소년 발달교구 제작업체에 진출하여 전문적인 발달지식 응용 업무에 종사하고 발달심리전문가 진출분야에서 기본적·임차적인 발달지식 응용 업무에 종사	연구방법(통계 및 설계), 교육과정 및 평가고급, 가족문제, 정신건강, 직업개발 및 집단면학, 발달이론, 상담심리, 심리평가 및 검사 등 심리학 관련	발달심리전문가 - 1. 필기시험: 심리학과나 관련학과의 석사 및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소경의 전문 경력을 쌓은 후 본 학회에 등록한 자 2. 수련심사 1) 발달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발달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가관의 감독 아래에서 소경의 수련을 받은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2) 발달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가관의 감독 아래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로 한다. 2급 양성과정 지원 자격은 3급 자격 응 소지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대학교 재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한다. 3급 - 3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로 한다.		발달심리전문가 - 1. 필기시험: 심리학과나 관련학과의 석사 및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소경의 전문 경력을 쌓은 후 본 학회에 등록한 자 2. 수련심사 1) 발달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발달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가관의 감독 아래에서 소경의 수련을 받은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2) 발달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가관의 감독 아래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자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p>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본 학회 주최 워크숍 48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서, 발달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소정의 수련을 받은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p> <p>3) 발달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가의 감독아래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후, 발달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소정의 수련을 받은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p> <p>발달심리사 - 1. 필기시험: 심리학이나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발달심리학회 회원 또는 임회를 신청한 자(관련학과에서 3년 이상의 학부과정을 이수한 자, 학부전공과는 별개로 관련 전공 대학원에서 3학기 과정을 이수한 자도 응시 가능함)</p>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자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51	교육	발달진단 평가사	전문가, 1, 2, 3급	비공인	(사)한국심리협회 http://www.kpsa.org/	진단평가에 대한 연구 및 관련업무 중보자 강의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지도 방향 제시, 교 육환경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 언어, 성격 영역을 평가하고 보고서 를 작성, 교육환경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를 이해하고 장애진단 과 인지/임상영역을 평가, 교육환경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상태 및 정신병리를 이해하고 발달 및 적응 영역을 평가	진단평가 분야의 전반적인 이해 수 준 평가, 3사레 이상 진단 평가보고 서 작성, 심리평가의 절차, 발달영 역/사회·적응영역/기능영역/문제 영역/장애진단영역/임상·상담영역 /언어영역/성격영역/학습영역의 평 가, 보고서 작성법, 심리검사/발달 장애/진단평가/아동발달/정신병리 의 이해	2. 수련심사: 심리학과나 제2조에 명시된 관련학과에서 3년의 과정을 수료한 후, 발달심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문 가 아래에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마 친 후, 수련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전문가 - ① 대학원에서 심리학, 아 동학, 특수교육학, 미술치료, 사회복지 지학 등 진단평가 관련분야를 전공 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 중 진단평가 관련분야에서 1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 협회가 주관하는 40시간 이상의 발달진단 평가 연수 이수자 ② 발달진단평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 협회가 주관하는 40시간 이상의 발달진단평가 연수 이수자 1급 - ① 발달진단평가사 2급 자격 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 협회가 주 관하는 30시간 이상의 발달진단평 가 연수 이수자 ② 대학에서 심리학, 아동학, 특수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차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p>교육학, 미술치료,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하고 진단평가 관련분야에서 1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 협회가 주관하는 30시간 이상의 발달진단평가 연수 이수자</p> <p>2급 - ① 발달진단평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 협회가 주관하는 30시간 이상의 발달진단평가 연수 이수자</p> <p>② 대학에서 심리학, 아동학, 특수교육학, 미술치료,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하고 진단평가 관련분야에서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 협회가 주관하는 30시간 이상의 발달진단평가 연수 이수자</p> <p>③ 4년제 대학에서 심리학 아동학 특수교육학, 미술치료, 행동치료,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하고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본 협회가 주관하는 30시간 이상의 발달진단평가 연수 이수자</p> <p>3급 - ① 대학생 및 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그 외 진단평가에 관심이</p>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자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있는 자로서, 본 협회가 주관하는 30시간 이상의 발달진단평가 연수 이수자
52	교육	발달장애 상담사	1급, 2급, 3급	비공인	(주)국제MDPA과학본부 http://www.mdpas.org	1급 - 아동발달센터, 특수교육학원, 복지관 등에서 발달장애 고년아도 상담을 전개한다. 2급 - 아동발달센터, 특수교육학원, 복지관 등에서 발달장애 전문 상담을 전개한다. 3급 - 아동발달센터, 특수교육학원, 복지관 등에서 발달장애 기초 상담을 전개한다.	1급 - 발달검사론, 발달장애평가론 2급 - 발달장애 상담론 심화, 발달장애 원인론 심화 3급 - 발달장애 상담론, 발달장애 원 이론	1급 - 본 기관이 지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로 한다. 1급 양성과정 지원 자격은 2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급 - 본 기관이 지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2급 양성과정 지원 자격은 3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 문학사 이상(대학교 재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자 3급 - 본 기관이 지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53	교육	특수아동 지도사	등급없음	비공인	(사)한국대 회평생교육 원협의회 http://www.keance.or.kr	특수학교, 특수학급(통합학급) 보조 교육원, 장애인복지관, 장애, 어린이 집에서 청각장애, 정신지체아, 정서 장애, 자폐아, 언어장애 등 특수아	특수아동교육 특수아 상담 장애아 미술심리, 장애아 놀이심리 장애아 복지론	1. 만18세 이상 자격기본법 제18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유아교육, 아동학, 사회복지학 및 유아학과 졸업 및 재학중인 자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자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등의 이해 및 지도교육을 통한 학습 도우미		3. 교원자격증, 유치원 정교사, 보육 교사 2급 이상 소유자 4. 고졸로써 사회복지단체 2년 이상 근무한 자(상기2,3,4항 중 1개 이 상 해당자) 5. 본회 자격과정을 수료한 자
54	교육	특수아동 지도사	등급없음	비공인	(사)한국국공립대학평 생교육원협의회 http://www.kula.or.kr	특수교육기관, 아동발달센터, 복지 관 등에서 장애 및 특수아동의 학교 (단체)생활적응을 위한 도우미 역 할, 특수아 집체력 개발 지도업무, 특수아동 및 그 가족들의 상담업무 가 가능한 중상급의 특수아지도능 력 수준.	특수교육의 기초, 진단 및 평가 사 해분석, 장애영역분류, 법과 제도, 가족지원	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에서 해당중 목 관련 교과목을 최소 90시간이상 이수하고 수료한 자
55	교육	특수아동 지도사	전문, 1급, 2급	비공인	(사)한국국공립대학평 생교육원협의회 http://www.kula.or.kr	특수학교, 특수학급(통합학급) 보조 교육원, 장애인복지관, 장애, 어린이 집에서 청각장애, 정신지체아, 정서 장애, 자폐아, 언어장애 등 특수아 동의 이해 및 지도교육을 통한 학습 도우미	특수아동교육 감각교구(인지,재활) 프로그램	관련 등급의 교과목에 대하여 90시 간 이상 수료한자
56	교육	특수아동 교육사	1급, 2급, 3급	비공인	(주)국제MBPA과학본부 http://www.mbpas.org	아동발달센터, 복지관, 특수교육학 원 등에서 특수아동교육 등의 상담 및 부모교육 등 전개	특수아동교육평가론, 특수아동교육 상담론	1급 - 1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 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 생교육기관 등에서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로 한다. 1급 양성과정 지원 자격은 2급 자격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자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증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급 - 2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정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2급 양성과정 지원 자격은 3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대학교 재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자 3급 - 3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정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57	교육	특수아동 지도사	2급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 http://www.knsww.or.kr	2급 -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보조 장애아동의 활동과 학습보조 및 학 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 장애에 대한 이해와 역할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장애학생을 업무를 처리한다.	2급 - 특수아동의 이해, 특수아동의 심리치료, 특수아동 상담	특수아동지도사 기본과정을 수료한 자
58	교육	특수아동 지도사	등급없음		특수아동지도사 협회 http://www.ocea.kr	장애아동의 활동과 학습보조 및 학 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 장애에 대한 이해와 역할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장애학생을 업무를 처리한다.	장애학생의 이해, 특수아동 상담, 특수아동교수법,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 (총 4과목)	특수아동지도사 교육과정 중 출석인수 80%이상 이수한 수료자로서 고졸이상 학력 소지자
59	교육	특수재활 교육사	1급, 2급, 3급		(주)국제MBPA과학본부 http://www.mbps.org	복지관, 아동발달센터 등에서 특수재활교육 전문 지도를 전개 한다.	1급 - 특수재활교육평가론, 특수재활교육상담론 2급 - 특수재활교육 교수·학습 방법	1급 - 1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정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1급 양성과정을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자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60	교육	특수재활 체육교육사	1급, 2급, 3급	비공인	(주)국제MBPA과학본부 http://www.mbras.org	복지관, 아동발달센터, 특수교육기관 등에서 장애인 또는 발달이 지체된 아동을 대상으로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 재발을 위한 체육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부모교육, 부모특강 등을 전개한다. 또한 특수재활체육 전문강사가 되면 평생교육원 등에서 전문 강의를 실시한다.	1급 - 특수재활체육교육평가원, 특수재활체육교육상담원 2급 - 특수재활체육교육 교수-학습방법론, 특수재활체육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장애 이론 심화 3급 - 특수재활체육교육론, 장애론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1급 양성과정 지원 자격은 2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급 - 2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정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2급 양성과정 지원 자격은 3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대학교 재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자. 3급 - 3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정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복지관, 아동발달센터, 특수교육기관 등에서 장애인 또는 발달이 지체된 아동을 대상으로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 재발을 위한 체육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부모교육, 부모특강 등을 전개한다. 또한 특수재활체육 전문강사가 되면 평생교육원 등에서 전문 강의를 실시한다.	1급 - 특수재활체육교육평가원, 특수재활체육교육상담원 2급 - 특수재활체육교육 교수-학습방법론, 특수재활체육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장애 이론 심화 3급 - 특수재활체육교육론, 장애론	1급 - 1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정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1급 양성과정 지원 자격은 2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급 - 2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정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2급 양성과정 지원 자격은 3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대학교 재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자. 3급 - 3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정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차기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61	교육	자폐증재활 교육사	1급, 2급, 3급	비공인	(주)국제MDPA과학본부 http://www.mdras.org	이동 발달센터, 복지관, 특수교육학 원 등에서 자폐증재활 등의 상담 및 부모교육 등을 전개	자폐증재활상 자폐증재활평가관, 자폐증재활상 담론	성과정 지원 자격은 3급 자격증 소 지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대학교 체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자 3급 - 3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 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 생교육기관 등에서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1급 - 1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 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 생교육기관 등에서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1급 양 성과정 지원 자격은 2급 자격증 소 지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급 - 2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 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 생교육기관 등에서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2급 양 성과정 지원 자격은 3급 자격증 소 지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대학교 체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자, 3급 - 3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 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 생교육기관 등에서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자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62	교육	재활놀이 교육사	1급, 2급, 3급	비공인	(주)국제MDPA과학본부 http://www.mdpas.org	이동발달센터, 복지관, 특수교육학 원 등에서 재활놀이교육 등의 상담 및 부모교육 등 전개	재활놀이교육평가론, 재활놀이교육 상담론	1급 - 1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 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 생교육기관 등에서 1급 양성과정 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1급 양 성과정 지원 자격은 2급 자격증 소 지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급 - 2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 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2급 양성과정 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2급 양성과정 지원 자격은 3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대학교 계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자. 3급 - 3급 응시자격은 본 기관이 지 정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 생교육기관 등에서 3급 양성과정 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63	교육	상담심리사	1급, 2급	비공인	(사)한국상담심리학회 http://www.kicpa.or.kr	1)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적 적응력 향상을 위한 조력 및 지도 2)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 3) 지역사회 상담교육, 사회병 리적 문제에 대한 예방활동 및 재난	1급 1.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2. 심리진단 및 평가 3. 성격심리학 4. 집단상담 및 치료 5.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	1급 - 1) 상담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를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2) 상담관련 분 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상 당 비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 서 상담관련 분야 박사과정에 입학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차격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p>후유증에 대한 심리상담 4) 기업체 내의 인간관계 자문 및 심리교육 5) 상담 및 심리치료에 관한 연구 6) 상담실 책임운영 7) 상담심리사 1급, 2급 수련증인자의 교육지도와 자문 8) 상담심리사 1급, 2급 수련증인자의 수련내용 평가 인준 및 자격추천</p> <p>2급</p> <p>1. 상담심리학 2. 발달심리학 3. 이상심리학 4. 학습심리학 5. 심리검사</p> <p>1)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적 상성과 사회적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및 지도 2)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 3) 지역사회 상담교육, 사회병리적 문제에 대한 예방활동 및 재난 후유증에 대한 심리상담 4) 기업체 내의 인간관계 자문 및 심리교육 5) 상담 및 심리치료에 관한 연구 6) 상담 행정 업무</p>			<p>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3)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4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4)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심리사 1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 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과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을 가진 자 5) 대학의 상담전공 부교수 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경력의 상담전공자의 경우, 자격검정의 원회의 심사에 따라 특별전형 할 수 있다.</p> <p>2급 - 1)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 에 재학중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2)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가</p>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차기관리기관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64	교육	심리상담사	1급,2급,3급	비공인	한국상담교육협회 http://kcea98	1급 - ① 인터넷·진화·면접상담, ②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③ 초중고등학교 상담, ④ 공공기관 상담 등 다양한 상담기법으로 원활한 상담 가능수준 2급 - ① 초중고등학교 상담, ②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③ 인터넷·진화·면접상담, ④ 공공기관 상담 등 다양한 상담기법으로 상담 가능수준 3급 - ① 초중고등학교 상담, ②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③ 인터넷·진화·면접상담, ④ 공공기관 상담 등	1급 - ① 가족치료 이론 및 실제 ② 청소년상담 ③ 정신역동상담 ④ 합리적 정서적 행동요법 ⑤ 집단상담의 원리와 실제 2급 - ① 심리상담학 이론과 실제 ② 발달심리학 ③ 정신분석학 ④ 합리적 정서적 행동요법 ⑤ 가족치료 이론 ⑥ 집단상담 3급 - ① 심리상담학 이론과 실제 ② 발달심리학 ③ 정신분석학 ④ 합리적 정서적 행동요법 ⑤ 집단상담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2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3)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협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4)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진리사 2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No.	소분류	자격종목	자격등급	공인여부	자격관리기관	적용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65	교육	심리상담사	전문, 1급, 2급	비공인	(사)한국공립대학평 생교육원협의회 http://www.kula.or.kr	다양한 상담기법으로 상담 가능 수준 전문 - 각 상담현장에서 내담자에게 적절한 상담기법을 활용하여 심 리적문제를 교정지도하고, 각종 심 리검사 및 상담사례에 대한 분석과 응용이 가능한 최상급의 상담능력 수준 1급 - 각 상담현장에서 내담자에게 전문적 상담기법을 활용하여 심리 문제를 교정지도하고, 각종 상담사 예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상급의 상 담능력 수준 2급 - 상담에 대한 기본 원리와 기 법을 알고, 내담자의 심리문제에 대 한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며, 상담 보조업무수행이 가능한 중급의 상 담능력 수준	상담의 원리와 기법 상담의 실제 상담사례분석 상담실습	전문 - 국립대학평생교육원에서 해당자격종목 관련 교과목을 최소 270시간이상 이수하고 수료하였으 며, 본 협의회 등 자격종목의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1급 - 국립대학평생교육원에서 해당자격종목 관련 교과목을 최소 180시간이상 이수하고 수료하였으 며, 본 협의회 등 자격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2급 - 국립대학평생교육원에서 해당자격종목 관련 교과목을 최소 90시간이상 이수하고 수료한 자

[부록 5]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학습컨설턴트 자격 개선 세부 방안

언어치료사

1

자격의 내용

언어치료사 (언어 장애전문가/임상언어사)

2

검정방법(현재 단일화된 민간자격)

수여기관

- 언어치료학과/언어병리학과가 개설된 국내 약 40여개 대학 및 전공 교수들이 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언어장애인전문가협회(구 언어치료전문가협회)의 민간자격증임
- 현 자격증은 1997년부터 언어치료학 분야의 두 학회(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한국언어치료학회)에서 수여하던 것을 지난 2002년 이후 10년 동안 단일화하여 수여해오고 있음
- 이제는 협회 자격증 자체가 인지도가 높아 병원, 복지관, 대학부설

기관 등의 언어치료실에서 채용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 급수: 1급(석사), 2급(학사), 2급준(전문학사)의 3급 체제임

- 이 체제는 국가자격증화가 공론화 되면서 행정적 효율화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2등급 체제(1급, 2급)로 합의 되었음(2010년 공청회 자료 참조)

□ 검정방법

- 1급: 언어치료학/언어병리학 석사학위 소지 + 1급 시험 합격 + 시험합격 후 1년간 인턴 또는 fellow (CFY: clinical fellowship year)
- 2급: 언어치료학/언어병리학 학사 소지 + 2급 시험 합격
- 2급준: 언어치료학/언어병리학 전문학사 소지 + 2급준 시험 합격

3

자격의 수요자

□ 주요응시계층

- 대학원, 학부, 전문대에서 언어치료학(언어병리학)과를 졸업한 자

□ 자격을 사용하게 될 사용자

-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언어치료를 담당할 사람
 - ① 지자체 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고용되어 지역 학교에 파견될 언어치료사
 - ② 병원 언어치료실에 고용될 언어치료사

- ③ 복지관 언어치료실에 고용될 언어치료사
- ④ 대학부설 언어치료실에 고용될 언어치료사
- ⑤ 사설 언어치료사(1급 소지자 또는 10년 이상 경력의 2급 소지자)

□ 언어치료사 자격 사용자 수

- 2010년 현재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구 언어치료전문가협회)에서 검정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수여한 사람은 약 5000명 정도임
- 현재 전공이 개설된 대학원 19개, 학부 17개, 전문대 9개(대부분 3년제)이며, 누적된 졸업생 수는 1만명에 달하고 있음

□ 추정 언어치료 대상자 수

- 말이나 언어, 의사소통에 장애를 보이는 인구는 대략 전체 인구의 5% 정도로 추정됨
- 이 중 실제로 언어치료실을 찾는 적극적 언어치료 요구자수는 아무리 작게 잡아도 전 인구의 0.4% 정도로 볼 수 있음(2005 공청회 자료 참조)

<표-1> 잠정 및 최소 언어치료 대상자 수

연령	인구 수 (2005 통계청 자료기준)	잠정 의사소통 장애수	최소 언어치료 대상자수	최소 언어치료대상자수 추정근거
영유아기	2,382,350	119,117	23,823	영유아인구 0.5% 중 적극적인 언어치료가 필요한 수(20%)
학령전기	3,168,887	485,215	97,043	학생인구 5% 중 20%
학령기		6,533,414	27,871	389
성인기	31,801,235	954,037	28,621	성인인구 3% 중 실제 언어치료를 받을 수(3%)
노인기	6,020,783	361,246	72,249	노인인구 6% 중 20%
계	49,908,669	1,919,615	221,736	전 인구의 0.4%

<표-2> 설문조사에 나타난 장애유형별 치료지원 우선순위법에 명시된 장애 유형부모 설문조사

법에 명시된 장애 유형	부모 설문조사 (현재 학교 밖에서 수혜하고 있는 치료지원)	특수학교 담임교사 설문조사 (요구되는 치료지원)	특수학급 담당교사 설문조사 (요구되는 치료지원)	미국 학교 언어치료 수혜율	본 연구자가 제안하는 유형별 우선 치료지원
지체장애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일상생활, 심리행동 훈련, 감각, 작업치료> 물리치료> 보행, 청능훈련	언어치료> 심리행동, 일상생활훈련 >감각, 작업치료> 물리치료	뇌손상 18%, 삼킴장애 10%, 말운동장애 56%, 무발화 AAC 50%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기타 지원
시각장애					보행훈련
청각장애	언어치료> 청능훈련, 예체능치료			청각장애 48%, 청지각처리장애 61%	청능훈련> 언어치료> 기타 지원
의사소통 장애				단순언어장애 61%, 조음음운장애 91%, 화용장애 77%, 읽기쓰기장애 37%, 영어학습자 35%, 음성공명장애 29%, 방언문제 2%	언어치료> 중복장애 시 기타 지원
정신지체	언어치료> 예체능치료			71%	언어치료> 작업치료> 기타 지원
정서·행동장애	언어치료> 예체능치료> 심리치료			66%	심리치료> 언어치료> 기타 지원
자폐성장애				84%	언어치료> 중복장애 시 기타 지원
발달지체					
학습장애				73%	
건강장애					

출처: 김영태(2007) 현장특수교육(본 자료는 여러 차례에 걸친 국회 토론회 및 미국언어청각임상협회 (ASHA, 2006) 자료를 기초로 한 것임)

4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관련법령정비

- 현재 언어치료사 자격증은 3급 체제이나 행정적인 효율성 및 질적 관리를 위해서는 복수 급수(1급 및 2급)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의되었음(한국언어치료학회,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한국언어치료학과협의회,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 등 관련 단체)
- 2급은 기본적으로 학사로 하고, 전문학사에게는 소정의 보충교육을 실시하기로 함
- 장애인복지법에 포함되는 국가자격증(장애인복지법)으로 추진되어야 함 (국가자격증의 필요성 및 재활치료 전문인력 국가자격제도 도입방안 연구는 2010년 보건복지부 및 직업능력개발원 등의 연구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음)
-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① 자격검정: 현재 협회에서 수여하고 있는 민간자격증은 3등급 체계이나 국가자격증은 좀더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등급 체계(1급, 2급)로 하기로 합의되었음
 - ② 자격시험: 행정적 효율성을 위해 자격시험은 2급 한 번만 실시. 최소한 말-언어-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6과목 (예: 의사소통장애 개론, 언어발달장애, 신경언어장애, 조음음운장애, 음성장애, 유창성장애)
 - ③ 가격급수: 1급(석사), 2급(학사)
 - 가. 1급: 자격시험 합격 후 언어병리학 석사학위 취득 + 임상경력 1년
 - 나. 2급: 자격시험 합격 (수년의 경력이 쌓일 때까지는 1급의 감독하에 언어치료). 전문학사의 경우 소정의 교육실시

- 다. 보완교육: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학문이므로 철저한 보완교육 규정이 필요함(예: 2년간 20시간 이상)
- 언어치료사는 언어라는 복잡한 상위인지능력을 평가하고 촉진계획을 수립하며 매 회기 대상자의 진전상태에 민감한 언어촉진활동을 실시해야 하는 직업이므로, 단기간 연수나 교육을 통한 양성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에 현재 전공학과와 모든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언어장애 전문가협회(구 언어치료전문가협회)를 법정단체로 하여 전문 자격증을 자문 및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신설 시장단점

□ 높은 언어치료에 대한 장애부모의 요구를 제도권 안에서 충족시킬 수 있음

- 현재 장애아동 부모들의 지원서비스 요구에서 가장 많은 것이 언어치료이며, 이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언어 및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 기초능력이기 때문임
- 그러나, 수도권에 치중된 언어치료실과 민간자격자의 전공 배경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불평이 쌓이고 있음
- 언어치료사 자격증이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국가 차원에서 그 자격을 검정한다면 복지관이나 학교, 병원, 사설치료실에 다니는 많은 언어장애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될 것임

□ 교육현장에서도 특수교육관련서비스로서의 언어치료 혜택을 줄 수 있음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부모가 원할 때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로서의 언어치료를 제공해야 함에도 민간자격의 한계 때문에 많은 지자체 교육청에서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장애부모들의 많은 불만을 사고 있음
- 언어치료사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으로 검증된다면 학령기나 학령전기 아동들에게 언어치료의 혜택을 줄 수 있고, 이러한 조기개입은 성인까지 이어지는 언어장애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음

□ 비전문가의 언어치료 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를 막을 수 있음

- 현재 언어치료학/언어병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협회의 자격검정 과정을 거쳐 일원화된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받고 있으며 많은 기관에서 고용자료로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인 또는 국가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비전문가의 언어치료 행위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으며, 이는 고스라니 언어장애아동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

사회복지사 3급

1

자격의 내용

□ 현행 사회복지사 3급 관련 법적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제2조제1항 관련) 중 사회복지사 3급 자격기준

- 보건복지부가 정한 단기 양성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취득
- 주요대상은 전문대학 이하 학력자·공무원으로 단기(6주~24주) 양성교육 과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음

※ 2010년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단기 양성교육기관
- 명지대학교(서울), 경남정보대학(부산)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

- 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다.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라.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 3급 연혁

- '71.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과정 개설
 - 4년제 대학의 사회복지학 전공자, 고교 졸업 후 시설에서 5년간 종사한 자 등에게「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 부여
- '83. 「사회복지사」 1, 2, 3급으로 분류
 - * 대학(원), 전문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자, 양성교육 이수자가 취득
 - * 자격취득과정의 차별성(대학, 전문대학 등)과 교사 자격제도 벤치마킹
- '94. 사회복지공무원 교육과정 추가
 - * '98. 정부조직개편심의위에서 양성교육정을 민간위탁 결정
- '97. 1급은 국가시험체제로 개편, 3급은 양성과정으로만 취득
 - * 자격기준이 학과중심에서 교과목 이수중심으로 변경
- '99.~'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교육 위탁 운영

- '02.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취득 기회 확대
 - * 고졸자도 원격대학,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에서 2급 취득 가능
- '03. 4. 공모를 통해 전국 5개 권역별로 6개 양성교육기관 선정
 - * 국립보건원, 명지대, 공주영상정보대학, 광주대, 대구보건대학, 경남정보대학
- '07. 1. 양성교육기관을 **2개로 축소(명지대, 경남정보대학)**
 - * 사유 : 미신고시설 양성화대책 마무리로 수요 감소, 국고보조금 삭감

2

폐지 사유

□ 3급 수요 감소 및 필요성 저하

- 과거 대학의 사회복지학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사회복지 인력의 자격양성화를 위한 단기(6주~24주) 양성교육과정 시작
- 90년대 사회복지학과 설치 대학이 증가하고, 2000년대에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로 고교 졸업자도 평생교육원과 원격대학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기회가 확대
- 또한,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 미소지자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미미하며, 연간 6만명 이상 자격증 발급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성교육과정의 수요 감소 및 당초 취지에 대한 문제점 제기
 - ※ 참고 : 자격증 교부현황 ('10년 10월 현재 총 408,445명 발급)

연도	교부누계	1급	2급	3급
2002	16,730	10,487	6,073	170
2004	19,196	5,044	13,722	430
2006	33,315	5,055	27,871	389
2008	60,208	9,170	50,694	344
2010. 10.	70,793	9,472	61,192	129
총 교부누계	408,445	90,727	305,576	12,142

□ 국가보조금 삭감 및 교육과정 축소

- 국가의 지원을 통해 운영되던 단기 양성교육과정에 대해 국회의 결정으로 '07년도부터 국가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단기 양성과정의 수요 감소 등으로 교육기관 및 과정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

※ '03년 교육기관 6개 → '07년 교육기관 2개

3

자격의 수요자

□ 주요대상

- ※ 매년 교육대상은 보건복지부의 교육계획공고에 따라 변동이 있으며, 아래의 내용은 2010년 기준임.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고졸 미만자 : 3년 이상) 사회복지실무경력이 있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상

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재직 공무원(기능직 공무원 포함)

□ 3급 자격증 발급현황

연도	2002	2004	2006	2008	2010. 10.	총계
인원(명)	170	430	389	344	129	12,142

4

이해관계자의 의견

□ 한국사회복지사업회 의견

- 사회복지사 3급은 1980년대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 부족한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자는 의미에서 생겨났으나, 연간 6만여명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자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양성교육과정의 취지에서 벗어남.
- 또한, 등급별(1, 2, 3급)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복지현장에서는 3급 자격의 역할이나 전문성에 문제 제기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관련 연구 동향 및 결과에 따른 폐지 찬성 의견 반영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폐지관련 설문조사('06. 9.)

- 6,400여명 사회복지사 대상 양성교육과정 폐지여부 조사결과 **63.1%가 반드시 폐지, 24.7%가 폐지**

※ 전문성 향상 관련 사회복지계 연석회의 및 의견 수렴('10. 6.~10.)

- 양성교육과정 필요성 저하 및 수요 감소,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방법의 다양화로 인한 자격증 발급량 급증 등과 관련하여 **양성교육과정폐지 의견 일치**

5

폐지 시 장단점

□ 폐지 시 장점

-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현재의 3급을 폐지하고, 분야별로 보다 전문성 있는 자격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발판 마련

□ 폐지 시 단점

- 기존 3급 자격 소지자의 경과조치 논의 필요

6

기타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등) 2항 개정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서 3급에 대한 규정 삭제

학습컨설턴트

1

자격의 내용

□ 학습컨설턴트(학습전문가/학습상담사)

- 학습컨설턴트 및 학습전문가라 함은 학습 분야에서 클라이언트인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과정을 진단하여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운영·관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교사나 학부모, 학교 관리자에 해당하는 컨설턴트나 학습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자를 일컫음

2

검정방법 (현재 준비 중인 민간자격)

□ 수여기관

- 교육학 분야 및 사범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약 100여개 대학에 소속 중인 교수들과 일반회원 1500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육심리학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민간자격증

□ 급수: 학습컨설팅 전문(박사), 1급(석사), 2급(학사) 체제

- 이 체제는 국가자격증화가 공론화 되면서 한국교육심리학회 위원, 회원들과의 협의회를 거쳐 3등급 체제(학습컨설팅 전문가, 1급, 2급)로 합의되었음

□ 검정방법

1) 학습컨설팅 2급:

- ①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소지 + 한국교육심리학회 자격심사위원회 시행 2급 자격시험 합격 + 학습컨설팅 2급 자격연수 과정 수료
- ② 교육학 및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 + 2급 자격시험과 연관된 과목 3과목 이상 이수(2급 자격시험 면제) + 학습컨설팅 2급 자격연수 과정 수료
- ③ 정교사 2급자격증 소지(2급 자격시험 면제) + 학습컨설팅 2급 자격연수 과정 수료

2) 학습컨설팅 1급

- ① 학습컨설팅 2급 자격 취득 + 3년간 실무경력 + 학습컨설팅 1급 자격시험 + 1급 자격연수 과정 수료 + 교육관련 기관 인턴십 30시간 이상 이수
- ② 교육심리학 및 관련 분야 전공 석사과정 수료 + 석사과정에서 학습컨설팅 1급 자격시험과 관련 있는 과목 4개 이상 이수 (학습컨설팅 2급 자격연수 과정 면제) + 학습컨설팅 1급 자격시험 통과 + 1급 자격연수 과정 수료 + 교육관련 기관 인턴십 30시간 이상 이수
- ③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학습컨설팅 2급 자격연수 과정 면제) + 학습컨설팅 1급 자격시험 통과 + 1급 자격연수 과정 수료 + 교

육관련 기관 인턴십 30시간 이상 이수

3) 학습컨설팅전문가

- ① 학습컨설턴트 1급 자격과 교육(교육심리학, 학교심리학, 학교상담 포함)분야 박사학위 소지 + 학습컨설팅전문가 자격시험 + 전문가 자격연수 과정 수료 + 교육관련 기관 인턴십 60시간 이상 이수
- ② 경력 5년 이상인 교육심리 및 상담 관련 분야 전공 대학교수 + 전문가 자격연수 과정 수료

3

자격의 수요자

□ 주요응시계층

- 국내외 대학의 대학원 및 학부과정에서 교육학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 국내외 사범대학을 졸업하였거나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각종 교과 의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국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중 학습컨설팅이나 학습상담에 관심이 있는 자

□ 자격을 사용하게 될 사용자

-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학습컨설팅을 담당할 사람
 - ① 초·중·고등학교에 고용될 학습컨설턴트
 - ② 초·중·고등학교에 고용될 인턴 교사 및 보조교사
 - ③ 대학의 교수학습지원(개발)센터에 고용될 학습컨설턴트

- ④ 지자체와 교육청 산하 청소년 상담센터에 고용되어 학습상담을 담당할 학습컨설턴트
- ⑤ 각 지역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기관에서 교사 연수를 담당할 전문 인력
- ⑥ 평생교육기관에 고용되어 학부모를 통한 간접컨설팅을 수행할 학습컨설턴트

□ 학습컨설턴트 자격 사용자 수

- 2010년 현재 한국교육심리학회 회원으로 학습컨설턴트 자격증을 수여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약 1500명 정도임
- 현재 교육학 및 교육심리학 전공이 개설된 대학 50여개에서 매년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자 수는 20,000명 이상에 달하지만 이들의 취업률은 30% 정도에 그치는 실정임.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자 수도 매년 6000명 이상이지만 이들의 취업률도 53% 정도임
- 2009년부터 교육부에서는 매년 학습보조 인턴교사 7000명을 채용하여 일선 학교에 배치하고 있음. 인턴교사의 역할은 정규교사를 보조하여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지도하고 '사교육없는학교'의 운영 프로그램 관리 및 방과후 수업 지원하는 것이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연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인턴교사의 채용조건으로 학습컨설턴트 자격을 갖추도록 할 때 인턴교사 채용의 원취지에 맞는 학습보조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전국 164개 4년제 대학교와 200여개 2년제 대학이 있으며, 이들 학교 대부분은 교수학습지원(개발)센터를 운영 중임. 한국교육심리학회 회원이자 석·박사 학위 소지자의 상당수가 이들 대학 센터에서 학습지원을 담당하는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 추정 학습컨설팅 대상자 수

- 치료적 학습컨설팅 대상자 수: 고등학생 및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4.8%(약 20만명 추정)이며,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1.5%(약 10만명 추정)임(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기준)
- 예방적 학습컨설팅 대상자 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전환하는 시기에 예방적 학습컨설팅을 받아야 하며, 이들의 수는 100만명 이상임
- 대학에서 재학 중이면서 학습부진과 생활부적응으로 고통을 받는 학생이 5% 정도로 추정됨

<표 1> 2010년 초·중·고 지역별 국가수준학력성취도 기초학력미달 비율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초6	1.6	1.3	1.5	1.5	1.9	1.3	1.7	1.8	0.9	0.6	1.2	1.6	1.6	1.5	1.0	1.1	1.5
중3	7.0	5.2	4.0	3.8	4.8	5.2	4.1	6.2	5.8	3.7	5.3	7.3	6.6	4.0	4.2	6.3	5.6
고2 (일반계)	6.3	2.6	1.8	2.0	1.6	2.4	3.7	5.2	3.6	2.5	2.7	3.9	3.5	2.2	3.1	2.7	4.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10. 11. 30.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도자료

4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관련법령정비

- 학습컨설턴트 및 학습컨설팅전문가 자격의 심사와 관리를 위해 한국교육심리학회에서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함

- 학습컨설턴트 자격증은 전문인력 양성의 질적관리를 위해 3등급체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의함(한국교육심리학회)
- 학습컨설턴트 2급은 기본적으로 학사로 하고, 1급은 석사, 전문가는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자격을 주기로 합의함
- 한국교육심리학회는 학습컨설턴트 및 학습컨설팅전문가의 자격연수 과정과 자격시험에 대한 요건을 공고하고, 자격연수 과정을 개설하거나 타 기관에 위탁하여 개설할 의무가 있음
-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① 자격검정: 학습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학습컨설턴트 2급, 학습컨설턴트 1급, 학습컨설팅전문가의 자격 조건을 갖춘 자에서 각 자격을 부여하기로 합의함
 - ② 자격급수: 학습컨설팅전문가(박사), 1급(석사), 2급(학사)
 - 가. 2급: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소지 + 2급 자격시험 합격 + 학습컨설턴트 2급 자격연수 과정 수료
 - 나. 1급: 학습컨설턴트 2급 자격 취득 + 3년간 실무경력 + 학습컨설턴트 1급 자격시험 + 1급 자격연수 과정 수료 + 교육관련 기관 인턴십 30시간 이상 이수
 - 다. 학습컨설팅전문가: 교육 분야 박사학위 소지 + 학습컨설턴트 1급 자격 + 학습컨설팅전문가 자격시험 + 전문가 자격연수 과정 수료 + 교육관련 기관 인턴십 60시간 이상 이수
 - ③ 자격시험: 자격시험 과목은 필수 1과목과 선택 2과목으로 나누어 필기시험으로 실시. 자격급에 따라 시험과목은 조정됨
 - ④ 자격연수: 자격급에 따라 연수과정과 시간은 조정됨
 - 가. 2급: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30시간 연수과정으로 운영(연수과목 예: 학습컨설팅의 이해, 동기강화, 학습전략, 의사소통 기술, 발달과 학습 등)
 - 나. 1급: 학교현장 및 학습자에 대해 이해하고 학습이론의 적용

방법 모색을 목표로 30시간 연수과정과 30시간 인턴십으로 운영(연수과목 예: 학습컨설팅 사례분석, 고급 학습전략, 학습컨설팅의 리더십, 행동수정, 관찰 및 면담 등)

- 다. 학습컨설팅전문가: 학습컨설팅을 실제로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낮은 단계의 학습컨설팅을 슈퍼바이저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30시간 연수과정과 60시간 인턴십으로 운영(연수과목 예: 학습컨설팅의 절차, 학교리더십, 특수아(영재/장애/다문화아동)학습컨설팅, 학습컨설팅프로그램 개발, 조직컨설팅과 학습, 진로상담과 학습컨설팅 등)

5

신설 시 장단점

□ 학교 교육 개선

- 학생의 학력 신장 및 학교적응도 제고: 모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인적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학습컨설팅을 공교육 현장에 제공하여 학습장애아, 학습부진아, 미성취아의 학습력을 신장시키고 학교적응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교사-학생-학부모 간 연계 활성화: 학습전문가의 자격을 갖춘 학습컨설팅전문가가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에게 학습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공교육의 정상화: 학생들의 학습요구와 특성에 맞는 학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교육 없는 학교'를 구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 사범계열 미취업 졸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 학습지도 전문가 양성: 사범계열 학부 졸업생 및 대학원생들을 학습컨설턴트로 양성하여 고학력 취업난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학습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인력 양성: 학습컨설팅의 모형을 정착시키고 교육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는 박사급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정사회 구현

- 사회적 약자(다문화 학생, 저소득층 자녀, 특수아동)에 속하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으며,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 하지만 이런 학생들의 부모들은 학습과 학습기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재정적인 어려움 등의 문제로 학생들의 학습과 관련한 문제나 학습부진을 간과하게 됨. 이런 까닭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학생들이 성장하여 또 다시 사회적 약자가 되는 교육의 계층 재생산 위험이 있음
- 학습컨설턴트는 이런 사회적 문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이런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지속적인 학습관리로 이들 중 능력있는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문헌

- 강혜규 외(2008). 『사회서비스 인력운영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2010). NCS 기본계획. 부처 내부자료.
- 관계부처합동(2010).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방안: 보건복지분야 5대 유망 서비스 중심. 제6차 국가공요전략회의 제1호 안건.
- 노동부(201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정책과제.
- 박기현(2010). 2020 국가고용전략의 주요내용과 쟁점.
- 박세경 외(2007).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환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종성 외(2010). 『서비스산업의 자격연구(I):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사공목(2010). 일본 산업구조 비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 서문희 외(2007). 『한국 베이비시터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안주엽(2005).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05~2020』. 한국노동연구원.
- 여성가족부(각시도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자료), <http://www.index.go.kr>.
- 이상돈·윤여인·이진면(2003). 『국가 인력수급 전망과 정책과제(III) : 서비스산업분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영대·김기홍(1999). 『주요 선진국의 직업연구 동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운경·한상근·장혜정·김나라(2008). 『KRIVET 직업전망 지표 개발(200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주무현·강민정·박세정(2007).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06~2016』, 한국고용정보원.

- 지식경제부·산업연구원(2010).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 최봉현·김홍석·조현승·하봉찬(2007). 『서비스산업의 미래와 경쟁전략』, 산업연구원.
- 한국고용정보원(2009). 한국고용직업분류표(KECO '09).
_____ (2009). 한국직업전망.
- 한국은행(2010). 2008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결과.
_____ (2010). 산업연관표 1995-2000-2005 연결표.
_____ (2010). 산업연관표 2005-2006-2007 연결표.
-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JILPT)(2004). 産業別・職業別就業者數の將來予測.
内閣府(2010). 『國民經濟計算年報』.
- BEA(2010). Industry Economic Accounts.
- Bureau of Labor Statistics(2009). 2010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_____ (2010). Employment Projections Program.
- CPST(2010). Best Job in America: Systems Engineer. *STEM Trends*,
Vol.47 No.3.
- Focus(2010). The Best Jobs in America. Retrived from
<http://www.focus.com/fyi/human-resources/best-jobs/>
- Ministry of Internatio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2010). Japan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Rev. 5th, December 2009).
- OECD(2010). STAN Input Output Database.

■ 저자 약력

- 조정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박종성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정향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주인중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나승일
- 서울대학교 교수
- 원종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서비스분야 자격의 활성화 방안

- 발행연월일 | 2010년 12월 30일 인쇄
2010년 12월 31일 발행
- 발 행 인 | 권 대 봉
- 발 행 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47길 46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2)3485-5000, 5100
팩 스: (02)3485-5200
- 인 쇄 처 | (주)현대아트콤 (02)2278-4482
- 등 록 일 자 | 1998년 6월 11일
- 등 록 번 호 | 제16-1681호
- I S B N | 978-89-6355-175-3 9337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값 9,000원>